月刊 建築士 1993년 3월호
통권 267호(매월 15일 발행)
발행 · 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 · 1967년 3월 23일
등록번호 · (서)라-26
1995년12월31일 제3종우편물
(나)급인가

KOREAN ARCHITECT

建築士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March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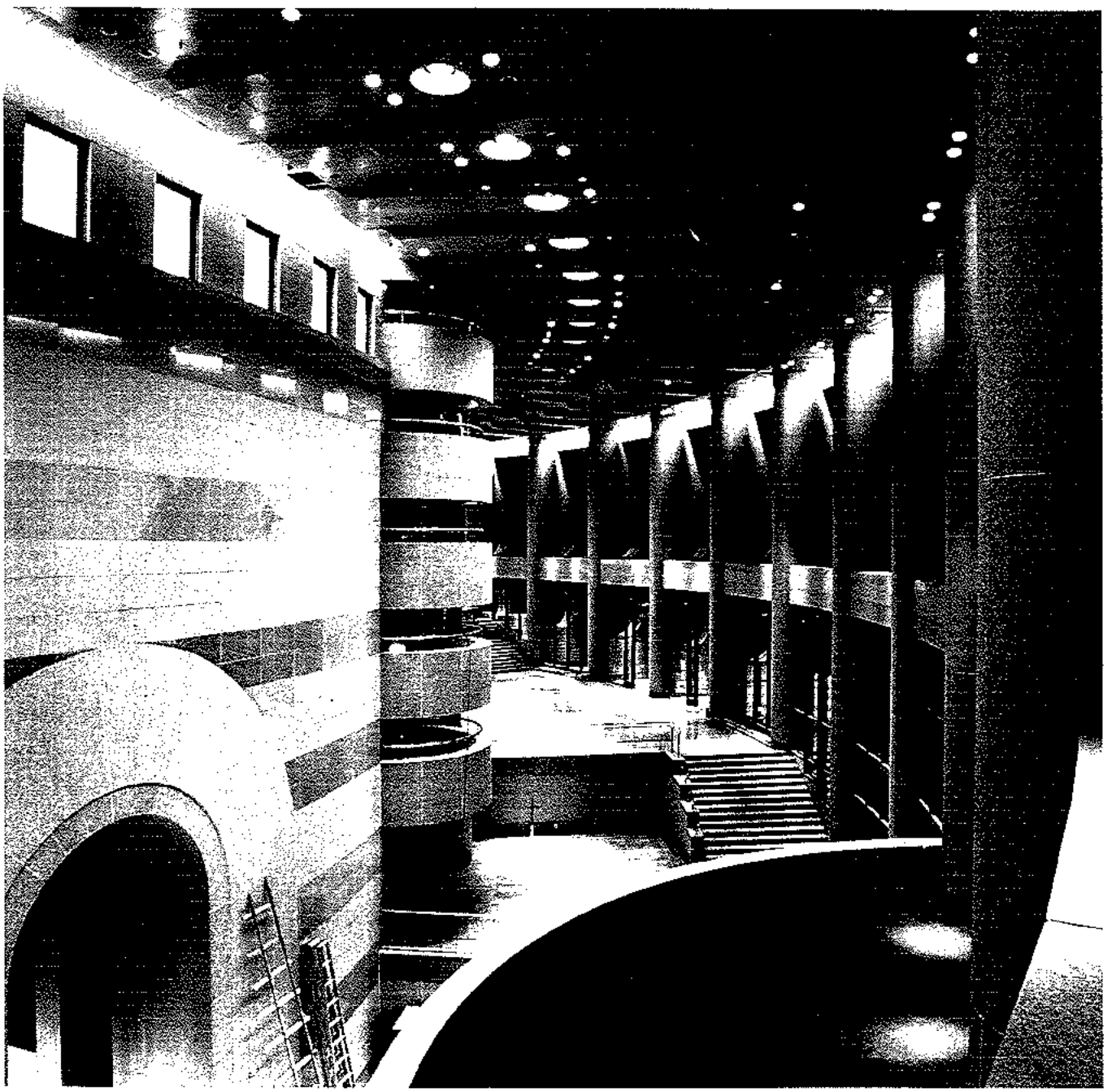

3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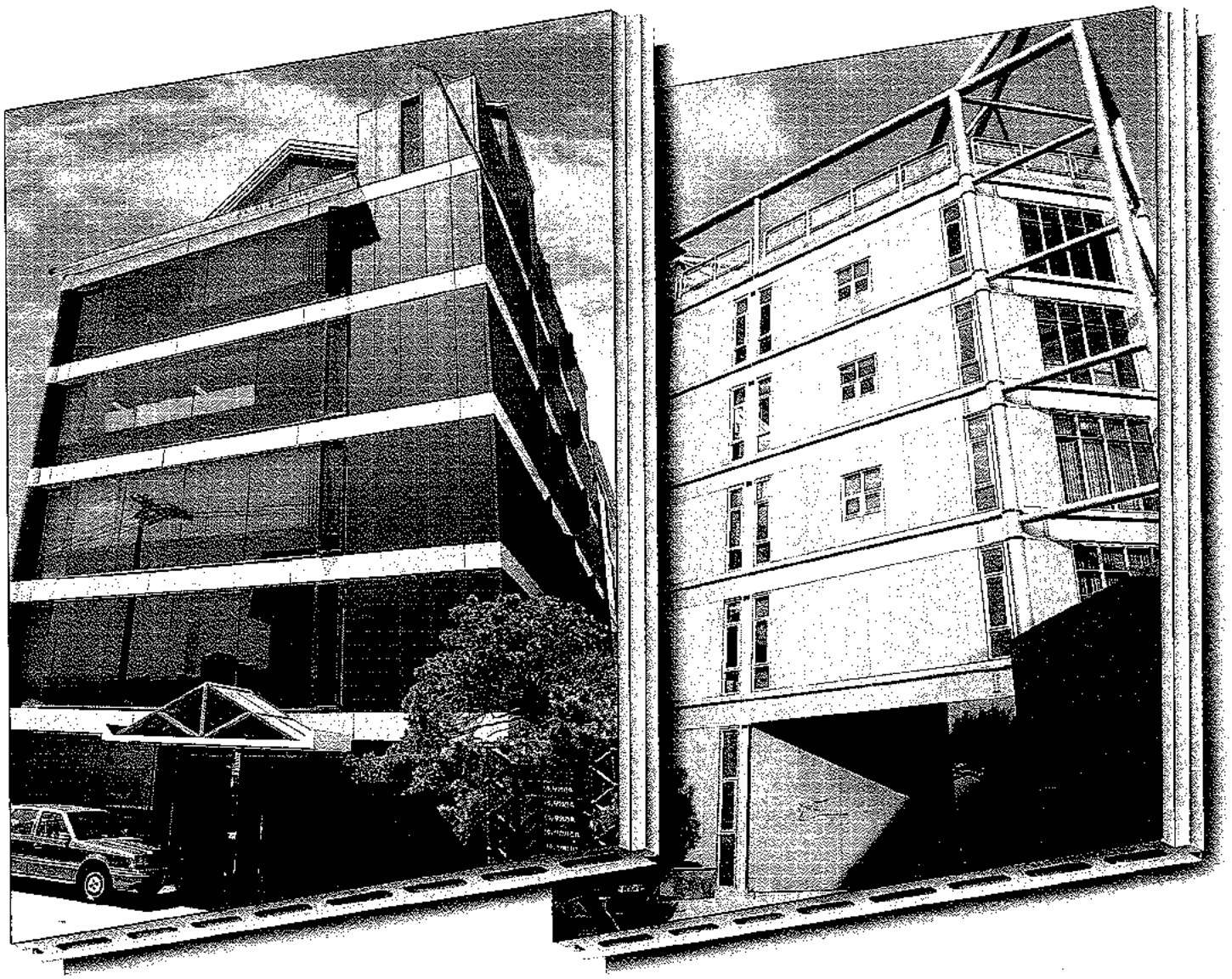

미려한 건축물에는
벽산 베이스판넬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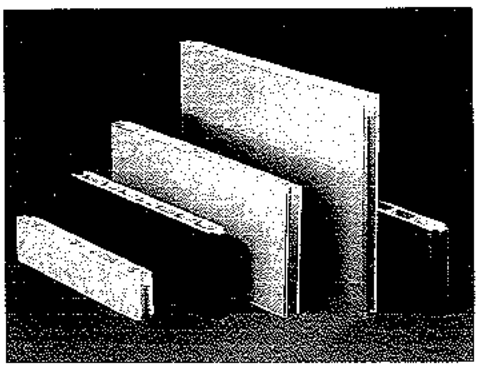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M^2 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02)260-6250~8 특수영업부

주식회사 벽산
대표전화 : (02)260-6114
FAX : (02)275-0050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의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쉐라톤워커힐
롯데호텔
부산문화예술회관
이화여대강당
유관순기념관
충현교회 본당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서울·제주 신라호텔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인양문화예술회관
중앙대예술대학강당
제물 센타 예술극장
육군박물관
대전시민회관
부곡하와이 등

주요생산품목

- STAGE & STUDIO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332-4500(代表), (02)335-4642(代表)
FAX. (02)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厩里 山209-1
TEL. (0341)987-4184, (02)632-0216

쾌속입출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주차설비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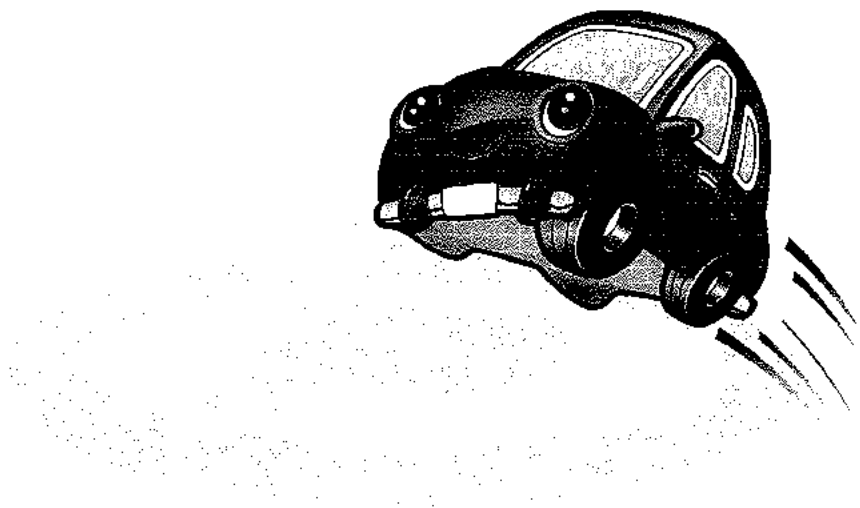

설계의 차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듯, 주차시스템에 따라 효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여년전 국내에 처음 기계식 입체주차 설비를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로 고객여러분의 보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기계식 입체주차설비 —
좁은 면적에 고수익을 생각하신다면
단연 삼성타워파킹입니다.

신속한 입출고
기존제품의 속도보다 25% 향상된 초고속형과 어느 방향에서나 출고가 가능한 턴테이블 내장형의 삼성타워파킹은 신속한 입출고를 통해 단축된 시간만큼의 이익을 고객여러분께 돌려드립니다.

첨단COMPUTER제어시스템
삼성타워파킹전용의 Computer제어시스템과 기계의 작동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성만의 특허 Panel은 자동 입출고를 통한 간편한 조작과 탁월한 운전관리를 보장합니다.

저소음, 저진동 특수감속기의 사용 및 특수방진설계의 채택으로 저소음, 저진동을 실현하였습니다.

수동출고가능 삼성만의 브레이크해제장치와 핸드체인의 장착으로 정전 및 기계적 고장시에도 인력에 의한 차량출고가 가능합니다.

완벽A/S실현 최고기술진의 완벽 A/S는 언제어디서나 고객 여러분의 긴급한 요구를 만족시켜 드립니다.

다기종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은 구매자의 예산과 입지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 드립니다.

주차운전방식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

- 초고속형 :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 턴테이블 내장형 : 케이지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 이중탑재형 : 파레트 하나에 두대 주차

엘리베이터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횡식, 종식)

- ■ 지하 다층 순환방식 : 다층으로된 지하주차 공간에 상하수평으로 순환이동시키며 주차시키는 방식
- ■ 조립식 입체평면주차방식 : 경량 철골 조립식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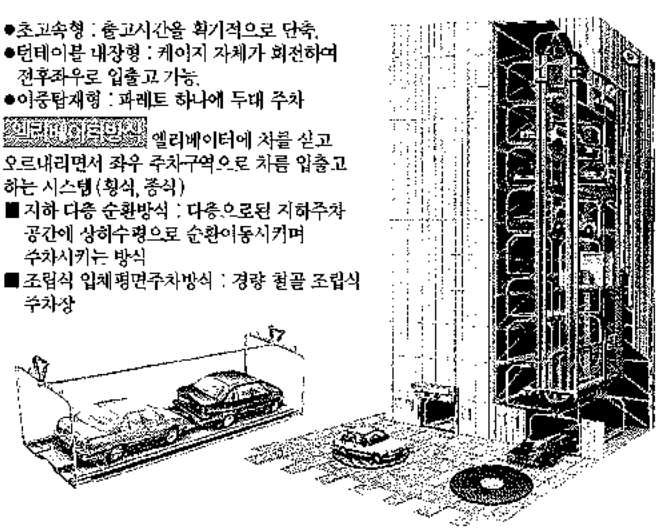

세계속에 한국을 펼치기는
삼성중공업

■본사 :(02)561-9414~6 FAX.(02)561-8918 창원공장 :(0551)60-6755~7, FAX :(0551)60-6768 부산지점 :(051)863-3374 FAX :(051)83-3345 대구지점 :(053)742-8870~2 FAX :(053)742-8873
광주지점 :(062)224-2174~5 FAX :(062)228-3990 대전지점 :(042)254-7768~9 FAX :(042)255-7309

INSU PANEL SYSTEM

국내 파넬업계 최초 내화구조 지정 고시획득 !

INSU GLASSWOOL P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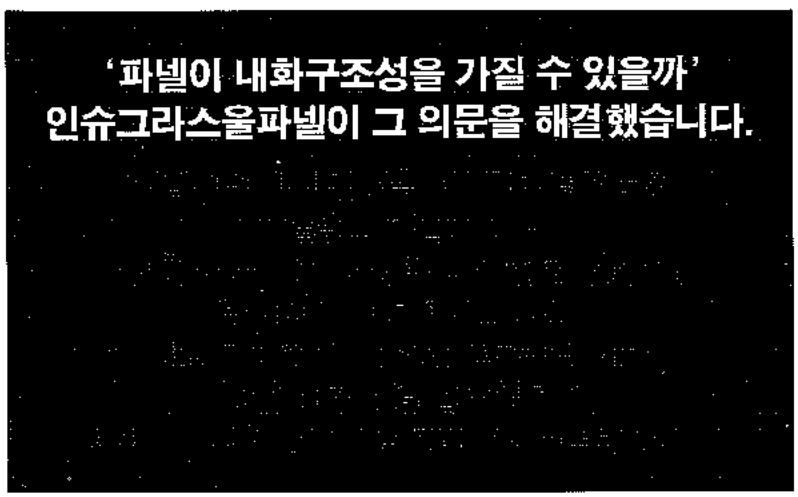

■ 내화구조체, 인슈그라스울파넬의 우수성

하나. 비교할 수 없는 불연성

내부 단열재로 KSF2271, BS476PART4 의 관련규격 무기질 단열재인 유리섬유를 사용,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 인슈그라스울 파넬 —
그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불연성은 이미 내화구조로 지정 고시되어 불에 강한 단열파넬의 기준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완벽한 내화구조성능 인슈그라스울파넬.

둘. 완벽한 방수성과 단열성

누수를 유발하는 상부하중과 그로 인한 내부 단열재의 수축을 뛰어난 인장 및 압축강도로 방지, 완벽한 방수성능을 유지합니다.
특히 시공시 볼트부위를 CAP 으로 마무리, 누수발생을 차단하여 누수현상에 의한 단열효과의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0.029%의 낮은 열전도율의 인슈그라스울파넬 —
그 가늘고 균일한 조직의 내부 단열재는 효율적 에너지 활용 효과를 거두게 합니다.

셋. 우수한 견고성

인슈그라스울 파넬은 내부 단열재인 유리섬유의 결을 수직으로 성형, 기존제품보다 압축강도가 열배나 뛰어나며, 특히, 균일한 두께 유지로 박리현상을 완전히 방지합니다.

주식회사 연합인슈
부설기술연구소
본사및공장 : 경기도 이천군 백사면 도암리 37-2
TEL : (02)745-0687, (0336)34-6880 FAX : (0336)32-4243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02)555-6891, FAX : 553-1651

ARRIS

ARRIS가 실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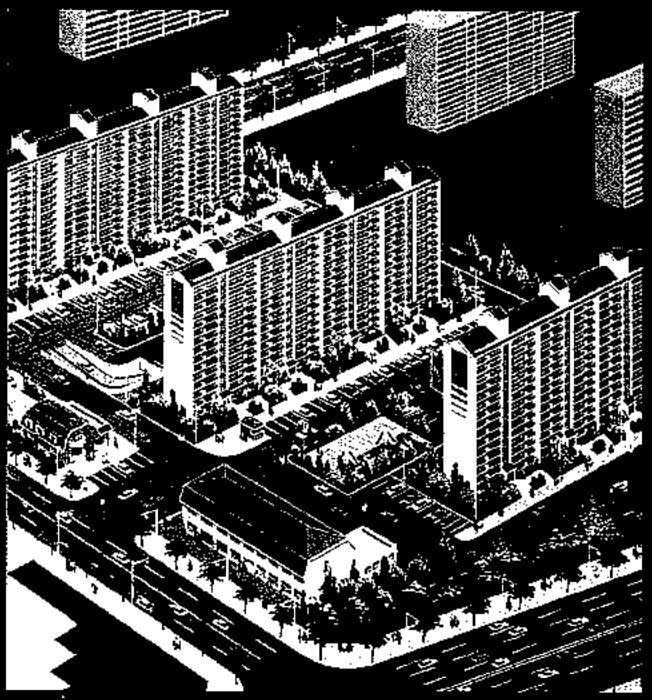

작업 시간 단축

증산지구 아파트(1960세대,780세대,980세대)
설계작업시 수작업으로 3개월 걸리던
설계작업을 불과 20일 만에 끝냄.

다양한 3rd PARTY 기능

상세도처리

일반상세, 실내마감상세, 바닥상세, 천정상세,
단위실가구상세, 외부시설상세등 총450개

한글 단/복선체

크기조절기능, 평장기능,
칸메우기 기능, 공간 채우기 기능등

구조일람표

철근(보, 슬라브,기둥)과 철골접합상세등

⊙해인슈퍼하우징⊙

인공 지능3S를 채택!
(Simple, Speed, Smart)

- 해인슈퍼하우징의특징
  ARRIS CAD의 한국형 건축지원 프로그램
  2차원 도면에서부터 완벽한 3차원 모델구현
  사용자의 단순한 반복 작업을 최대한 배제
- 해인슈퍼하우징의 주요기능
  중심선 작도에 의한 다양한 벽체 작도기능
  창호도 자동작도기능
  벽체 마감자동 작도기능
  벽체 해칭 자동 작도 기능
  물량 산출기능
  KS 규격의 다양한 심볼 제공
  다양한 계단 작도 기능
  각 설계사무실에 맞는 SHEET 저장기능
  다양한 모양의 창호제공 입면도 자동 작도기능
  MULTI- WINDOW 기능
  벽체의 각각 LINE 성문화기능
  완성형 한글(약3,000자) 및
  복선체 한글, 한자(약7,500자)제공
  DATABASE 관리기능
  작업시 필요한 각종 UTILITY 기능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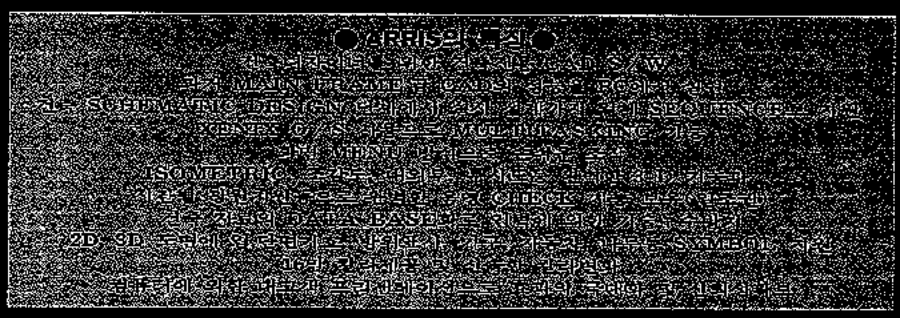

서통 AI사업부 514-0386

• 대구전시장 :421-2856 • (주)빌리언시스템:325-1623 •

귀사께선 어떤 건축자재를 선택할 것인가?
지금도 망설이고 있습니까?

품질보증
본상품은 품질시험검사전문 기관인뒤검사스에서보증함.
한국화학시험검사소
TEL. 634-0034

문풍지 H 후램 이란 강화유리 도아 상·하부에 후램에 틈이 없어 방풍·방음효과와 열손실을 막아줍니다.

여기 강화유리도아 H후램이 선택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방풍설치

- 냉·온방 ½차단
- 방 진
- 방 음
- 수명반영구적

(예) 스테레스 스틸 여단이문 F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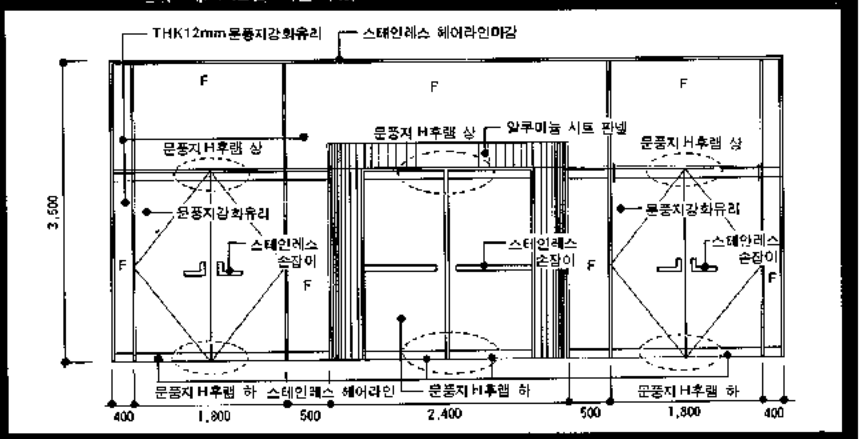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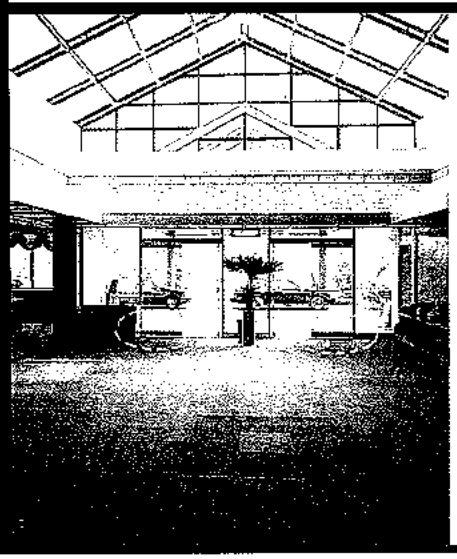

"문풍지H후램은 열손실 100% 보장"

← B제품은 여기에서 열손실이 많이 되는 부분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성광산업

본사 :
부산시 북구 삼락동 342-16
TEL : (051) 302-1100 ~ 2
FAX: (051) 301-4 5 7 5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5-3
TEL : (02) 576-0 0 8 3
(02) 577-0 0 4 1
FAX: (02) 574-9 3 5 5

무 지 보 역 타 설 공 법

무지보 역타설(N.S.T.D.)공법은 기존의 모든 토류벽을 이용하여 건축지하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법으로 종래 역타설 공법의 굳은암층, 선굴착 Con'c 타설용 거푸집 받침 동바리(중장비 작업방해)가 필요하지 않고 토류벽의 엔지말뚝(H-PILE)또는 건축구조물의 철골기둥(STEEL COLUMN)에 기 제작된 철골틀(강재거푸집)을 설치하여 상, 하향 자유자재 이동하며 Con'c를 타설하는 공법이며 철골틀이 강기둥(STEEL COLUMN)의 LIFT BLOCK에 의하여 매달려 있으므로 지하굴토 작업공간이 확보되어 굴토작업의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종래 TOP DOWN 공법과 비교하면 30%의 공기 절감과 중장비 작업대기, 동바리, 거푸집 설치해체, 소운반 품등의 삭감이 15%의 공사비를 절감합니다.

무지보 역타설 (N.S.T.D.)공법은 공사비, 공사기간, 지하굴토 공사로 인한주변 피해 민원을 억제하는 획기적인 공법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며 건축기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주식회사 정 담

TEL:(02)594-8100 / 9

굴토공사 피해민원 예방대책

DK 동국통상주식회사 (기전사업부)

(日本 : 明興金屬株式會社기술제휴)

자 주 식 입 체 주 차 장

한정된 土地를 유효하게 활용할수 있는 1층 2단식 입체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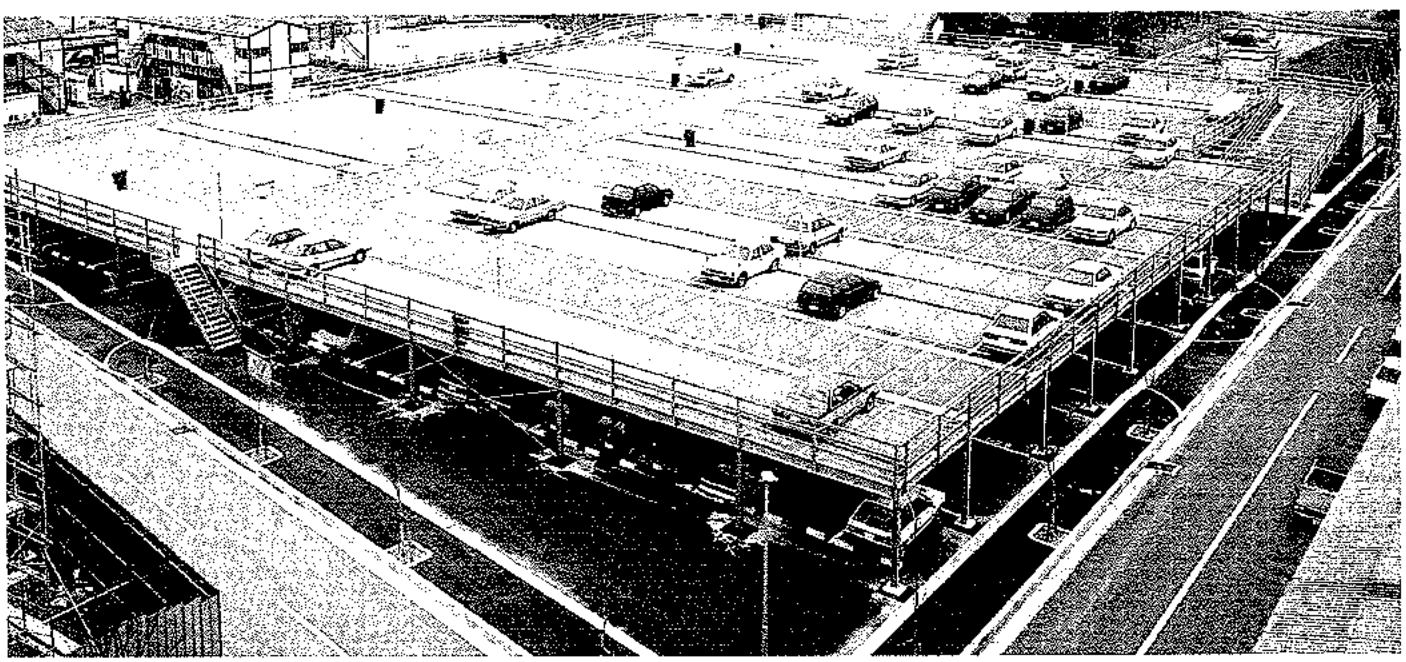

특징

- 건설코스트 약 1/2로 최대의 효과
- 시공이 간편하고 유지관리비가 필요치 않음
- 용융도금으로 내부식성이 우수하며 미관이 수려함
- 주차가 간편하여 주차능력이 2배이상
- 공작물로써 건폐율 산정시 제외됨
- 어떠한 지형도 설계가능
- 100% 안전 및 완벽한 A/S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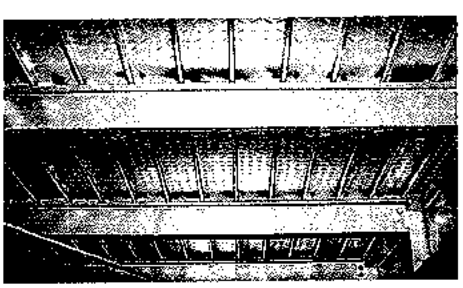

적용

- 백화점 ● 병원 ● 철도역 ● 공항 ● 아파트
- 오피스텔 ● 예식장 ● 기타 교통유발 예상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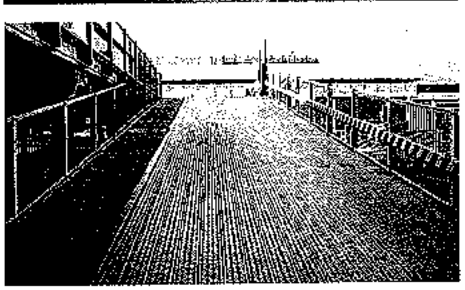

영업품목

- 자주식 주차장설계 · 시공 · A/S
- 주차장 바닥재 및 창고용 바닥재판매
- 건축용 DECK PLATE판매
- 대형 H-BEAM 및 칼라C형강재
- 기타수입강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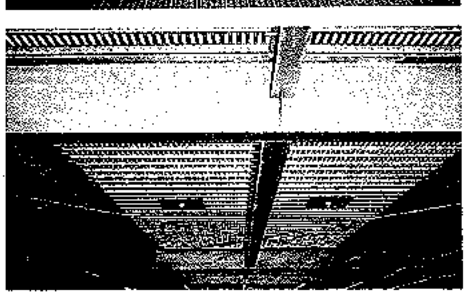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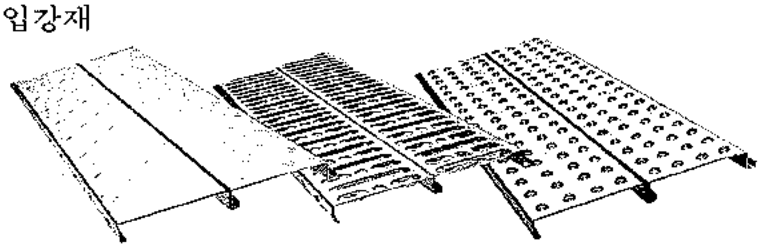

DK 동국통상기전사업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92-20 도원B/D 4층

직통(02)704-6507~9

FAX. 719-4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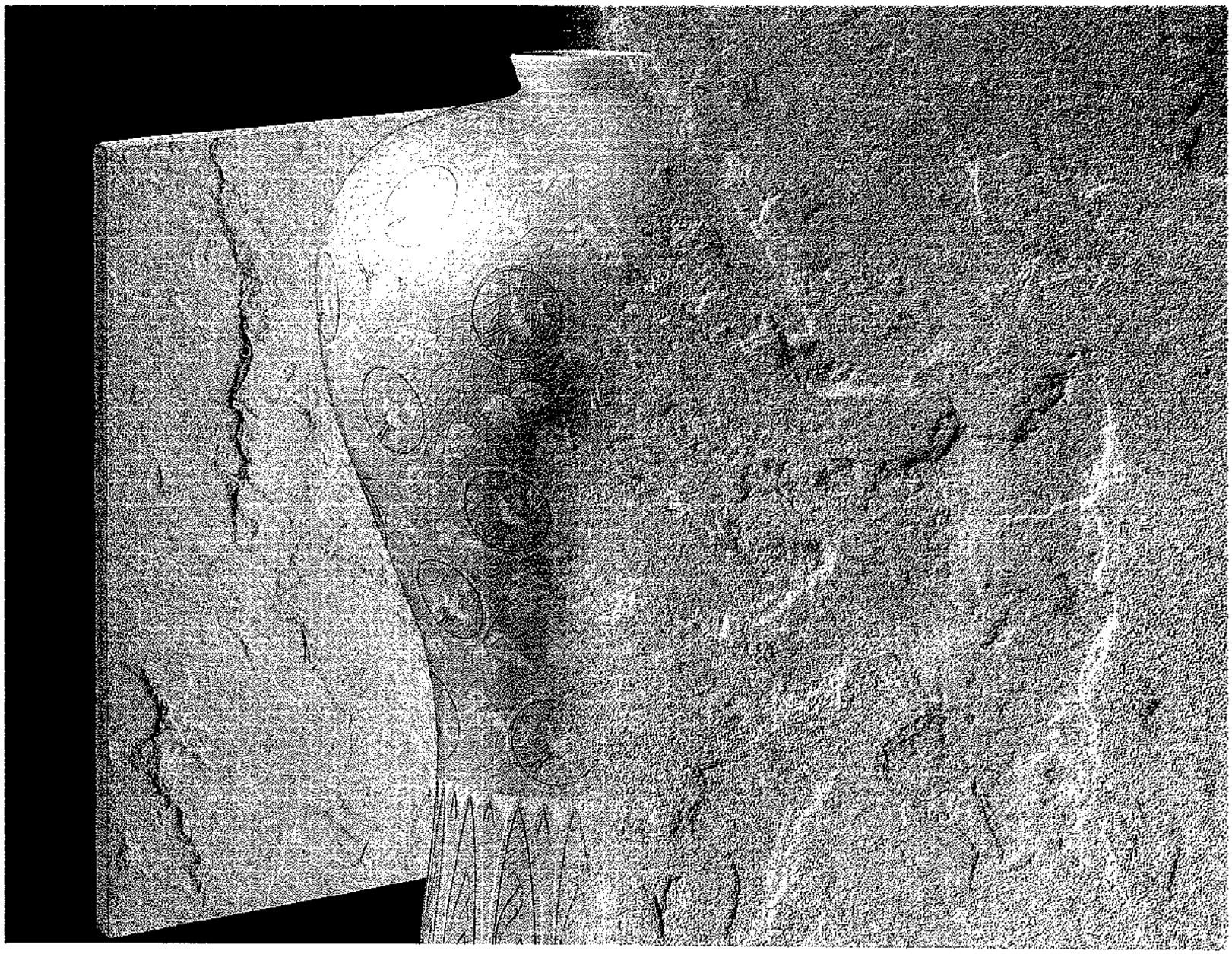

신건축 내외장재 燒結石 BIO-HAPPY STONE—

고급화된 그 감소의 명성을 향유의 최적의 내외장재 이상 BH

세라믹제품 제조전문업체로 국가 중화학공업 발전에 이바지 해온지 30년—
'91년 우수KS업체대상수상에 이어 '92년 제18회 전국 품질관리대회에서
은탑산업훈장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세계 수준의 각종 염기성 내화물, 국내 최초의 신건축자재
소결석 BIO-HAPPY STONE, 신소재 FINE CERAMICS를
고려청자를 빚는 장인정신으로 최고급 제품을 생산,
21세기 최고기업으로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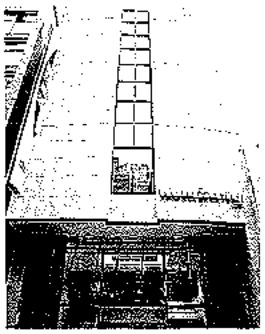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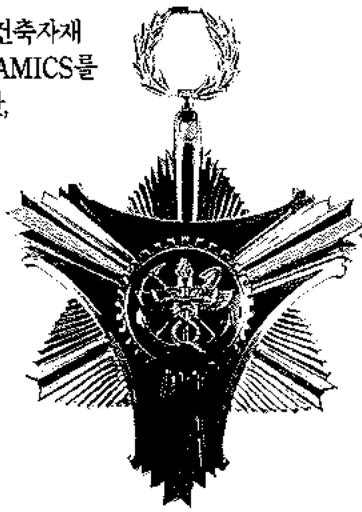

'92년 은탑산업훈장수상

BIO-HAPPY STONE의 3가지 자부심

1. 다양한 색상 및 디자인

9가지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선택의 폭이 넓고 자연스러워 건축물의 고급화를 주도합니다.(9가지 색상 외 주문생산 가능)

2. 뛰어난 가공성

1,200℃이상에서 소결(燒結)한 불연제품으로 수축, 팽창이 적고 가벼우며 변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절단, 구멍 뚫기 등 가공이 편리합니다.

3. 선택의 다양화

건축 내외장 및 바닥에 시공되는 BIO-HAPPY STONE은 600×600m/m×25t, 600×900m/m×25t로 언제 어디서나 건물의 웅장함과 품격을 한층 더 세련되게 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공간을 창조합니다.

'92년 전국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 은상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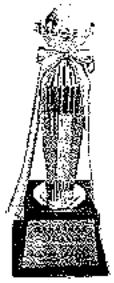

'91년 우수KS업체 대상수상

'91년 전국 품질관리 분임조 경진대회 동상수상

BIO-HAPPY STONE 직판장 및 전국 각 대리점

三華化成株式會社
SAMHWA CHEMICAL CO., LTD.

본사 : 건재사업부 TEL(0562)91－2051～3 / 서울직판장 TEL(02)516～7772～4 FAX. 516－7775 전국각대리점 / 서울지역 · 옥산실업 : TEL.(02)540-1637～9 FAX. 540－1640 / 대구지역 · 삼호특수 : TEL. (053) 755－9994, 742－1576 FAX. 751－5884, 우성상사 : TEL. (053)582－5750～1 FAX582－5751 / 광주지역 · 상신금속(주) : TEL(062) 524－7151～3 FAX. 524－7154, (주)창담건설 : TEL(062) 222－1224, 265－9008 FAX. 265－1951 / 울산지역 · 삼화상사 : (0522)43－7068～9 FAX. 43－7069 / 마산지역 · 중앙건재(0551)92－3335～6 FAX. 55－5700 / 포항지역 · 동양상사 : TEL(0562)81－2220, 81－7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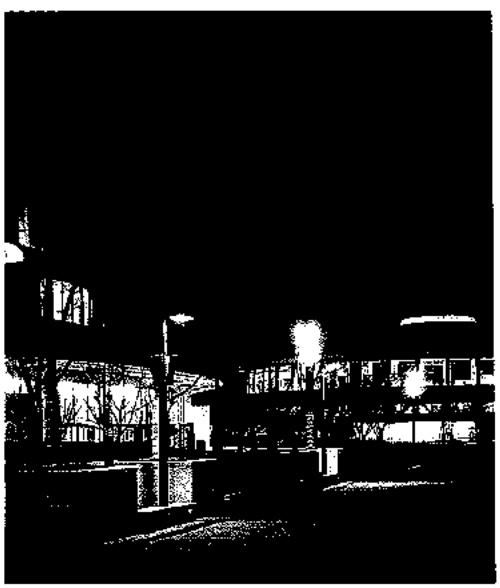

차례/1993년 3월호 통권 제287호

칼 럼	李 建設部次官에게 /安秉義	14
일하며 생각하며	건축=밥인가? /李廷根	16
'93전국 건축사 대회 · '93한국건축전 이모저모		18
특집 : '93한국건축전 수상작		
	건축사부문	
	대상	
	예술의 전당 서울 오페라극장 /金錫澈	24
	우수상	
	안양아동복지관 /崔勝元	28
	섬유센터 /崔寬泳+鄭東明	32
	한국 테이콤 정보 통신 연구센터 /(주)정림건축	36
	한빛빌딩 /安日成	40
	신원월드 컨트리클럽 하우스 /徐千植	44
	어흘리 박물관 /安文孝	45
	서대신동 주택 (전시시설) /金瑛燮	46
	일동제약사옥 /金春雄	47
	신인부문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3점	48
	학생부문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10점	53
	심사평 /姜健熙, 朴吉龍, 崔英集	66
비 평	건축비평의 현장－그 논의의 계속을 위하여 /閔賢植	68
기획연재	패러다임 (Paradigm),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 (7) /吉成鎬	76
해외건축	21세기 건축을 향하여－아라타 이소자키	84
연 구	지하공간 개발의 현황과 발전방향(2) /兪 浣	90
기 고	"P"빌딩 구조설계에 얽힌 이야기 /李昌男	98
법 령	건축법 질의 · 회신 /건설부 건축계획과	102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중 개정령	105
통 계	1993년 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118
협회소식		120

표지사진 : 예술의 전당 서울오페라관 내부

설계 : 김석철

發 行 人 : 李永熙

編輯企劃 : 編纂委員會
委 員 長 : 朴昌浩
委 員 : 金文圭, 金仁喆, 吳元根, 金相景, 金倞孜, 姜建熙
編輯·取材 出版事業部 / 梁元錫, 鄭孝相, 李洪植, 趙漢國

發 行 處 : 大韓建築士協會
住 所 : 서울 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170
電 話 : 代表 (02)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 (02)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26(月刊)
登 錄 : 1967年 3月 23日
U. D. C. 69 /72(054-2) : 0612(519)
印 刷 人 : 李鳳秀 /正文社

Publisher : Lee, Young-He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Park, Chang-Ho*
Member : *Kim, Moon-Kyu/Kim, In-Cheol Oh, Won-Keun/Kim, Sang-Kyeong/Kim, Kyeong-Ja Kang, Keon-Hee*
Assistant Editor :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581-5711, 581-5712~4*
FAX : *(02)586-8823*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172(0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CONTENTS VOL. 287. MARCH 1993

OLUMN	*Post a Letter of the Vice - Minister of Construction / Ahn, Byong-Eui*	14
SSAY	*Is architecture flesh and blood the means of earning bread? / Lee, Jeong - Keun*	16
EW / KIRA CONGRESS 1993 - EXHIBITION OF THE KOREA ARCHITECTURE 1993		18
PECIAL ISSUE : Prize Winners of Exhibition of the Korea Architecture 1993		
	Architect's Design Works	
	Art Center, Seoul Opera House / Kim, Seok - Chul	24
	Anyang Child Welfare / Choi, Seung - Won	28
	Textile Center / Choi, Kwan - Young & Cheong, Dong - Myeong	32
	DACOM R & D Center / Junglim Architects and Engineers	36
	Han - Bick Building / Ahn, Il - Sung	40
	Shinwon World Country Club House / Seo, Chun - Sik	44
	Eoheulli Forklore Museum / Ahn, Moon - Hyo	45
	J's Residence - Gallery / Kim, Young - Sub	46
	Ildong Pharmaceutical Co. Building / Kim, Choon - Woong	47
	Debutant's Design Works	48
	Student's Design Works	53
	Comment / *Kang, Gun - Hee · Park, Gil - Ryong · Choi, Young - Jeep*	66
RITICISM	*Where are the Interests of Criticism at? / Min, Hyun - Sik*	68
EPORT	*Type of Architectural Thought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Paradigm(7) / Kil, Soung - Ho*	76
VERSEAS RCHITECTURE	*Go Toward the 21C Architecture - Arata Isozaki*	84
EPORT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Underground Space(2) / Yu, Wan*	90
ATURE	*Structural Designed Procedure of "P" Building / Lee, Chang - Nam*	98
WS & DINANCES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Law*	102
ATISTICS		118
RA NEWS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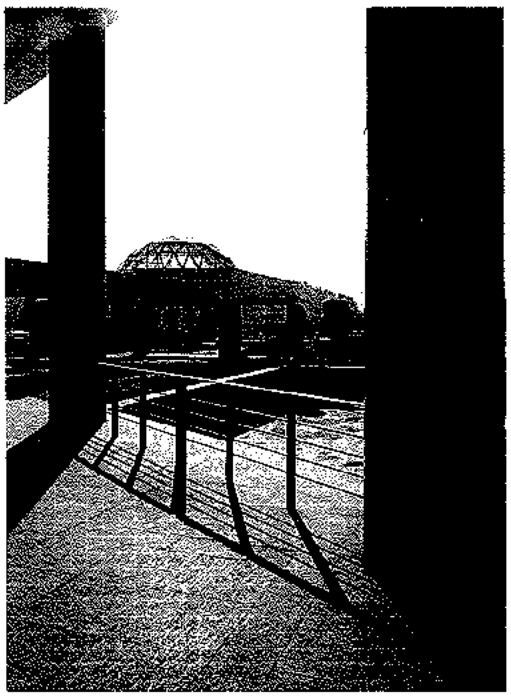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회 /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회 /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회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회 /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 강동분회 /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회 /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 성동분회 /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회 /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종로분회 /종로구수성동46-18, 735·0905 · 마포분회 /마포구성산동275-1, 336-5057 · 송파분회 /송파구송파50-12, 423·9158 · 중구분회 /중무로2가49-11, 279·1415 · 용산분회 /용산구원효로1가129 22, 712-7647 · 서초분회 /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 은평분회 /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 동작분회 /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회 /강남구논현동242-30, 511-8515 · 노원분회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 양천분회 /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분회 /중랑구면목동166-46, 923-6123 · 성북분회 /성북구삼선5가110, 923-4401 · 구로분회 /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건축사회 / 부산시 전구 범천동 847-18, 28(051)634-4973~9 ■ 대구직할시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가1-8, (053)753-8980~5 ■ 인천직할시건축사회 / 인천직할시남동구간석1동558-1, (032) 437-3381~4(FAX)437-3385(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건축사회 / 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할시건축사회 / 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87-1, (042)255-9350~4 ■ 경기도건축사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7-6129~30 · 직할분회 /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 (0331)43-6662, 7072 · 안양분회 /안양시안양동523-5, (0343)49-2698 · 부천분회 /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664-1554 · 성남분회 /성남시수정구태평동3407, (0342)755-5445 · 의정부분회 /의정부시의정부동182, (0351)2-1083 · 송탄분회 /송탄시서정동343-22, (0333)4-6153 · 고양분회 /고양군원당읍주교38블럭16롯트, (0344)63-8902 · 구리분회 /구리시수택동409-2, (0346)63-2337 · 이천분회 /이천군이천읍중리192-1, (0336)635-6545 · 광명분회 /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회 /안산시고잔동536-1, (0345)80-9130 ■ 강원도건축사회 / 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54-2442 · 원주분회 /원주시중앙동60-54, (0371)42-4287 · 강릉분회 /강릉시성내동6-14, (0391)2-2262 · 속초분회 /속초시동명동466-63, (0392)33-5081 · 삼척분회 /삼척시남양동55-43, (0397)2-3100 · 영월분회 /영월군영월읍영흥1리960-12, (0372)43-2695 ■ 충청북도건축사회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가87-3, (0431)56-2752, 53-7342 · 충주분회 /충주시역전동673-1, (0441)847-3082 · 제천분회 /제천시의림동8-8, (0443)43-6253 · 옥천분회 /옥천군옥천읍삼양리222-206, (0475)33-3502 ■ 충청남도건축사회 / 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52-2, (042)256-4088 · 천안분회 /천안시문화동160-1, (0417)551-4551 · 홍성분회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32-2755 · 부여분회 /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2-2217 · 대천분회 /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건축사회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륙빌딩 508), (0652)87-6007~8 · 이리분회 /이리시남중동1가77-22, (0653)52-3304 · 군산분회 /군산시신창동35-4, (0654)445-4060 · 남원분회 /남원시하정동106-2, (0671)31-1000 ■ 전라남도건축사회 / 전라남도광주시서구화정동783-23(추선회관)(062)364-7567, 33-9944 · 목포분회 /목포시대안동1, (0631)43-3348 · 순천분회 /순천시장천동51-11(0661)3-2457 · 여수분회 /여수시관문동441번지, (0662)64-7023 ■ 경상북도건축사회 / 대구직할시중구신천4동339-1, (053)742-8317~4 · 포항분회 /포항시죽도동43-8, (0562)44-6029, · 경주분회 /경주시동천동801-4, (0561)2-4710 · 구미분회 /구미시송정동34-3, (0546)51-1537~8 · 김천분회 /김천시남산동24-2, (0547)434-2541 · 안동분회 /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 영주분회 /영주시하망3동341-12, (0572)33-9922 · 점촌분회 /점촌시중앙동280-3, (0581)53-6677 · 상주분회 /상주시남성동36-7, (0582)32-5868 · 경산분회 /경산시중방동859-5, (053)812-6721 · 달성분회 /달성군화원읍천내리28-5, (053)634-6336 · 영천분회 /영천시창구동26-10, (0563)34-8258 ■ 경상남도건축사회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가3-47, (0551)46-4530~1 · 울산분회 /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74-8836 · 진주분회 /진주시본성동7-20, (0591)41-6403 · 충무분회 /충무시서호동163-18, (0557)44-3232 · 김해분회 /김해시부원동611-1, (0525)35-5692 · 밀양분회 /밀양시내일동392-1, (0527)355-4848 · 거창분회 /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43-6090 · 양산분회 /양산군양산읍남부동467-19, (0523)84-3050 · 거제분회 /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 (0558)635-3432 · 삼천포분회 /삼천포시동금동91-6, (0593)33-9779 ■ 제주도건축사회 / 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22-3248, 52-3248 · 서귀포분회 /서귀포시서귀동299-6, (064)62-2233

李 建設部次官에게

Post a Letter of the Vice Minister of Construction

安秉義/(주)金重業종합건축사사무소
by Ahn, Byong - Eui

나는 무척 한가한 때면 공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버릇이 때로는 지나쳐 몽상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망상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답니다.

며칠전에는 이런 망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건설부장관이 된다면 기자회견때 뭐라고 할까.」하고…

지금으로부터 7,8년전 어느 건축잡지에 "건축설계와 연관되는 여러가지 모순된 법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법도 법이니까 하면서 법에 따라 태연히 죽음을 택했던 소크라테스의 준법정신과 관용의 미덕을 우리들은 강요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수필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 분통이 폭발해 만약 내가 건설부장관이라도 되는 날이 온다면 취임 첫마디는 「여러 중지를 모아 모순된 관련 법규와 시행령을 모두 뜯어 고치겠다.」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망상을 몇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 개각이 있을 때마다 이번에는 혹시나 그럴듯한 건축가가 장관이 되어 건축계의 부조리를 말끔히 씻어주지나 않을까하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T.V에서 이차관의 취임소식을 접하고 한마디로 반가웠습니다. 그 반가움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당신과 나의 오랜 세월에 걸친, 그러나 별로 깊지도 않은 사연들을 이야기 하면서 밤이 지새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몽상에 망상을 거듭하는 내 마음을 어여삐 여긴 하늘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이차관님!

사실 그동안 우리 건축계의 부조리의 골이 얼마나 깊게 패여 있었습니까. 그 깊은 골을 상세히 파헤쳐 보면 건축법규 책보다도 많은 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이 썩어가기 시작한 것은 제3공화국때 부터였다고 기억됩니다.

최근 건설부는 그 산하에 있는 건축사협회를 좌지우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번째 칼을 휘두른 것이 건축사 합동사무소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만든 대의명분이 이제는 완전히 왜곡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글쎄, 합동의 경우 설계사무소에 자기 이름을 못걸게 한 것입니다.

해방전, 일본사람들이 우리들의 성(姓)을 빼앗었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곧 출세하여 이름을 내는 것이라고 나는 어렸을때 배웠는데 말입니다.

이 합동의 제도는 얼마 안가서 다시 종합, 단독으로 바뀌었지만, 그게 그것 아닙니까?

이 법은 애당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설계사무소는 세사람 이상의 건축사가 하나의 사무소를 종합으로 차리거나 또는 혼자서 차리되, 사무실을 상업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하되, 보조원을 최소한 두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단독과 종합은 설계할 수 있는 크기를 각각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단독은 작은 건물을 종합은 큰 건물을.

이러한 조건들이 어찌하여 설계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이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건축사 마음대로 하면 뭐 덧납니까.

건설부는 건축사협회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만, 제3공화국때처럼 너무 좌지우지하여 우리 건축사들을 못살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한마디로 건축사협회는 건설부의 시녀였습니다. 예를 들면 협회장이 건설부를 방문해도 국장급 이하 관료를 만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합디다.

앞으로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총 4,916명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그 중 257명이 합격하여 약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격시험의 약 4배나 됩니다.

>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자격시험도 이처럼 힘들지는 않다는데…
>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격시험이지 선발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발시험이라면 천명에 한명을 뽑는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 자격시험이란 문자그대로 건축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살피는 것으로 족합니다.
> 따라서 적당한 수준이면 되므로 그렇게 힘든 시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란 과연 이렇게 심한 경쟁을 거쳐야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과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직업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자격시험도 이처럼 힘들지는 않다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격시험이지 선발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발시험이라면 천명에 한명을 뽑는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격시험이란 문자그대로 건축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살피는 것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수준이면 되므로 그렇게 힘든 시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대학졸업후 5년이 지나면 시험볼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체적으로 5대 1의 낮은 경쟁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법이 기본정신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되도록 막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3병으로 혼나고, 대학을 나와 역시 국민의 의무로 군대를 마치고, 설계사무소에서 5년의 건축설계를 종사하여 이제 겨우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시험이 이렇게 하늘의 별따기라니….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비롯하여 모든 의무를 다했고, 이제 평생의 사업으로 설계사무소를 차리겠다는데, 하늘의 별을 따는 힘든 시험의 올가미를 씌워 국민의 희망을 무참히 저버릴 권한이 과연 정부에 있는 것입니까.

시험과목도 역학이나 시공, 구조 등 대부분의 전공과목은 한 4, 5년 사이에는 그 이론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터인데도 과목별 합격을 인정치 않는 것은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의 횡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목은 일단 합격되면 5년쯤은 인정받아 재시험은 면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건축사시험때 법규책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설계할때는 응당 법규책을 들여다 보니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용(실제는 응당해야 하는데)조차 베풀지 못하고 소아적인 사고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고 구르지 않는 바위에 이끼가 끼듯이 우리들의 관료의 사고방식, 제도 등은 케케묵었습니다.

이차관님!

힘든때에 무거운 감투를 쓰셨습니다.

소위 감투란 제3공화국때 처럼 판이 해먹기 쉬울때 쓰는 것인데…. 하기는 그런 시대에는 이차관같은 문인은 감투 차례가 오지 않았겠지만.

바야흐로 일을 할만한 세월이 되었습니다. 힘껏, 소신껏 경륜을 펴보십시오. 개혁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근본 정신은 어디까지나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의 정신, 리베랄한 사고방식의 결과 얻어지는 건전한 사고 이어야 하겠습니다.

이차관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즈음, 나또한 우리 가족과 함께 L.A 에 살면서 자주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백인의 건축과 직원은 매우 친절히 내 도면을 검토하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처럼 얼굴을 붉히면서 촌지가 들어있는 흰 봉투를 내미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나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져 시청을 찾아가는 것이 결코 싫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그때의 신선했던 감각이 내 마음속에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 싱싱한 것, 그런 것을 담는 사회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끝으로 이차관님의 건투를 빌면서 이글을 맺겠습니다.

한가해지면 대포 한잔 나눕시다!

건축=밥인가?

Is architecture flesh and blood the means of earning bread?

이정근 / 종합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by Lee, Jeong - Keun

가끔 공상이 떠오르곤 한다. 그 공상이란 건축을 모두 때려치고 자유로워진 나를 생각하는 것이다. 건축으로부터 해방된 내가 스코트랜드의 원시적인 풍경속에 자전거를 타고 내 달는 것이다. 내 몸둥아리를 온통 옥죄고 있는 건축의 세계를 떠나서 절간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하며 시장바닥에서 내가 구루마를 끄는 장면이 문득 동경으로 다가온다.

내가 만약 건축을 하지 않고 경제학이나 사회인류학 또는 과학철학을 전공하였다면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찬가지로 그 전공의 세계를 떠나는 상상을 하지 않았을까. 한정된 시공을 점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떠나고 싶은 것, 어떠한 것의 성취를 위해 매달려 있으면서도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어떠한 인간관계에 매여 있으면서도 그 관계고리를 끊어버리고 싶은 것, 이렇게 사상의 양면성에 갈등하는게 인간의 속성인가 보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란 살아있음의 징표인지 모른다.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대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의 갈등을 가진다. 수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의 수행 과정에서 그것에 따르는 갈등을 수반한다. 또 같은 직종이라도 문화권에 따라 그 사회의 사회적 통념과 사회생활의 관행에 따라서도 그 갈등은 다르게 작용함직하다. 사회마다 그 갈등을 해소하는 독특한 기제를 마련하고 있다. 갈등이 살아있음의 징표라면 그 갈등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회 문화의 성숙도를 가려준다고 하겠다.

건축중에서도 설계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갈등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 중에서도 첫째는 뭐니뭐니해도 먹고 사는 일이다. 일이 항시 많아서 일을 주체 못하는 복받은 건축쟁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월급날이 가까워 오면 직원들 월급을 대기위해 이 궁리 저 궁리를 해 대어야 한다.

직업인으로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밥그릇과 직결되어 있다는 엄연한 현실은 우리를 숙연하게 만든다.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역시 밥이 하느님이다. 그러나 밥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건축인으로서 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시인의 뜻한 바는 밥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도 정당화 된다는 것 보다는 자기 밥을 정당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남의 밥을 부당하게 빼앗지 말며 남의 밥에 재 뿌리지 말아야 하며 나의 밥그릇을 떳떳하게 차지할 수 있는 정도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보리라. 밥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신경쓸 필요가 없는 환경 속에서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좋은 작품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밥이 하느님이라는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최대한 수행함으로써 고귀한 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일진대, 밥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에서 나의 직분을 마음껏 발휘해 보겠다는 것은 밥과 직분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밥걱정은 전혀 않고 창작하는 즐거움만 누리겠다는 것은 산고의 고통을 쏙 빼버리고 아이를 가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학교에서는 건축은 예술이다 또는 건축은 과학이다라고 가르치지 건축은 밥이다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칠 때에는 건축가는 Master Builder 이며 온갖 분야의 직능인들을 지휘하는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같다고 누누히 강조한다. 그래서 상아탑을 떠나서 건축설계에 종사하며 건축가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필요에 용해 전문가로서 봉사해야 하는 봉사자라는 것을 깨닫기 까지는 젊은날에 겹겹이 쌓아놓은 환상의 껍질을 벗겨내야 하는 아픔을 경험한다. 더더군다나 건축이 곧 밥이다 하는데 생각이 미치기 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흘려보낸 후의 일이 된다. 이것은 건축이 지극히 현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을 뛰어 넘는 발상을 요구한다는 건축의 보편적인 특성과 동시에 한국의 건축교육 풍토가 가지고 있는 비현실주의적 허구성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이즈음 건축사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는 우르과이 라운드, 건축용역 시장의 개방, 건기법에 의한 감리 및 설계용역의 문제, 연서감리와 건축의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문제, 법인 및 비법인 사무실의 문제 등등은 모두 그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건축의

비록 건축인들이 왜곡의 정도가 상식의 틀을 벗어난 건축관행에 불감증이 걸려 있다지만 우리 건축계의 많은 인사들이 자신들의 불감증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한발 두발 빠져서 여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은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포기해야만 할 정도의 막바지 선에까지 이르렀음이 보이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영역 확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건축인들에게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은 있다.

질의 향상과 대사회 건축 서비스의 향상, 더 나아가서 한국 건축문화 발전의 촉진, 건축위법의 효율적인 방지, 등등의 명분뒤에는 엄연히 밥그릇을 얼마만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밥그릇의 싸움이라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원초적인 생존본능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기왕에 벌어 놓은 밥그릇을 더 차지하겠다는 기득권을 향유하는 무리들, 부당하게 빼앗겨 왔던 밥그릇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무리, 또 앞으로 내 밥그릇을 위협하게 될 예상되는 가상 적에 대한 방비와 경계 등등이 집단이기심으로 뭉쳐져서 작용한다.

모든 명분을 걷어치울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은 개체의 생존을 위한 먹이 확보와 집단의 영속을 위한 종족유지 본능이 작용하는 동물의 세계를 보는 듯하다.

인간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와 다른 점은 동물이 완전히 힘으로 밥그릇의 배분을 결정하는데 반해 인간은 밥그릇 차지를 위한 싸움을 제도화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를 운용하는 양태는 사람이 제도라는 껍데기를 뒤집어 쓴 동물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람이 동물과 신의 중간에 위치한 존재인 만큼 이런 것을 인간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갈등을 순화하기 위한 기제가 사회마다 다른 제도로 정착된 모습이 바로 그 사회 문화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다.

인간세계에서 밥그릇을 향한 집단적 갈등의 해소는 특정한 집단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편향해서 제도화 되기가 일쑤이다. 갈등해소의 방법을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화 할때 그 제도 아래에서 밥을 위해 만들어지는 건축은 뒤죽 박죽이 되게 마련이다. 갈등의 해소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평하고 사사로운 이해보다는 건축인 집단의 먼 장래를 발전적으로 약속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질 때 밥그릇 싸움의 창조적인 승화가 가능한 것이다. 누군가가 밥그릇을 독점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기여없이 왜곡된 제도의 그늘 아래서 땀흘리지 않고 쉽게 밥그릇을 차지하겠다는 발상은 불식되어야 한다. 밥을 서로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건축인 집단 구성원들이 창조적인 땀을 흘리고 나서 공평한 제도 아래서 응분의 밥그릇을 나누는 것이다.

직업인의 직분이란 응분의 댓가로 밥그릇을 차지할 수 있는 수단임에 틀림없다. 아름다운 말로써 아무리 감싸도 인간생존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건축생성의 장에서 밥그릇을 가운데 놓고 벌어지는 갈등의 해소를 위한 장치로서의 제도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좋은 건축이 만들어지도록 갈등의 해소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건축에 앞서 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밥은 값진 것이어야 하고 응분의 몫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하면 좋은 건축을 만들어내게 할 수 있는가에 밥그릇에 대한 갈등의 해소 방안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모순된 구조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쪽에서는 이 사회가 자유경쟁 시대이고 적자생존의 원리가 삶의 세계를 주재하는 한 사람사는 세상은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른다. 우리사회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다. 그러나 자유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경기의 틀이 공명정대하고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경기의 틀이 왜곡되어 있거나 공정하게 되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구색만 갖추고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사사로운 동기에 좌우된다면 그러한 자유경쟁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왜곡된 틀이나 왜곡된 운용체제에서의 적자생존이란 그 왜곡된 구조에 얼마나 적절히 적응하는가 또는 그 왜곡 자체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 하는 척도일 따름이다. 비록 건축인들이 왜곡의 정도가 상식의 틀을 벗어난 건축관행에 불감증이 걸려 있다지만 우리 건축계의 많은 인사들이 자신들의 불감증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한발 두발 빠져서 여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은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포기해야만 할 정도의 막바지 선에까지 이르렀음이 보이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영역 확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건축인들에게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면 우리에게 아직 시간은 있다.

開會辭

오늘 전국건축사가 한자리에 모여 개최하는 '93전국건축사대회를 맞이하여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은 전국 4천여 건축사가 2천년대를 향한 건축문화의 발전방향과 건축구도의 좌표를 새 한국, 새 환경, 새 건축으로 설정하고, 역사적 전환과 시대적 대변혁기에 응전할 수 있는 새 시대의 건축사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건축은 이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이어야 한다는 전제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 행사가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대축제로 발전, 승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기대하고 열망하던 신선한 바람으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고질적인 병폐로 누적되어 있던 정신적 먼지와 구조적으로 낡은 관행을 하나하나 씻어내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발전과 성장은 "끊임없이 버리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내일의 번영과 선진화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낡은 제도 낡은 관습과 사고 낡은 생활까지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동서냉전 종식이후 국제환경은 새로운 경제냉전과 포성없는 치열한 기술전쟁 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과 고도의 정보화 사회구조의 눈부신 발달은 종래의 일반적 개념에 근원적 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대외적인 변화의 물결과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고 봅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새 시대를 선도하는 사회적 주체로서 역할과 임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개체보다는 전체를 우선하는 사고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협과 양보의 미덕으로 하나하나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밝은 사회, 성숙한 사회, 선진화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시대적 요청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우리의 꿈과 의지를 이 사회에 보다 건전하게, 보다 깊숙히, 보다 넓게, 투영시켜 봅시다.

이를 통해 우리 건축인의 위상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의 이 모임이 우리 모두를 다시한번 성찰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으며, 아울러 우리 모두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1993년 3월 18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영희

激 勵 辭

오늘 93년 건축사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된지 어언 28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건축사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건축기술 발전과 건축문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몫을 다해주셨으며, 이제 4천여 회원의 구심체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분히 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이 건축사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현재 국내외의 정세를 살펴보면 국내적으로는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32년만에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부작용에서 비롯된 가치관의 전도와 부정부패 등 이른바 한국병을 과감히 치료하고 신한국 건설에 정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축사 여러분들에게는 창의와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된다고 생각하며 이자리를 빌어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국가로부터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임무를 수임받은 공인입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행정의 쇄신에 앞장서 주시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신한국 창조의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건축물은 토지위에 구축되는 반영구적인 시설로써 일단 시공되고 난 후에는 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와 인천 한국아파트 저수조 사고 등 최근에 발생했던 일련의 대형 건축물 사고는 우리 다같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통한 건축설계분야의 자생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 여러분의 비장한 각오와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그 밖에 주택 양산체제의 구축과 건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재의 표준화, 규격화와 설계도서의 표준화 등 우리 건축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과제와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주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전문직업인으로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분의 창의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건축관계법령과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과감히 개선하여 건축사협회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건축사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한 후에 추진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건축사 여러분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집결시켜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친 본 대회와 '93한국건축전, 국제건축자재전 등 일련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지며, 여러분의 권익이 크게 신장되고 건축계가 새롭게 도약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건축사대회가 모든 건축인의 축제로 승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축사 여러분들의 앞날에 번영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3년 3월 18일

건설부장관 고 병 우

'93전국건축사대회·'93한국건축전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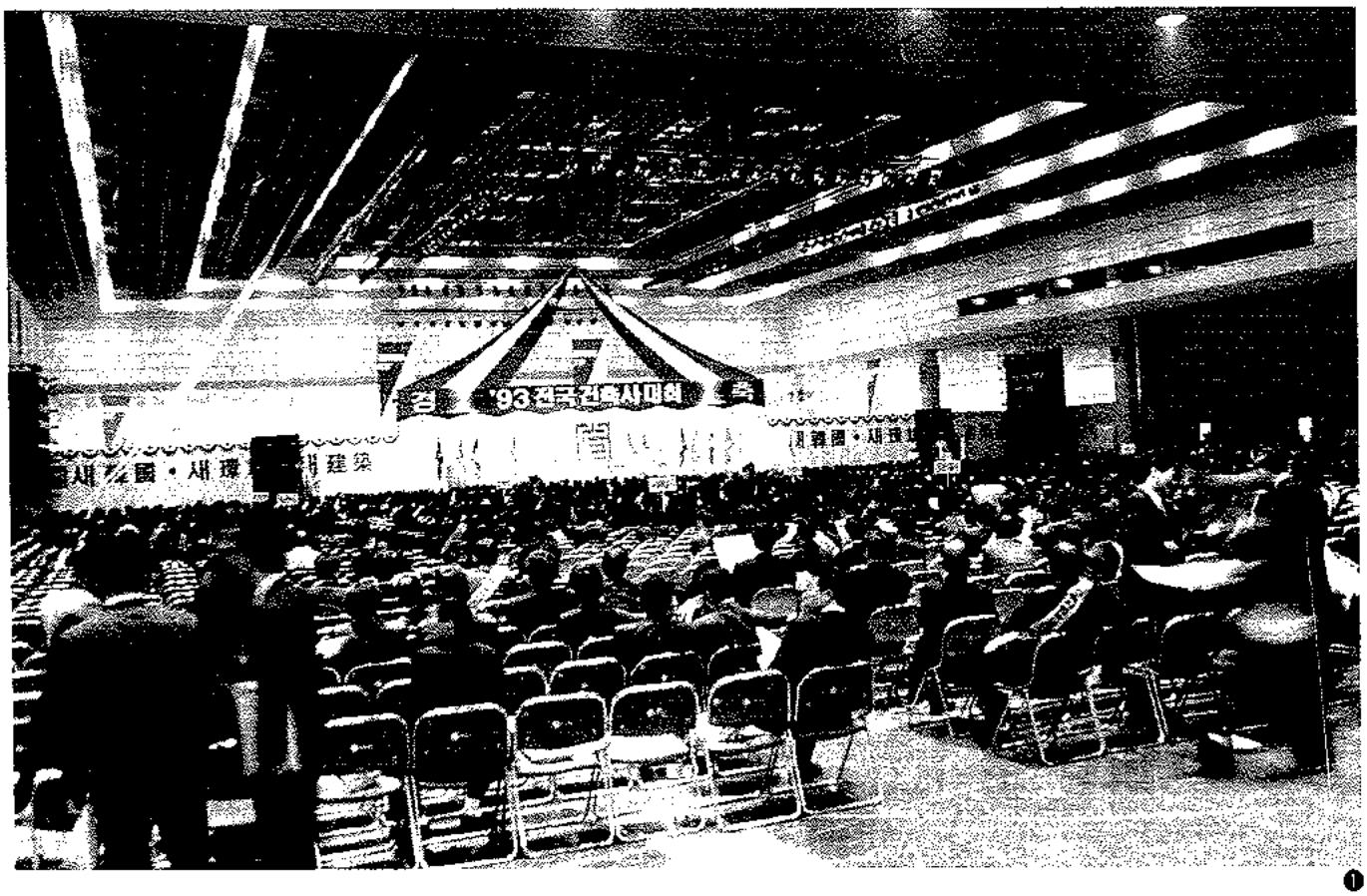

❶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지난 3월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삼성동 소재 한국 종합전시장(KOEX) 대서양관에서 전국의 4천 5백여 회원 및 건축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93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새시대 환경변화에 따른 건축사의 자기성찰과 위상을 제고하여 협회를 중심으로한 전국건축사의 일체감 형성과 화합을 통한 협회발전 및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결의대회를 비롯한 특별강연회,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다.

이영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일의 번영과 선진화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낡은 관습과 사고, 낡은 생활까지도 과감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생산적이며 창조적인 역량을 배양해 나가야 할 때」라 하고, 「우리 모두 이시대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조형창작 예술인으로서 현 시대가 요청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우리의 꿈과 의지를 이 사회에 보다 건전하게, 보다 넓게 투영시키자」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날 대회에서는 건축사법 개악반대 결의대회가 개최되어 회원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사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는 물론, 개악조항의 발의를 적극 저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건축문화 발전과 새로운 건축풍도 조성 및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개최된 '93한국건축전에는 연인원 8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아와 건축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었다.

❷

❸

❹

❻

❼

❽

❺

❶ '93 전국건축사 대회 전경
❷ 결의문 채택 광경
❸ 지하공간 활용에 관한 토론회
❹ '93 한국건축대제전('93한국건축전) 테이프 커팅
❺ '93 한국건축전 대상 수상작을 관람하고 있는 내빈들
❻ 개회사를 하는 이영희 본협회장
❼ 건설부장관 격려사를 대독하는 이건영 건설부차관
❽ 축사를 하는 서정화 국회건설위원장
❾ 대회기 전달식
❿ '93 한국건축전 시상식

❾

❿

'93 韓國建築展 受賞作 發表

본 협회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새로운 건축풍토 조성 및 후진양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최하는 '93 한국건축전의 각 부문별 수장작이 선정되었다.

총 56개 작품이 출품된 건축사 부문에서는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공헌한 우수작품 9점을 선정, 대상 1점과 우수상 8점을 시상키로 하였으며, 신인·학생부문에서는 신인부문 응모작 34점과 학생부문 응모작 162점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및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작품을 입선으로 선정하였다.

심사위원 및 수상작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건축사부문 수상작

시상구분	작품명	건축사명	소속
大賞	예술의 전당 서울 오페라 극장	김석철	아키반종합건축
優秀賞	신원컨트리클럽 하우스	서천식	삼일·하나로 종합건축
	안양아동복지관	최승원	앙가주망건축(경기)
	섬유센터	최관영	일건종합건축
	대이콤 종합연구소	김정칠	(주)정림종합건축
	일동제약사옥	김춘웅	상지종합건축
	부산 서대신동 주택	김영섭	건축문화종합건축
	어흘리 박물관	안문효	M·A·C 건축(강원)
	한빛빌딩	안일성	아키안종합건축(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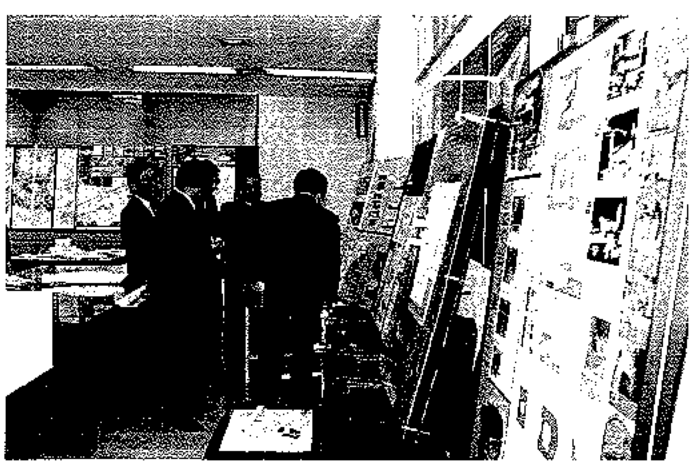

▶ 신인부문 수상작

구분	작품명	성명	소속
최우수상	ARIRANG PLACE	송형규, 조규일	·금상건축기획
우수상	TOPO · 土抱	윤평헌, 이재규	(주)창조종합건축
장려상	시간의 배후	진 권, 백민석	한양대학원, 시상종합건축
	DECON D · M · Z	황길순, 김윤정	무원종합건축,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
	한, 어우름 그리고 승화	이근규	아뜰리에 일점
입선	Ⅲ 마당, heart	이현철, 박봉운	회림건축, 조형건축
	이산가족상봉센터	황현아, 김병돈	정인건축
	이제 다시 마음의 다리를 놓으며	엄명준	건국대대학원
	Bridge Passage	한호진, 최민호	진아건축·도시종합건축
	Passing · The Time · Walls	박병욱, 권태신	인제종합건축, 회림종합건축
	Mending Wall	정용욱, 박상문	환경·스페이스·5, 상지종합건축
	The Link of Sympathy	박영배, 박선욱	건국대대학원
	또다른 날을 기다리며	박운종, 백준현	한양대대학원, 한양대졸업
	Demagretized Zone (비자성지대)	이순석, 이종욱	성보주택, 한양대대학원

▶ 응모현황

- 건축사 부문 : 전국에서 총 56작품 출품
- 신인부문 총 34작품 응모
- 학생부문 전국 46개교에서 총 162작품 응모

▶ 심사일시

- 건축사 부문 : 1993년 3월 3일~4일
- 신인·학생부문 : 1993년 3월 9일~10일

▶ 심사위원

- 건축사 부문

위원장 – 李永熙(본 협회 회장)
위 원 – 宋鍾奭(대한건축학회 회장)
張錫雄(한국건축가협회 회장)
吳雄錫(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安箕泰(건축사사무소 동화건축 대표)
安瑛倍(서울시립대 교수)
姜健熙(홍익대 교수)

- 신인·학생부문

위원장 – 李永熙(본 협회 회장)
위 원 – 吳澤吉(건축사사무소 장 대표)
李相憲(대우건축사사무소 대표)
崔英集(종합건축사사무소 삼성·탑 대표)
金震均(서울대 교수)
李範宰(단국대 교수)
朴吉龍(국민대 교수)

▶ 학생부문 수상작

구분	작품명	성명	소속
최우수상	길위에서	이충훈, 김호정	한양대
우수상	한국관 – 과거, 현재, 미래	김동민	부산공업대
	맥	유리광, 이은경	부산대
장려상	한, 정, 자유	박태훈, 소용영	전북대
	만남의 제안	김희정, 진근식	목원대
	기. 승. 전. 결	박상준	인천대
	East Meets West	김형섭	충북대
	線을 위한 Bridge	박선영, 전유창	충북대, 인하대
	Be Time Yard	박찬준, 최창학	경희대
	Vertical Plaza for Cross Encounter	김찬중	고려대
	벽을 허물고	최 건, 황민욱	한양대
	Discovery of Korea	김일수, 최소영	경원대
	벽을 넘어서	윤병철, 장재영	홍익대
서울회장상	Post… The Post…	김기환	홍익대
	마당에서	안성임, 이성섭	한양대
	장(場)	이화선, 장진희	연세대
부산회장상	天, 地, 人	남상환, 최욱준	부산대
대구회장상	'93 EXPO 한국관	서정환, 김은경	대구대
대전회장상	하나로	김충렬, 박창욱	목원대
인천회장상	만월(滿月)	김희원, 양희석	인천대
경기회장상	Edge to edge	김용섭, 김경곤	경원대
강원회장상	EXPOSITION	남궁영선, 이수미	강원대
경북회장상	여백의 재현	박형식, 백경기	금오공대
전남회장상	새벽을 위하여	정재성, 김근대	순천대
충남회장상	나와 너	김재정, 변진희	충남대
충북회장상	Toward (向)	이진석, 강미정	충북대

▶ 학생부문 입선

구분	작품명	성명	소속
입선	Time in Space	남상욱	대구대
	Korea Pavilion	정 협	한양대
	겹·마당	이관용, 여유근	경희대
	콩깍지를 태워 콩을 볶누나	신민계	명지대
	To The A	박영보, 김성수	서울시립대
	투영 & 만남	권부현, 한중철	중앙대
	Form in Form	정기정, 김종문	서울시립대
	조용한 아침의 나라	윤용천, 이지헌	서울시립대
	Korean Atmosphere Old & New and Now	조용준, 이직현	중앙대
	생활속의 발견	박중서, 도규태	경희대
	인연	김종윤, 김진숙	명지대
	Coexistence	연헌숙, 송 숙	충북대
	Linear Method	심형준, 서덕홍	중앙대
	열린 공간 속으로	배 열	충북대
	더불어·대하여	김창모, 남석우	충북대
	Look at Us	최종석, 장 율	고려대
	A A	정 협	한양대
	A Spot in The Coordinate	허민호, 김종복	건국대
	He + She	류창현, 오선영	성균관대
	간(間)	김현수, 양혜미	국민대
	어우러짐 속에서	변동욱, 심형준	건국대

'93 한국건축전

예술의 전당 서울 오페라 극장

Art Center, Seoul Opera House

건축사부문

대 상

金錫澈 / 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Designed by Kim, Seok - Ch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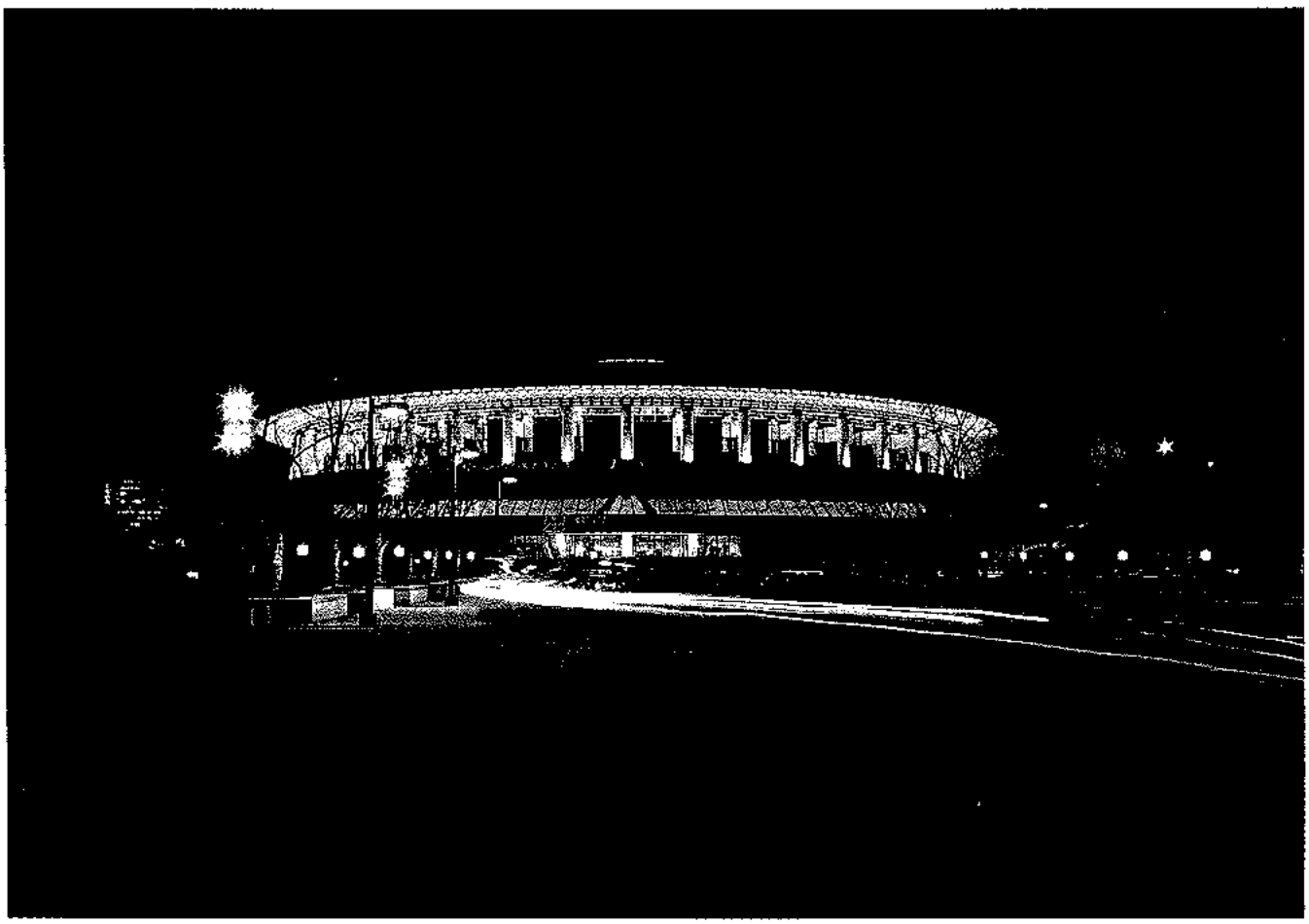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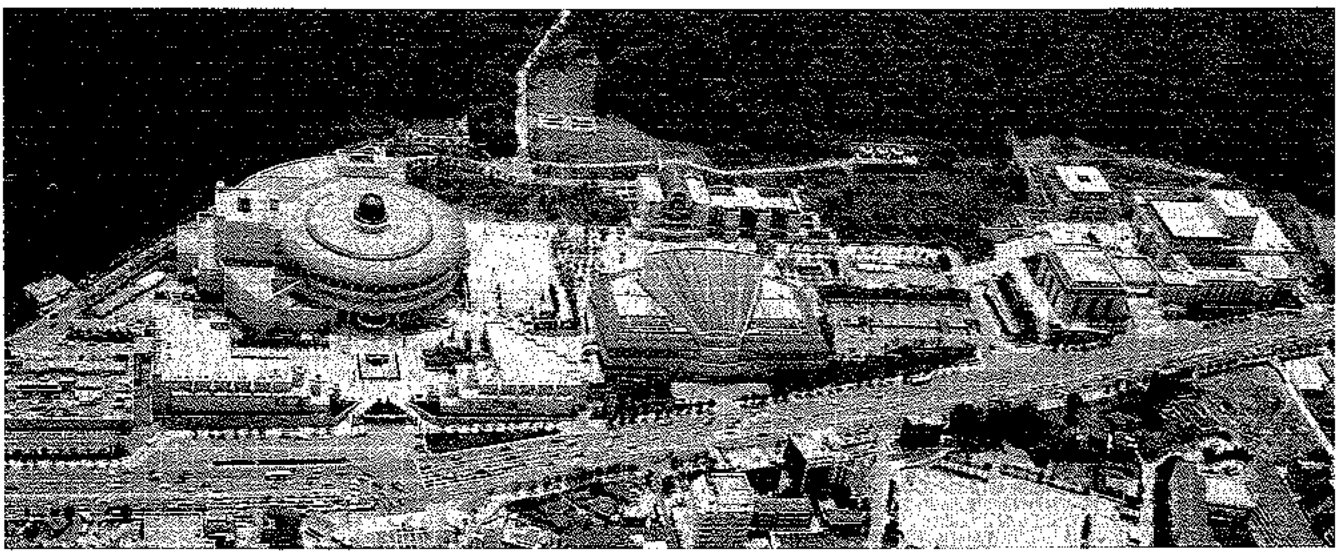

❷

극장별 개요

OPERA HOUSE

용도 / Grand Opera, Musical, Ballet
객석 / 1 Main, 3 Balcony Floor
좌석수 / 2,346석
프로세니엄 / 12.5×18 M
무대 / 1 Main Stage, 2 Side Stage, 1 Rear Stage
오케스트라핏트

토월극장

용도 / Drama, Light Opera, Chamber Music
좌석수 / 710석
프로세니엄 / 15.5×7.5 M
무대 / 1 Main Stage, 1 Side Stage, 1 Rear Stage
오케스트라핏트

자유소극장

용도 / 실험극, Dance, Recital
객석 / 1 Main, 3 Balcony
좌석수 / 300-600석
무대 / 10 Stage Lift
2 Movable Lighting Bridge
75 Point Hoist

위치 / 서울 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700번지
건축면적 / 13,510.59 m²
연면적 / 43,510.12 m²
층수 / 지하 1층, 지상 6층

❶ 축제극장 야경
❷ 예술의 전당 원경(항공사진)
❸ 극장 내부 전경
❹ 중앙 돔 부분의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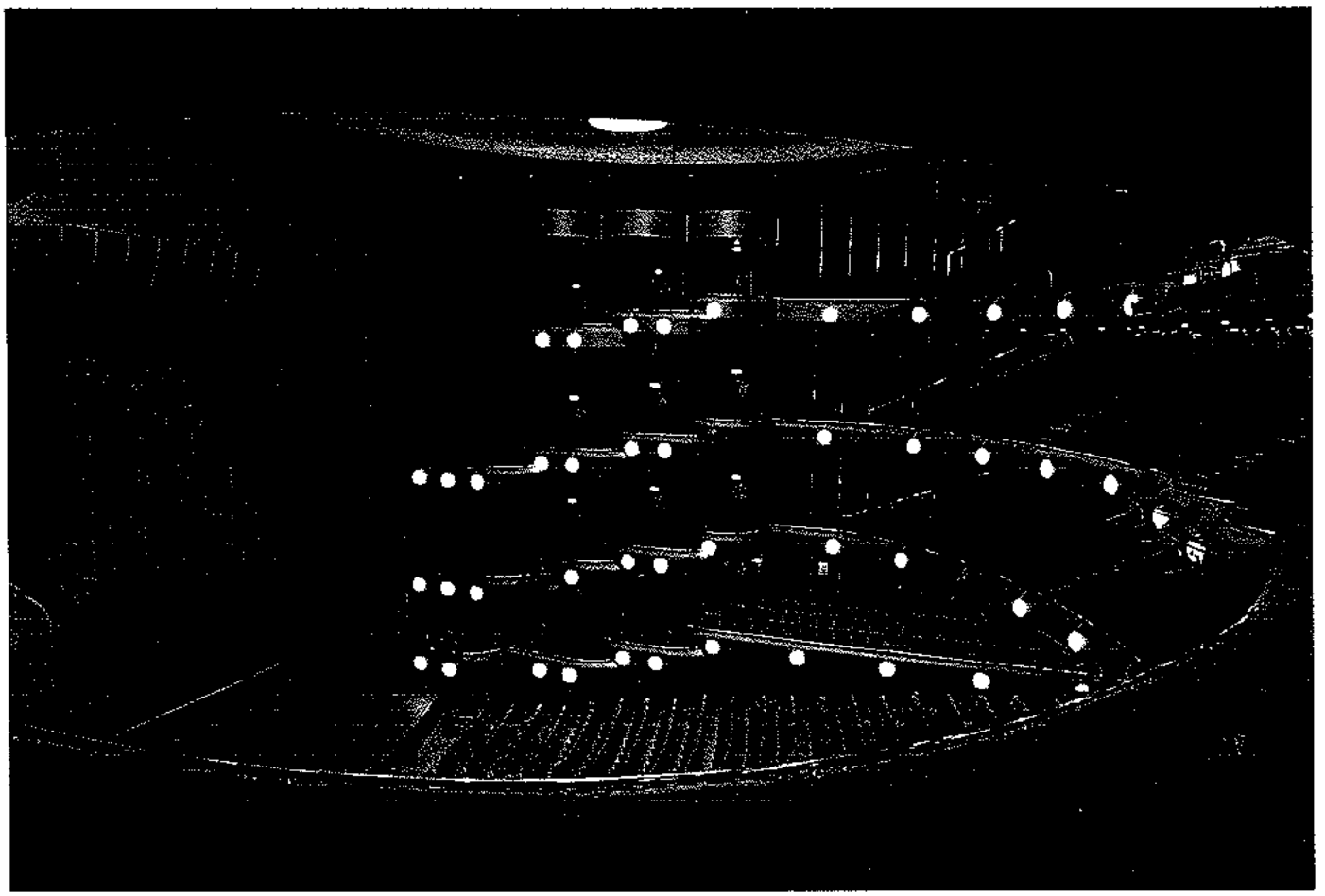

❸

주 접근로의 축상과 안길의 축선이 만나는 대지의 중심부에 원통형의 형상을 이루고 있어 모든 장소로부터의 동적 균질성을 확보하여 다른 건물군과 주변경관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루고 있다. 레벨이 다른 사방으로부터의 접근이 한 내부공간에서 통합되도록 회랑이라 불리는 광장과 면한 내부공간이 설정되었다. 이곳으로부터 사람들은 오페라하우스, 연극극장의 공통로비가 되는 중앙홀로 가게 되며, 바로 회랑에 면해 실험극장, 출연자로비, 지붕 밑 레스토랑 등의 입구가 위치한다. 회랑은 축제극장의 부분이면서 안길의 부분이기도 하다. 회랑에서 더 안으로 진입하면 지붕 아래 중앙홀로 들어간다. 다섯 갤러리를 가진 이 중앙홀은 내부공간을 하늘로 연계하는 하나의 소우주이고자 하는 동양적 세계관을 암시하는 공간이다.

2,600석의 오페라하우스는 정통적 이탈리아식 오페라하우스와 강당의 중간형식을 취하여 고전형상과 현대적 이미지를 함께 성취하고 있으며, 양측벽의 단층으로 돌출된 네 개의 박스는 초기음향반사의 효과는 물론 무대와 객석의 하나됨을 강력히 유인하고 있다. 객석과 무대의 교감을 높이기 위해 오케스트라핏의 무대밑으로 후퇴되었고, 오페라하우스 내부천장은 중앙홀의 지붕이 미묘하게 변화한 형상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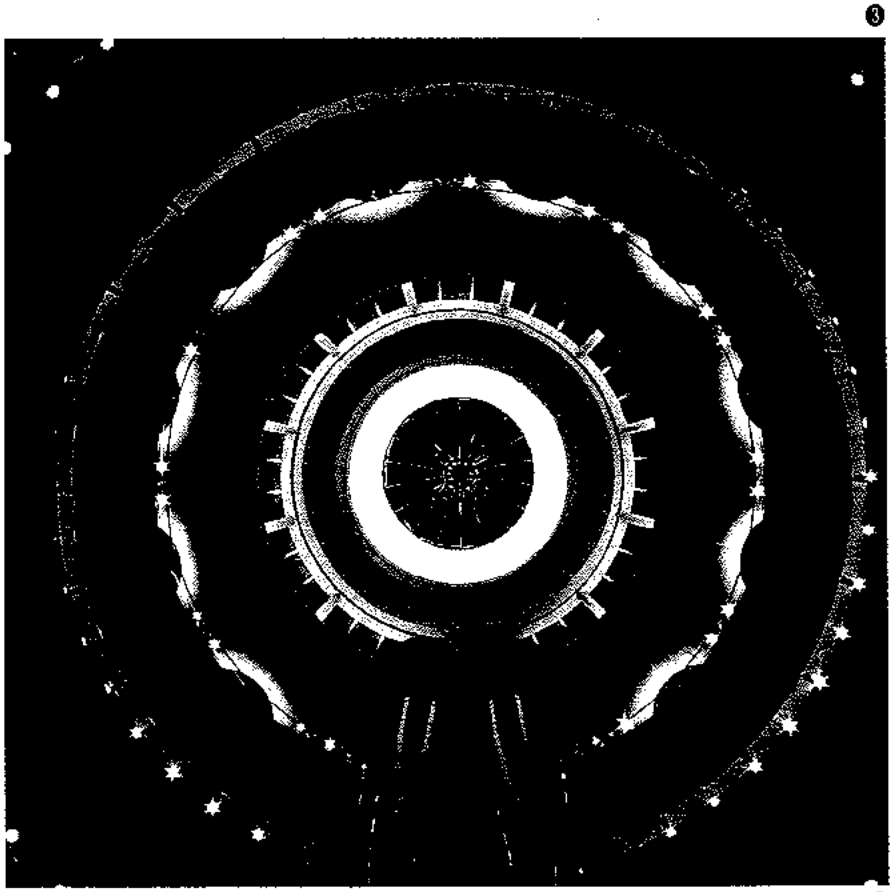

❹

❺

이층 객석이 무대로 이어져 객석과 무대의 일체화를 더 적극적으로 시도한 연극극장은 바닥, 벽, 천장이 모두 목재로 마감되어 연극공간 특유의 친화력이 추구되었고, 가변형식을 취한 실험극장은 모든 형식의 극적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형식을 의도하였다.

축제극장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은 관객들의 장소 이외에도 출연자들의 장소인 무대와 뒷무대이다. 독립된 네 무대와 두 보조무대로 이루어진 오페라하우스의 무대형식은 웨곤에 의한 가변장치 외에도 포인트호이스트, 슬라이딩 타워라잇 등 신기술이 동원되었고, 특히 리프트에 의한 무대와 창고간의 연결은 연극무대와 연계하여 철저히 계량되었다. 뒷무대의 연습실, 분장실 등에는 중정을 통한 빛을 끌어들여 무대에의 긴장을 부드러운 내부공간으로 유도하고 있다. 갓모양의 지붕 속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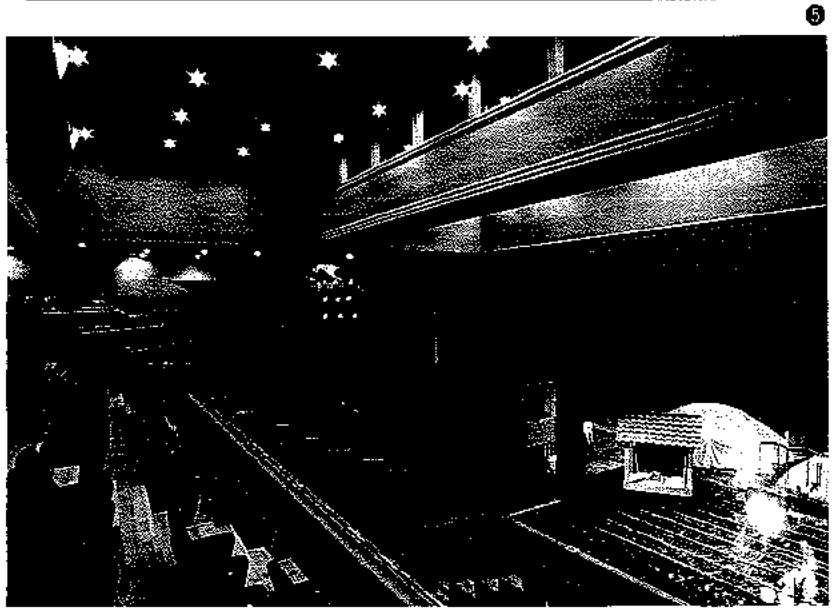

❻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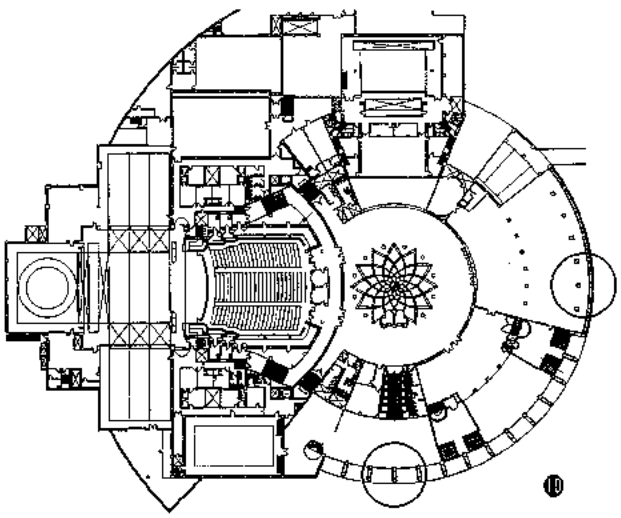

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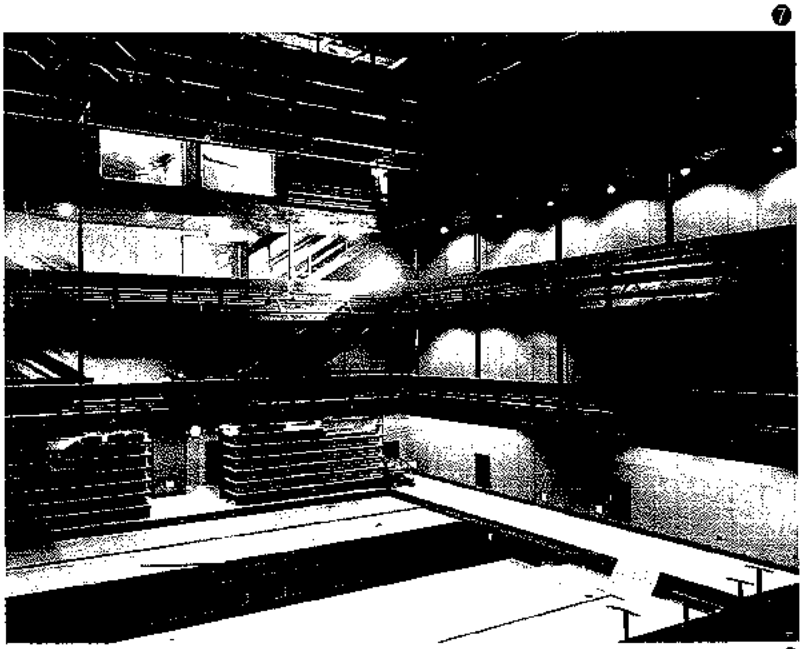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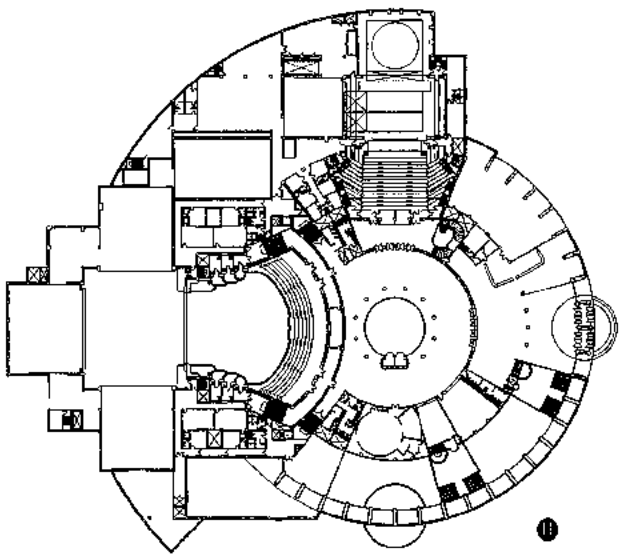

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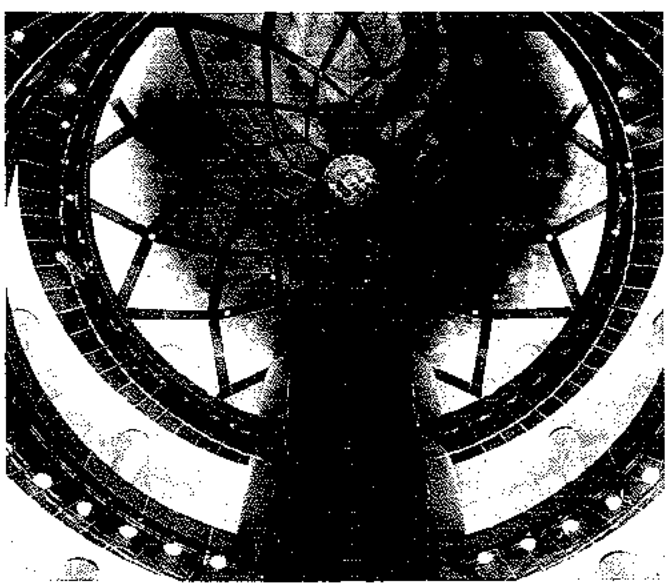

❾

❺ 축제극장 로비
❻ 자유소극장 내부 전경
❼ 음악당과 축제극장 야경
❽ 토월극장 내부
❾ 로툰다 하부
❿ 대극장 무대레벨 평면도
⓫ 중극장 무대레벨 평면도

각 나라의 풍물을 맛볼 네 레스토랑과 모든 일반대중을 위한 회의장과 외부 극단을 위한 연습실이 모여 있다. 이 지붕은 안길이 반 외부공간인 회랑을 통해 공중에 뜬 형상이다. 안길의 흐름이 5m씩 높이가 다른 여러 마당을 지나 축제극장의 회랑으로 모여들다가 하늘 밑 지붕 속에 구체적 쉼의 공간으로 모여드는 것이다. 여기서는 아트센터의 모든 부분이 조감되고, 멀리 서울외곽의 산과 옛 도심구역이 한 눈에 들어온다. 안길과 회랑과 이 지붕 속의 공중광장은 예술의 전당의 사용자 이외에도 문화예술와 거리를 사랑하는 더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건축사부문

우수상

안양아동복지관
Anyang Child Welfare

崔勝元 / 앙가주망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Seung-Won

❶

위치 / 안양시 석수동
대지면적 / 28,837 m²
건축면적 / 2,383 m²
연면적 / 3,243 m²
건폐율 / 8.27%
용적률 / 11.25%
규모 / 지상 2층
구조 / 철골조
외부마감 / 시멘트벽돌 치장쌓기
지역 / 개발제한구역
용도 / 사무실, 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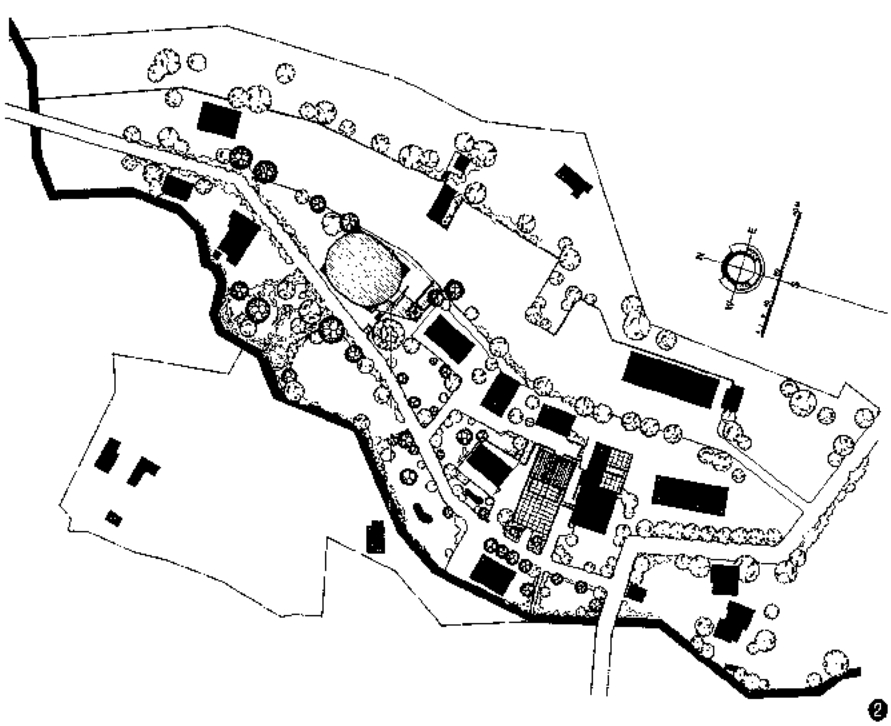

❷

❶ 남서측 전경
❷ 배치도
❸ 북동측 야경
❹ 1층 사무실 내부
❺ 1층 내부
❻ 2층 평면도
❼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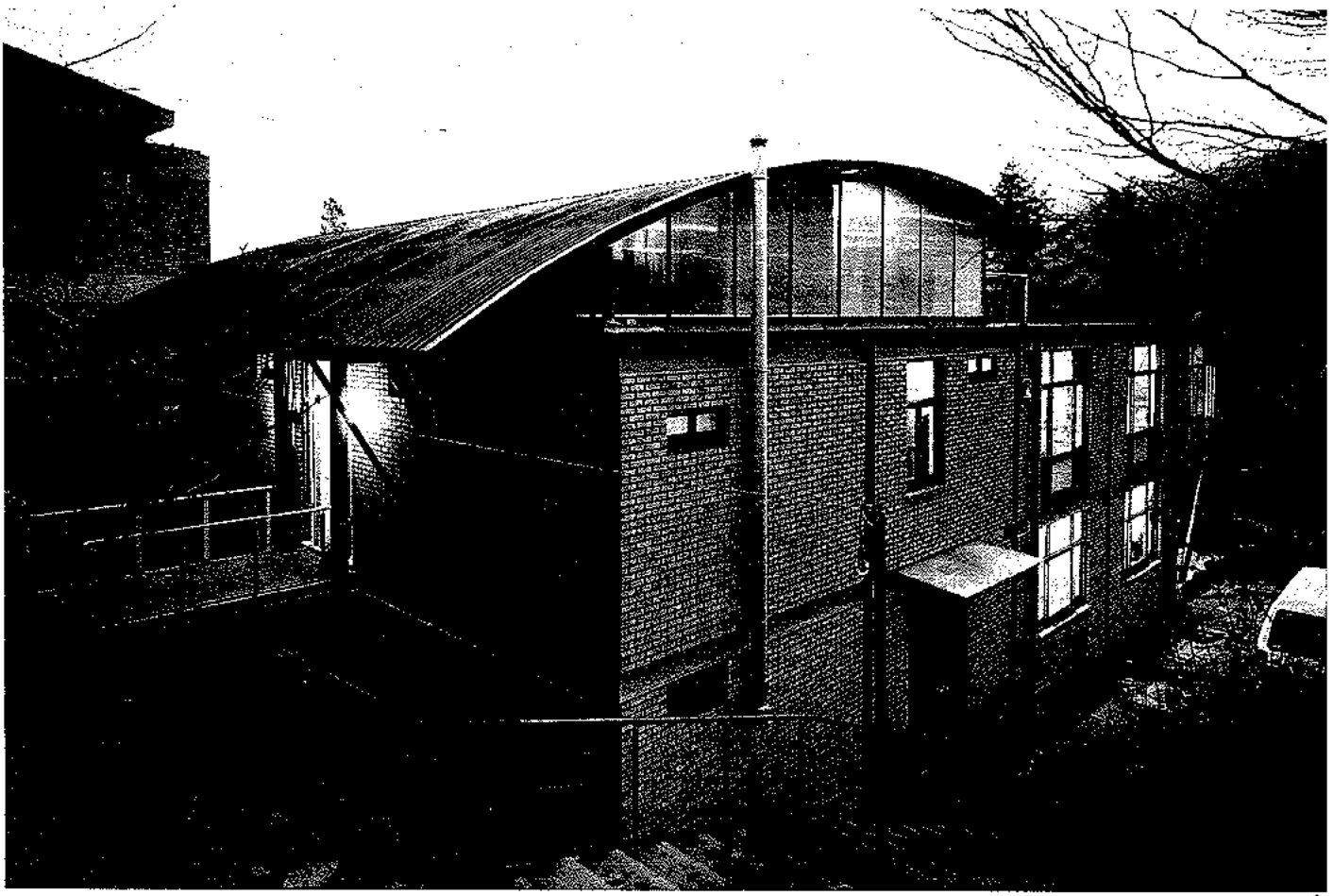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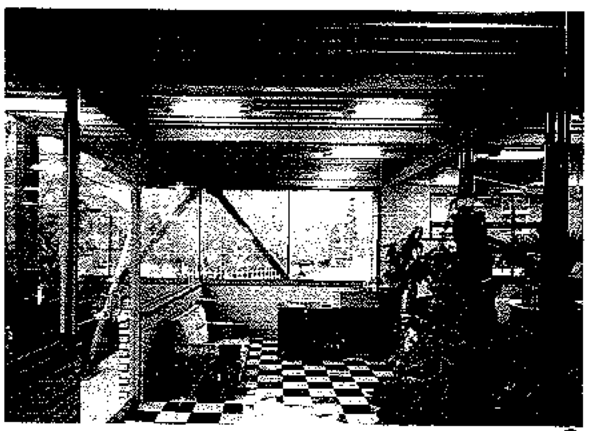

❹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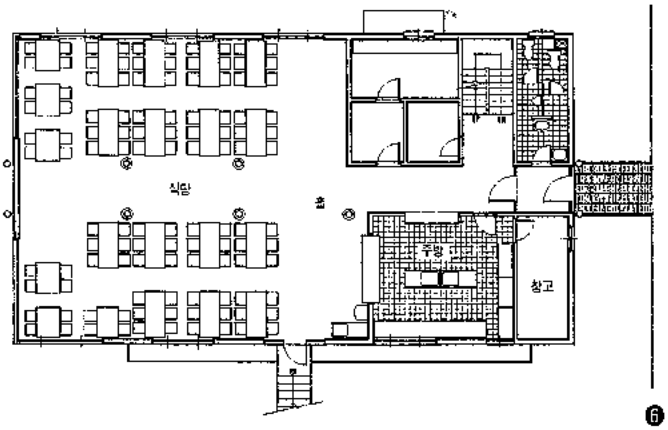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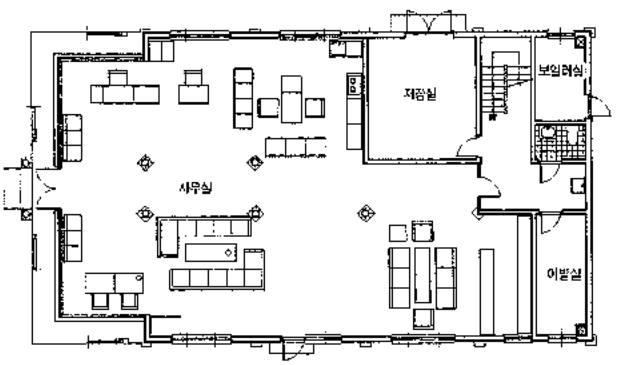

❼

❽

대지현황

서울농대 연습림 가는 입구로 북으로는 관악산이 있고, 남측으로는 통일신라시대의 중초사지가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제약공장이 들어섰고, 홍덕왕 원년에 채석하여 이듬해인 827년에 성료된 당간지주와 3층 석탑만 남아있다.

행정적으로는 그린벨트지역으로 건축시 위치를 옮길 수 없고 제자리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지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현 위치가 마당이 되어야 했지만 변경할 수가 없었다.

건축주 현황

이 법인은 사태현씨가 설립한 안양아동복지관이다. 건축주인 사씨는 자매기관으로 근명학교, 서라벌 예술대학, 현대 공로사 등을 설립한 바 있다. 이 법인은 여러 번 건축하여 왔지만 부족한 예산때문에 기존건축이 부실한 상태이다. 일반 건축비에 약 30%나 적은 예산으로 질을 높이고 바란스를 유지한 건축이다.

디자인에 대하여

산, 바다, 숲은 이 디자인으로서는 행운의 장소이다. 아동보호시설은 분위기가 경직되기 쉬운 곳이므로 다양한 모습의 내부와 외부를 구성하면서 능선과 숲에 접근하였다. 신소재의 사용은 시대감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구조는 비교적 단정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하고 부자재나 칼라 등으로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시멘트, 벽돌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밝은 색조이고, 진홍색과 노란색, 오렌지색을 보조색으로 사용코자 하였다.

내 마음은 천년 전을 시간여행해 보면서 조금이나마 재조명을 시도했다. 초현대와 과거의 만남은 항상 흥미있는 일이다. 현장주변에서 약 천년 전에 다듬다가 건축가들이 버린 장대석이 이 건축의 현관앞 계단으로 선택되었다. 또한 사라져 버린 종을 찾아 이 건축에다 재등장시켰다.

전면코너에 기둥을 없애 코너를 개방하고 좀더 떠보임을 강조하였고,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상호 어울림을 조정하였다. 2층은 외부와 다리로 연결하였고, 전면 2개의 포스트는 건축의 힘의 맛을 강조하였으며, 내부에도 계속된다. 전면 2개의 소나무 이식은 이 건축을 더욱 숲속의 협연으로서의 만족도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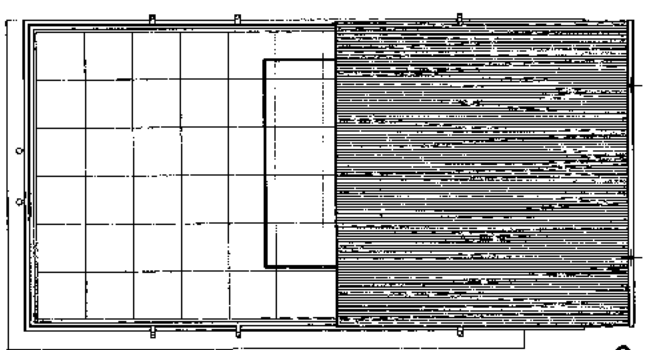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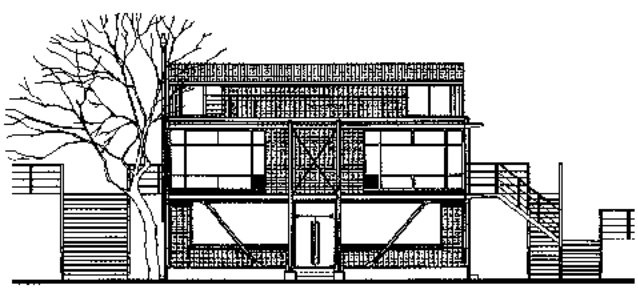

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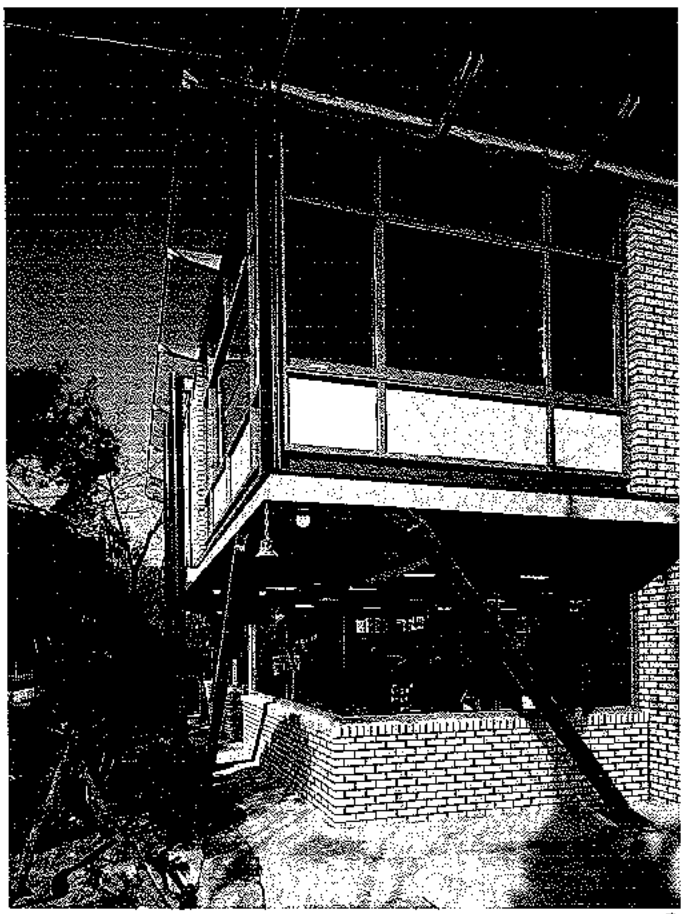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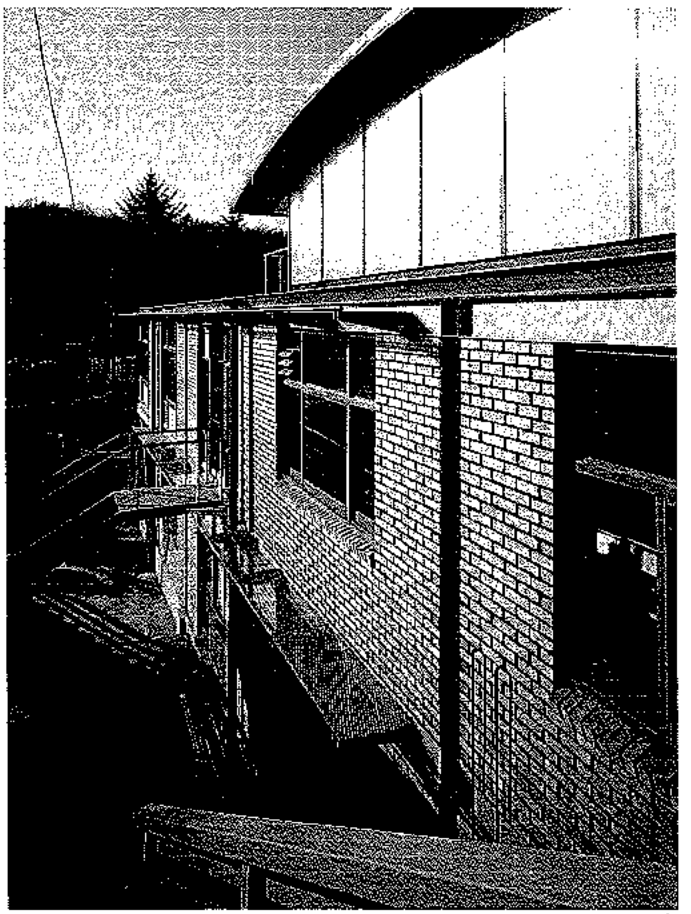

❽ 북서측 전경
❾ 지붕층 평면도
❿ 정면도
⓫ 외부상세
⓬ 외벽상세
⓭ 우측 입면도
⓮ 단면도
⓯ 계단실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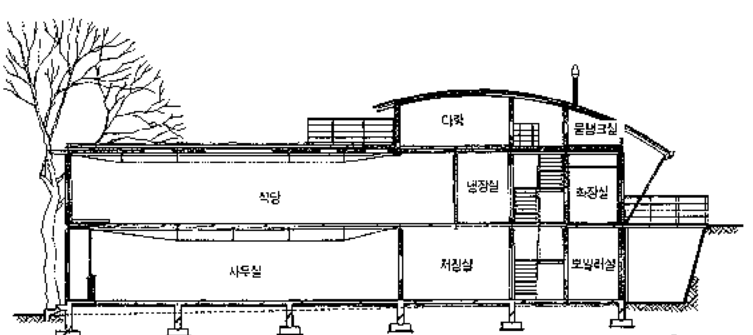

건축사부문

우수상

섬유센터
Textile Center

崔寬泳 + 鄭東明 /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Kwan - Young &
Cheong, Dong - Myeong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31
지역·지구 / 도시설계구역,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 5,124 m²
건축면적 / 2,225 m²
연면적 / 42,479.91 m²
규모 / 지하 4층, 지상 19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지하), 철골철근콘크리트조(지상)
주용도 / 업무시설
외장재료 / 기준층 : 복층유리 + 알미늄복합패널
저층부 : 화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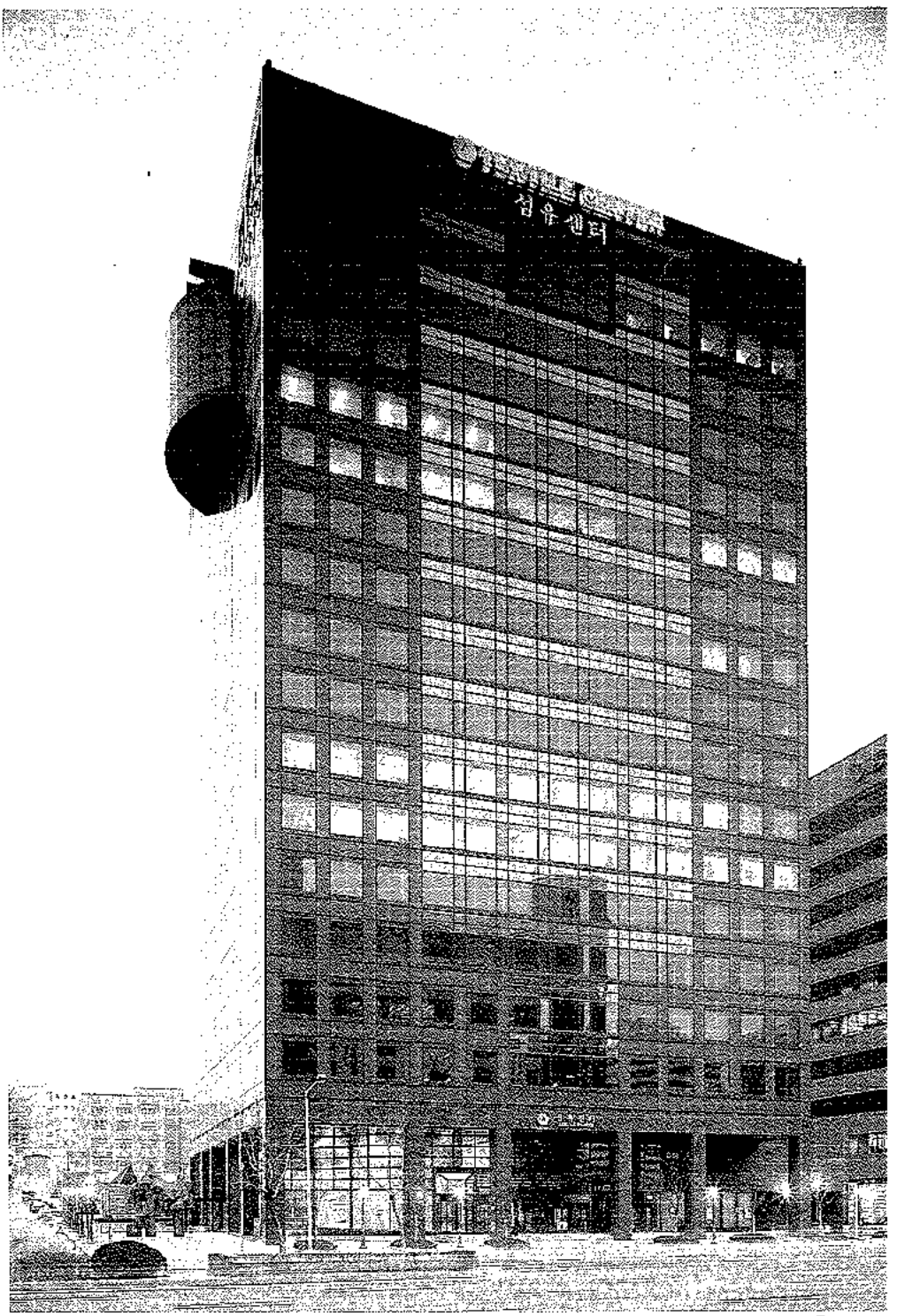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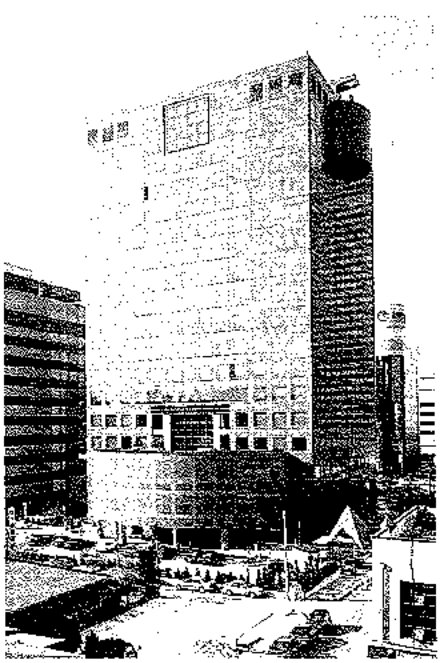

❶

❶ 정면전경
❷ 후면전경
❸ 엘리베이터 진입부측 상세
❹ 17층 카페테리아
❺ 지하 1층 평면도
❻ 지하 3층 평면도
❼ 2층 평면도
❽ 1층 평면도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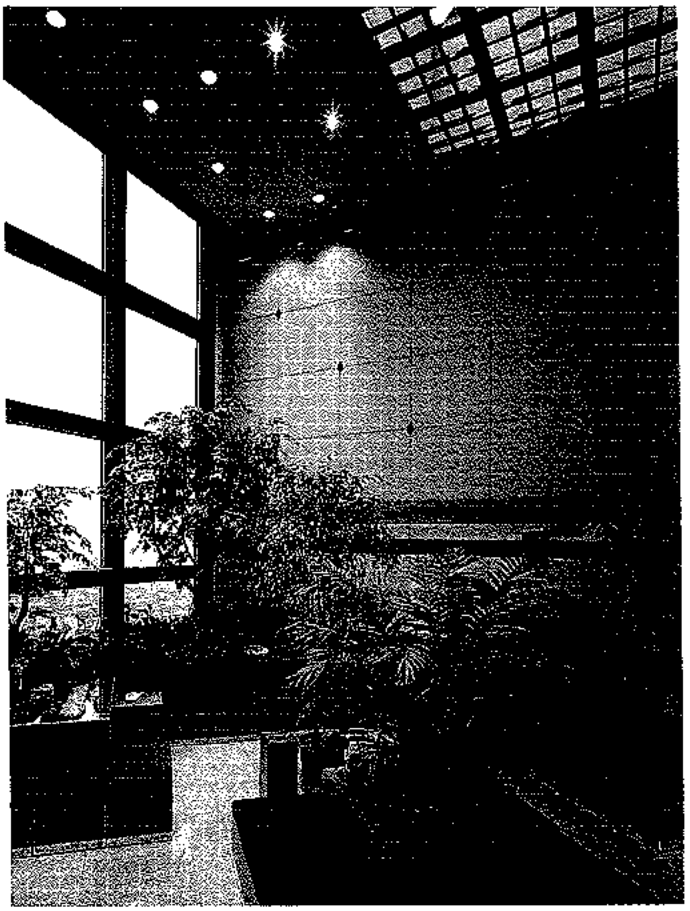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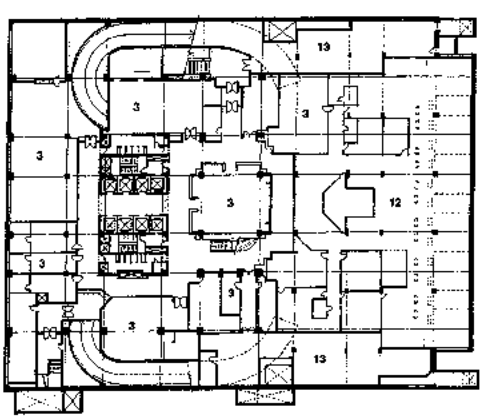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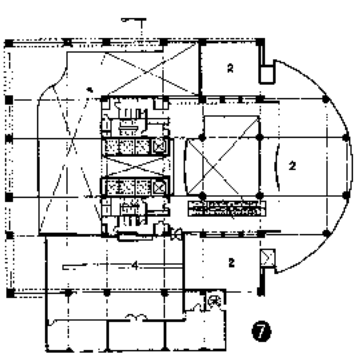

❼

1. 사무실
2. 전시장
3. 근린생활시설
4. 은행
5. 로비
6. 옥상정원
7. 공조실
8. 대회의실
9. 소회의실
10. 주차장
11. 카페테리아
12. 골프연습실
13. 기계실
14. 전기실
15. 실내정원
16. 발전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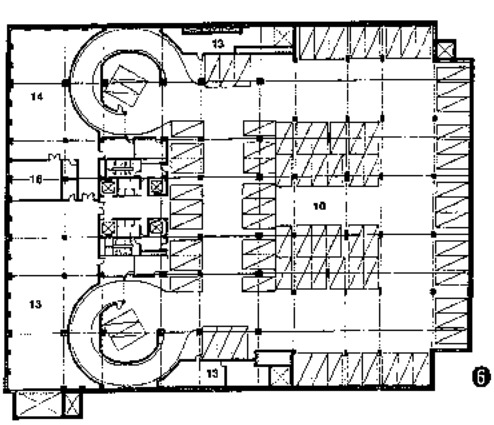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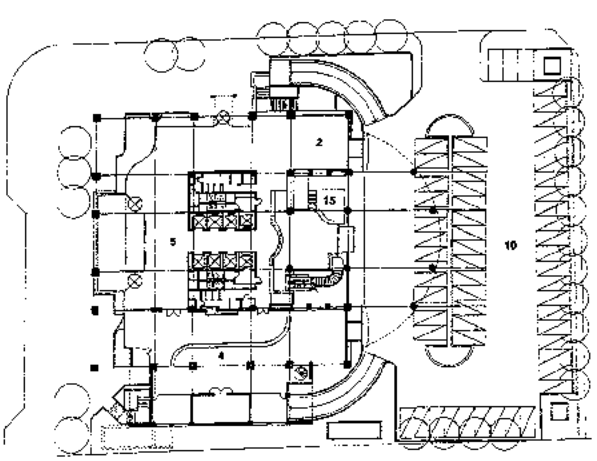

❽

New Office Town의 중심부로 성장한 테헤란로를 끼고 무역센터와 마주한 자리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섬유산업의 미래에 중추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본 건물은 1984년 현상설계를 통해 탄생되었다.

그 후 몇차례의 디자인 발전과정을 거쳐 1988년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그 양상의 변화는 실로 상당한 것이었다. 이는 섬유산업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한 설계자의 계속적인 노력에 연유한 바도 크다.

입면패턴에 치밀한 섬유조직의 이미지를 채용하여, 한올한올이 엮어지면서 연출해내는 세분화된 단위들의 복합적 미학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세분화된 단위들은 다양한 색채와 크기의 알루미늄 복합패널, 유리로 구성되었다.

이와함께 정형화된 매스의 단조로움을 탈피하려는 의도와 실제 기능상의 요구가 어우러져, 돌출된 저층부(패션쇼 전시장, 은행 등) 및 전면대로쪽에 제공된 공공부지에 더하여 전면 필로티를 둠으로써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자연스러운 접목을 꾀했다.

사용자들을 예상해볼 때, 일반사무실 건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의 동종의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므로, 저층부의 공용공간을 친교의 장소로서 친근하고 일체감을 가진 공간으로 상정했다.

중앙코아를 경계로 한 전면도로와 후면의 아트리움의 개방성을 통해 단절없는 연속적 공간을 느낄 수 있게 하였고, 특히 건물후면이 남쪽인 이유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를 잇는 상승적 개방공 간은 밝고 활기넘치는 친교의 장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⑨ 로비에서 본 현관
⑩ 측면상세
⑪ 대회의실
⑫ 현관입구측 야경
⑬ 올려다 본 외부 상세
⑭ 3층 평면도
⑮ 기준층 평면도
⑯ 17층 평면도
⑰ 단면도
⑱ 후면주차장 출입구측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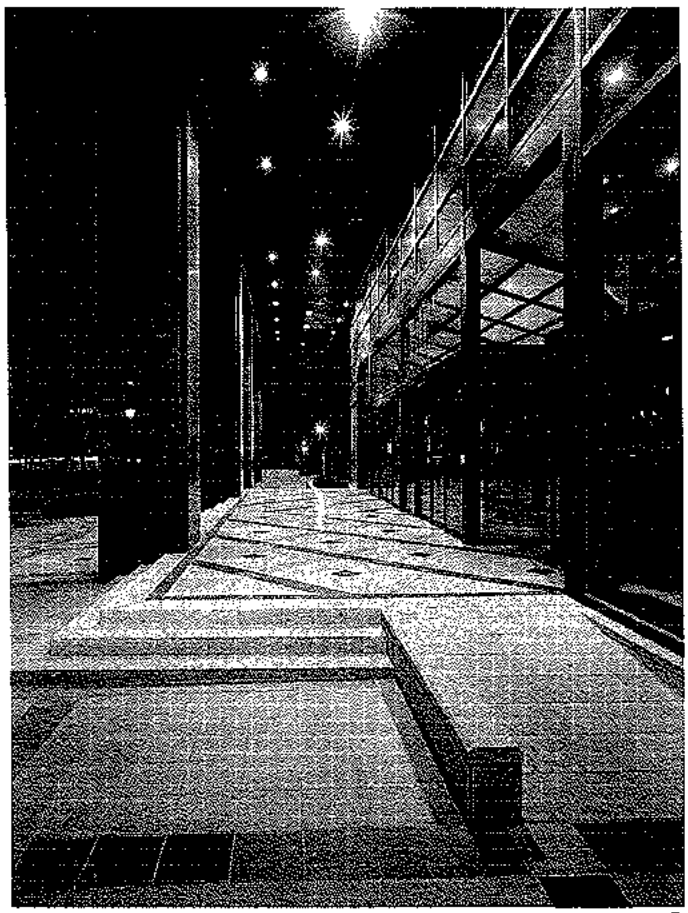

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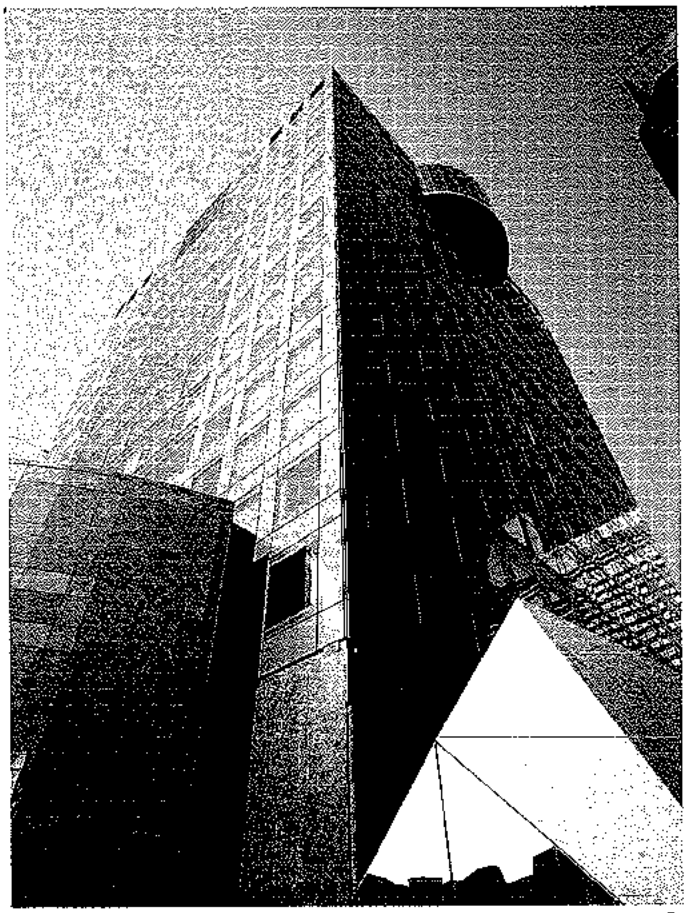

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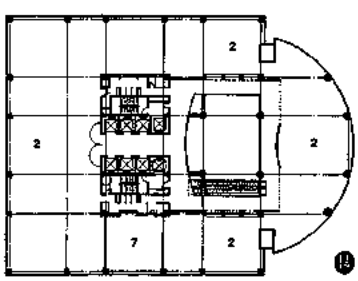

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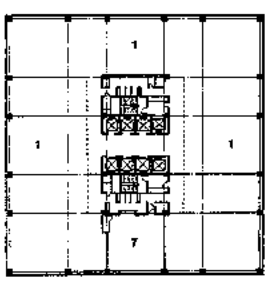

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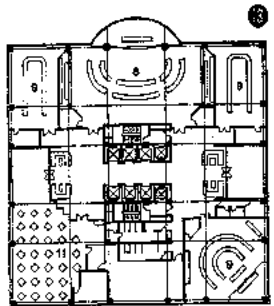

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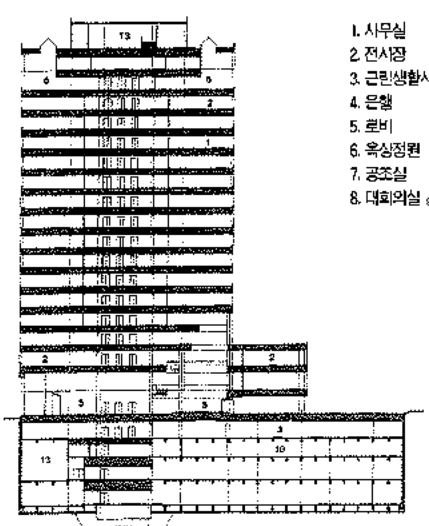

⓱

1. 사무실
2. 전시장
3. 근린생활시설
4. 은행
5. 로비
6. 옥상정원
7. 공조실
8. 대회의실
9. 소회의실
10. 주차장
11. 카페테리아
12. 골프연습실
13. 기계실
14. 전기실
15. 실내정원
16. 발전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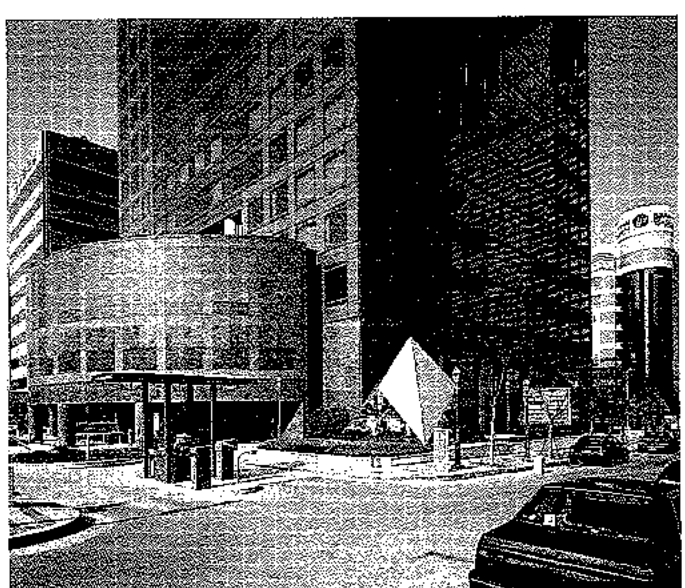

⓲

'93 한국건축전

한국 데이콤 정보 통신 연구센터

DACOM R & D Center

건축사부문

우수상

(주) 정림건축

Designed by Junglim Architects and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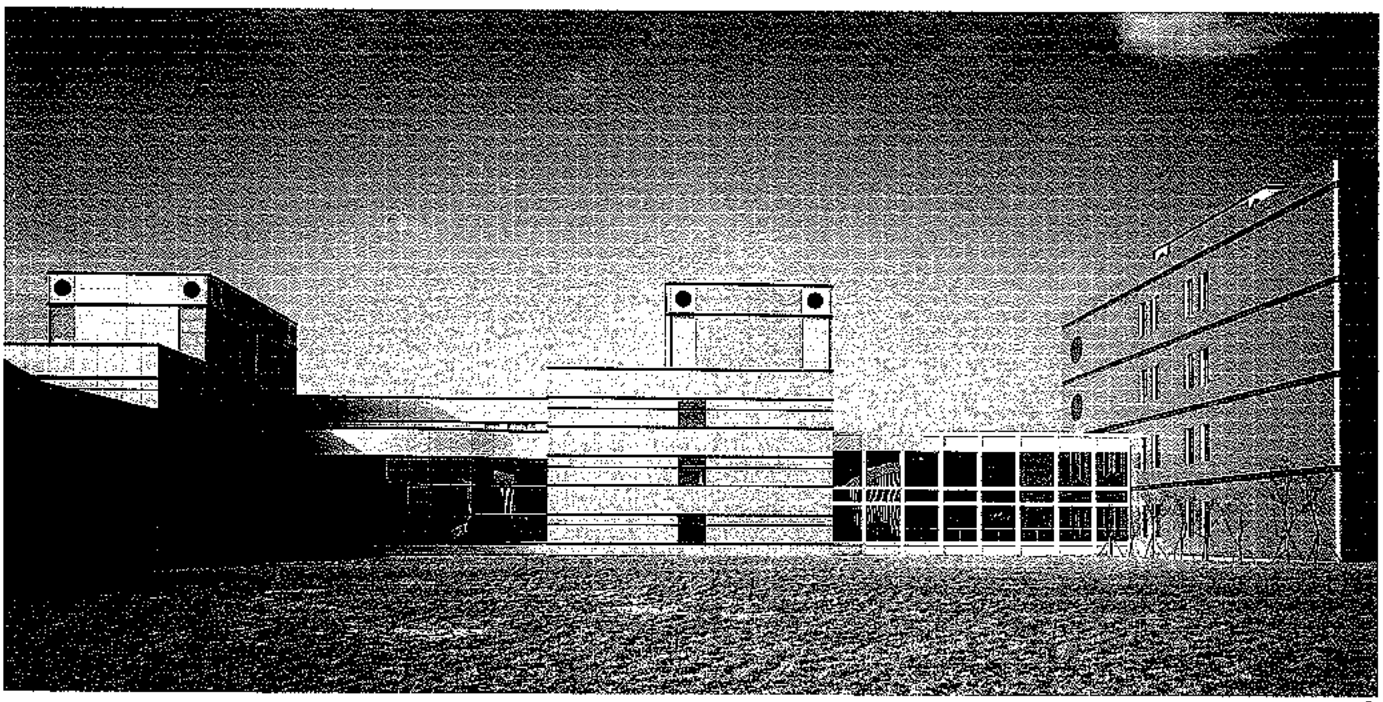

❶

위치 / 대전직할시 유성구 가정동
지역·지구 / 자연 녹지지역, 연구단지
대지면적 / 60,761.7 m²
건축면적 / 5,954.33 m²
연면적 / 17,828.67 m²
건폐율 / 9.8%
용적률 / 25.74%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THK 4 mm 복합 알미늄판넬, 자기질 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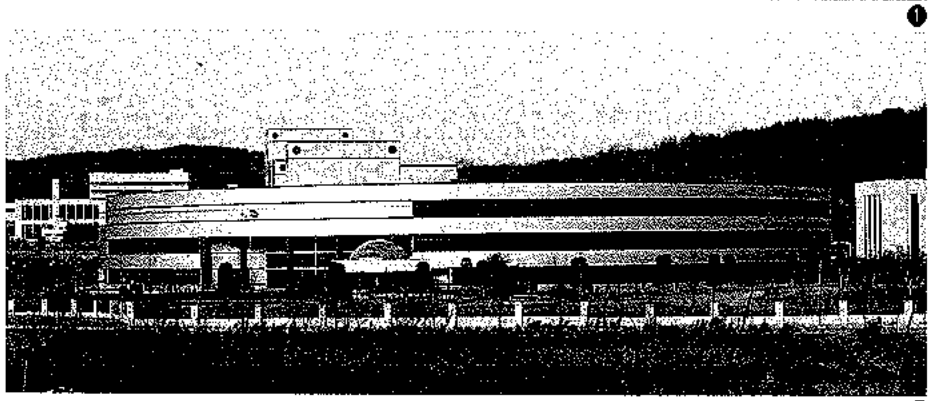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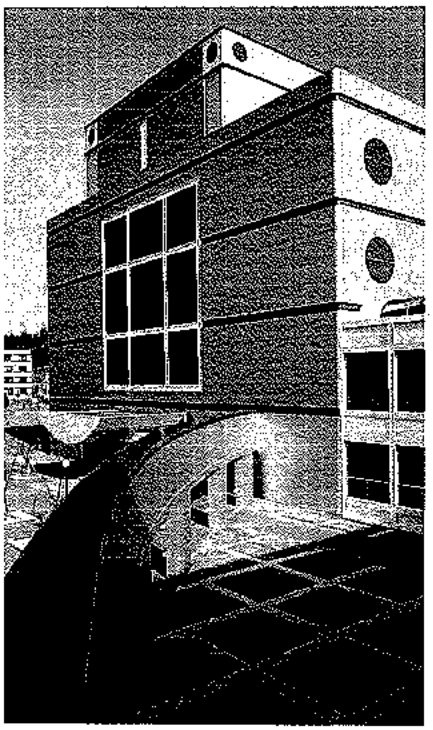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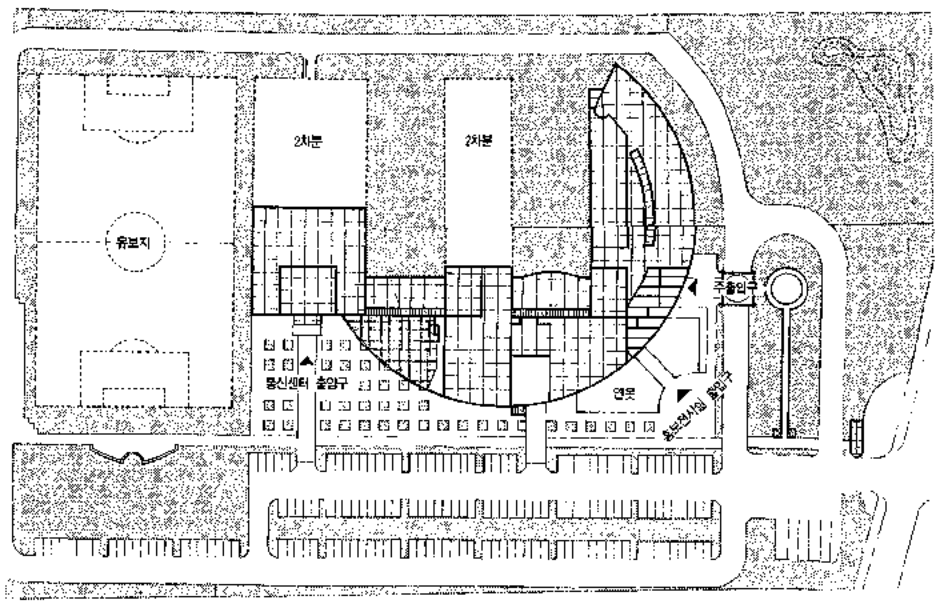

❹

❶ 동측 전경
❷ 남서측 전경
❸ 발코니에서 본 연구동
❹ 배치도
❺ 진입캐노피
❻ 2층 평면도
❼ 4층 평면도
❽ 1층 평면도
❾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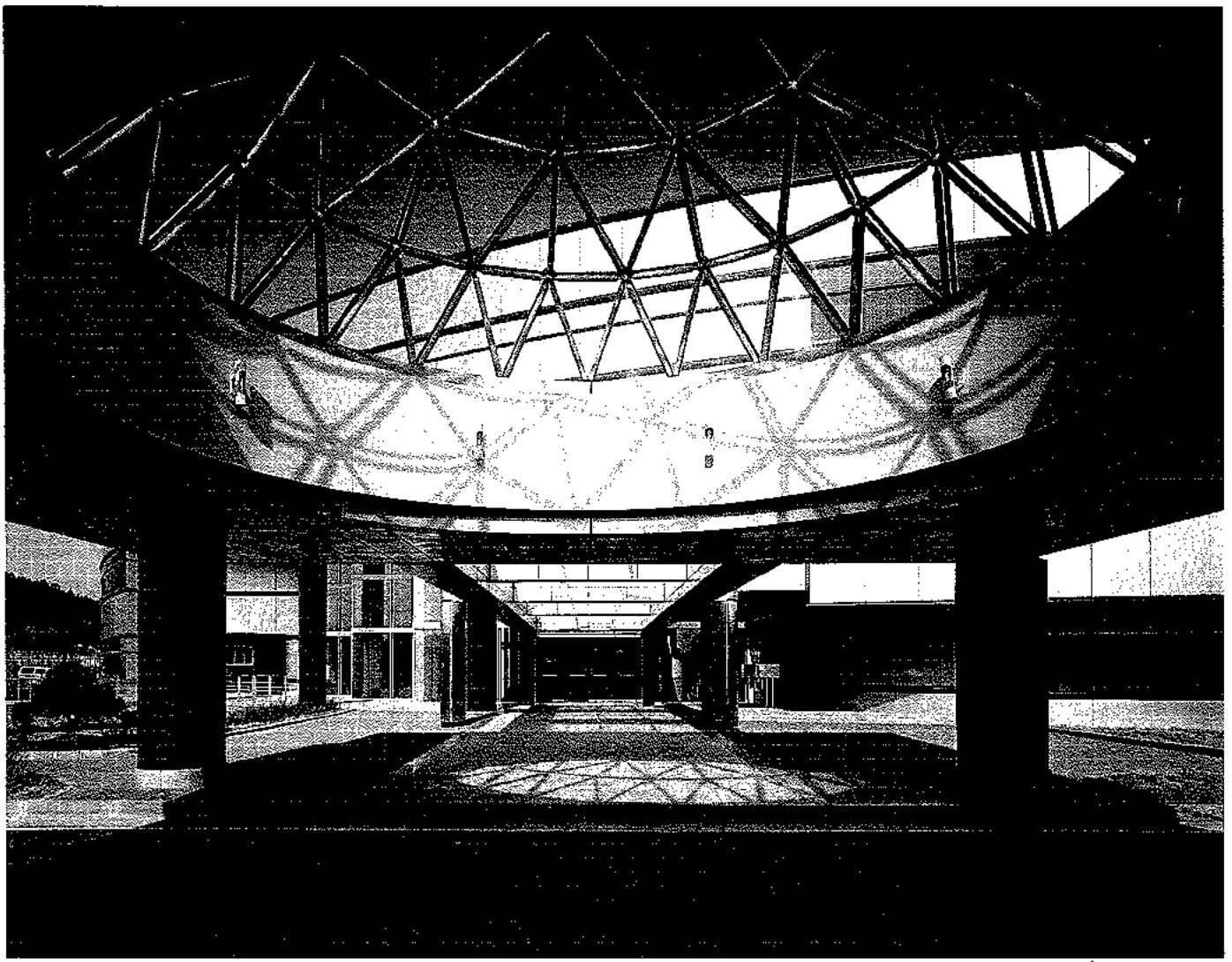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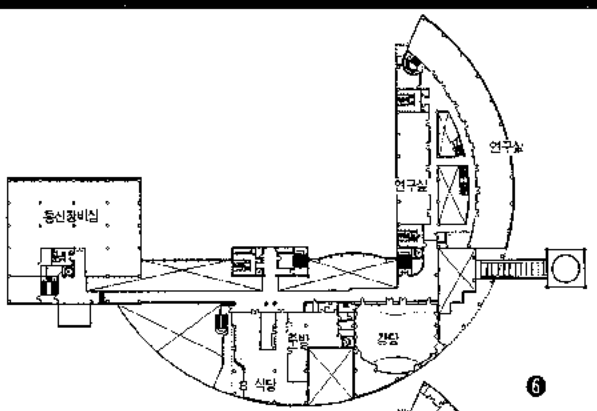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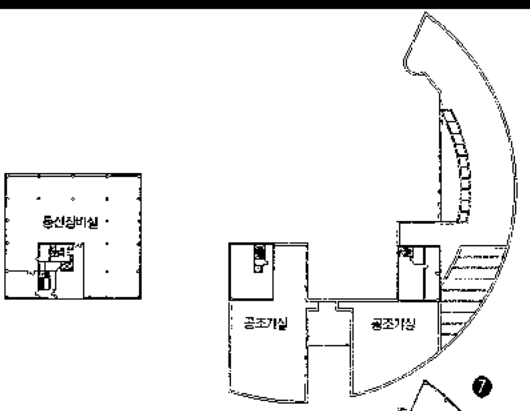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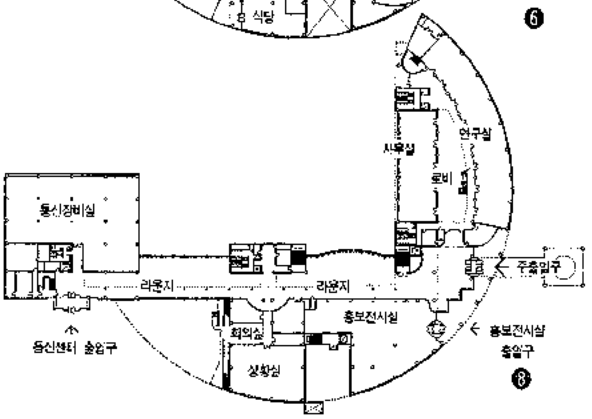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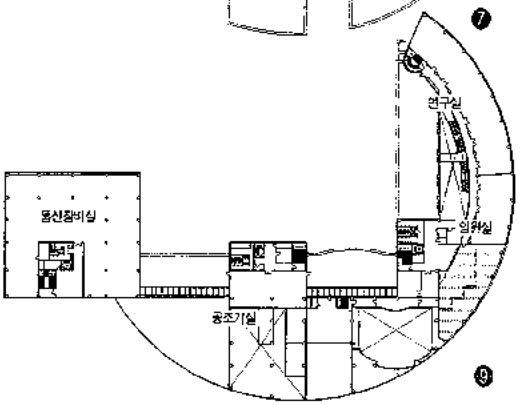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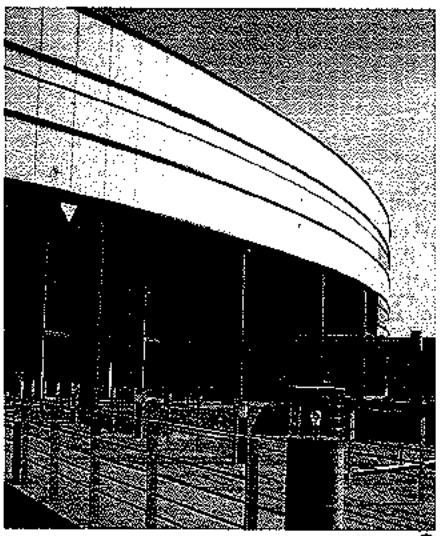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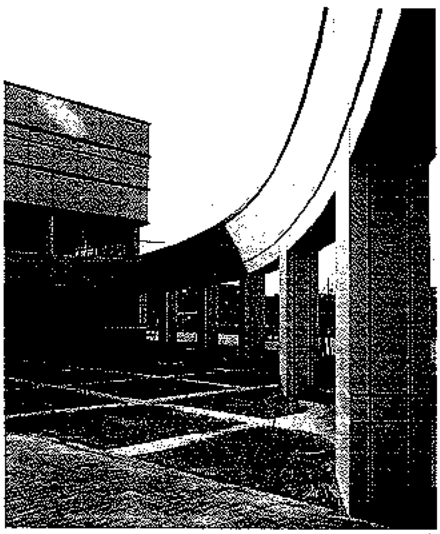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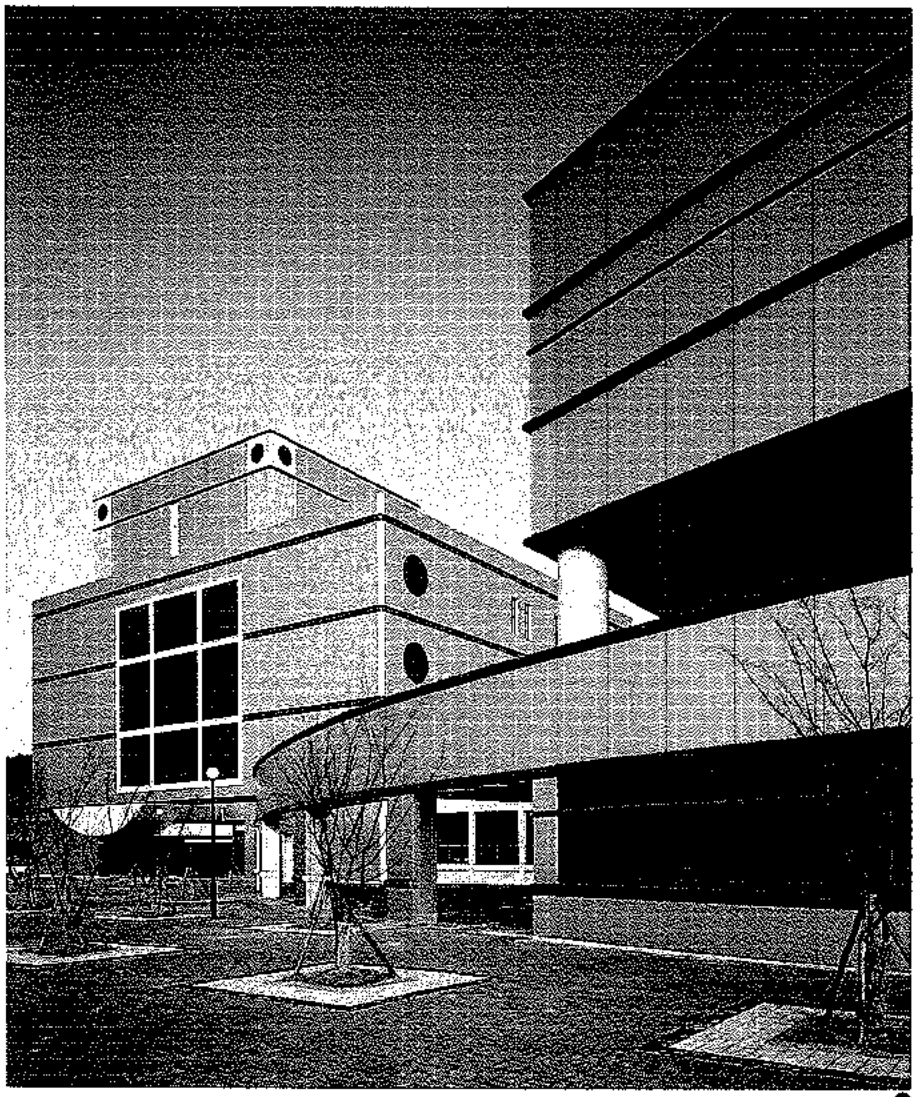

⑦

⑬

⑭

⑩ 주출입구
⑪ 가벽으로 구분된 정원
⑦ 연구동 외관
⑬ 좌측면도
⑫ 정면도
⑤ 중정
⑮ 우측면도
⑭ 주단면도
⑦ 멀리서 바라본 진입부

데이콤 연구소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타 종합 통신망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계통의 연구소로써 랩(Lap) 중심의 연구소와 같이 기능적 형태의 제약이 없어 자유로운 형태의 추구가 가능하였다. 이전 우리가 설계했던 양재동에 위치한 한국통신연구소와는 그 기능의 유사성 때문만이 아니라 형태적인 연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두 연구소를 비교함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한국통신연구소는 부지가 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에 대한 대응, 그리고 랜드마크적 요소가 많이 요구되어 내적으로 응축된 형태인 원형을 모티브로 한 매스로 계획되었으나, 데이콤 연구소는 한단계 발전된 파조의 격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통신연구소는 정직한 원의 형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거함을 그 모티브로 하고 있으나, 데이콤 연구소에서는 원과 사각형의 조화로운 만남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데이콤 계획안에서의 발상은 통신센터라는 사각형의 하드웨어가 기타의 다양한 기능인 연구소, 연수원, 홍보실 등과 조화롭게 연결되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건물로 나타날 수가 없는가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명제를 각각의 기능들의 커다란 원호로서 통합시키고 각각의 고유 기능들이 주축인 메인 컨커스(Main Concourse)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원은 주출입구쪽에서의 원형의 파사드로써 뿐만 아니라 후면 통신센터와 통합의 상징으로도 나타날 수 있게 계획하였다.

데이콤 연구소의 실내공간 계획은 이 연구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계획하였다. 다양한 기능에 대한 원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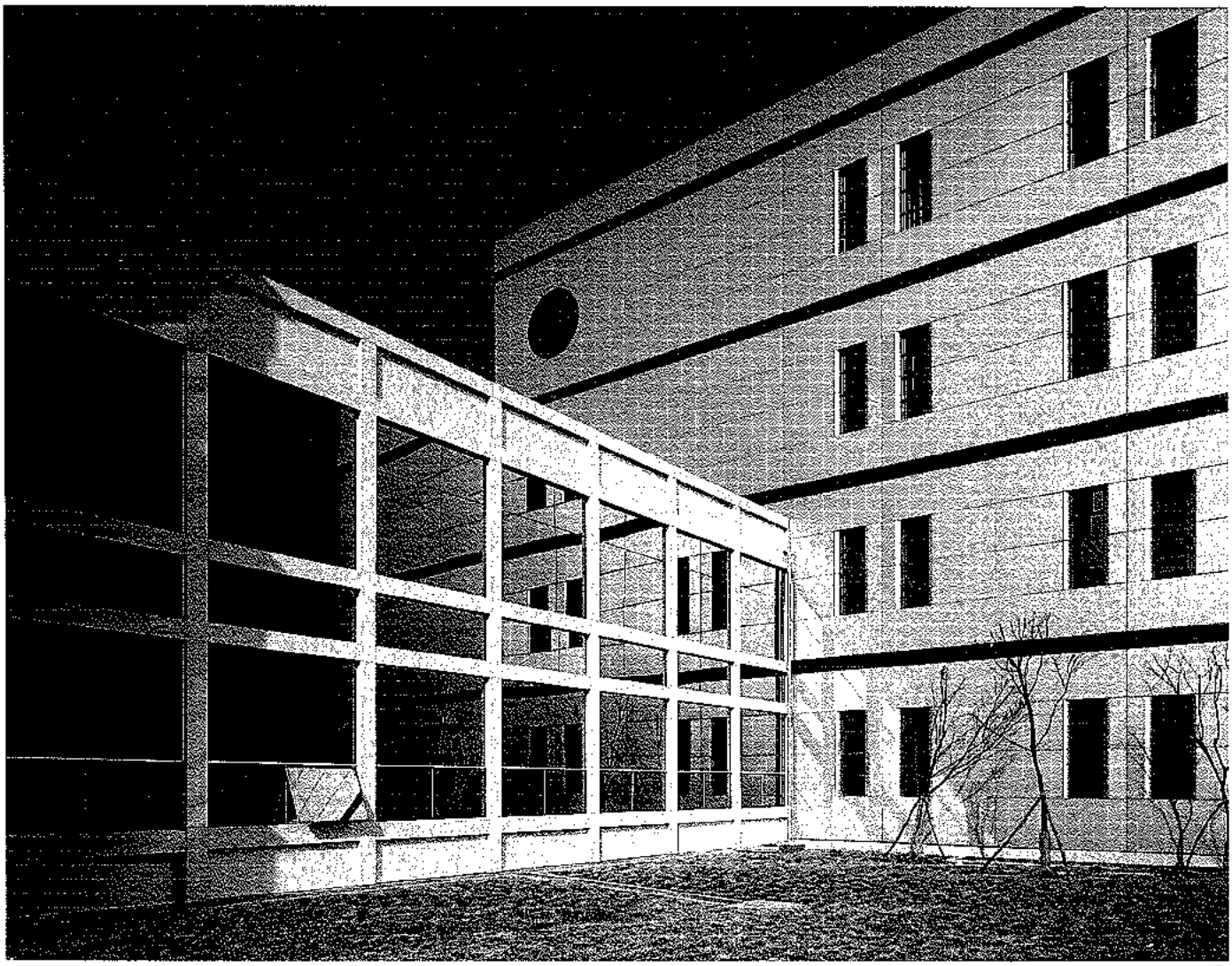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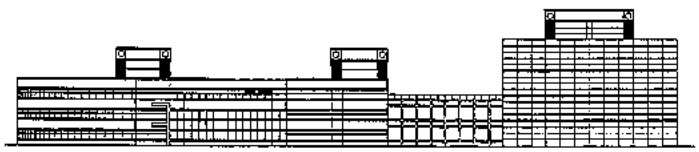

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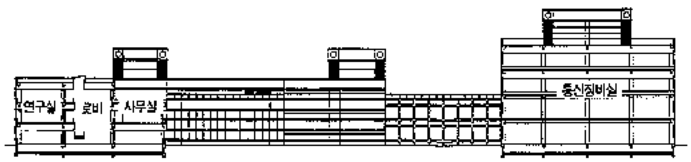

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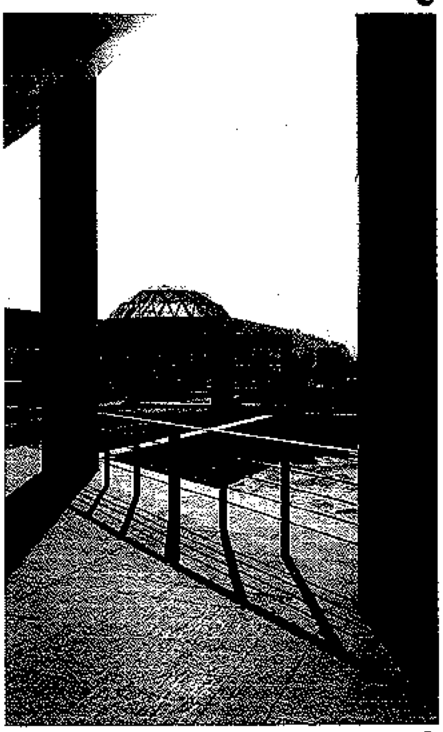

⑱

한 접근을 위하여 메인 컨커스가 설정되었으며, 이 주축상에 휴게를 위한 장소를 배치, 쉼과 대화의 장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소동에는 별도의 천창을 가진 로비를 만들어 주어 채광, 휴식, 동선의 분배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토록 계획하였다.

외장재료는 알미늄 복합 판넬 및 스트락쳐럴 그레이징 시스템(Structural Glazing System)을 이용, 금속성의 느낌을 강조함으로써 최첨단의 연구소로서의 이미지로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실내공간에서는 돌을 주재료로 사용함으로써 고전적이면서도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여, 연구원들이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직 아쉬움이 남는다면, 입구에 노출된 기둥이 준공후 건축주의 요구로 색상이 바뀜으로서 입구의 표현이 약화되어 강한 이미지를 심어 주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건축사부문

우수상

한빛빌딩

Han - Bick Building

安日成 / 건축사사무소 아키. 안
Designed by Ahn, Il - sung

대지위치 / 부산시 북구 괘법동 546-11외 2필지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993.40 m²
건축면적 / 749.27 m²
연면적 / 6,812.34 m²
건폐율 / 75.42%
용적률 / 503.86%
규모 / 지하 2층, 지상 9층
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 + 복층 반사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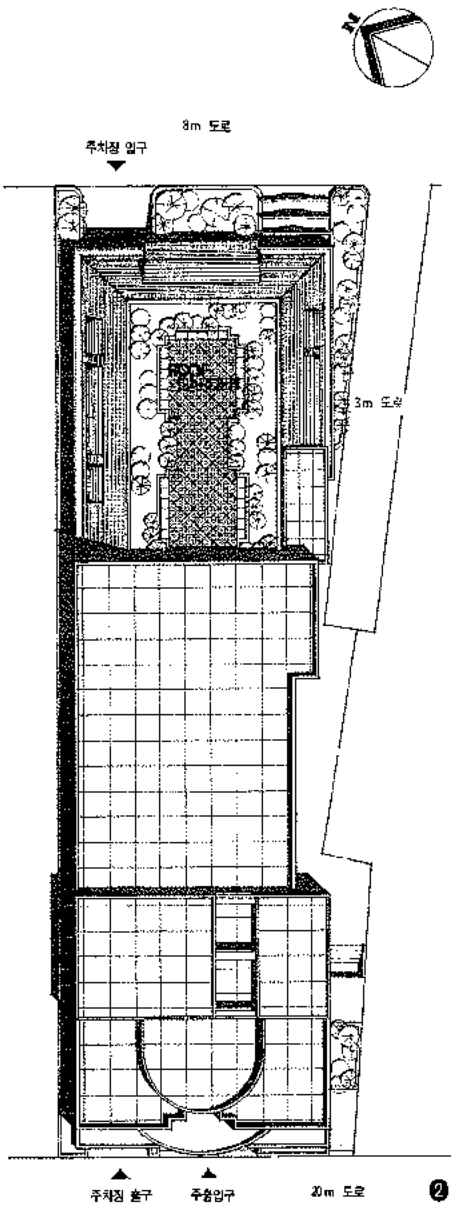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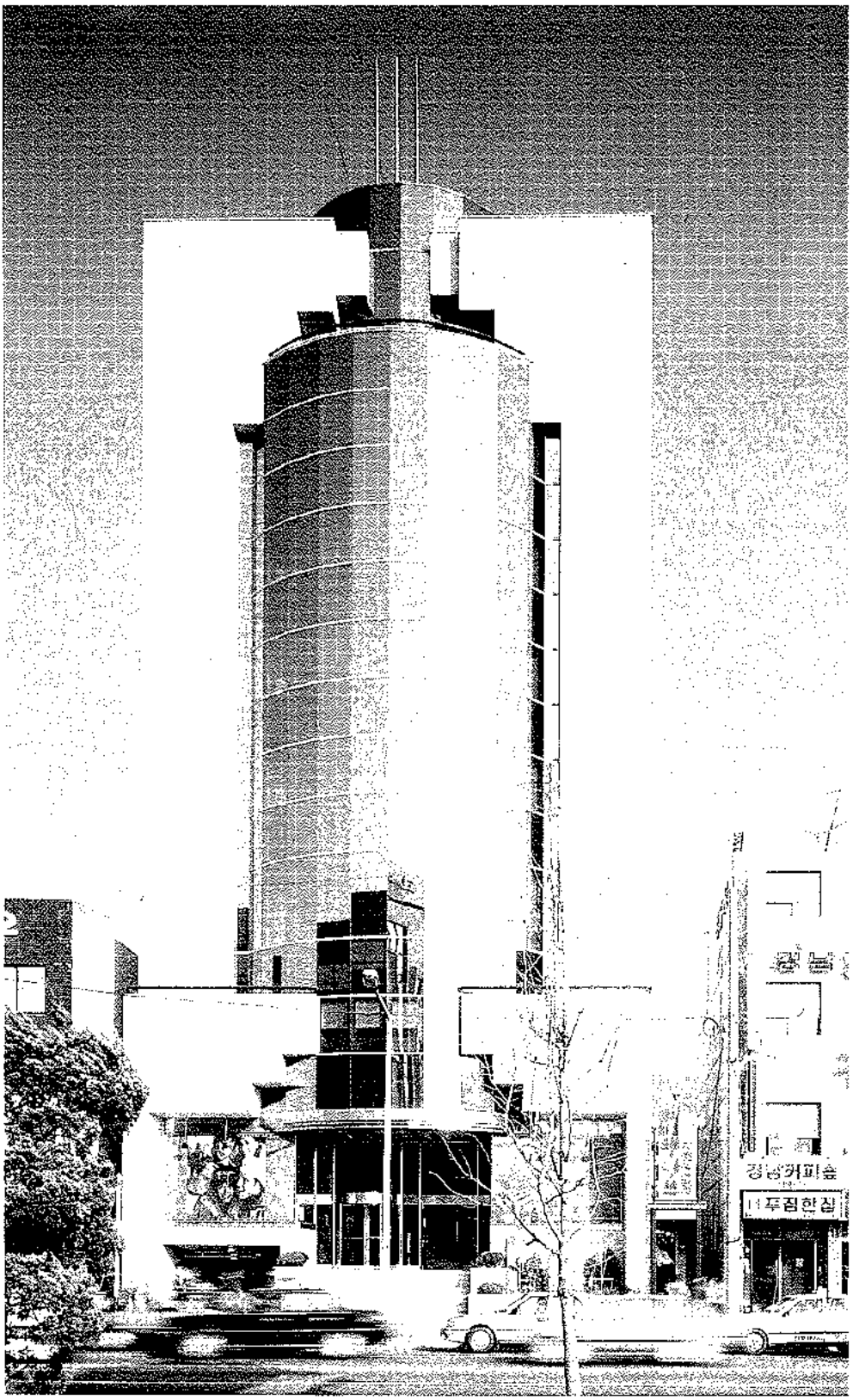

❶

❶ 전경
❷ 배치도
❸ 올려다 본 외벽 상세
❹ 엘리베이터 홀
❺ 1층 평면도
❻ 2층(로비층) 평면도
❼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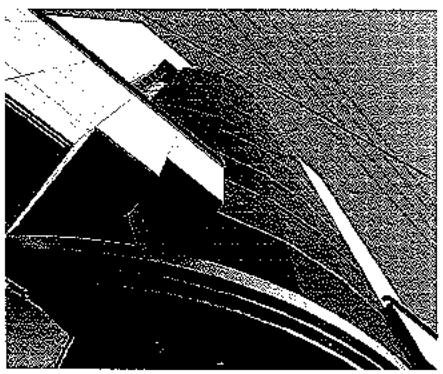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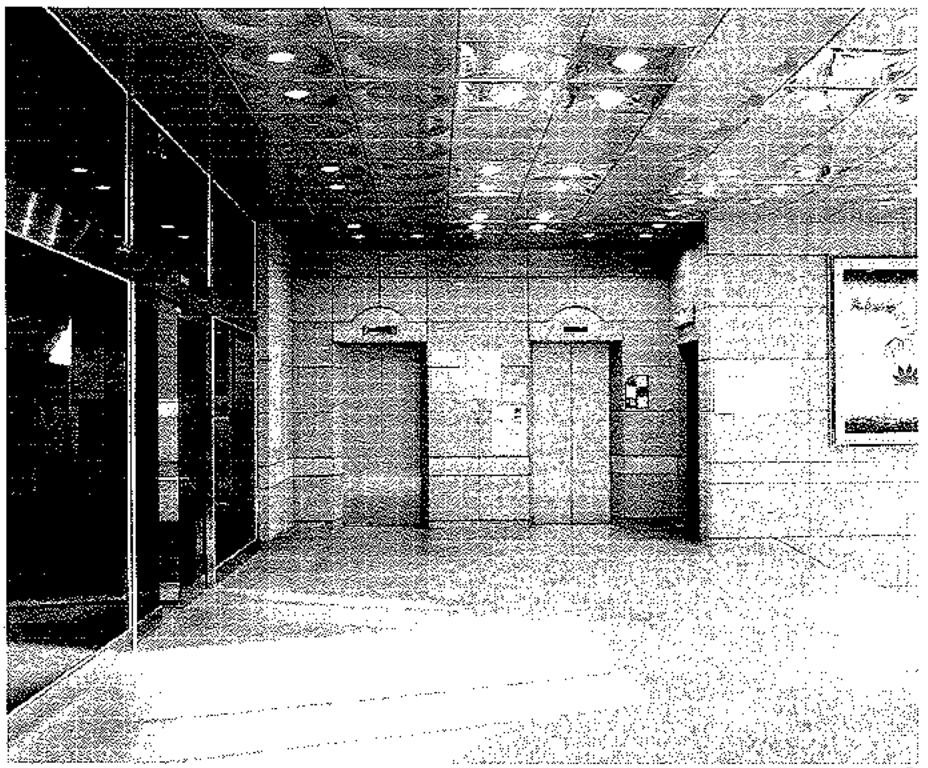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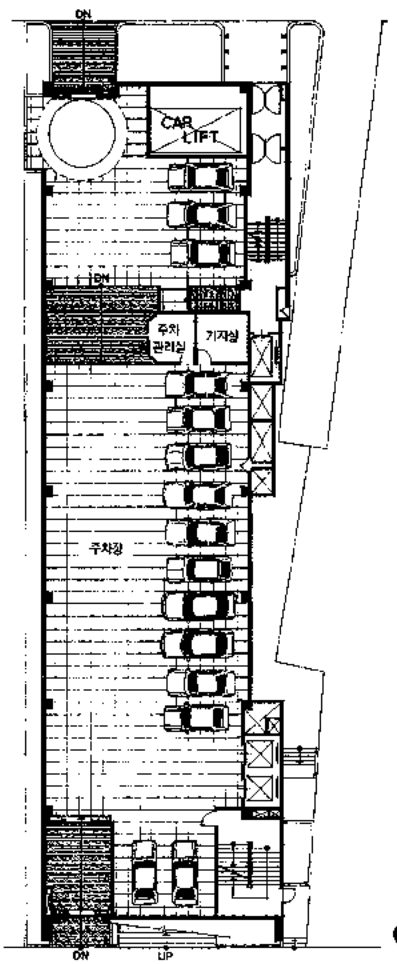
DN
CAR LIFT
DN
주차 관리실
기계실
주차장
DN
UP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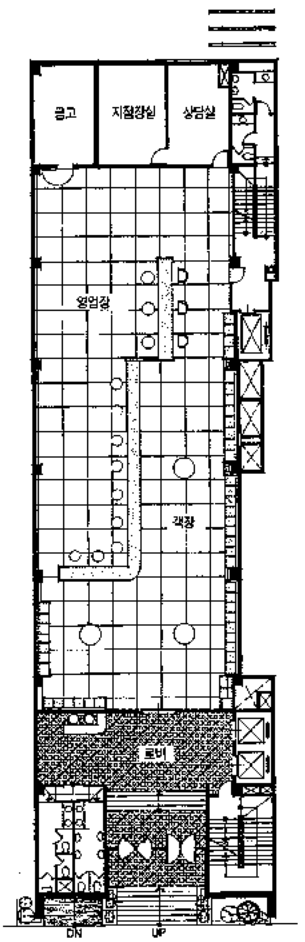
금고
지점장실
상담실
영업장
객장
로비
DN
UP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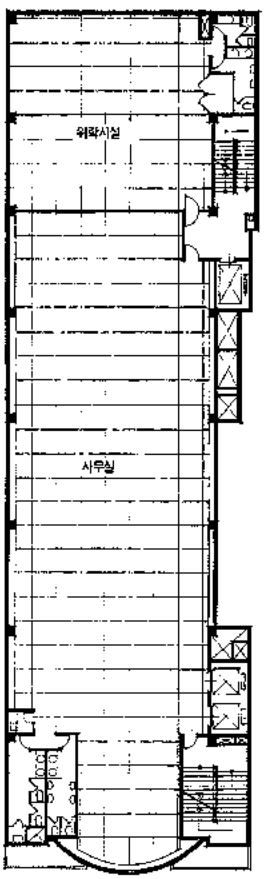
휴게실
사무실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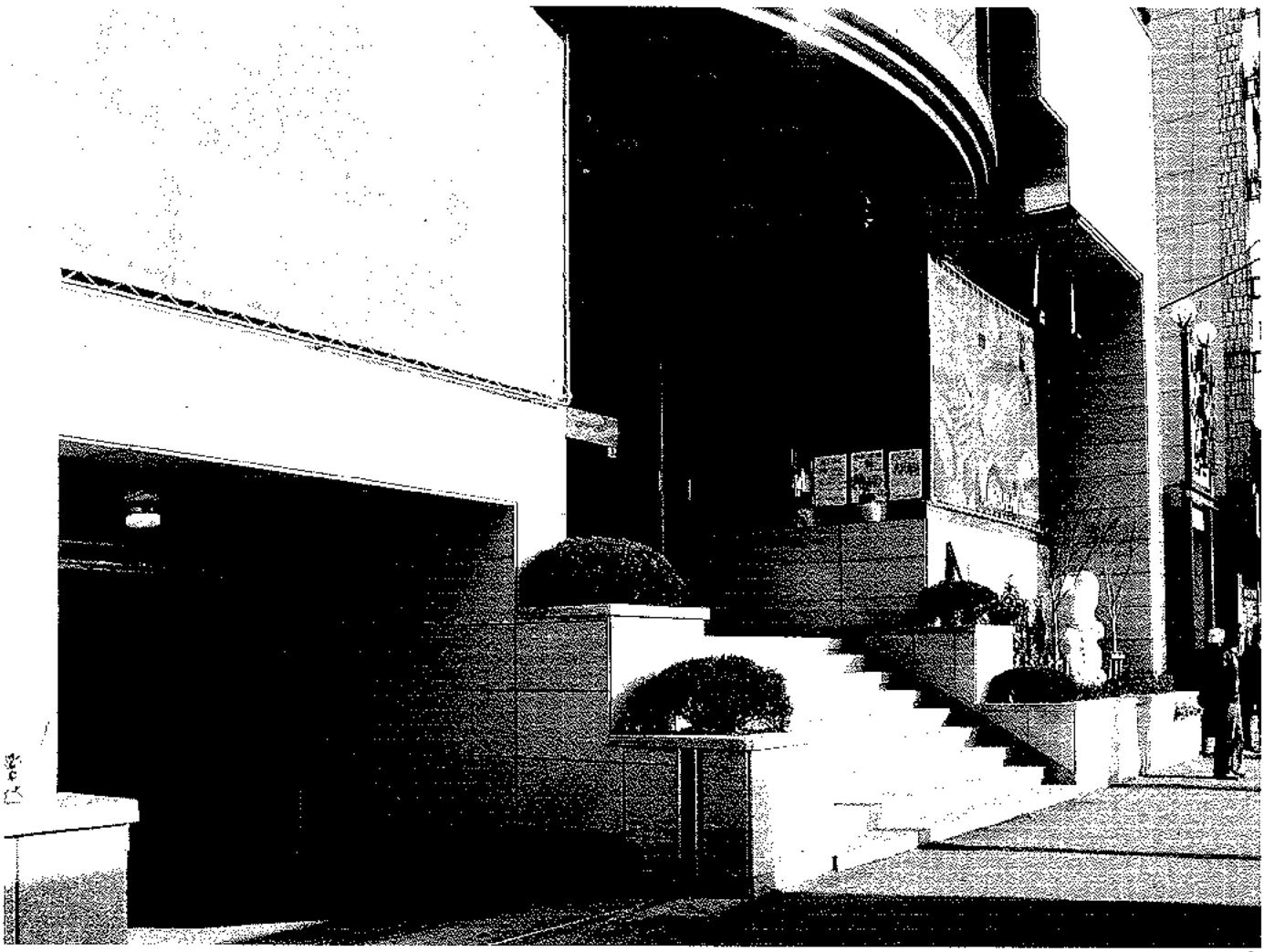

❽

도심과 외곽, 나아가서 부산과 서부경남을 연계하는 교통요충지라는 지역특성에 맞는 Office Building 의 기능과 주변가로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상업적 기능의 수용이라는 이중적인 Code 로의 해석이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입면구성은 Base, Body, Top 의 삼분법에 의한 전개로 단순한 면 구성에서 탈피하여 상승감 있는 점층적인 Mass 와 상하 원통곡면의 조형적 결합을 통해 입체적 풍부함을 더하게 하였고, 후면부의 수평선을 강조하여 Mass 의 세장감을 완화시켰으며, 중후한 석재와 경쾌한 반사유리의 극적인 대비로 현대감 있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도로 사선 규제로 상부 원통의 높이 제한과 Set Back 정도가 깊어 상부가 다소 과장된 느낌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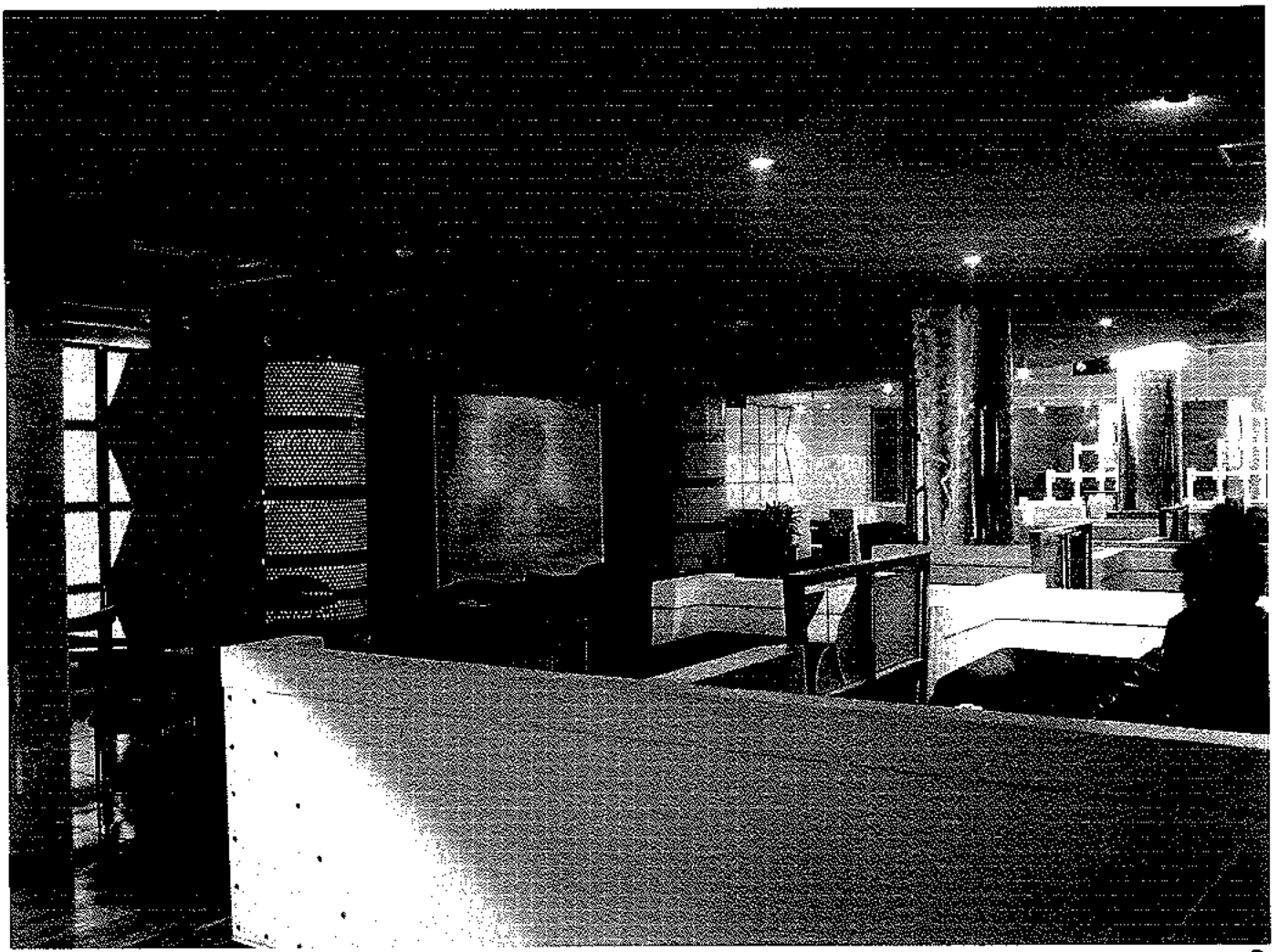

⑩

❽ 주출입구측 상세
❾ 후면 외벽 상세
❿ 영업장 내부 전경
⓫ 정면도
⓬ 배면도
⓭ 올려다 본 후면측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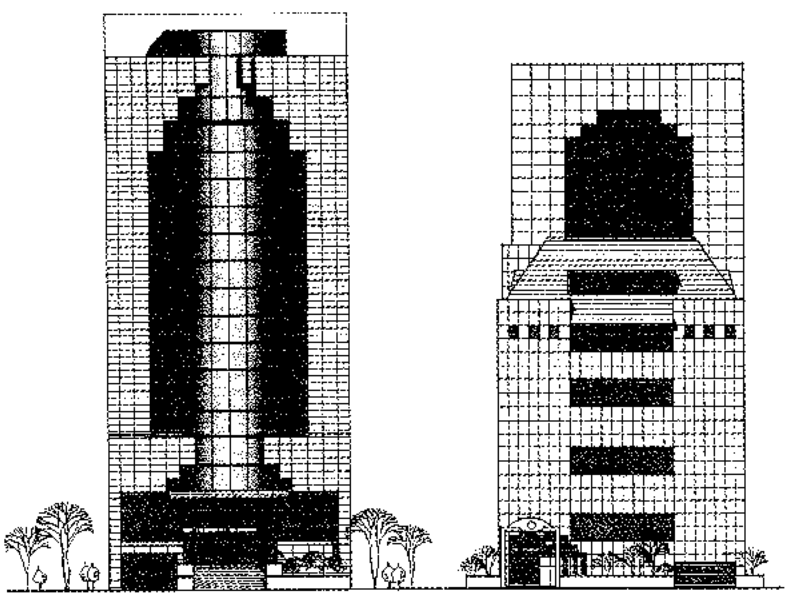

⓫ 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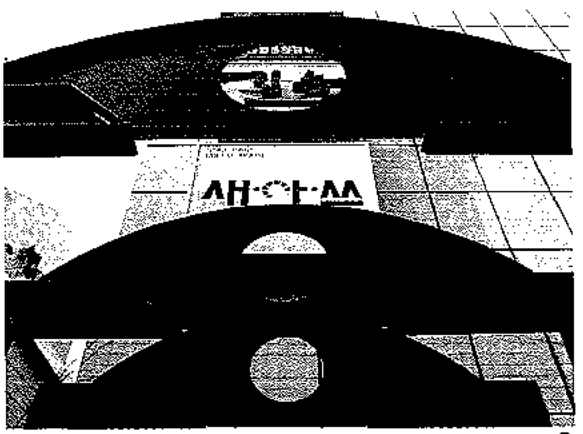

⓭

'93 한국건축전

신원 월드 컨트리 클럽 하우스

Shinwon World Country Club House

건축사부문

우수상

徐千植 /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일·하나로 건축
Designed by Seo, Chun - 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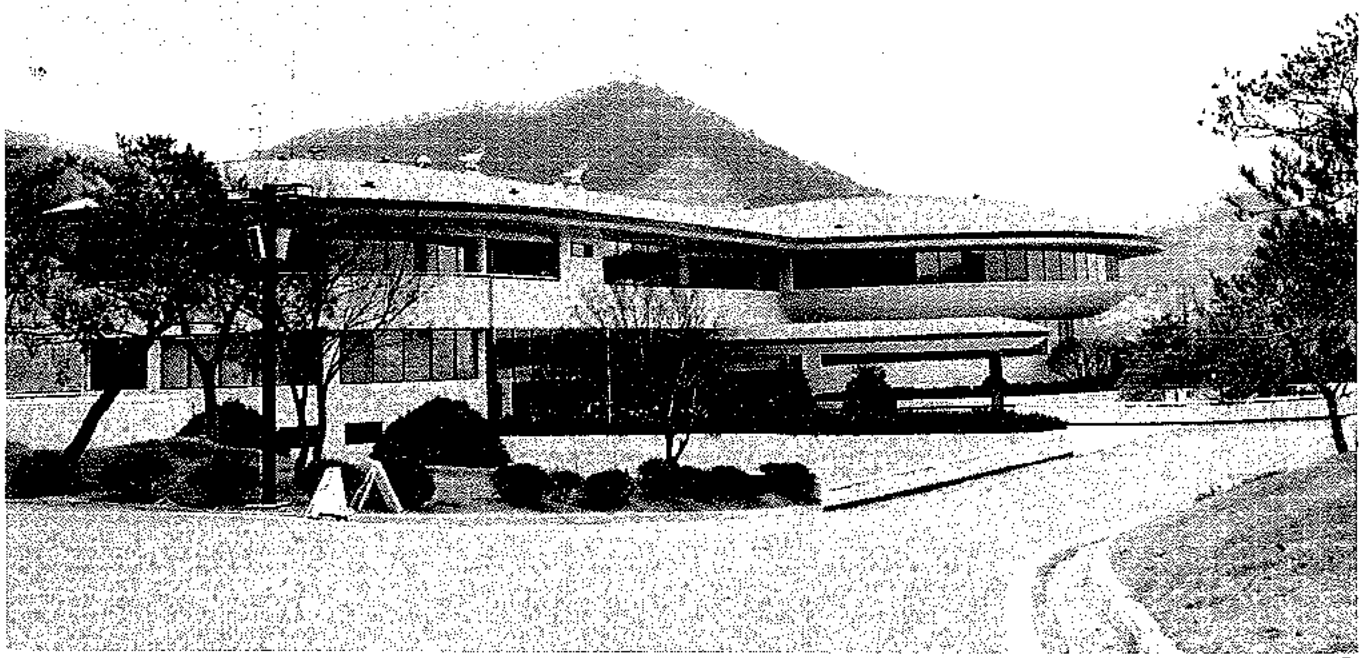

❶

대지위치 / 경기도 용인군 아동면 북리
대지면적 / 9,994.2 m²
건축면적 / 4,868.6 m²
연면적 / 7,577.04 m²
규모 / 지하 3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드라이 비트 + 24 mm 복층유리

❶ 전경
❷ 배치도
❸ 서측 전경
❹ 동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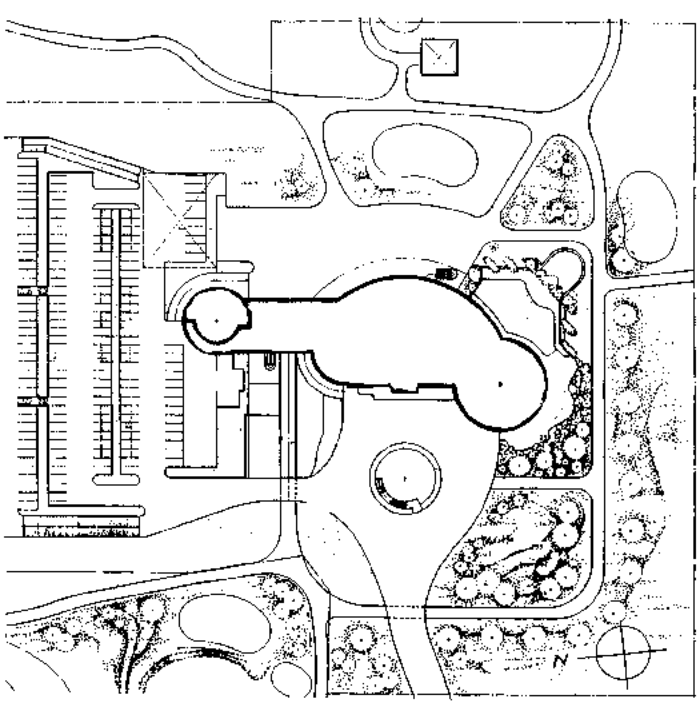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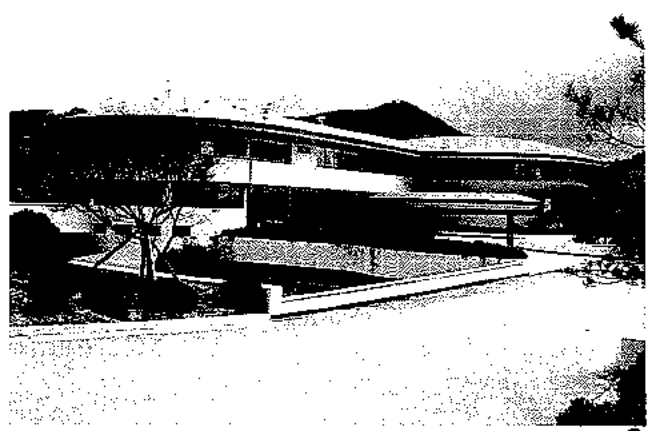

❸

❹

건축사부문

우수상

어흘리 박물관
Eoheulri Forklore Museum

安文孝 / 종합건축사사무소 M.A.C
Designed by Ahn, Moon - Hyo

〈본지 92년 10월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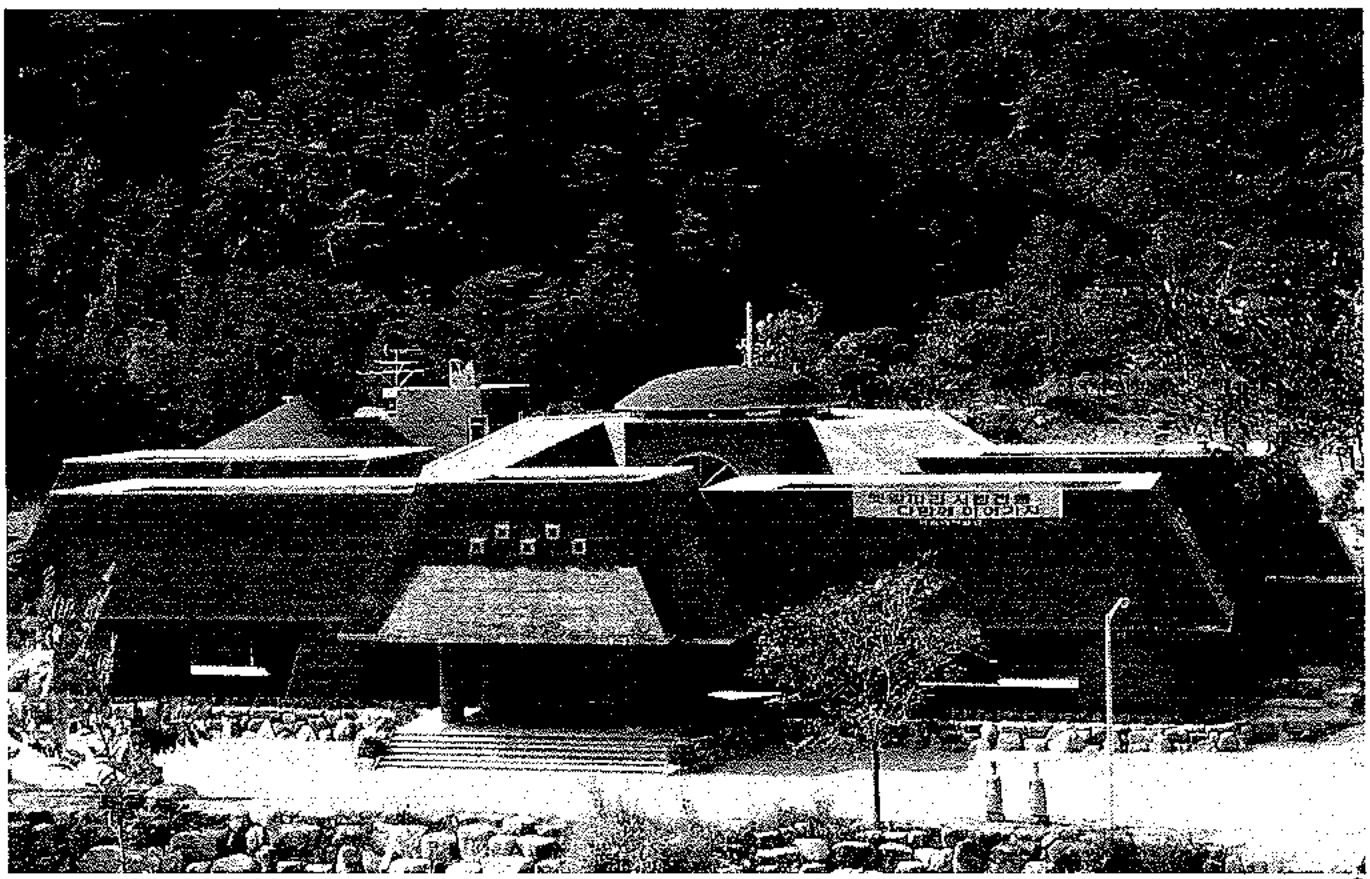

❶

대지위치 / 강원도 명주군 성산면 어흘리 374-3
지역·지구 / 도시계획미수립지역
대지면적 / 2,351 m²
건축면적 / 718.33 m²
연면적 / 972.81 m²
건폐율 / 30.55%
용적률 / 38.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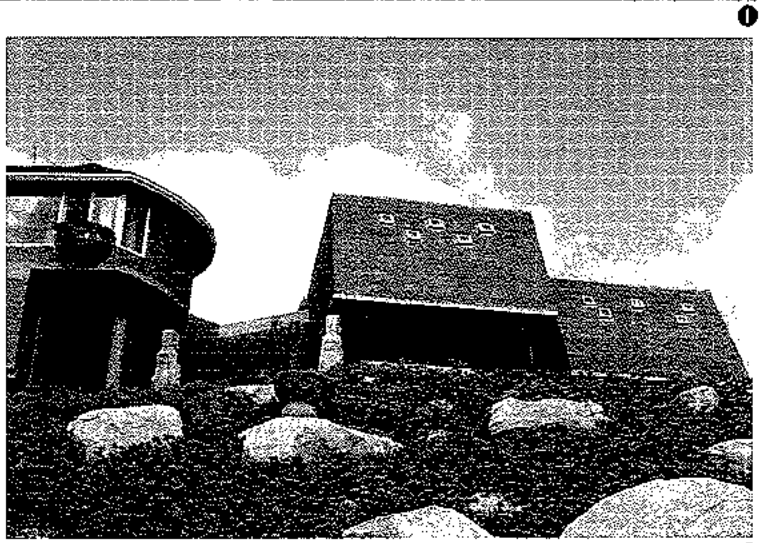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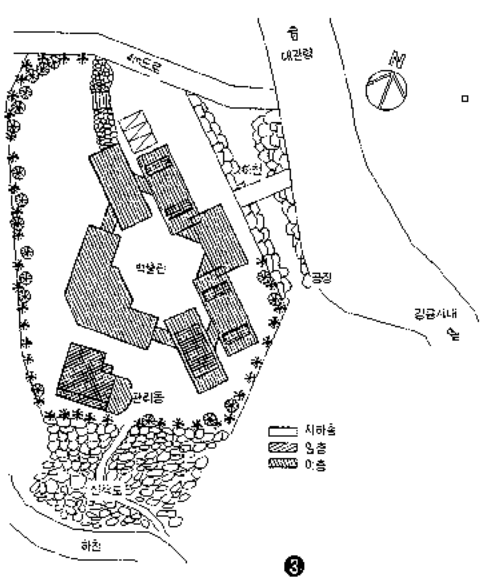

❸

❶ 전경
❷ 언덕에서 올려다 본 외부상세
❸ 단지내 건물 배치도

건축사부문

우수상

서대신동 주택 (전시시설)

J's Residence — Gallery

金瑛燮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
Designed by Kim, Young - Sub

〈본지 92년 11월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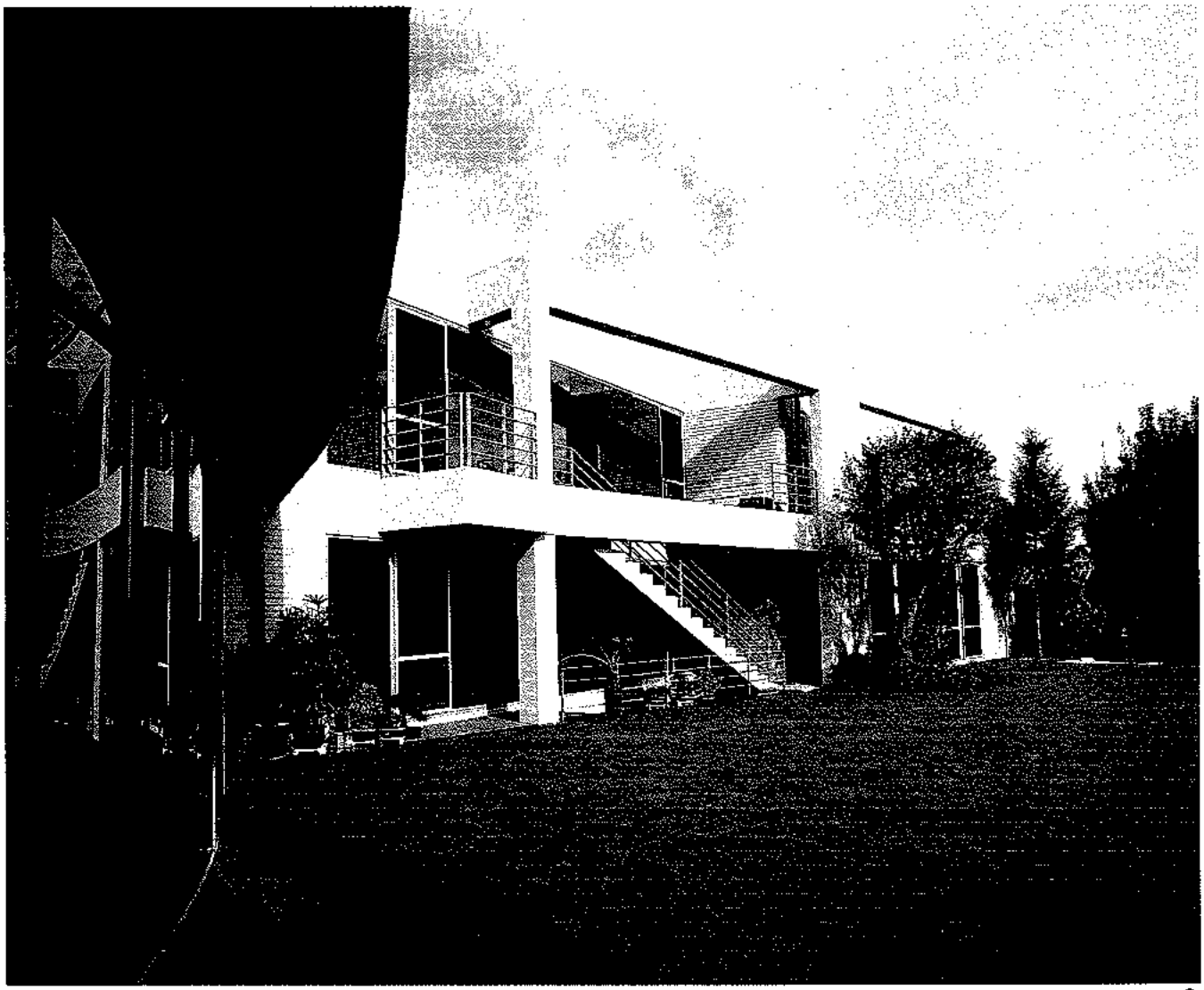

❶

대지 위치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53, 353-2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 1,004.00 m²
건축면적 / 280.57 m²
건폐율 / 27.65%
용적률 / 40.09%
구조방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외장재 / 노출콘크리트, 고압벽돌위 수성페인트

❶ 서측 배면 전경
❷ 배치도
❸ 2층 부분 잔디밭과 브릿지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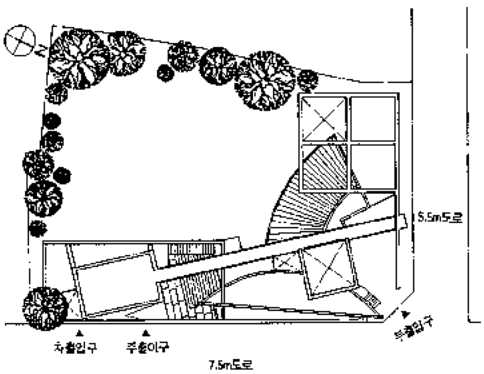

❷

❸

건축사부문

우수상

일동제약사옥

Ildong Pharmaceutical Co. Building

金春雄 / 상지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Choon - Woong

〈본지 92년 9월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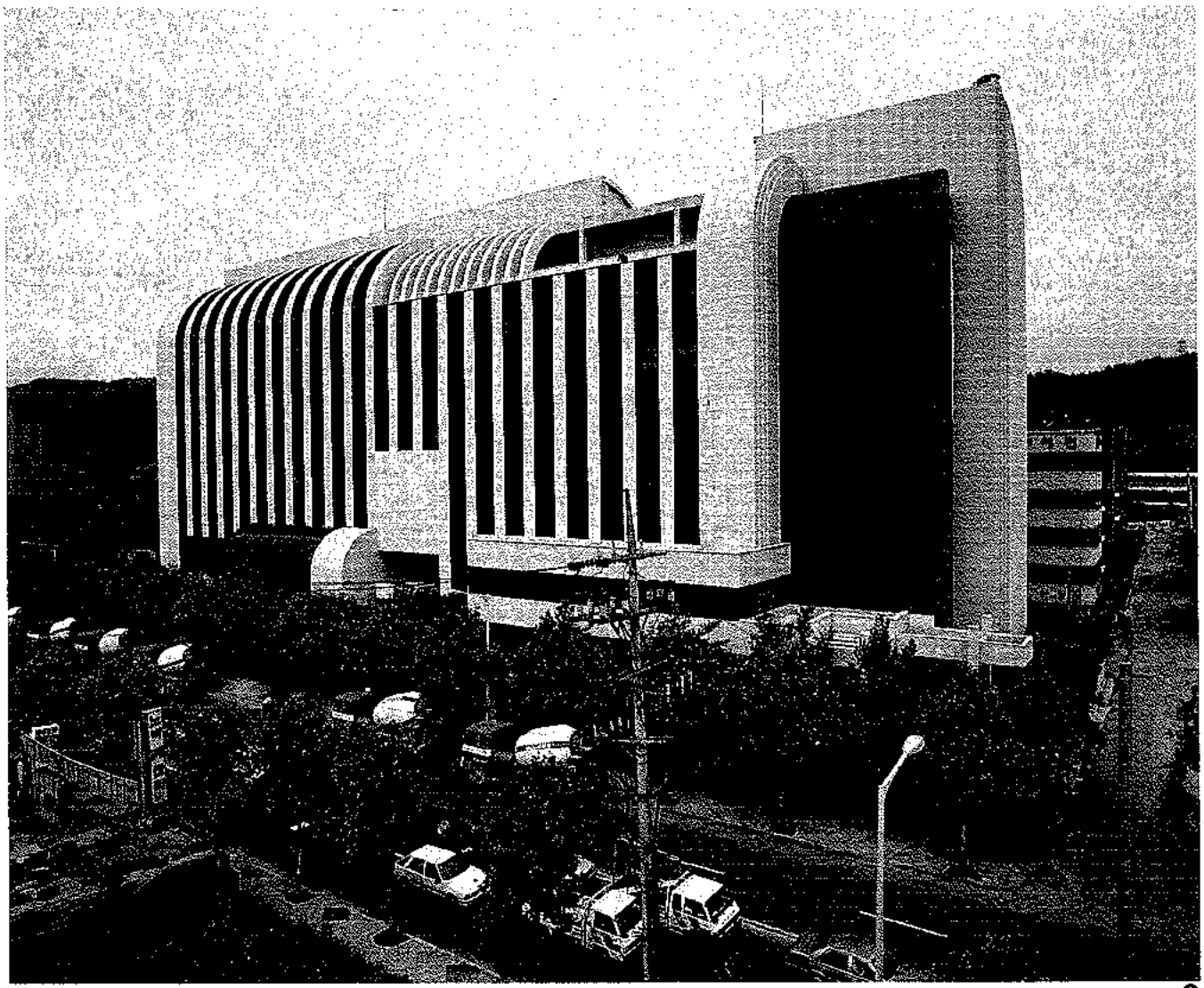

❶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지역·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3,239.3 m²
건축면적 / 1,068.36 m²
연면적 / 20,564.8 m²
건폐율 / 49.65%
용적률 / 297.39%
규모 / 지하 4층, 지상 7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화강석 버너구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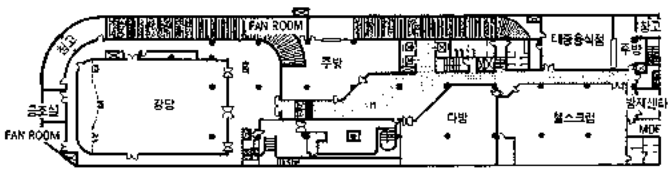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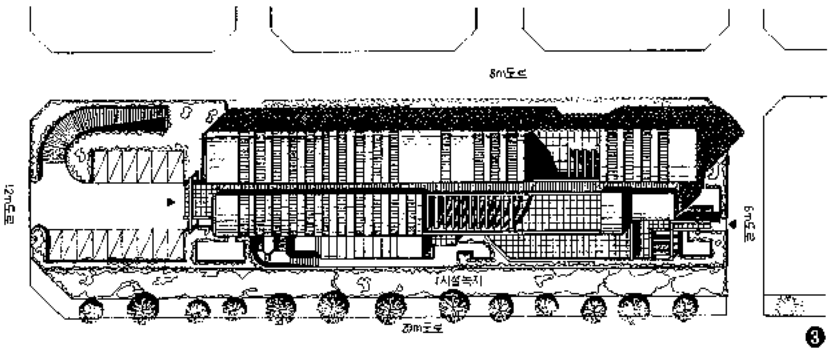

❸

길다란 장방형 대지(116 m × 28 m)에 대한 도전이었다. Mass 를 수직적 要素와 수평적 요소의 相互 보완 및 중첩과 분절, 삭제를 통한 건물의 다양성, 복합성의 표출, 제약회사라는 기업 image making 작업 등을 통해 건물에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흔히 버려지기 쉬운 옥상을 적극적으로 활용, 옥상 정원화 하였다.

❶ 전경
❷ 지하 1층 평면도
❸ 배치도

신인부문

최우수상

Arirang Place

송형규 / 금상 건축 기획
조규일 / 금상 건축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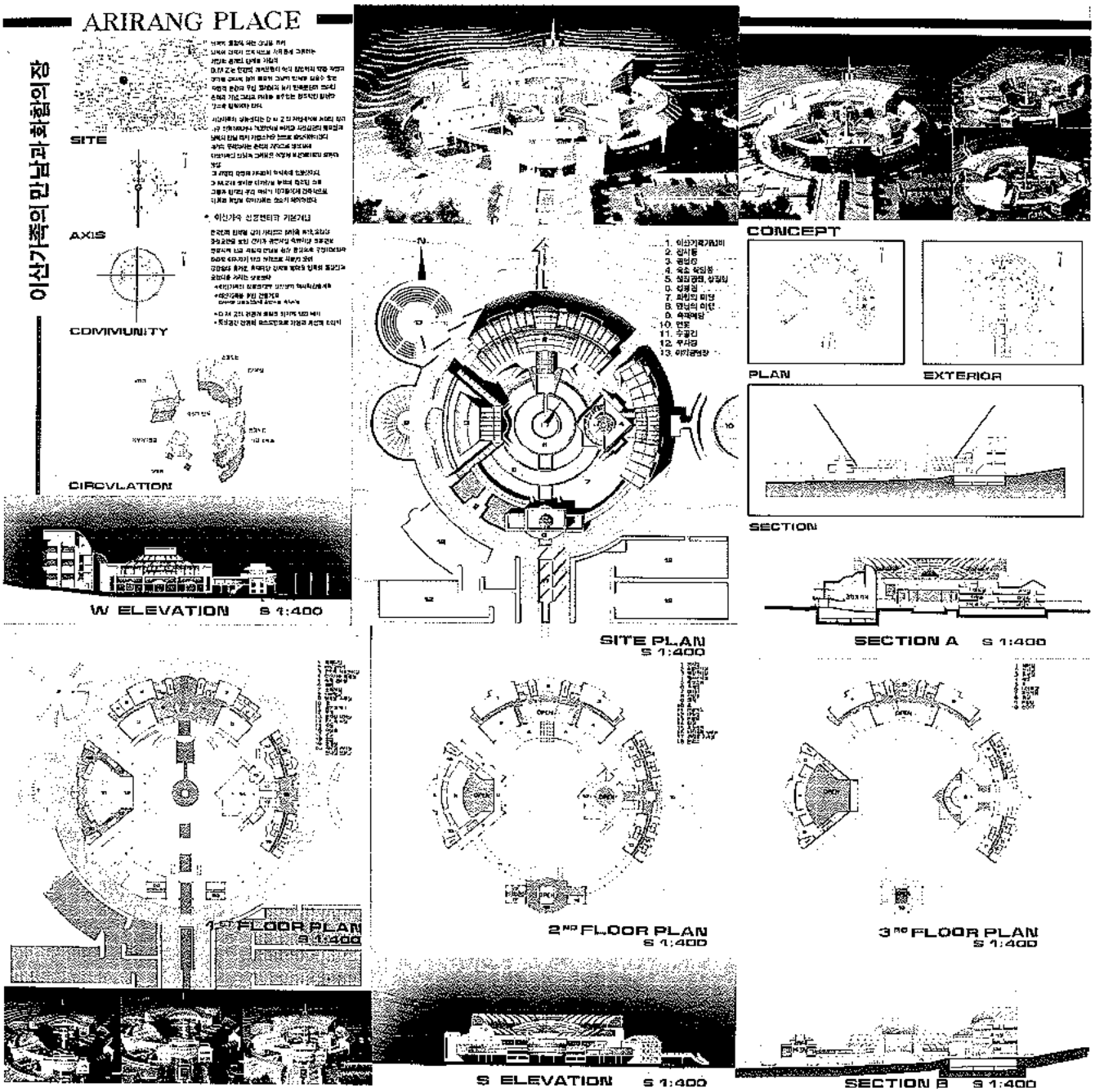

남북의 통일이 되는 그날을 위해… 남북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자유롭게 교류하는 개방적 관계의 단계를 가질때 D.M.Z 는 인간의 기계문명이 아직 침범하지 않은 자연의 영역을 그대로 살려 통일의 그날의 인식을 담을수 있는 자연적 환경이 우선 고려됨과 동시 민족분단의 쓰라린 흔적과 기념, 그리고 미래를 볼수 있는 창조적인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산가족의 상봉센타는 D.M.Z 의 자연세계를 최대한 살려 너무 인위적이거나 개소의식을 버리고 자연경관의 중요성과 남북의 만남 역시 자연스러운 것으로 출발되어야겠다. 과거 우리역사는 흔적과 기억으로 생생하다. 이산가족의 만남과 그리움은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모른다. 통일 그 강인한 감성과 기다림이 역사속에 있을것이다. D.M.Z 에 옛시절 아리랑을 부르며 즐겼던 그들, 그들과 현재의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 건축적으로 아픔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장소가 되어야겠다.

이산가족 상봉센터의 기본개념

한국인의 인식을 깊이 자리잡고 살아온 마당, 음양설, 중정공간을 도입 전시동 공연시설 숙박시설 상봉관을 연결시켜 단결 화합과 만남을 광장 중심으로 구성해보았다. 아리랑 이미지가 담긴 원형으로 서로가 모여 강강술래 흥겨운 축제마당 잔치를 벌이듯 민족의 동질성과 공감대를 가지는 상봉센터이다.

신인부문

우수상

Topo－土抱

윤평헌 /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직규 /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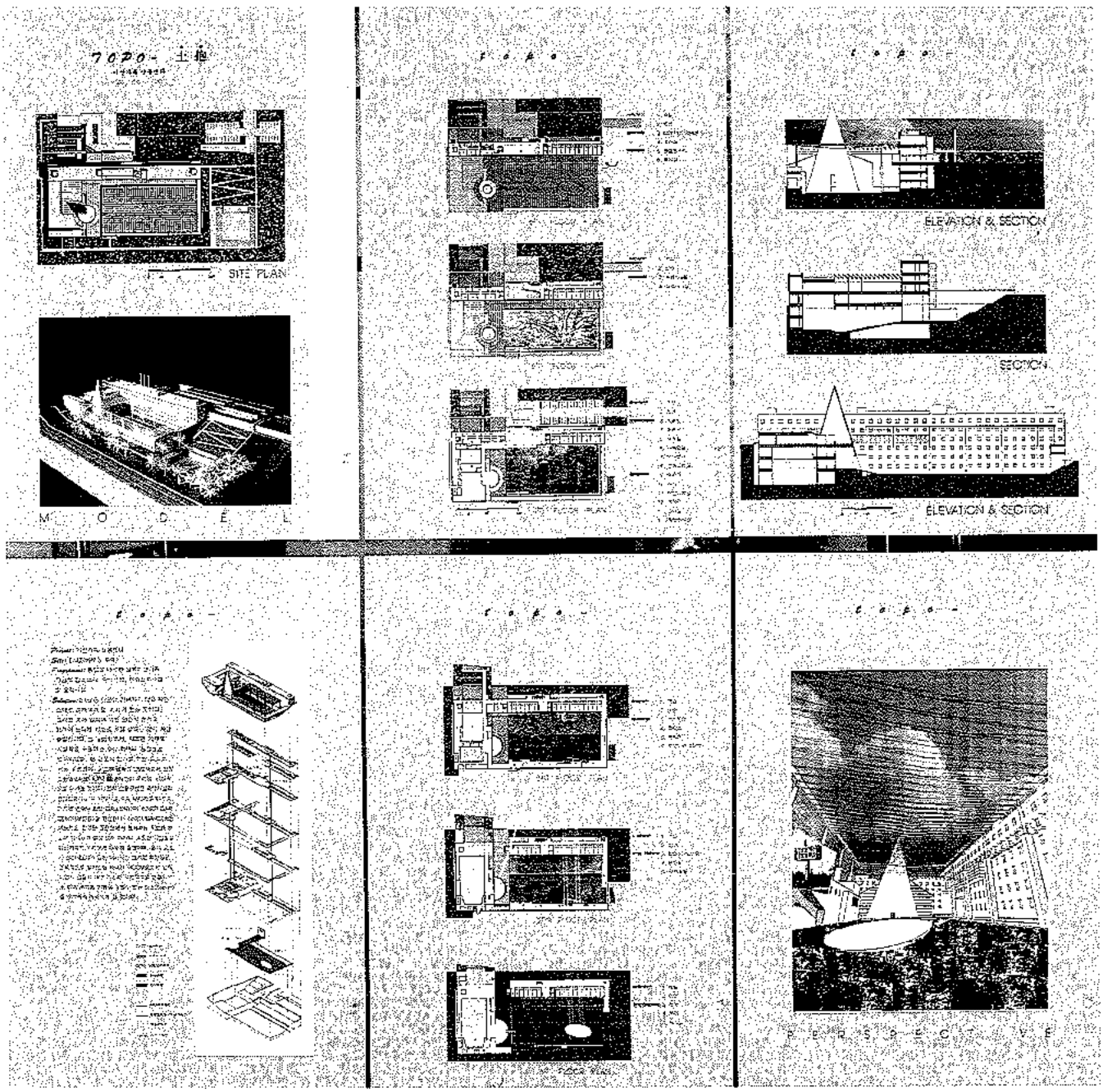

D.M.Z는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그대로 존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러한 곳에 필요에 의한 인간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면 최소로 하고 싶다는 것이 처음 출발점이다. 그 방법으로, 지표면 아래로 시설물을 수용하는 것이 최대의 관점으로 인식되었고, 본 건물의 인지를 위한 요소로는 푸르름이 끝없이 펼쳐진 D.M.Z 내에서 상징조형물로서의 Core의 형태만이 우리의 시야속에 다가올 것이다. 전체구성은 숙박시설과 관람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이 주요 Mass를 이루고, 여기에 연속된 회랑이 내부정원을 형성한다. Inner Garden은 어느정도 한정된 공간내의 펼쳐지는 푸르른 하늘과 밤하늘의 별을 보며 과거의 소중한 시간들을 이산가족인 우리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물의 요소와 Screen이 있는 야외극장 그리고 회랑 등은 전체적으로 활기있는 하나의 Room으로 인식되면서 건물의 내부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또 다른 추억과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장소(Topo－)를 우리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시간의 배후

신인부문

장려상

진 권 / 한양대 대학원
백민석 /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상

時間의 背後

The Otherside of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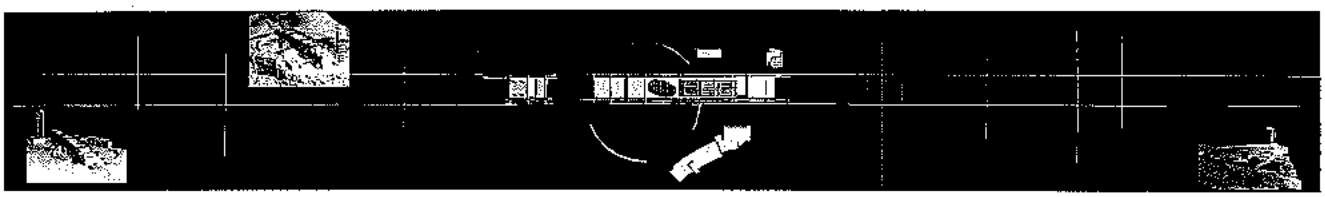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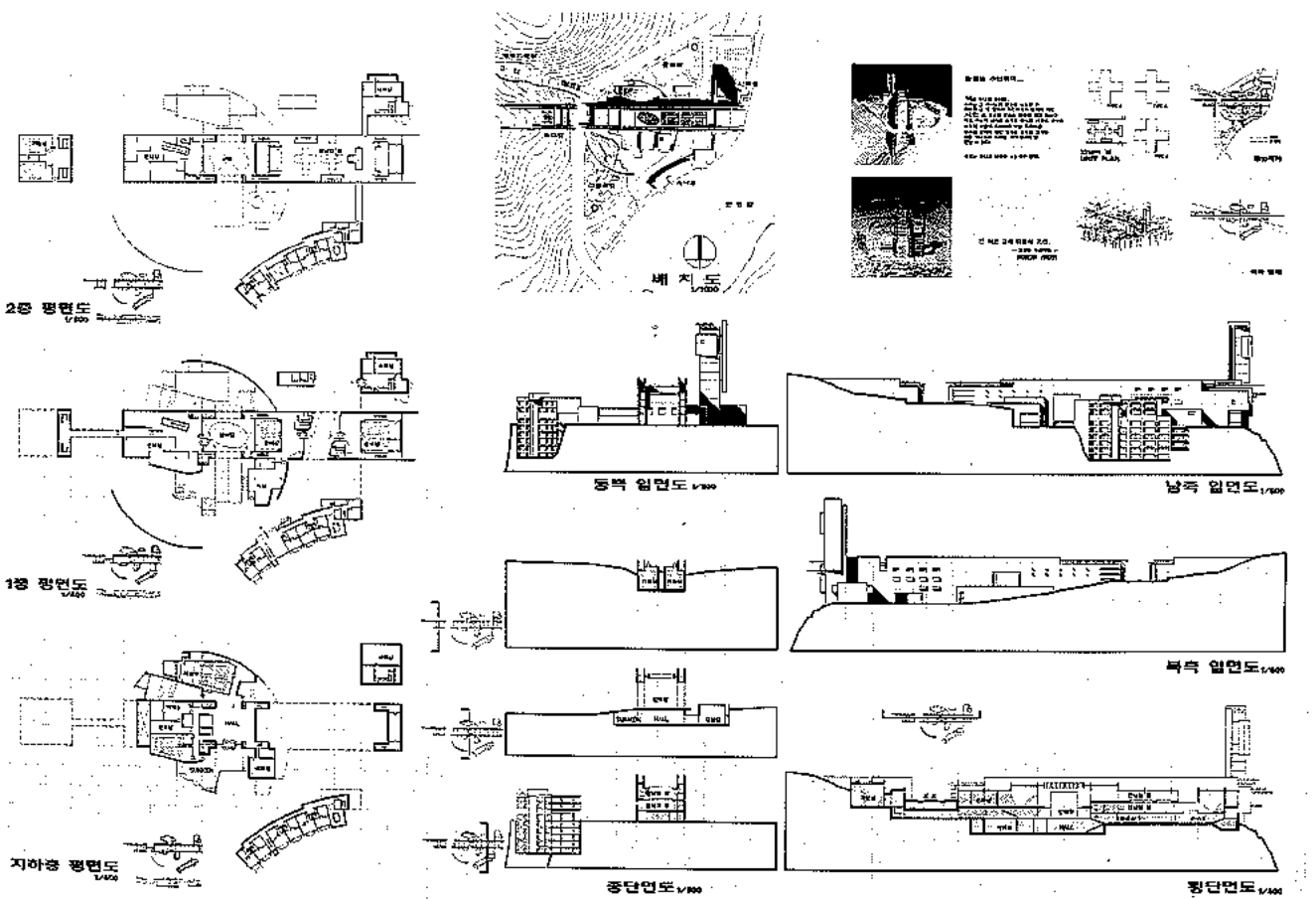

1. 최초의 생각

긴 미로 끝에 되돌아가다.

－Robert Frost, 담장을 수선하며 中－

벽은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 무너짐의 환희만을 상상할 뿐, 우리가 그 벽 앞에서 무기력하게 방치해버린 時間의 또다른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벽은 무너져 내려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時間의 흔적은 우리의 가슴속에 또하나의 벽을 구축하고 우리의 방치에 대한 댓가를 요구할 것이다.

벽은 무너져도 우리는 비무장지대를 건널 수 없다.

우리는 무너진 담장을 수선해야 한다.

2. 벽을 생각함

가. 형태(Mass)의 우선적 설정.

본 계획은 벽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는 형태를 직설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것에 대지와 빛, 물 그리고 공간이라는 요소를 개입시켜 有機體化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반도의 허리를 자르고 있는 무기질의 벽을 수선하여 有機體化하여 사용하되, 그 역사 속에서의 교훈은 매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나. 無作爲와 作爲의 竝置

대지는 일견 無作爲한 배치이다. 그러나 들판에 놓인 바위, 흐르는 냇물에는 자연의 초월적 의지가 있다. 땅위에 세워진 모든 벽은 인간의 作爲이다.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자신할 수 없다. 이 두 개의 Code는 항상 동시에 생각되어져야 한다.

신인부문

장려상

DECON D·M·Z

황길순 / 무원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윤정 /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D.M.Z 내 이산가족상봉센터 계획을 통하여 우리가 온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할 것은 분단을 극복하고 적대감정을 이겨내는 통일과 화해의 의지이다. 이것은 분단의 비극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의 보존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그러한 통일의 의지와 화해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구성하였다.

우선 전이공간으로서의 통일의 다리를 지나면 거대한 이미지로서의 벽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면의 벽도 알려져 있는 형상으로 이루어지도록 배치계획을 하였다. 광장 1,2로 이루어진 공간은 각각의 공간으로 동선을 분할시키며 광장1을 지나 광장2로의 진입시 막힌 공간을 지나도록 구성하였다. 이와같이 서로의 공간을 구분함은 우선 분단의 의미를 상징하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극복함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화해를 위한 마당으로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즉, 이번 계획안은 우리 민족의 고통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지나 화해의 의지를 예술적 작품이나 종교적 상징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신인부문

장려상

한 어우름 그리고 승화

이근규 / 아뜰리에 일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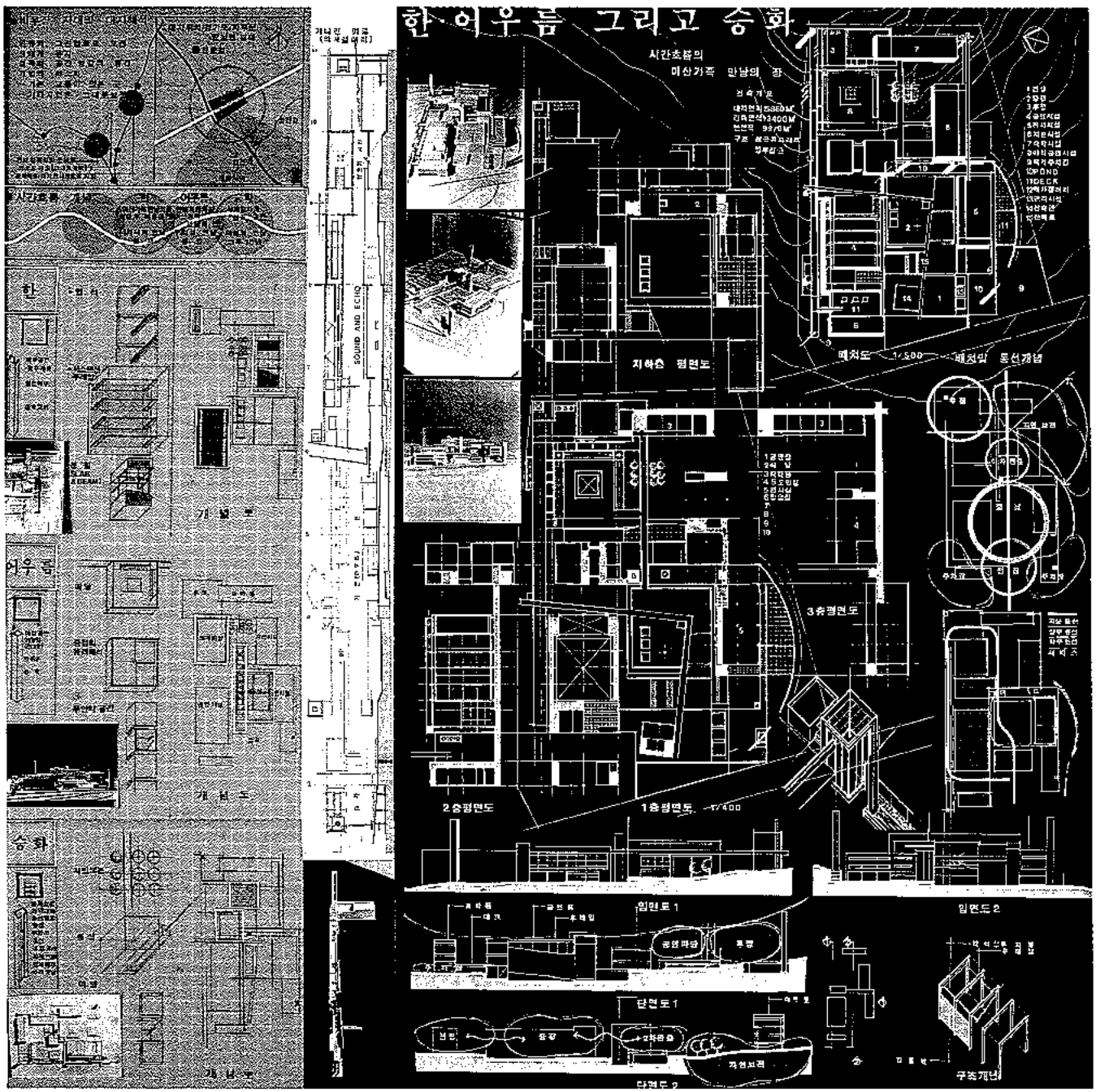

본 계획안은 시간이 의식된 이산가족 상봉의 장이다. 동일 전(현재)에는 한을 푸는 장으로써 외부공간 위주 및 현실의 아픔 위주로 계획되어졌으며 미완성으로 증축 고려가 되어진다. 통일 후 민족화합의 장으로써 남북 동질성 회복에 주안점이 두어져 마당기능이 극대화 되며 그 후 10년 후에는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역할을 하게된다. 건축계획으로는 우리의 전정, 중정, 후정의 공간흐름을 연계시켜 공유할 수 있는 공간감을 느끼게 하였고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부 옹벽을 대지 중앙까지 끌어들여 개발의 억제 이미지를 둠으로써 보전의 의미를 갖게 하였다. 내재된 이산가족의 한을 풀고 남북의 어우름을 그리고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승화시켜…… 그날을 기다려 본다.

학생부문

최우수상

길 위에서

이충훈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김호정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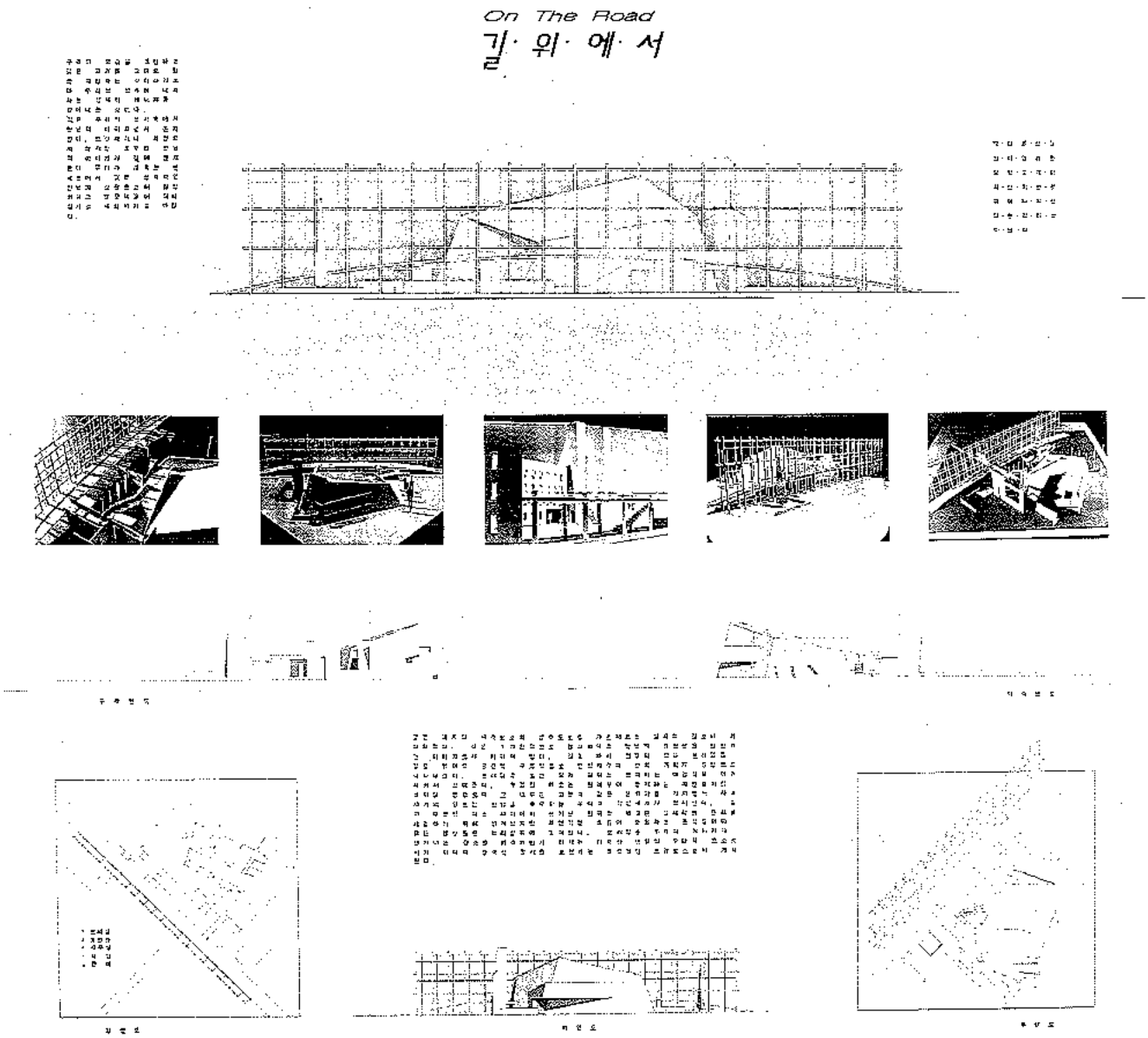

우리의 것을 표현한다는 과제 앞에서 우리는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뿌리깊게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정서적 에너지를 끌어내고, 새롭게 형상화하는데 더욱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만남은 요란하다거나 과장되지 않는 것이었으며, '길'은 이러한 만남의 이미지라고 생각되었다. 먼저 우리는 대지의 남측도로와 서측도로 사이에 대지를 가로지르는 길을 계획하기로 하였다. 2차원적인 길이 3차원적으로 형상화되고, 영원한 만남의 상징으로서 길은 띄워졌다. 길 측면으로 정열된 Frame 은 길을 형태적, 구조적, 공간적으로 한정해 주며 본 계획의 정면은 길 뒤쪽으로 보이는 배경을 여과시켜 보여준다.

길 이외의 형태들은 배경으로 존재한다. 무정형의 Mass 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자연物처럼 보이길 원했으며, 그 사이에서 생겨난 인공의 벽들은 자연적인 흐름에 순응하는 건축물들의 흔적이다. 모든 형상들은 보리밭 위에 놓여진다. 보리밭은 우리의 이야기가 생겨나는 장소를 함축한다. 보리밭은 더이상 우리 생활의 수단적 요소가 아니라 한국의 정서를 표현하는 직극적인 조경요소로 존재한다. 이렇듯 우리가 계획한 한국관은 한국적 이미지의 유추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학생부문

우수상

한국관 —과거. 현재. 미래

김동민 / 부산공업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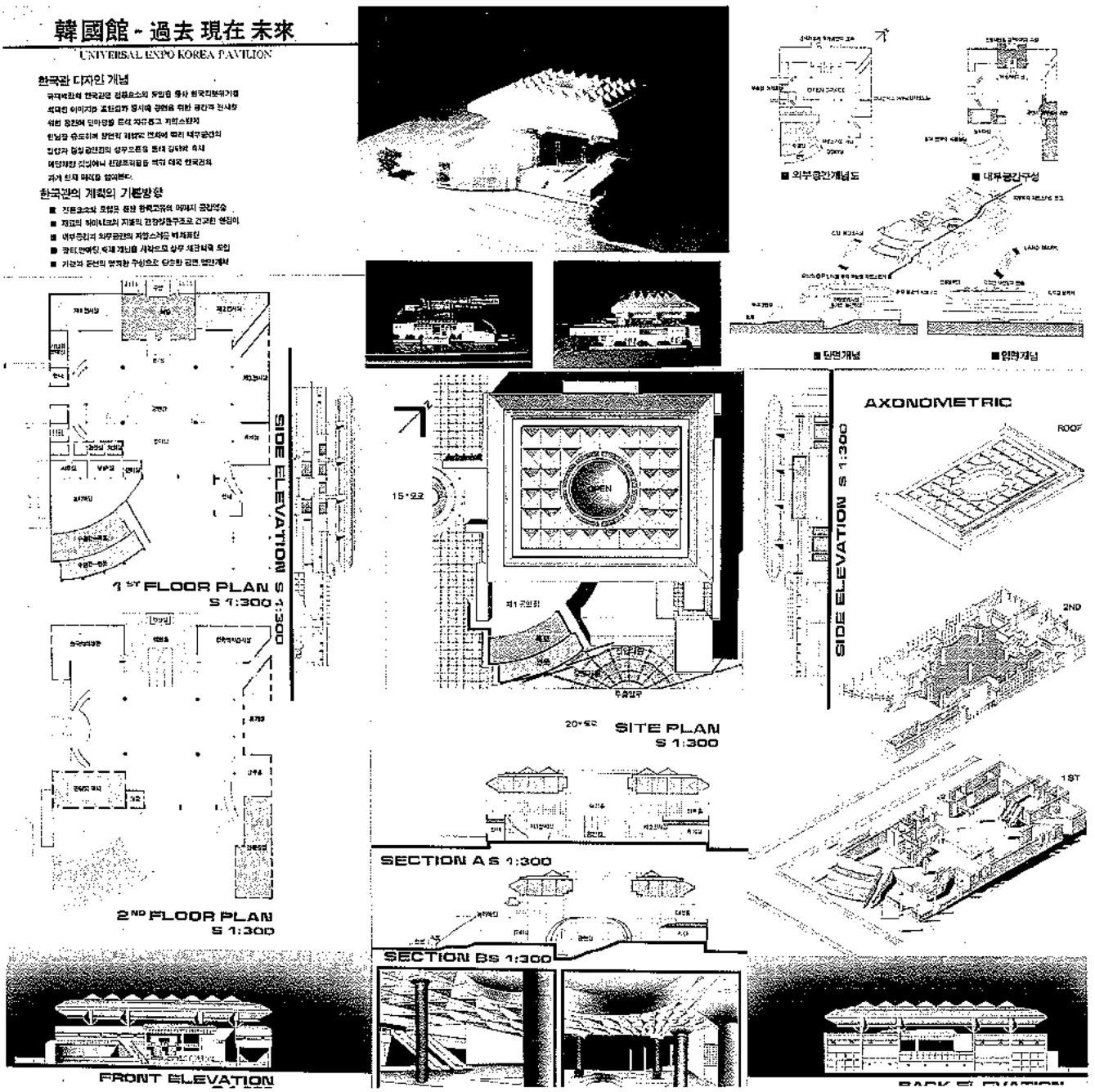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국제박람회는 대규모 국제 교류 문화행사고 그 시대의 국가적 이벤트나 기술사상의 귀중한 역할을 하였고 개최 또한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척도로 국외에 소개하는 주요한 기회가 되어왔다.

한국관 디자인 개념

국제박람회 한국관은 전통요소의 도입을 통한 한국적 분위기를 최대한 이미지로 표현함과 동시에 공연을 위한 공간과 전시를 위한 공간이 안마당을 통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유도하며 평면적 레벨의 변화에 따라 내부공간의 열림과 중앙 공연장의 상부 오픈을 통해 장터의 축제 마당처럼 깃발이나 환경조각물을 띄워 더욱 한국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아본다.

한국관 계획의 기본방향

· 전통요소의 도입을 통한 한국고유의 이미지 공간 연출

· 재료의 하이테크와 지붕의 경량철골구조로 견고한 안정미

·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자연스러운 배치표현

· 장터, 안마당, 축제개념을 시각으로 상부채광 적극 도입

· 기능과 동선의 명쾌한 구성으로 단순한 평면, 입면 계획

학생부문

우수상

맥 Korean Pavilion

유리광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은경 /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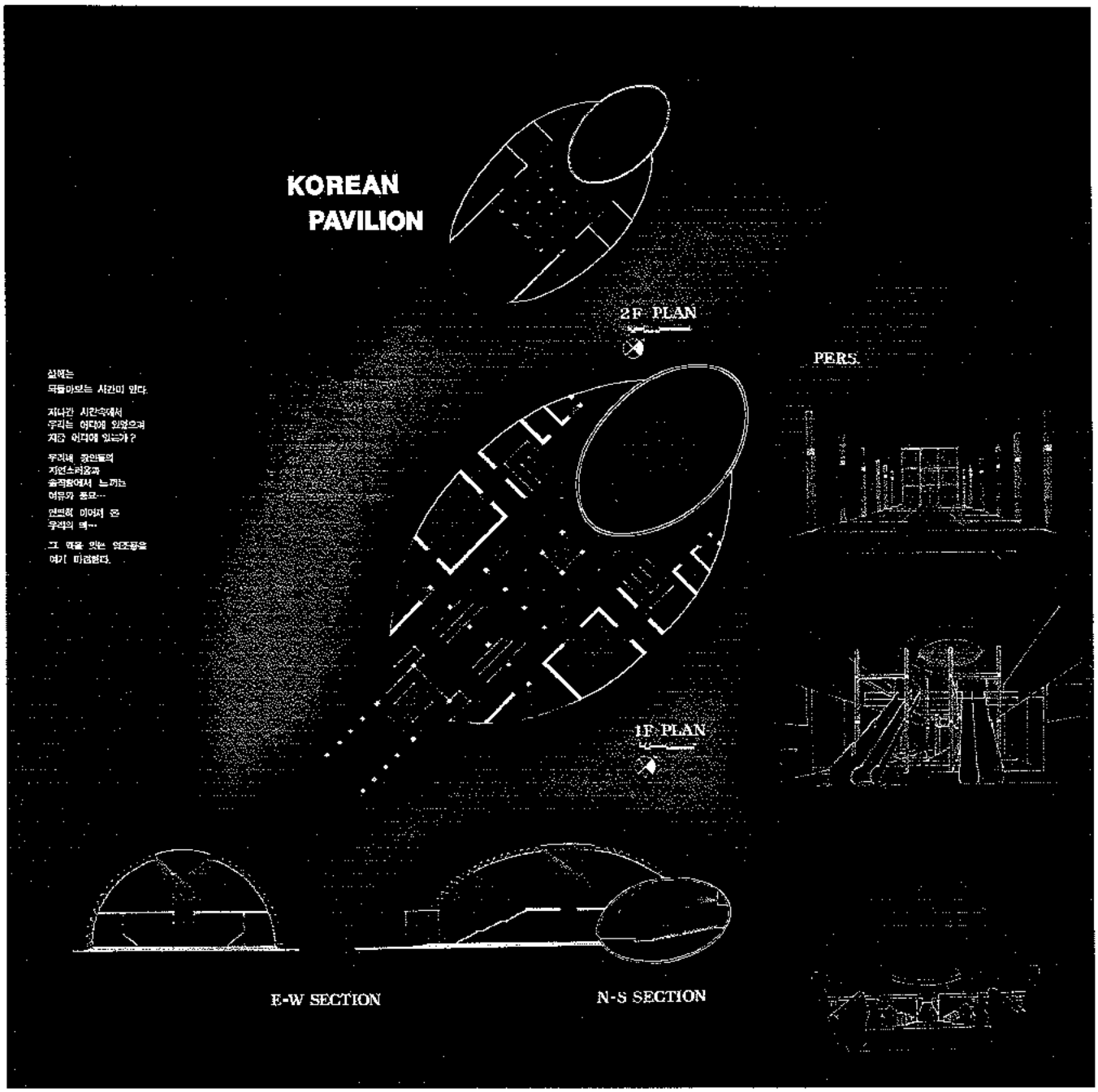

능이란 떠난 사람이 남은 사람과 만나는 유일한 장소이다. 떠난 사람은 능을 통해 남은 자에게 충고하고 타이른다. 남은 자는 능을 통해 다가올 자에게 알려줄 정신을 배운다. 이로써 떠난 자와 남은 자가 다가올 자는 하나의 커다란 脈을 이룬다.

학생부문

장려상

한·정·자유

박태훈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소용영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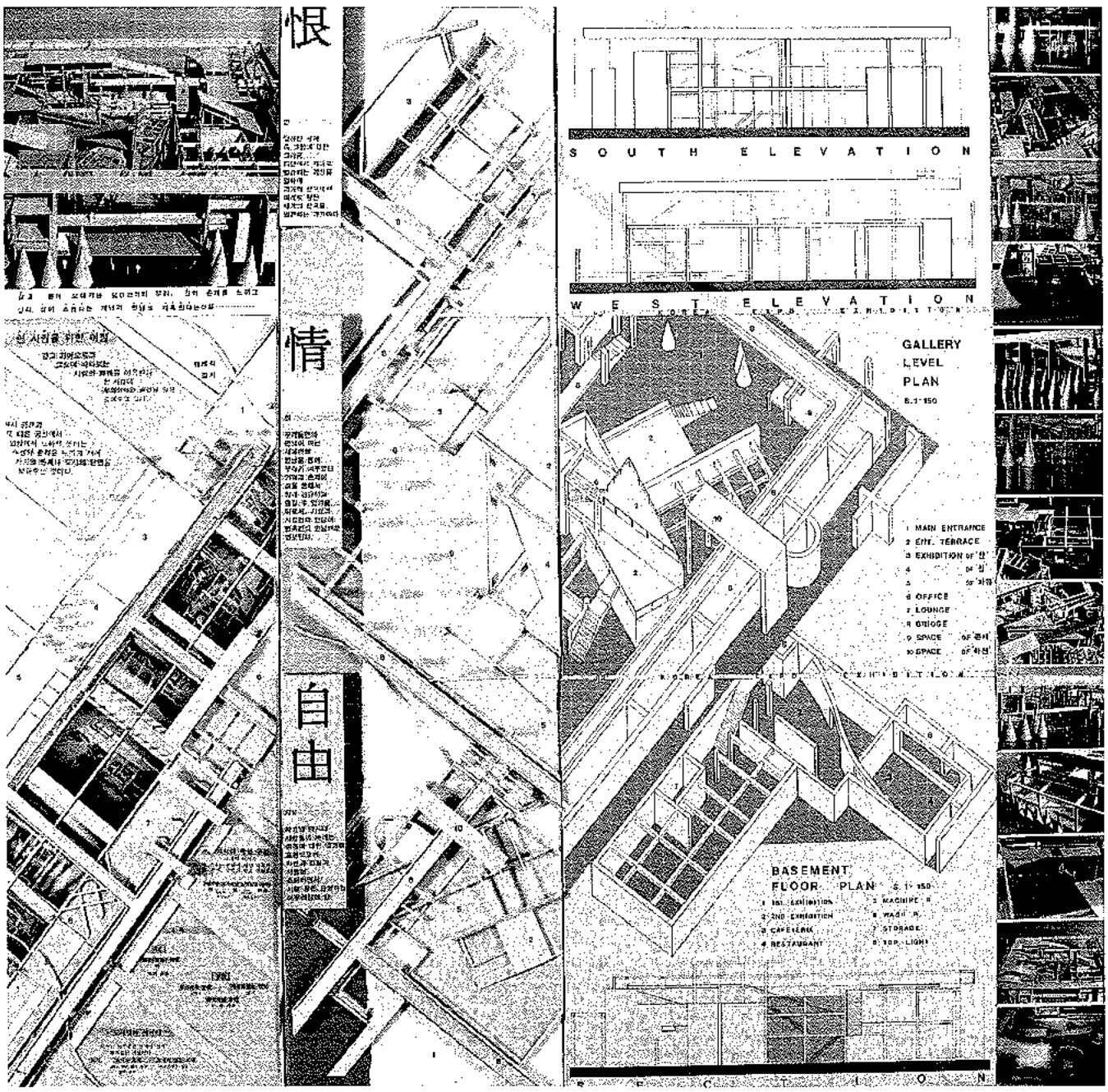

만남이라는 주제에 대해 정히 공존하는 공시성, 과거와 현재, 외연과 내연의 만남등을 통해 민족성의 표출로 인한 세계인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시간과 공간의 축으로 고개의 이미지를 설정했다. 한의 이미지는 잊혀진 세계 즉 고향에 대한 향수, 타아에서 자아로의 발전하는 과정을 말하며, 과거의 한국에서 미래로 향한 세계의 한국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표현하였다. 정의 이미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만남이 아닌 세계인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이루었던 기억과 흔적이 정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으므로 인해 민족과의 만남이 아닌 사람과 사람들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자유스러움의 이미지는 작가의 의지나 사람들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열정의 표현으로 자연과 건물과 사람이 조화하면서 서로 공존, 공생하는 어우러짐의 장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이미지들이 합해져서 도시성의 개념을 나타내게 되었다. 한의 공간은 전통적인 공간 패턴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사면체의 형태가 미래의 도시를 관통하는 이미지로서, 존재와 자연의 도입이 의식적인 공간의 형태를 만들어 주며, 내부—외부—내부의 형태로서 과정적 공간의 구성에 참여한다는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학생부문

장려상

Proposal of Meeting

김희정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진근식 /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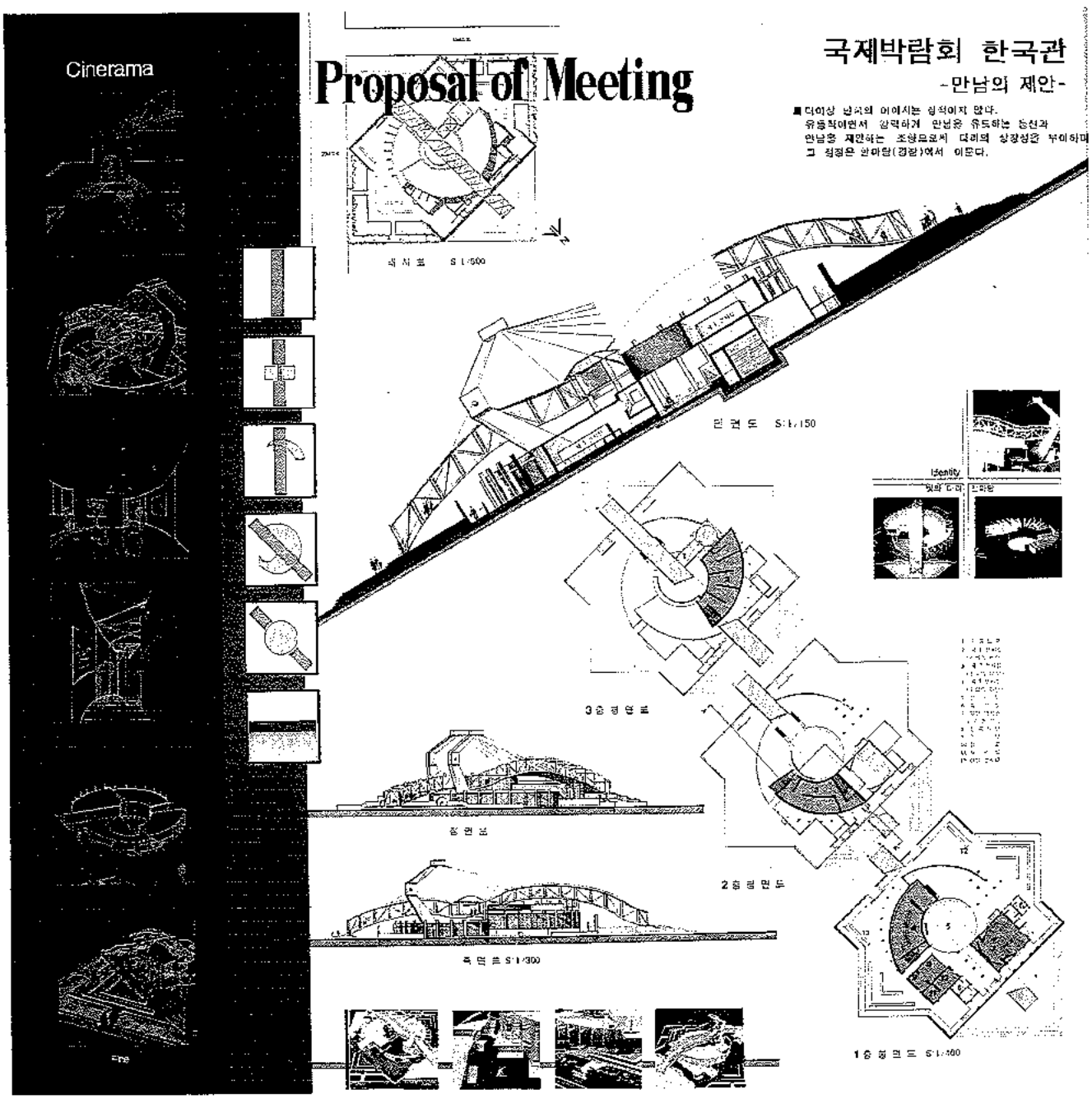

더 이상 한국의 이미지는 정적이지 않다. 유동적이면서 강력하게 만남을 유도하는 동선과 만남을 제안하는 조형으로 다리의 상징성을 부여하며 그 절정은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한마당(광장)에서 이룬다. 한국의 identity는 다리, 광장, 회랑, 기둥의 선 등의 매, 공간, 재료, 동선으로써 얻을 수 있다. 다리를 시간의 축으로 잡고 이에 건물의 사건변화의 또 한 축으로 하여 시간에 편승하여 사건에 이르는 scene 구성을 기대한다. 세부 프로그램 작성시 만남은 기승전결 Zone별로 테마를 부여하였다. 전시관람시 시각적이기보다 행위적 체험을 유도한다. 한국을 만나기 위해 주 진입을 통해 이해, 친숙, 화합의 마당을 거쳐 한마당에 이르러 한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동화할 수 있다.

• 세부 전시 프로그램

제1전시실(이해의 마당)—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소개하여 한국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한다.

제2전시실(친숙의 마당)—이해의 마당을 거쳐 오늘날 한국의 변모를 전시하여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제3전시실(화합의 마당)—각 전시실을 돌면서 한국관을 매개로 화합의 의지를 인식시킨다.

한마당—넓어진 공간속에서 하나의 이벤트로 세계는 만남을 이룬다. 이로써 한국관의 Cinerama는 막을 내린다.

기·승·전·결

학생부문

장려상

박상준 / 인천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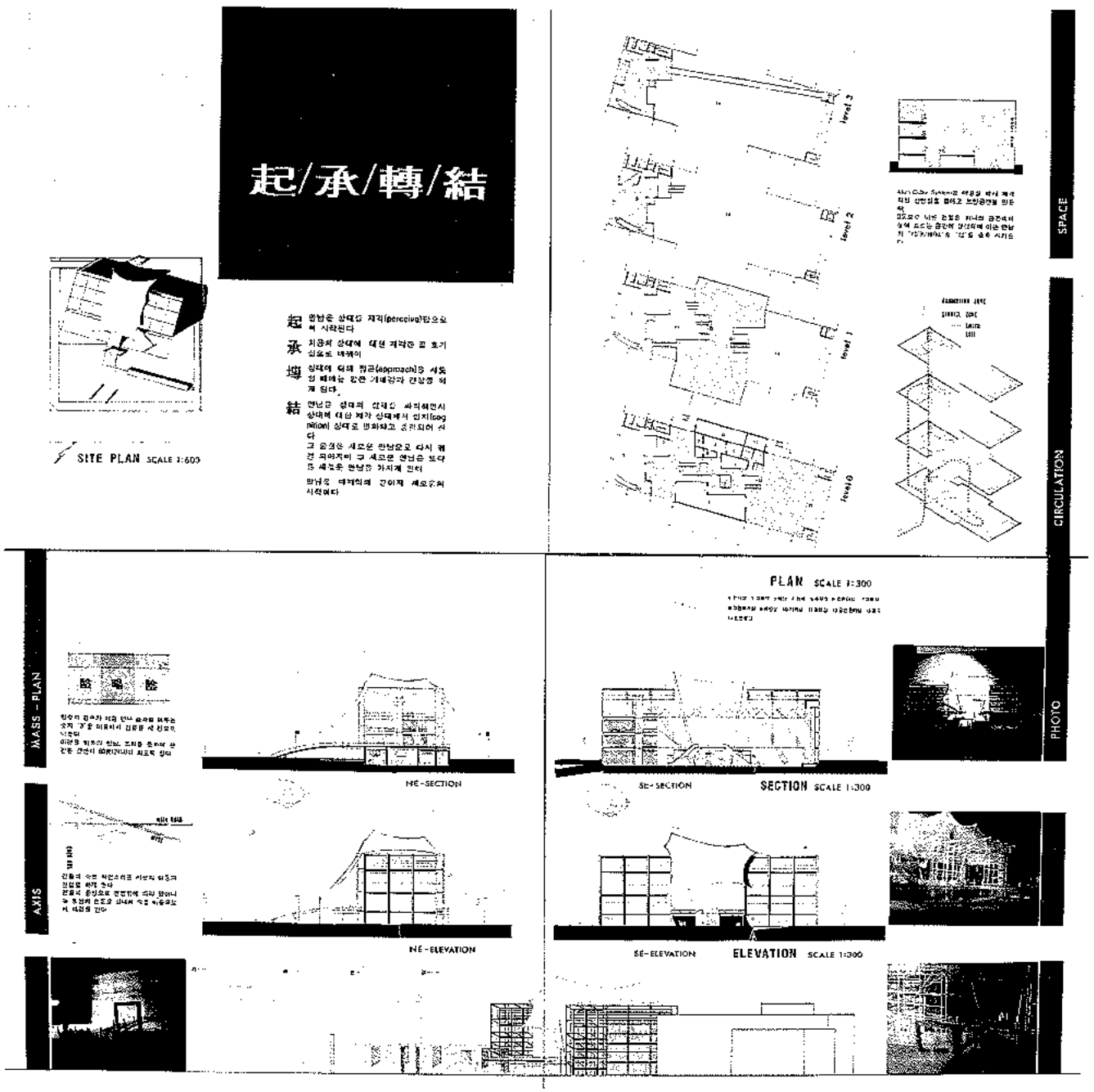

박람회장내 한국관은 우리네 마을 진입의 기·승·전·결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또 이 진입의 기·승·전·결을 '만남'에 연계시켰다. Mass와 Plan은 陰·陽의 최초의 만남, 조화의 수인 '三'을 기본하여 하여 3간(한 간은 80尺×80尺(24 m ×24 m)의 Module로 이루어진다)으로 이루어지며 이 3간은 다시 하나의 커다란 공간으로 합쳐진다.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상대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간을 열리게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Projection에 의한 폐쇄적 영상실, 공연실을 지양하고 Multi-Cube System을 이용하여 영상, 공연실 까지도 열린 공간속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어울리는 놀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열린 공간은 단 차이를 둠으로써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고 Glass Wall을 이용함으로써 공간적 팽창감을 더했다. 한국관은 정적(외부)이면서 동적(내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절제된 입면을 만들면서 마을장터 분위기의 내부를 만들었다.

East Meets West

학생부문

장려상

김형섭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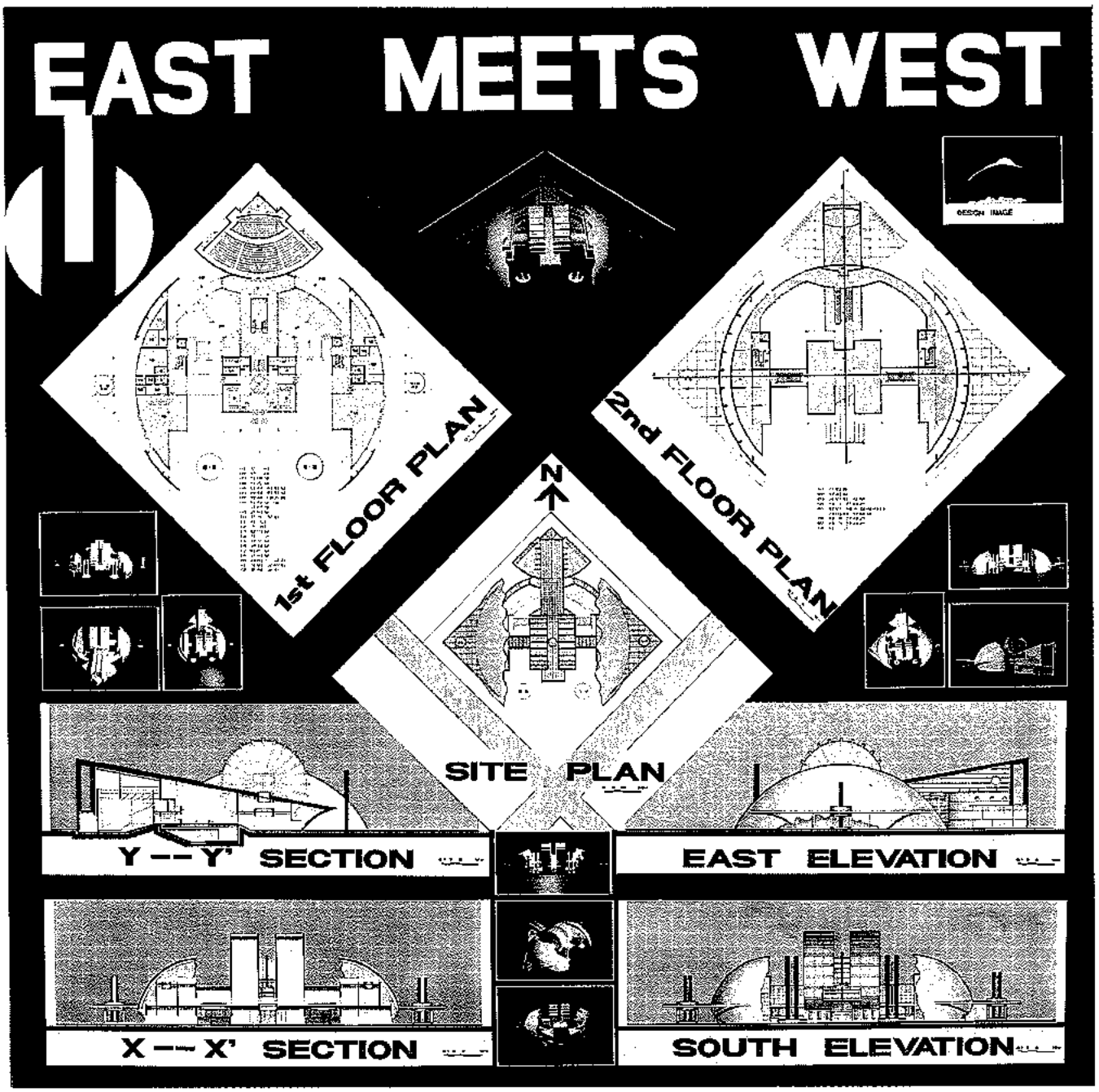

상징적이며 조형적인 단순한 이미지를 설정하여 동이 트는 새벽의 일출에서 이미지를 얻어 과거의 동, 서양간의 양극적인 현상은 조형적인 구를 이원화시켜 표현하고 중앙에 거대한 두 개의 원형형태를 두어 동, 서간의 화합을 나타내고 사선적인 형태는 동서가 화합하여 미래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연출했다. 일종의 템포러리 건축물에 상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전체적인 건물의 단순한 오브제적인 것으로 강한 이미지가 나타나게 하였다. 진입을 고려하여 대지의 방위축을 따라 직선적인 공간을 설정하여 위계성을 주고 축의 양편에는 이원적인 반구를 두어 건물개체로서 감싸는 내부공간을 형성하여 내부의 중정형식의 장을 두어 옥외 공연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예술을 공연한다. 평면의 조닝은 일층에는 서비스, 사무시설을 이층에는 과거의 우리 역사, 현재의 우리, 미래의 우리를 다양한 전시방식으로 세계의 전시관을 순회하는 형식을 채택하였다. 각각의 전시관 구분은 브라지의 평행 에스컬레이트의 이동 영상전시로 구분하여 연출했다.

학생부문

장려상

緣을 위한 Bridge

박선영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유창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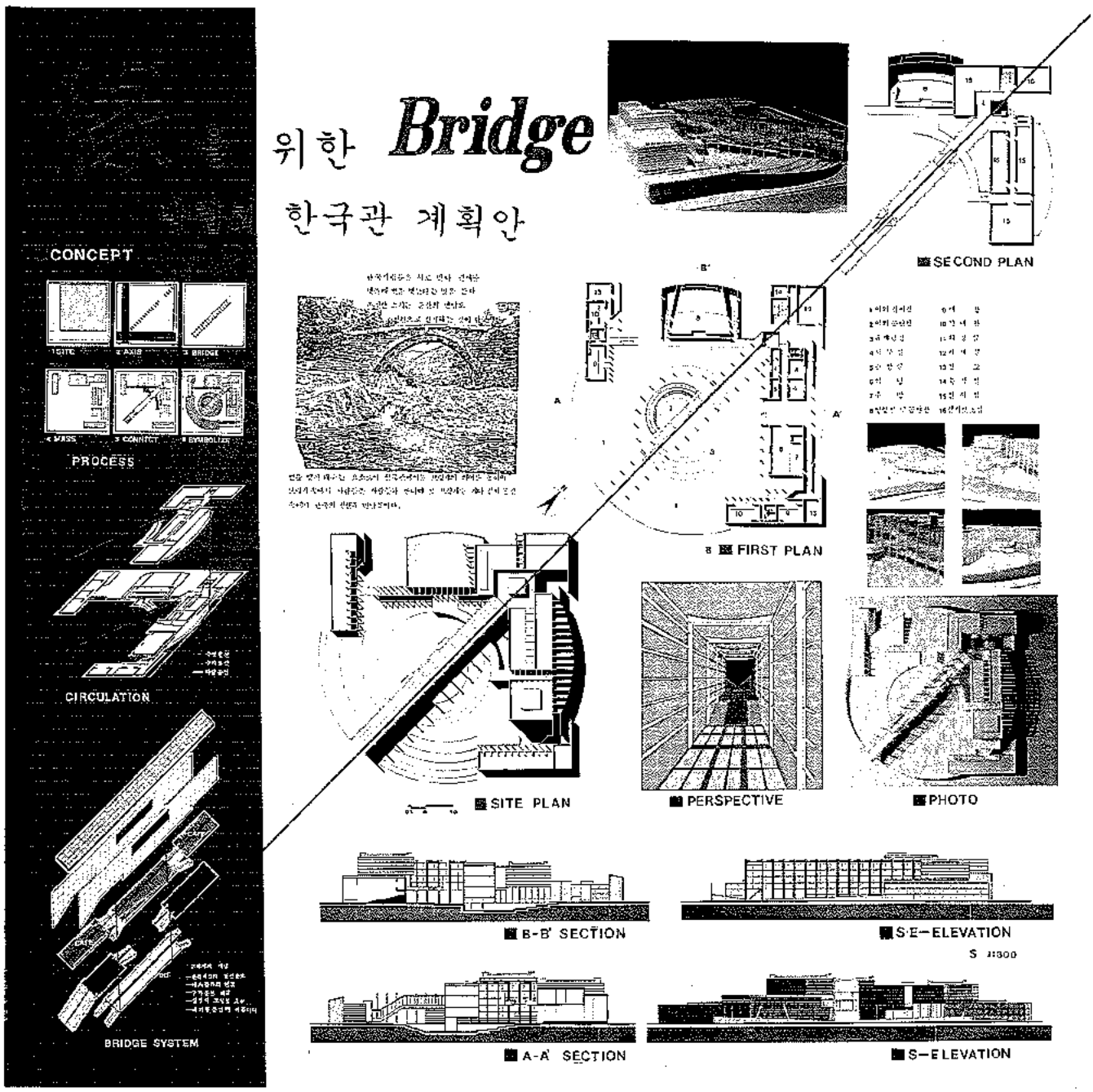

개요

만남을 주제로 한 박람회 한국관에서 우리가 계획한 것은 만남에 대한 한국적 해석을 박람회 속에 적용시켜 이에 연결고리라는 의미의 Bridge를 사용하여 한국적 만남인 연(緣)을 형상화 시켰다.

배치계획

- 대지의 조건에 의한 주진입축 설정
- 축(軸)에 Bridge를 배치하여 주진입 및 주동선 유도
- 만남의 기하학적 요소인 원형을 야외 공연장 및 광장에 도입
- 대지의 충분한 공간 활용 및 자연스러운 건물과의 만남을 위한 휴식공간 도입

평면 계획

- 전통적 다리의 원형곡선을 현대적 브릿지의 frame으로 디자인
- 각 기능으로 분리된 매스 연결부분의 다양한 변화
- 주요 매스 벽 패턴의 통일로 한국적 이미지 강조

단면계획

- 자연스러운 관람자들의 동선에 단 차이의 변화로 지루함 피함
- 수직적 만남의 연결고리는 다양한 레벨 차이로 표현

학생부문

장려상

Be Time Yard

박찬준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최창학 /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마당은 내부에서 못이루는 크고 작은 많은 집안일들을 이루어지게 해주며 여러 의식적인 행사—잔치, 장례—를 멍석과 차양을 이용해 치루게 해줌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모이게 해줄 수 있는 空間으로 해석된다.

또한 궁궐의 정전마당에는 품계석들이 늘어서 있어 국가적 행사를 이룰 수도 있는 큰 규모의 기능과 일반 가옥의 반 사적 공간인 後廷을 두어 상당히 정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최초 의도는 우선 다국의 客을 유도하며 만남을 형성 문화의 소개와 함께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한 마당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전 대지에 물을 들여 띄움으로 만남을 위한 吸入性과 獨立性을 강조하였다.

Mass의 형태는 흐르는 시간의 마당이라는 대전제 하에 Calm(정적), Chaos(혼돈), Concord(화합)이라는 명칭으로 각 전시동을 특징지우며 과거, 역사 소개, 혼란스런 현대의 과도기적 시대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인 미래를 표현하려 하였다.

각각의 전시관엔 중앙의 핵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마당들이 단차로 연결되며 정적인 후정을 연상케 하는 마당, 회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당, 행사를 치르는 마당, 마당과 마당을 이어주는 매개체 기능을 수행하는 마당…, 각기의 소규모 마당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였다.

학생부문

장려상

Vertical Plaza for Cross Encounter

김찬중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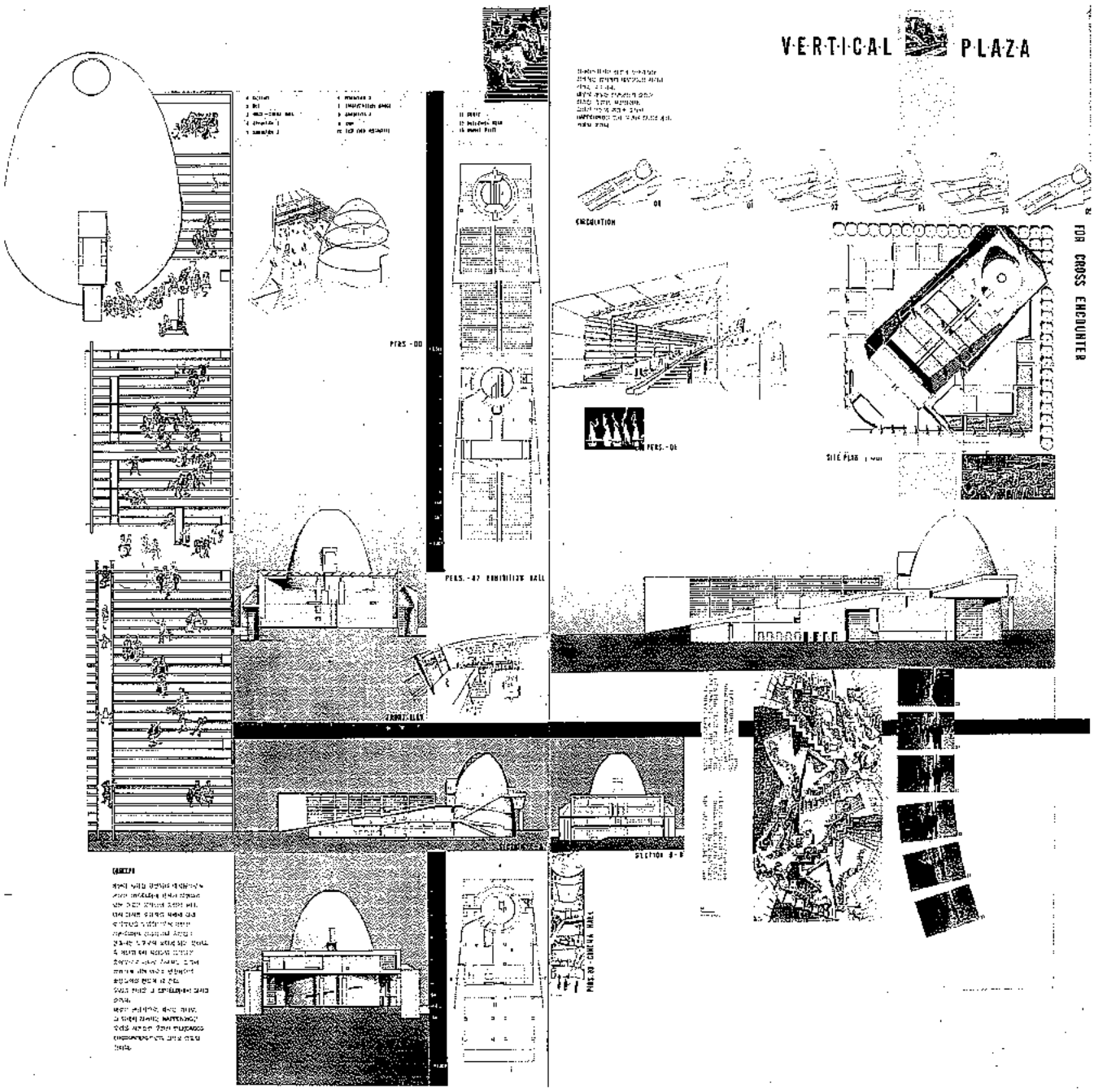

이 건물에서는 관람객간의 communication 에 happening 이라는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먼저 Duane Michals 의 사진 작품에서 보듯이(panel 참조), 두 사람이 골목을 통과하면서 서로에 대해 어설프나마 관심을 표현하는 happening 을 연출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좁은 골목에 의해 제한된 촛점이 발생함으로서 서로의 시각을 상대방에게 집중시켜 관심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광장이라는 것은 보다 넓은 장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는 있으나 구심점이 형성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계단은 그것이 가지는 수직성의 긴장감과 목적지의 가시성 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사람들간에 시선이 교차하게 되며 자연스레 제한된 촛점이 발생함으로 Duane Michals 의 사진 작품에서와 같이 happening 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계단이 사각형 평면위에 배치됨으로써 균일한 장(Field)에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곳은 움직임의 중심이 된다. 다시 말하면 수평재의 지배에 대해 수직방향을 도입함으로써 평탄한 장(Field)에 상승성이나 중심성을 연출하는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즉, 계단 위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은 솟아오르고 하나로 좁혀지는 촛점이 발생하게 되며 비로소 인간행위의 소용돌이를 만들게 해준다.

학생부문

장려상

벽을 허물고

황인욱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최 건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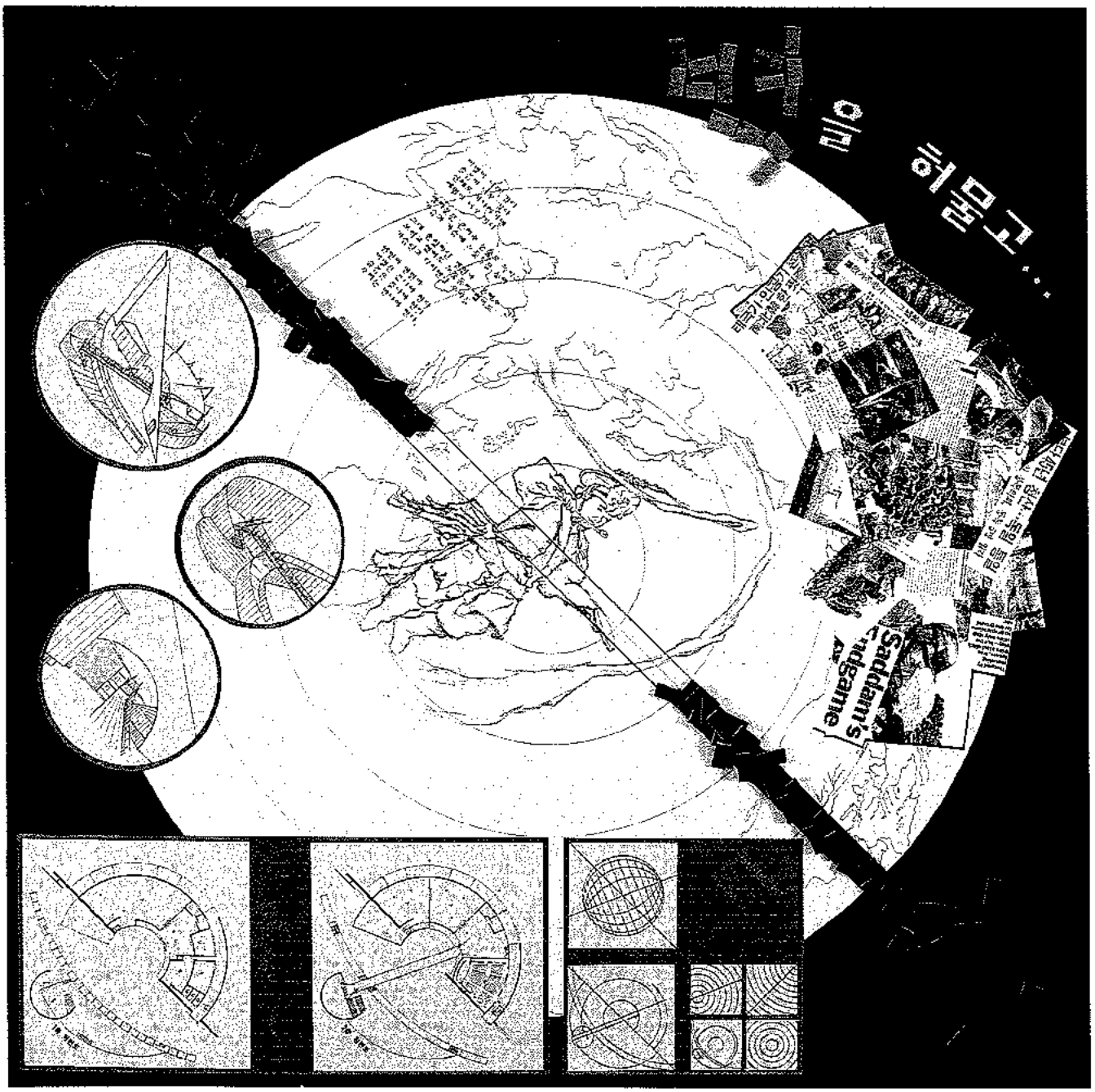

소리울림, 벽

개인 국가 민족간의 갈등 분열을 상징하는 벽을 인간이면 누구나 함께 공유하고 즐기는 음악의 소리울림을 상징하는 동심원들을 통하여 허물어 나가는 것을 표현하였다.

축

가장 중심이 되는 원의 중심에서 평면과 입면에 23.5도 기울어진 지구의 자전축을 배치하여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Bridge

만남을 가로막는 벽을 관통하여 서로를 이어주는 사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며 구조체로서는 한국 전통놀이인 차전놀이에서 차용하였다.

형태

한국관으로서 한국인의 기상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표현하고자 사선을 사용하였다. 전통 공간의 단, 정자, 한지너머로 보이는 실루엣, 성벽 등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도로에서 진입시 단을 두어 공간의 변화를 주고 유리벽을 통하여 마당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느낌으로 들어가고픈 충동을 유도하였다. 매개공간인 작은 동심원에서 시작하는 다리를 통해, 마당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보며 내부로 들어서게 된다. 2층에서 점점 넓어지는 공간을 통해 한국의 놀이문화를 간접 경험한 후 1층을 통하여 놀이마당으로 나와 실제적인 경험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학생부문

장려상

Discovery of Korea

김일수 / 경원대 건축공학과
최소영 / 경원대 건축공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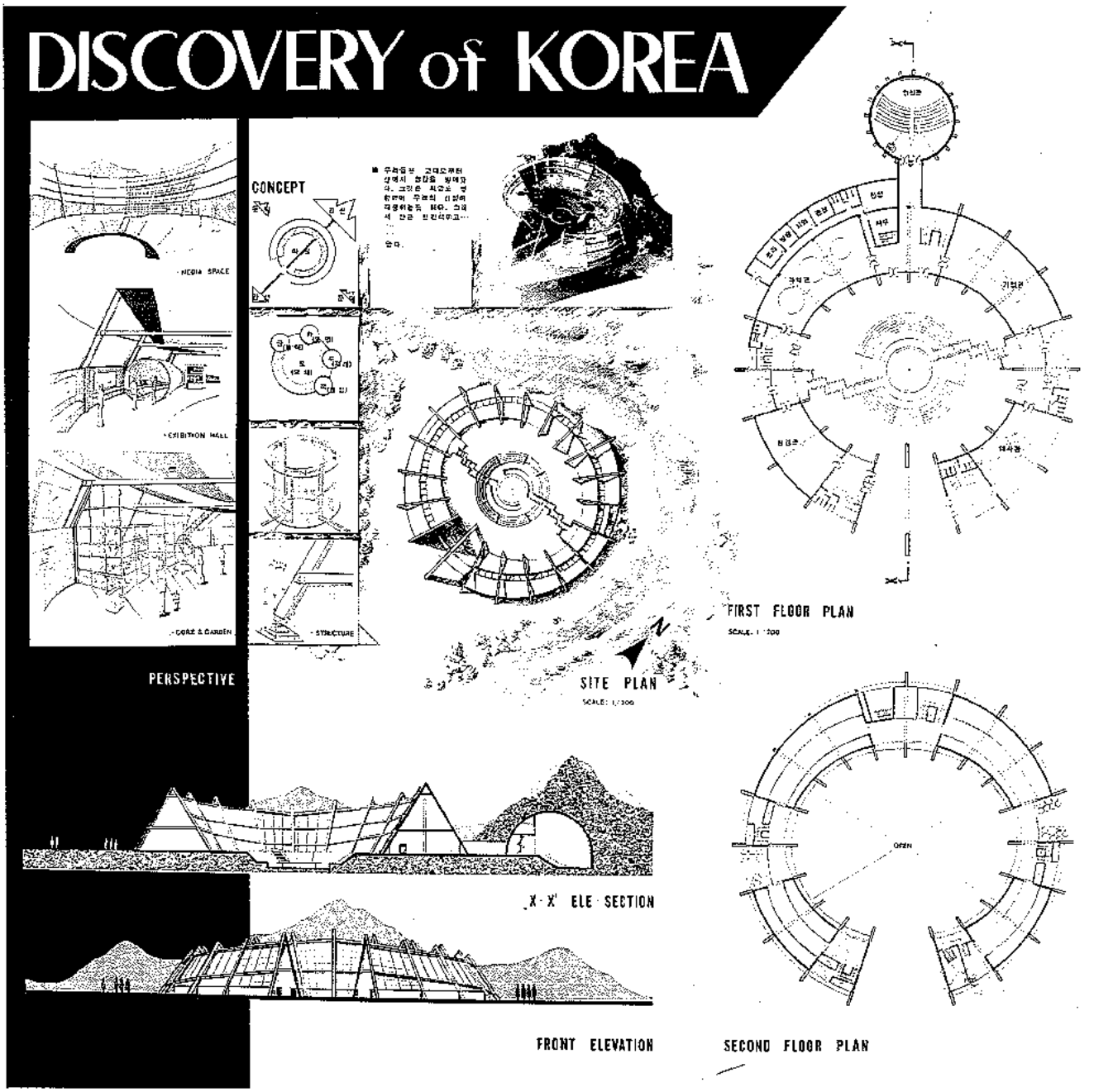

본 계획의 테마는 특정행사 기간에 한 나라의 이미지를 결정해 주는 국가관으로 비슷비슷한 장소에 여러나라의 거의 같은 규모의 건축이 병렬해 있기 때문에 건축의 형태와 공간이 뚜렷해야 한다. 본 계획에서 주위를 감싸고 있는 산들은 공간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水火木金土의 오행의 의미는 각 Zone 들에 부여되며 특히 冗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土는 놀이 마당으로 배치계획하여 관람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하이테크적이면서도 자연(山)의 이미지에 부합하고 있는 전시관과 한국 고유의 '자리잡기' 즉 풍수지리사상이 45°의 풍요로운 축과 어울려 한국의 뚜렷한 이미지를 나타내주리라 믿는다.

학생부문

장려상

벽을 넘어서

윤병철 / 홍익대 건축학과
장재영 / 홍익대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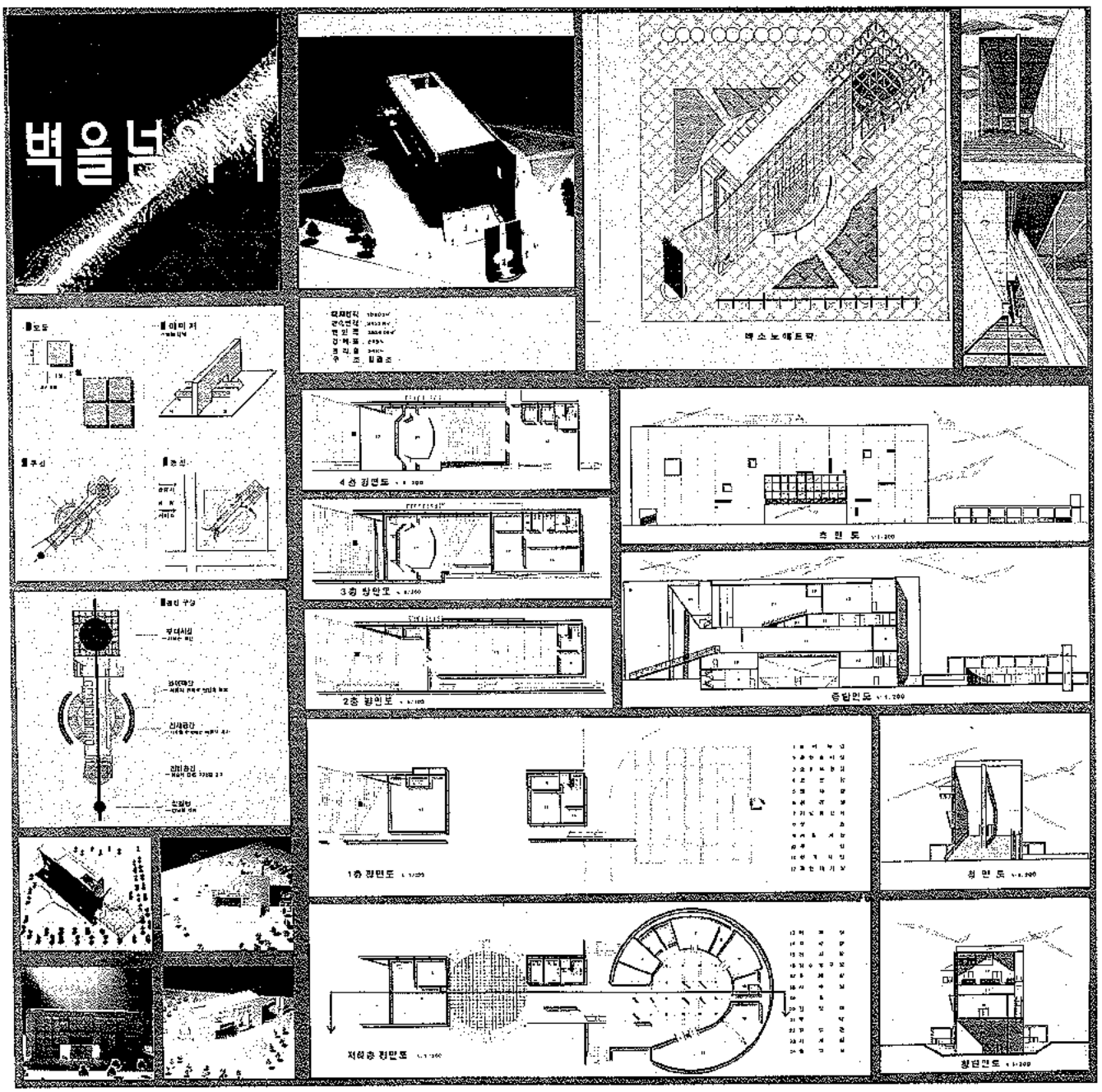

우리는 오랜기간 동안 뿌리깊은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동서 이념의 갈등, 남북 경제권의 갈등, 인종간의 우월주의와 분쟁 등… 이러한 갈등은 서로의 이해의 폭이 종교, 민족, 지역 등의 편견의 벽을 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이에 우리는 인류공영의 차원에서 그러한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그리고 마침내 화합의 세계로 함께 가기위한 만남의 장을 계획한다.

배치계획

남북 축 선상의 연속적 배치, 동서의 벽(Mass)에 의한 대칭적 계획

형태계획

벽에 의한 단절과 이를 극복하려는 형태, 원에 의한 놀이마당으로 인간의 이상과 화합을 상징

동선계획

단절이 없는 연속적 동선계획 서비스동선과 관람자 동선의 분리

평면계획

기능에 따르는 공간의 분할, 동선과 병존하는 위계적 공간형성으로 시각의 변화

상징탑

관람자에게 강한 인지성을 부여, 전체 계획대지상의 동선의 시작을 암시

진입공간

계단에 의한 방향성과 상승감의 연결로 전시관 내부 진입시 기대감 고조

전시관

벽을 형상화한 이미지로 한국관의 주공간

'93韓國建築展 審査評

建築士部門

'93년도 한국 건축전에 소중한 작품을 출품해주신 건축사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과 입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경의를 동시에 전합니다.

금년도 '93한국 건축전 건축사 부문은 전년에 비해 좀더 심도있고 밀도높은 성과물들이 많이 출품되었고 해를 거듭하면서 한국 건축문화 창달에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향상된 면을 볼 수 있었다.

심사를 임함에 있어 작품의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문제였지만 서로의 책임을 통감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와는 달리 유기명 투표방식에 의해 선정하였다.

심사기준은 추상적이고 성격이 불투명한 작품보다는 건축의 조형성 뿐만이 아니라 합리적 기능과 시공 등이 적절하게 조화된 작품을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를 하였다.

출품된 작품수는 총 56점으로써 서울에서 47점, 지방에서 9점이 출품되었고 그 중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주거부문이 6점이고 비주거 부문은 업무시설 22점을 포함하여 종교, 교육, 숙박, 복지, 전시시설 등 다양한 작품들로 분포되었다.

우수작 9점은 서울회원에게 6점, 지방회원에게 3점이 선정되었고 대상작은 입상후보작 중에서 한점을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대상작인 예술의 전당 서울 오페라 극장은 장기간에 걸쳐 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자된 것으로 작품 구석구석에서 작가의 진지한 자세가 엿보인 작품이었다. 형태적으로 원통형의 Mass는 주변환경요소들과 자연스러운 연결을 이루면서 고전적이고 현대적 이미지를 함께 성취하고 있으며 오페라하우스, 연극극장, 실험극장과 기타 부속시설들이 한 내부공간에서 통합 분산되는 구성을 이루어 종합예술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조형성, 기능성 등이 가장 적절히 조화되었다는 점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출품했으나 아깝게 입상하지 못한 건축사에게 격려와 위안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건축물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끝으로 한국 건축전이 미래의 우리나라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많은 건축사들의 뜨거운 열림판이 되길 바란다.

강 건 회

新人部門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전 신인부문의 건축상의 성격은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축공모상 중에서도 특별한 위상을 갖는다.

가능한 참가자의 대상을 분명히 한다는 이 위상적 성격은 이번의 심사과정에 작용할 관점이 되기도 하며, 향후 「한국건축전」의 진보적 행보를 위하여서도 보다 선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인상은 학생과 기성건축가의 계층적 위치에서, 그리고 건축의 실천성과 이상성의 관계에서 중간적이다. 이를 통해 비쳐지는 건축관들은 결국 다음 세대를 주도하게 되는 비전이기 때문에 전이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던지는 우리의 건축적 질의는 단순히 과제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어떤 건축적 사고를 갖는가가 더 중요하게 된다. 특히 현대와 같은 건축의 주도상황이 불투명한 시기에는 우리는 이와 같은 신인들의 사고와 태도를 시대적 책임성과 함께 주시하는 것이다.

이번의 주제는 '만남'을 주제로 하는 '비무장지대'에서의 '이산가족 상봉센터'로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건축의 사회적 효용에서부터 표징성이 강조되는 건축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대하게 한다.

대지의 조건은 임의성을 가지나, 도시건축의 양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건축의 태도를 분명히 하여야 하였다. 참가자들은 대지에 대해서는 두가지 태도를 보이는데, 1/조건의 임의성이라는 데에 따라 일반해의 대지로서, 2/보다 특수해에 가까운 설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축에 포섭시키는 입장이다.

대체로 일반해의 태도가 설득력이 있으나, 특별한 설정의 건축이 개념전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프로그램은 10,000 m² 의 용적에 숙식기능, 사회공간, 위락시설, 문화환경 그리고 상징적 오브제를 포함하나, 프로그램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작품마다 수용하고 있는 기능과 면적은 큰 차이를 보인다.

공간의 구성형식에 대해서도 크게 3가지 유형을 보인다.

1/설정된 접근으로부터 터미널의 형식이 되는 국면, 2/남과 북의 두가지 상대되는 접근경로가 그대로 수평축이 되어 공간의 구도로 삼는 국면이다.

대체로 전자의 경우는 접근을 포용하는 마당을 설정하고, 건축공간들이 외연화되는 경우이다. 이때 원형의 구심적 배치는 즐겨 채택되는 질서가 된다.

후자의 경우는 자연히 선형으로 발달하는 구도(構圖)로 도로를 따라 건축이 병치되는 구성을 보인다.

이 주제에서 건축은 충분히 모뉴멘탈할 수 있다는 선입관이듯 대부분의 조형이 상징성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키며, 공간의 형식이나 오브제의 설정을 표현으로 이끌고 있다.

전체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퇴조를 분명히 읽을 수 있었던 반면에 해체적(解體的)경향은 여전하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인상에서 주목되었던 작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

최우수상 / Arirang Place

자연의 주변성에서 접근이 터미널을 이루는 광장을 두고, 원형으로 둘러친 공간의 볼륨이 적절한 스케일로 구심적 질서를 만든다. 이러한 형식은 구도 자체가 모뉴멘탈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참가자들에게도 보였던 유형이다. 광장은 상징, 화합, 만남의 역할과 같은 옥외활동을 위해 좋은 설정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광장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기도한 건축의 내부기능을 보조하게 될 것이다. 전체의

테두리는 엄정한 원형이지만, 이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주변의 시각은 다채롭다.

잘 다듬어진 건축조형으로서 실천력까지 겸비한 작가의 능력을 보인다. 다만 개념자체가 너무 고식적이고, 실험성의 의지가 너무 통념과 타협된 결과처럼 보였다.

우수상 / 上抱

적절한 대지의 경사를 공간전개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참신한 공간적 상상력과 체험을 느끼게 하였다. 뛰어난 공간 디테일의 구사능력을 높이 평가하나, 만남의 상징성 부족은 이 과제에 대한 설득력을 여리게 하였다.

소위 신합리주의라는 경향에 크게 동조하는 작가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향후 자신의 어휘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내부기능의 구성은 간결한 구도에서 명확하고 쉬우면서도 여기에서 체험될 공간의 다채로움은 이 작품에 우승하는 주된 능력이다.

장려상 / 時間의 背後

한탄강을 스쳐 지나가는 접근로가 직교로 배치된 직선의 건축을 관류하게 된다. 이러한 설정은 접근과정에서부터 건축을 시각적으로 직면케하는 효과로서 유효하다.

한탄강의 단애(斷崖)라는 대지 설정이 이 건축의 성격을 주도하게 되는데, 산세에서 파생되기 시작하여 강변으로 끊임없이 연속될 것 같던 형태는 단애에 미쳐 미완(未完)의 상태로 끝난다. 이것이 곧 이 건축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체계이다.

다만 도로와 건축의 설정은 양측(아마 南과 北)으로부터 대등한 접근성향일 것이나, 건축적 표현은 전면(남향)이 주면성(主面性)이며, 배면(북향)이 부면성(副面性)으로 차이가 현저한데, 이 양면성은 균제롭게 처리됨이 설득력 있다.

장려상 / Decon D.M.Z.

물과 산세의 자연을 주변성으로 설정하고, 접근에서 터미널이 되는 위치에 종국적(終局的) 공간을 갖는 구성이다. 형태와 공간을 조합하는 솜씨와 디테일의 감수성까지도 갖춘 작품이다.

그러하다 보니까 통제되지 않은 조형어휘와 공간위계의 힘을 잃고 있다.

장려상 / 한, 어우름 그리고 昇華

전체 공간의 기본체계는 '기나긴 여로(歷史 갤러리)'라는 장축을 설정하고 그 측면에 발달하는 기능공간들을 구성함이다.

전체공간의 구조를 파생시키고 연관짓는 이러한 구도는 대우 인상적이나 실제 기능공간들의 산만함을 좀더 분명한 위세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대건축이 어떤 진보적 향위를 가질 수 있는가는 건축계 전체의 과제이지만, 역사의 시간적 탄력성을 생각할 때, 시대사회는 신인들이 갖는 건축적 신념에 주목하게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 비쳐 보이는 실험적 개념들은 어떤 다른 건축전에서보다도 가치로운 건강성을 가지고 있다. 아마 그것은 참여자의 계층이 실천성을 갖춘 새로운 세대의 대두이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건축이 극단적 유미주의(唯美主義)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한 건축적 사고는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러나 우리는 좀더 신세대가 건축적 진화의 추진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를 느낀다. 현실적 타협이란 어차피 기성인에서 그쳐도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공모전의 관리과정에서도 마감시한을 절대원칙으로 지키지 않는 참가자의 형태는 타파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고질적 태도는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하더라도, 상당한 디메리트가 될 것이다. 차후 이러한 관행은 '접수 불가'로서 철저한 관리 관행을 만들어가게 되겠지만, 공모를 하나의 게임이라고 볼 때, 기본적인 규칙이라는 점이 참여자에게도 공감되어야 할 것이다.

박 길 룡

해를 거듭하면서 주제가 있는 학생 건축공모전으로 그 무게를 더해가고 있는 "한국건축전"은 학생부문에 162점의 작품이 전국 각 대학으로부터 출품되는 성황을 이루었다.

작년에 건축전 주제를 "만남"이라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국제박람회 한국관"을 설계하도록 지침을 만들 때 한편으로는 기성작가들에게도 어려운 테마를 학생들이 소화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년보다 훨씬 높아진 응모열과 다양한 작품수준은 그러한 염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학생들의 상상력과 문제를 푸는 접근방식은 신선하였고 진지하였으며 자극적이었다. 건축에 대한 뜨거운 정열과 구도적 희생이 우리나라 건축계를 끌고나갈 새싹으로 희망을 걸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동일한 테마를 주어진 대지조건에서 풀어나가는데도 각인각색의 해석과 표현의 자유분방함으로 인해 심사기준을 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선 주제의 해석과 건축적 이해도, 기본적인 표현능력, 계획의 독창성 등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 심사위원 평점 평균방식으로 입선작을 선정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낙선작이 입선작보다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돋보이는 결점때문에 선내로 들지 못한 작품도 있었고 결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짝이는 장점 때문에 발탁된 행운의 작품도 있었음을 밝힌다. 전체적 수준으로 볼 때 80여작품(출품작의 반정도)은 충분히 입선권내에 들 정도는 되었으나 전시장 사정으로 50작품 이내로 제한한 것이 못내 아쉽다. 선에 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더욱 정진하여 대기만성의 기쁨을 누리길 바랄 뿐이다.

최우수상은 주제의 해석, 대지의 이해, 길과 공간의 전개에 있어서 탁월한 값이가 돋보였고 학생작품에서 나타나기 쉬운 치기가 없이 담담하게 건축을 만들어 나간 자신있는 태도의 수작으로서 큰상을 주는데 이견이 없었으나 다만 도입부를 형성하는 길과 벽에 좀더 기능이 맞아 떨어지며 복합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내부공간의 기승전결(起承轉結)이 더욱 명쾌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남는다.

우수상은 둘 다 공교롭게 부산작품들로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건축의 뜨거운 열기를 느끼게 한다.

우수상 "한국관"은 기성작가 작품으로 착각할 정도로 성숙된 건축표현과 충실한 해석, 성실한 전개로 이루어진 수작이나 학생작품에서 기대되는 참신성이 부족한 것이 흠이라면 흠인 모범 답안이었다.

"맥"은 독특한 조형감각으로 남다르게 주제를 풀어나가며 건축적 완성도를 높여준 수작으로 "한국관"과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밖에 장려상들도 제각기 독특한 언어를 통해 주제를 부각시키려 노력한 모두 수준이 높은 작품들이다. 후에 보니 어느 대학에도 편중됨이 없이 수상 및 입선작들이 전국 각 대학에 골고루 퍼져 있어 우리나라 건축교육이 전국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아 반가움을 금치 못했다.

입선작, 낙선작, 수상작 모두에게 격려를 보낸다. 더욱 더 정진하기를 기원한다.

최 영 집

건축비평의 현장 - 그 논의의 계속을 위하여

Where are the Interests of Criticism at?

閔賢植 / 민현식건축연구소
by Min, Hyun - Shik

4·3그룹 건축전(92. 12. 12~12. 24. 동숭동 인공갤러리)를 전후하여 우리 건축계에 일고 있는 몇가지 신선한 반향들이 모두가 긍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의도했던 "이 건축전은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물음이며 그리고 이 시대에 동승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러한 질문과 논의를 통하여 논쟁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기점으로 우리들의 시대를 이끌어 갈 건축적 좌표와 실천적 정신을 모색해 봄에 있다"를 최소한의 목표로 삼는다면 일단 그것은 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 건축전을 전후하여 공적 또는 사적자리에서 이것을 빌미삼아 우리의 건축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이 크게 또는 작게 벌어지기도 하고, 특히 건축저널에서 앞다투어 전시회의 리포트와 비평들이 활발하게 실림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에 발맞춰 소위 건설붐이 일기 시작한 60년대초 이후 지난 30여년간 그렇게 엄청난 물량의 집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도시모습이 완벽히 달라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계에 이렇다할 본격적인 건축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건축의 각 분야, 부문별로 반성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 그에 따라 의식을 같이하는 건축인들의 공적·사적모임들, 각종형식의 건축전시회, 그리고 건축저널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왔음을 묵과할 수는 없다. 특히 양대협회가 주관해온 연례행사인 건축전, 각 잡지사가 주관한 대소규모의 공모전, 각 대학의 건축전 등은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세련되어 왔으나 대부분 일회적 현상의 점검 이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고 목구회, 금우회, 용마루회 등 학연을 끈으로 맺어진 몇 동호인 모임의 전시회가 수차례 있었으나 반향없는 목소리를 공감대 형성에 미흡하여 자기만족에 그치고 말았으며 상당한 수준의 김수근전, 정림건축전 등은 회고전 성격으로 치우쳐서 단순한 연대의 기록으로 마무리되고 만점은 극히 아쉬운 일이다.

오히려 60년대말, 70년대를 전후하여 반짝 있었던 안병의전, 2차례에 걸친 김석철전, 원정수전, 그리고 최근의 조성렬전 등이 개인의 건축관이 명쾌히 들어나 책임의 소재가 뚜렷했다는 점에서 비록 소규모이기는 했으나 논의의 대상으로써 더 의의 깊은 전시회였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 모든 건축전들은 전시물 자체가 상품화되는 일반적 미술전 등과는 달리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감안한다면 공치사를 거듭해도 모자람은 없다.

그러나 건축전의 목표는 말하기 쉬운 공치사에 지족하거나 외면하는 듯한 조소나 질책에 과잉 흥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오히려 전시된 현장의 작품을 하나하나 문제삼아 우리의 건축현실과 연계하여 그것의 오류와 성취가 논의되어야 한다.

4·3그룹전을 계기로 하여 이왕 제기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건축이 가진 여러문제들은 계속되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런 뜻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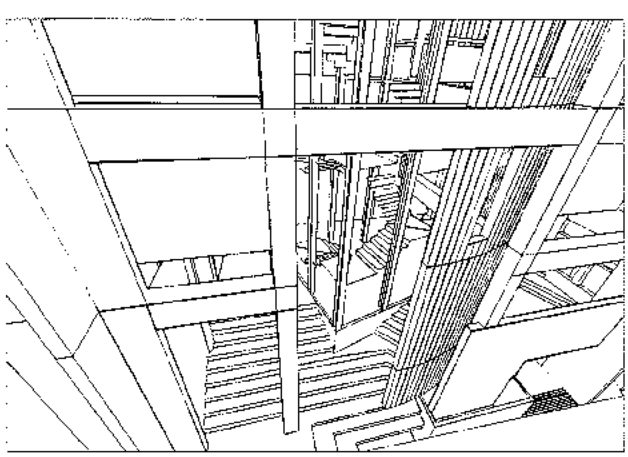

김병윤 "Bridges for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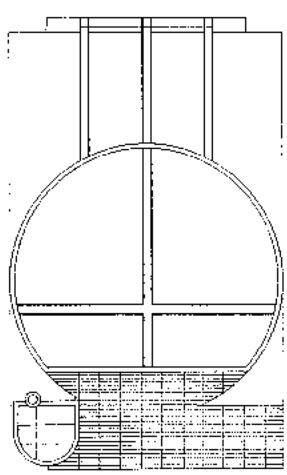

김인철 "초 공간의 의미"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4·3그룹 건축전에 대한 비평들과 특히 이정근씨의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의 지푸라기"(건축사 93년 2월호)를 중심으로 거기에 지적되고 있는 논거에 관한 참가작가로써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우선 이 건축전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정근씨가 풀어쓰고 있는 "세기말" 그리고 "시대정신"의 뜻에 관하여 그 진의가 와전되었음을 해명하고자 한다. 氏는 세기말을 정의함에 있어 "오늘이 처한 연대가 서양력상의 세기말이기 때문에 19세기말의 서구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은 과장된 유추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가 지구상에 삶을 펼치면서 태양력상의 100년 단위 끝마다 공통적인 어떤 증세를 나타낸다고 진단한다면 이것은 거시스케일의 미신일 수 밖에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4·3그룹이 주장하는 대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서구의 지난 세기말과 유사한 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복합적인 진단을 요하는 사안이다. 만약에 상기의 가정이 옳다고 인정된다면 서구의 근대건축 창시자들이 그들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는 있겠다. 삶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건축행위가 일회성을 띄우고 있다고 보면 타산지석보다는 타산지석을 빌미로 하는 우리의 건축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상황이 무엇인지는 끝까지 아무데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단지 4·3그룹은 오늘의 시대를 규정하기 위해 "세기말적 현상이라는 고삐풀린 소의 새끼줄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라고 극히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氏의 명쾌한 지적처럼 "세기말"이란 태양력상의 100년단위 끝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말의 일차적 뜻이다. 그말이 통상적으로 쓰이는 진의(眞意) 또는 우리가 의도한 "세기말, 세기말적 현상"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차용한 것이다.

세기말이란 태양력상의 100년단위 끝이 아니라, 어느 한 사회, 한 시대를 주도해오던 지배논리 또는 사상체계가 이제 더 이상 그 사회와 시대의 현재적 현상들을 명쾌히 설명할 수 없게 될때, 우리는 그것을 소위 세기말이라 부른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발전이든 퇴행이든 간에,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변하기 마련이고, 그 시대의 논리가 그 시대의 변화를 더 이상 감당하거나 수용할 수 없게된 상황을 일컫는다. 따라서 기존의 모든 가치체계는 거의 동시에 심각히 도전받게 되고, 가치의 척도가 혼란된 상태에서 사회는 반역의 시대로 돌변하며, 말초적 유희나 퇴폐적 허무주의가 성행하는 예술은 그 근본뜻을 잃어가며, 성(性)을 유희의 도구로 일삼게 되는 도덕성의 파괴 등으로 인간성은 극도로 피폐해가는 소위 세기말적 증후를 보이게 된다. 대표적으로 로마제국 말기가 그러했고, 그리고 19세기말의 유럽사회가 그러했다.

우리의 역사에서도 그러한 현상은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氏의 지적처럼 가깝게는 실학이 대두되었던 이조 영·정조시대가 그러했고 일제의 탄압이 정신적 피폐상황까지 몰고갔던 1930년대가 그러했으리라 짐작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유럽의 19세기말은 신본주의의 종세를 뒤엎은 르네상스 이후로 줄곧 유럽사회를 주도해 오던 협의의 개인주의 인본주의 또는 이성주의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조성된 시민의식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번져나간 일대변혁을 이제 도저히 감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럴때 가치체계의 일부 수정·보완 또는 계량으로는 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더 적극적인 고단위의 반동과 혁명으로만이 가능할 터이다. 어떤 의미로 파시즘의 등장과 그에 맞섰던 양대 세계전쟁, 유토피아를 향한 사회주의 공산혁명도 그러한 세기말적 증후의 비극적인 한 돌파구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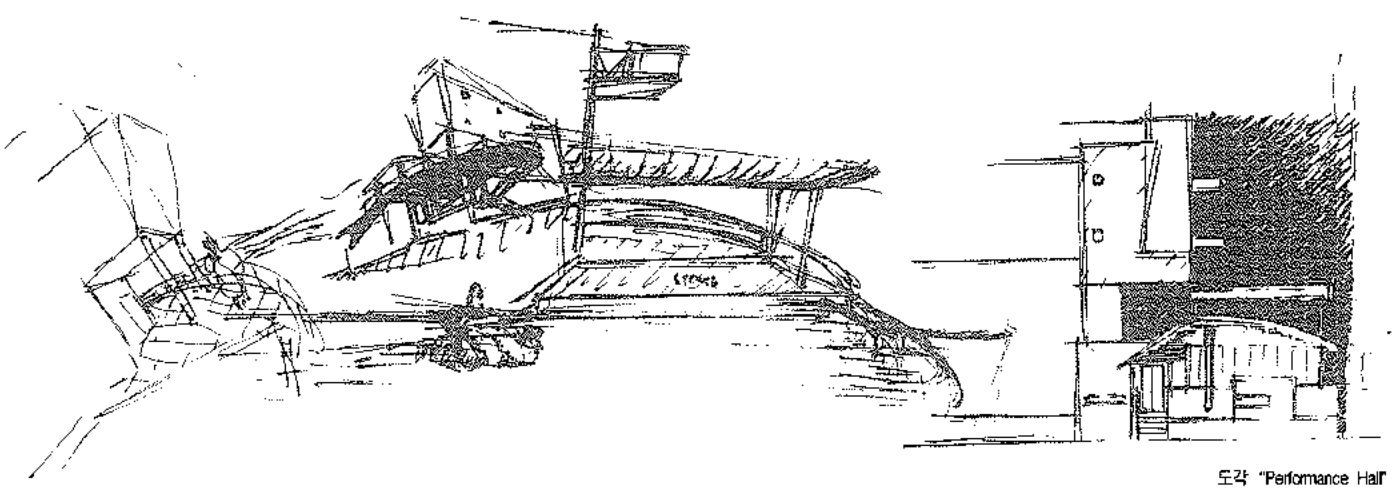

도각 "Performance Hall"

이러한 세기말적 혼돈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증후들은 지극히 부정적이기는 하나 또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정신의 태동을 뜻하는 역설적 희망의 때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로마제국의 말기현상은 기독교라는 새로운 정신으로 극복되었고, 19세기말기 증후는 모더니즘으로 극복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는 예술가의 역할이 이론가보다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항상 황혼이 되어서야 날기 시작하듯이 현상을 체계로 설명하려는 잿빛 논리가보다 예술가는 훨씬 실천적이기 때문이다. 19세기말을 전후해서 의식있는 예술가들이 선도적으로 그들의 사회를 지적 모험의 시대로, 행동과 참여의 시대로 바꾸어 놓고 있다.

따라서 "세기말"이란 용어를 차용한 우리의 뜻은 오히려 氏가 밝혔듯이 "오늘 우리의 건축가가 처한 상황이 어떤것인지, 오늘 우리 건축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거듭 되묻기"위해서이다.

이러한 세기말적 현상에 연계하여 19세기말 모더니즘의 선구자들에 의해 재창조된 "시대정신"을 우리가 다시 쓰게된 것은 그들의 행동양식에 일차적 평행등식을 마련하고자 함이 아니다.

만일 우리의 뜻이 그러했다면, 정작 시대정신에 지극히 어긋나게 될 것은 자명하다. 다시 말하면 만일, 과거와는 지극히 다르게 조건지워져 있는 이 시대의 리얼리티를 묵과하고 과거의 행동양식을 베끼는 것은 氏의 실랄한 지적대로 지푸라기를 쥐고 익사하는 꼴이 될 것이다.

19세기말 오토 바그너, 구스타프 클림트, 오셉 호프만, 헤르만 오브리스트 등이 주도한 비인의 세쎄션운동은, 유럽 각처의 유사한 예술운동과 함께, 세기말적 허구로 뒤덮힌 비인의 문화에 대한 도발적 반동으로 이해된다. 인간과 예술에 대한 본원적 의미탐구는 외면한 채 피상적 유희, 허구의 조작만을 일삼던 당시의 예술가들에게 「우리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라고 아우성친 운동이다. 그들의 예술운동은 의미없는 예술에 대한 경종이므로 그들 작품의 형태적 특성 즉 세쎄션양식 등을 운운하는 것은 호사를 일삼는 건축사가들의 학문적 성과로서는 가치가 있을 터이나, 그들 외침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체적 형태의 양상에서 읽히는 진실에 접근하려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선언적 진실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당시 비인의 사회상을 상대적으로 염두하면서 「그 시대 그의 예술을, 그 예술에 그의 자유를(Der Zeit ihre Kunst, Der Kunst ihre Freiheit)」이란 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현대 합리에로의 지향의 열정을 읽어야 한다. 다시 밝히거니와 그들의 방법론으로 주장한 합리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시대에 대립하는 정신, 전위적 태도, 그리고 그들의 열정과 용기일 따름이다.

어떤 의미로, 참된 예술가에게는 그의 시대가 세기말이건 아니건, 혼돈으로 허구로 가득차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 허구를 극복할 무엇을 창조하려 한다. 그래서 우선 일상의 허구를 향하여 끝없이 저항하며 상대적이고 변질된 그리고 찰라적 우매함에 의해 지배받는 현실에 반기를 든다. 그래서 예술—진실된 예술—은 항상 닫힌 문, 거대한 현실의 벽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대립은 아마 항상 미해결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럴 수 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끝없는 실패의 예감에 전율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모험과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술가에게 뿐아니라 그들의 작품을 대하는 의식있는 관찰자에게도 공히 진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오히려 성공이며, 그들의 패배가 진정한 승리임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운다. 따라서 氏의 방대한 논술은, 건축역사를 보는 氏의 혜안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 전시회의 주변에서 무책임하게 변죽을 울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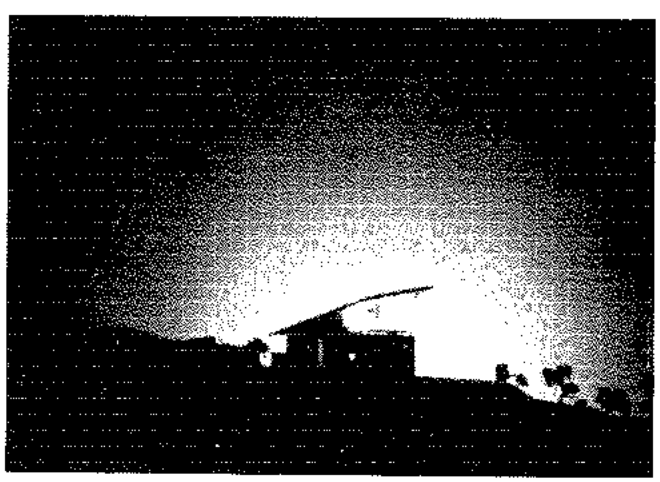

곽재환 "술(松)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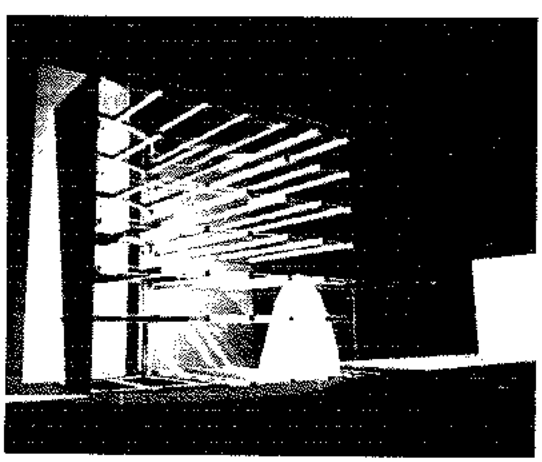

동정근 "월드북센터"

날발사용의 부리함에만 집중되고 있다. 너무 장황하게 늘어논 전술한 변명대로 우리는 어디서도 19세기의 시대정신의 내용을 우리의 시대에 대한 대답으로 차용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이 시대를 이정신으로 싸잡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새마을 운동이나 주체사상같은 구호를 외치지도 않았다. 단지 "시대정신"이 허구를 본연으로 회복하려는 의지로 해석하여 이 시대에 대립하겠다는 전위적 정신을 바탕으로 각각의 판심사를 내보인 것이며 더우기 우리 각각의 주장들이 영원불변하는 어떤 진리로 강변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비평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각각의 주장과 그에 대한 대안들 즉 현장의 전시작에 비판의 초점이 모아지기를 바란다.

우리의 논쟁이 성숙되고 의미있는 것이 되기 위하여는, 정작 우리가 서로 논의하여야 할 논제는 자명하다. 즉 4·3그룹이 대립하려 했던 우리의 건축현실은 어떠하며, 거기에 대한 그들의 대안은 무엇이며 그 일련의 단계들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정확하며 건축속에서 성숙해 있는가이다. 즉 "이러이러하니…… 해야한다"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가 그리고 "……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그의 건축에 얼마나 성숙하여 구현되어 있는가가 논쟁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氏가 글의 말미에서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우리 건축현실의 문제들을 깊이 인식함에 있어 그것이 너무 교과서적 원리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들의 인식과 그 궤를 크게 달리하지 않는다. 氏의 이러한 현실인식의 혜안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어떠했는가에 대해 정작 무심하다. 즉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氏의 "전시회"에 대한 관찰이 전시회 현장과 도록에 의했다기 보다는 저널의 리포트, 그리고 비평에 그것도 특히 왜곡된 저널에만 국한해 있지 않았나 싶다.

특히 氏가 글의 서두에서 거명한 "건축과 환경1월호"의 자료는 70페이지나 할애했다는 성의(?)는 무시할 수 없으나 저널의 양심까지도 의심케 할만큼 전시회 도록의 관점없는 생략과 의식없는 표절로 오히려 이 전시회를 지극히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氏가 설정한 우리건축의 현실인식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어떠했는가를 하나하나 밝혀보고자 한다. 그리고 氏가 말미에 푸념같이 서술한 "건축행위의 과정에 연루되어 있는 부도덕성"에 관하여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고 싶다. 그러한 비윤리적 작태에 대한 반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겠다함이 아니라 그것은 작품에서 보다는 실제 매일매일의 건축일상에서 부닥치며 싸워야 할 실천력이 더 중요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우선 氏는 "첫째, 건축행위는 원초적으로 사회구성원이 자연의 일부를 그들의 의도에 따라 그들의 삶을 지탱하여줄 인공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 공동체의 생활공간은 이 인공물만으로 구성될 수는 없으며, 자연과 더불어 상호관입하여 균형을 취하게 된다.

자연의 영역이 극소화되고 오직 문화의 영역만이 팽대한 생활공간이 과연 생활공동체의 생활을 지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라 지적한다.

부연하자면 건축의 원초적인 문제인 "자연"과 "인공"과의 적절한 관계정립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하여 4·3그룹회원들, 물론 모두가 공유하지는 않았더라도, 우리의 시점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한국 전통의 자연관과 그러한 철학에 의해 세워져온 전통건축에 뜰려서 오늘의 작업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물론 상당한 오류를 범할 위험이 무수히 많다. 자칫 복고취향, 또는 감상주의에 빠지기도 하며 국수적 패권주의에 야합하기 쉽다. 더우기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온 과학적, 문화적 유산을 쓰레기마냥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충분히 조심한다면 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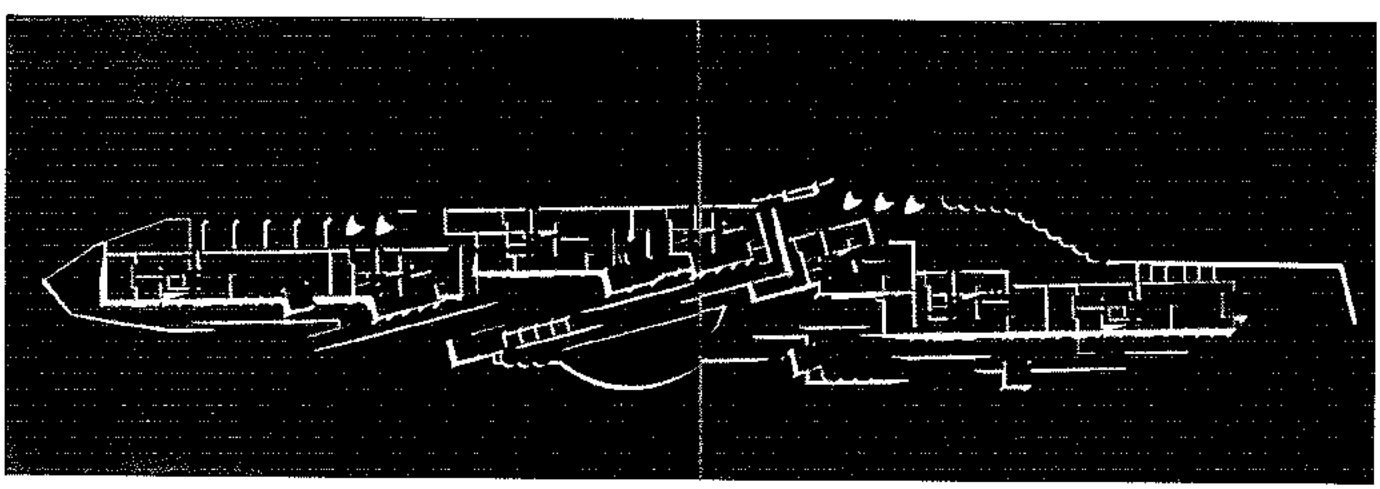

방철린 "澄心亭이 있는 마을"

전통사상과 전통건축은 이 문제에 대한 훌륭한 교본이 될 수 있을 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곽재환은 "오늘을 사는 시대정신은 이성중심의 정신에 대한 비판에 있으며 비합리의 마음을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을 기하여 상보적(相補的)이고 전일적(全一的)인 세계관으로 생활에 정서와 교감과 균형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솔(松)의 집"은 일견 너무 시적인, 감성주의로 경도된 듯이 보이지만 집속에 자연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끌어들임으로서 인식의 편협과 이원화된 세계관에서 비롯된 자연과 인공의 관계단절을 탈(脫)하고자 한다.

또한 이종상의 "말죽거리 빌딩"의 중심주제는 그의 2개의 대립하는 꼴라주에서 명확히 읽을 수 있다. 인공적인 도시풍경과 자연그대로인 산을 하나의 건물에 양립시키고 공존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그의 집은 두개의 상반되는 양상을 집을 매개로 통합시키고 있는 것이다.

너무 직설적 전이수법이기는 하나 방철린은 "서양의 합리주의는, 근대화의 기치를 든 과학의 이성주의는 우리의 건축에도 진보적이라는 이름으로 정신적 핍박을, 문화적 도태감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의 본연을 상실케 하였다. 편안함대신 사고의 여유도, 관조의 세계도 빼앗아 버렸다. 우리가 지녔던 우리의 말조차 그 의미를 잃었다"라고 전제하면서 우리의 길, 담, 마당, 마을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고자 한다. 그의 "濯心亭이 있는 마을" 계획에서 그는 우리의 전통적 공간기법을 현대적 어휘로 번역하고 있다.

김인철이 만들고자하는 "초공간"의 작은 지하교회는 기독교의 교의에 극히 상반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샤미니즘적 원초공간을 도입함으로써 종교공간의 본질을 추구한다.

승효상은 전통건축의 어휘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만든 본원인 정신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그것의 대표적 정신을 선비정신으로 보고 "선비들의 자연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 도에 대한 갈구, 높은 안목, 청빈한 삶—선비정신은 그 시대를 지탱하게한 시대정신—이었으며, 그로부터 그들은 우리의 서정감 넘치는 문화를 일궈냈다"라 인식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빈자(貧者)의 미학"이라 부른다. 그의 "학동, 수졸당"은 보잘것 없는 집이라는 그 뜻이 말하듯 일의적 기능을 지워가면서 형태를 극히 절제함으로써 인간을 왜소화시키는 마약적 독성을 극복하여 "무용(無用)의 공간"을 그리고 싶어한다. 그 공간이 가족의 체취를 서로 맡으면서 가족의 삶의 역사를 일궈내는 주거공간이 되리라 확신한다.

또한 우경국은 "인간의 존재는 우주속의 개체이며 동시에 전체로써 우주와 땅과 인간이 서로 관계하며 존재한다"라 전제하고 이것들이 서로 이루는 "모든 관계들은 이원적이 아닌 일원적인 것이며 존재의 그릇을 빚어내기 위한 관계항"이며 이러한 일원론적인 사고는 "원초적 공간의 현상성과 건축적 공간의 양태를 합일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원이며 상실했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라 주장한다. 논리의 비약이 심하여 구체적 현상에 접목되기는 어려운 현학적 표현이기는 하나 그의 "관수정"은 기능을 담는 방보다 거기에 이르는 씨퀀스에 더 주목하고 있으며 씨퀀스를 따라 장면 장면마다 새롭게 느끼는 자연을 그리고 싶은 것이다.

두번째 氏는 우리 건축 현실의 문제로 "건축행위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인공물은 이미 틀지워진 생활공간의 체계속에 편입하여 또 다른 하나의 전체를 지향하게 된다. 인공물로서의 건축물은 그 자체로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 일부가 되는 여타 건축물들과의 관계체계 안에서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건축행위에 있어 건축행위의 대상을 하나의 개체로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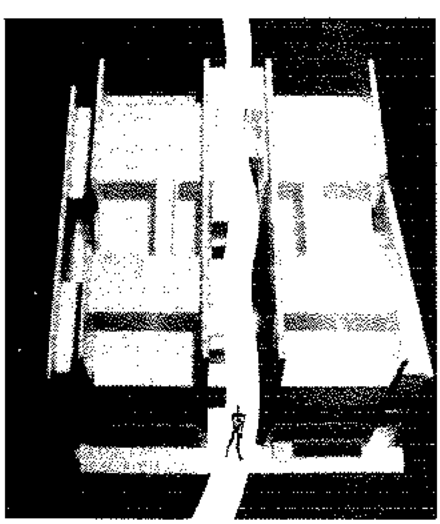

백문기 "迷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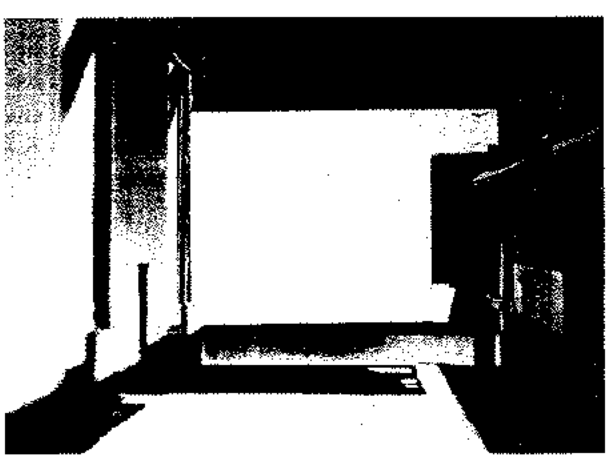

민현식 "마당 깊은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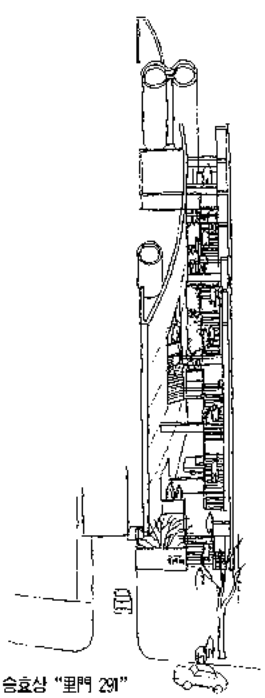

승효상 "里門 291"

인공물을 생산해내는 데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건축을 하나의 집합체로 인식하려는 도시건축이라는 개념보다 더 근원적인 개념으로서의 개체와 전체의 관계가 오늘의 건축행위 속에서 실종되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氏의 주장은 모더니즘 정신의 하나의 사생아라 할 수 있을 개체건물의 영웅주의적 발상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의 산물인 건축의 컨텍추얼리즘 또는 도시의 컨텍스트를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경향이 지닌 소극적, 미시적 태도를 넘어 더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그 의미를 확장하여야 한다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각성에 대한 조성룡의 대답은 얼핏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며 그 발언이 극히 소규모 건물이라 미약하게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직시하는 바는 "어차피 건물이 모여 거리가 되고 거리들이 이리저리로 엮어나가면서 동네가 되고 도시가 되는 것이라면, 점처럼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단위가 된다. 도시의 풍경은 이 단위의 집합이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거리가 연결되지 않는 불연속성, 소음, 자립하는 풍경—이웃도 없고, 공동생활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커뮤니티가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속의 새로운 도시의 삭막한 풍경"을 서로 이어주고 해갈시켜 줄 것으로, "양재I"을 구룡산의 실루엣과 겹쳐 바라보게 한다.

백문기와 승효상은 도시의 풍경을 이루는 개개건축물의 형상과 그것으로 어우러지는 도시의 풍경보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도시생활 조직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즉 도시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길에 주목하여 건축을 그 길의 연장을 풀어 보인다. 길의 연장은 바로 도시생활의 연장이기 때문에 도시속의 개개 건축물은 필연적으로 도시의 하나의 구성세포가 되는 것이다.

백문기는 "도시풍경속에서 시장골목을 누비고 다닐때의 즐거움은 생활의 리얼함과 움직임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만든다. 두 건물사이에 늘어놓은 노점상, 언어의 소박함, 그위에 천으로 가려놓은 자연채광, 늘 교감하면서 시끄러움과 북적댐은 누가 사는 사람이고 누가 파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혼돈이었다. 그러나, 그 혼돈속에 질서가 있다"고 인식하면서 이러한 시장골목, 잊어버린 무교동길, 청계천의 희미한 기억들을 묶어 그의 집속에 실현하고 있다.

승효상은 "이문291"의 90' 액소노메트릭에서 잘 나타나듯이 이 집속의 도시의 길—회상을 위한—을 만들고자 한다. 수직연결을 위한 직통계단을 풀어 도시의 길에 이어 붙인 완만한 직선계단은 바로 도시생활과 집속의 생활을 이어주는 활기넘치는 장소이다. "옛날에 한번쯤 있음직했던 내부와 외부를 잇는 이길은 과거와 현재를 잇기도 하며, 도시와 건축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연결시킨다. 때로는 사유공간으로 때로는 공유의 공간으로 변용될 수 있는 이 집속의 길에서 이 도시의 건축속에 이뤄지는 많은 사연이 담겨지면, 자연스런 도시와 풍경이 될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氏는 "건축행위의 결과로서 탄생되는 어떤 건축물이던 이미 행하여진 건축 행위가 누적되어 있는 건축물들의 관계체계속에 새로운 건축물로 편입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관계체계를 지향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행위는 항상 기존과 새로운 건축물과의 긴장관계를 유발하게 하며 긴장관계의 해소는 새로운 질적관계로의 승화를 유도한다. 새로운 건축물이 하나의 위치를 점하게 되는 기존의 건축환경이란 이제까지의 건축행위의 결과가 누적된 하나의 관계체계이다. 따라서 어떠한 건축행위도 생활공동체의 건축행위의 과정이 집적된 기존의 생활공간의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건축행위의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기존과 새 건축이 대립하며 다시 하나로서 합쳐지는

장 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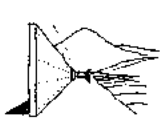

장 면 2

장 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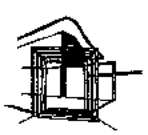

장 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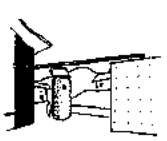

장 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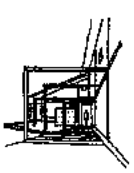

장 면 6

장 면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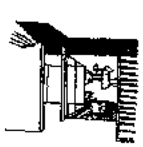

장 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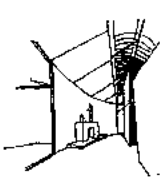

장 면 9

장 면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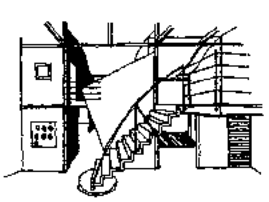

우경국 "觀水亭"

생활공간상의 어떠한 위치도 시간의 흔적이 겹겹이 켜를 이루는 장소일 뿐 빈공간일 수 없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축행위는 시간과 공간의 추상적인 이해에 맴돌고 있을 뿐 우리의 삶과 긴결된 축적된 시간의 흔적과 장소성을 말살하고 있다."라고 진단한다.

도시의 장소, 도시의 건축은 이렇게 형성되어 가야한다. 대부분 소영웅주의적 건축가나 건축주들이 가능한 기존의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자기의 것만을 들어내 보이려는 욕심이 자본주의의 경제성 우선과 서로 야합함으로 하여 우리의 도시들은 역사의 켜를 잃어가고 거기에 흔적으로 배어있던 애정을 잃어가고 이렇게 악순환을 거듭한 뿌리없는 환경은 우리를 허상과 말초적 유희에만 떠돌게 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 전시회에 전시된 집 특히 도시에 세워지는 집들은 거의 모두가 자기만을 들어내려고 하는 배타적 소영웅주의에 집착하거나 기존의 삶을 쓸어내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집을 그곳에 끼워넣고 보탬으로써 그곳의 삶에 새로운 생기를 더해주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도시의 잘못가고 있는 현재적 상황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도시의 어느 거리를 가보더라도 대부분의 집들은 그곳의 삶을 다루었다기 보다 서로 제잘람만을 뽐내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은 조잡한 괴성과 소란스러움으로 가득차 있다. 이러한 현실에 지금은 침묵으로서 대립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침묵, 절제, 비움 등의 용어를 사용한 주장에 대하여 많은 비평가들은 이 용어들이 함축하고 있는 부정적 의미를 직선적으로 연계시켜서 이시대의 리얼리티를 직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폐, 자괴, 허무, 현실도피, 초월, 도사연함, 비현실적, 소극적 자기만족의 몸짓으로만 보려한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이시대, 우리의 건축상황을 깊이 반성한다면 진리는 커녕 진실과 사실에 대한 관심조차 우습게 보는 사조들이 최신의 매력으로 떠돌어 대며 동시에 일정한 독립성과 그 나름의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창작품 내지 예술품의 개념도 한물간 생각으로 치부되며, 포스트·모더니즘 또는 탈근대주의적 텍스트의 이름으로 제기되는 설익은 외국이론들이 무분별하게 수용되며, 한편 전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국수적 패권주의 건축에 즉 건축을 외면한 건축들의 시끄러움에 오히려 더 강한 발언일 수도 있는 침묵으로 대립하고자 함이지 인간의 삶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의 본질일 수 있는 이시대, 우리의 건축이 지녀야할 공간의 의미를 다시금 진지하게 되새겨 보고 있다.

김병유의 노력은 아예 직설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의 주제인 "건축적 탐구"는 얼핏 너무 교과서적으로 느낄지 모른다. 그러나 "극단적인 표현에 대해서, 극단적인 변화에 대해서, 자신들의 문제이상으로 중요시 생각하는 논점은 무엇일까? 속성이 지배해온 표출은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온 것인데, 극단적인 상대성을 규범화 하려한 의사, 이상은 인간성의 한계인가? 우리가 구사하는 사고조차도 우리를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는 건축의 현실은 근대라는 낡은 빛에서 새로운 서광을 찾으려 하는데 그 주요체가 분리라면 무엇과 분리되기를 원하는가? 서구건축의 모순들이 우리 몸의 곳곳에 배어져 있는 중에 이미 부정된 이중 삼중의 부정들이 얼개가 되어 단편들만이 주축으로 등장함을 인정해야 하는가?" 그의 질문은 끝이 없다. 그의 이 끝없는 질문은 바로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찾기 위한 것이다.

도창환은 "물질의 심연속에서 자리하는 물성을 이해함으로써 건축을 탐하려는 입장은 내면과 외면과의 간극을 좁혀 건축의 보편적 관계를 보다 더 포괄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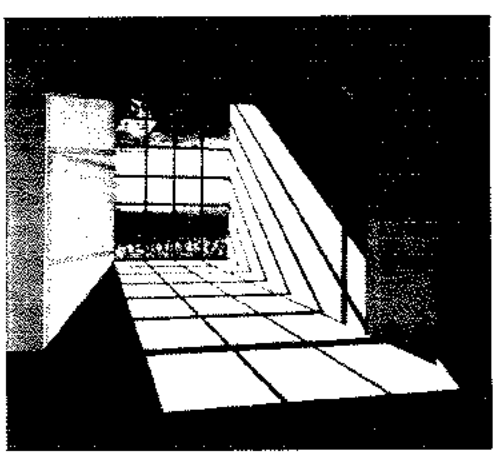

이성관 "지상 43m의 家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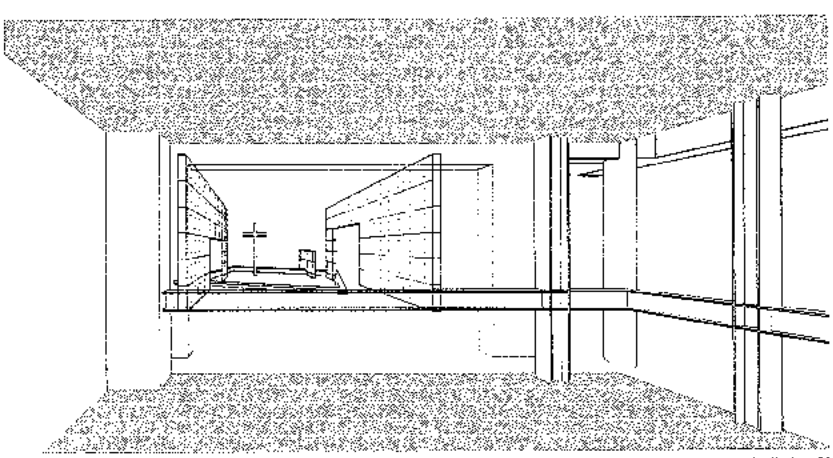

이일훈 "지비의 침묵" 수도원

해독"하고자하는 열망을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파동체계에서 발견하려 한다. "파동체계는 우주의 본질로부터 규명되는 질서체계로써 물질의 파동이라는 검증된 사실로부터 소립자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입자파동설의 부분적 차용이다. 그리고 이것은 드러나는 비합리성이 초분별적 단계로 인식되는 사유체계이며 또한 합리성과 비합리성과의 관계로 엮어지는 논리적 체계"인 것이다.

동정근은 소위 로버트·벤츄리 이후 건축의 주요한 탐구대상인 "상징"에 대한 본원적 의미를 탐구한다. "상징으로 표현되는 도상(icon)은 그 자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상의 진보를 위한 매개물이 되며, 언어나 부호로 이어지는 철학이나 수학, 또는 종교보다 사상의 진보에 우선하고 있다. 상징은 현실세계를 이탈하여 이상세계로 들어가려는 시도이기도 하며, 우리의 사상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데아(idea)의 세계에 도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데아에의 추구를 현실화 하기위한 이상이 되며, 우리는 건축을 통한 유토피아적 공감대를 찾고져 한다. 도시환경에 대한 체험의 공감대는 상징체계(symbolic system)를 통해 일련의 관계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엮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우리의 고유한 원형의 상징을 읽으려는 노력은 집단 무의식의 발굴이며 동양에서의 기(氣)를 찾아 내려한다. 그의 "월드북센터"에서 주변과 분리된 빛의 탑을 세움으로써 우유빛 유리를 통해 낮에는 외부의 빛이 투과되어 내부는 부유하는 3차원 공간들을 연결하게 되며, 밤에는 내부에서 발산하는 빛으로 가로변에서 부유하는 이미지를 주려하고 있다.

이일훈은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성(聖)"과 "속(俗)"의 두 개념을 공간으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도원(자비의 침묵)과 주택(운율제)을 통하여 보여주면서 그 모두 도(道) 즉 건축에로 합일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성관은 주거를 탐구함에 있어 그 본원적 뜻에서부터 출발한다. 집은 요새가 되고, 그 튼튼한 벽안에서 삶이 안전하기를 바란다. 그의 집은 지상 43 m 위에 있다. "도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곳에 머무는 것이다. 드라이브 핸들 대신 엘리베이터 버튼으로 "도심"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사적(私的) 은신처로 접근하는 도심속의 새로운 주거개념을 펼쳐보인다.

이러한 탐구는 다소 현학적이며 말의 유희처럼 들릴지 모르나, 이들의 구체적인 작품에서 실제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리와 작품과의 연결이 얼마나 매끄러운가는 또다른 우리의 논의를 필요로 하며 우리가 갈급히 기다리는 비판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노력들과 의도들이 모두가 적절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해갈 관심사들 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앞으로 지적될 여러 오류들이 발견될 것이며 그로인한 뼈아픈 반성은 오히려 우리가 얻을 기쁨이기도 하다. 따라서 氏의 결론을 역시 이글의 결어로 써도 무방할 것이다.

"관심사와 문제들을 같이 걱정하고 서로 힘을 덜어주는 자세를 가지도록 이번의 전시회는 요구하고 있다. 서로의 힘을 덜어 준다는 것은 건축생성의 장에서 같이 고군분투하는 건축인들 상호간에 스스로를 내 보이고 서로 비판해 주고 받아들이고 배움으로써 생활공동체가 요구하는 건축 전문인으로서의 공동선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건축행위의 틀을 잡아간다면 이 시대 우리 건축은 스스로의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자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논쟁을 위한 논쟁이 되지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건축전의 현장, 작가들 주장의 진의에 그리고 그것과 직결되고 있는 전시된 현장의 작품들에 근거하여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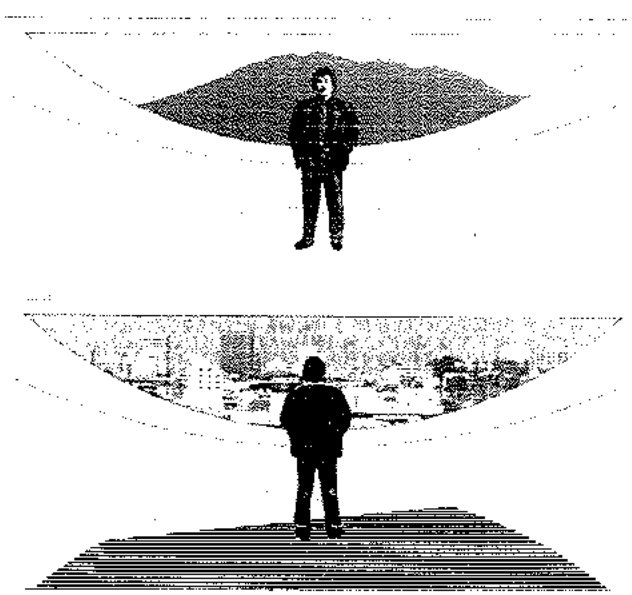

어종상 "말죽거리 빌딩"

조성룡 "암재 1"

패러다임 (Paradigm),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 (7)

Types of Architectural Thought and the Design Characteristics Based on Paradigm

吉 成 鎬 / 대전산업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by Kil, Soung - Ho

1. 패러다임(Paradigm)과 건축적 사고유형
2. 건축적 사고의 제 유형과 디자인 특성(1)
3. 건축적 사고의 제 유형과 디자인 특성(2)
4. 건축적 사고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특성
5. 박물관·기념관 설계 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분석
6. 공공청사 설계 경기 작품의 건축적 사고의 특성분석
7. 한국 설계 경기 작품의 디자인 접근 태도의 전망

〈연재를 마치며〉

우리의 건축 디자인 행위는 왜 다양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궁금증은 자신의 건축에 대한 태도와 가치정립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거장이나 위대한 건축가의 사고방식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며, 또한 자신의 건축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고 창작에 임하기 위해서 더욱 그러하다.

본 연재를 통해 건축가들의 작품에 임하는 다양한 접근태도와 사고방식은 그 시대의 가치와 사고의 틀을 형성시키는 패러다임과 관계가 있으며, 그것이 건축적 사고와 작품의 디자인 특성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으나 여러가지로 미약함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헝클어진 생각의 단편들을 이 연재에서 제시된 건축적 사고유형의 틀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정리할 수가 있다면 필자로서는 큰 보람이다.

아직도 정리되어야 할 많은 미완의 부분들은 우리 건축가들의 과제로 남겨두면서 ……

7 한국 설계경기작품의 디자인 접근태도와 전망

1. 새로운 관점에서의 고찰

한국 설계경기 작품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을 건축적 사고유형이라는 시각에서 건물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작품에 반영된 건축적 사고의 다양성과 접근방식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은 건물유형에 무관하게 어떤 디자인 개념과 어휘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건물유형과는 무관하게 한국 설계경기 작품에 임하는 한국 건축가들의 의식속에 자리잡고 있는 항존의 디자인 개념과 도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국 현대건축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지극히 추상적인 용어들 — 한국성, 근대성, 전통성, 조형성, 상징성, 합리성, 역사성, 창의성, 논리성 등 — 에 의해 매우 개념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 왔었다.[주1]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은 건축의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건물의 배치, 평면, 공간, 형태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작품의 특성과 이것의 근간이 되는 디자인 개념, 원리, 요소 등을 밝혀 내는데는 제약을 지닌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축적 사고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설계경기 작품의 분석을 통해 발견되는 공통적인 디자인 개념과 어휘들을 체계화하고 그것이 작품창작 과정에서 지니는 건축적 가치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2. 설계경기 작품에 나타난 디자인 구성원리와 인지 — 행태적 속성

1) 디자인 구성원리의 추출

한국 설계경기 작품의 분석을 통해 추출된 공통적 디자인 개념과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구조적 개념[주2]으로서 중정형(中庭型)의 공간구성체계가 지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1) 이러한 개념분류에 의한 한국 현대 건축의 연구로는 김경수 교수의 "한국 현대 건축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1989년)"를 참조할 것.

주2) 여기서 구조(構造, structure)는 다양한 현상의 표면의 배후에 내재해 있는 관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각 요소들은 변화하나 전체적 질서로서의 구조는 불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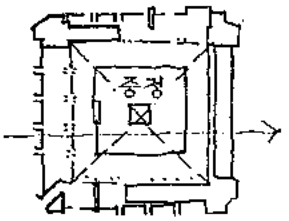

〈유걸 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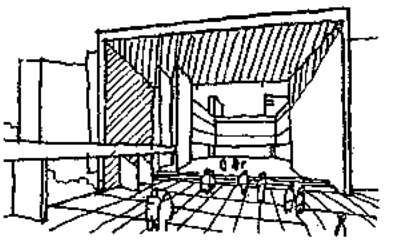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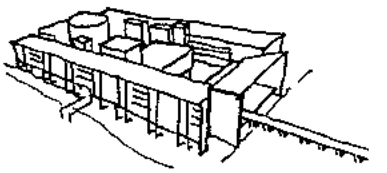

〈원도시 案〉

❶

건물의 배치형식에서 뿐만 아니라 평면구성 방식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 중정형의 공간구성의 개념은 배치형식에 있어서는 위요된 口字型이나 ㄷ字型의 형식을 취하며 궁궐, 사찰, 전통 주거 등의 배치방식에서 그 원리나 기법 등을 참조하고 있다. 평면구성과 내부공간 구성에 있어서는 口字型의 단일형식을 지향한다.

여기서 이 중정의 개념은 단순히 배치나 평면구성을 위한 물리적인 형태구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건물의 유형과 무관하게 여러 건축적 사고유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중정형 타입의 평면 형식은 박물관과 도서관처럼 몇개의 동질적인 대형공간들이 영역별로 구분되어 결합되는 경우에는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만, 시청사나 법원청사, 시민 및 문화회관의 경우처럼 이질적인 작은 공간들이 군집되는 경우에는 기능적인 제약을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사 건물(부산시청사의 유걸안, 인천시청사의 삼우 건축안 등)과 그 외의 건물에서 중정형 공간구성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 것은, 중정이 갖는 구조적 속성과 그것이 한국 건축가를 포함하여 한국인에게 부여하는 공통된 외식구조[주3]와 체험적 속성 때문이다. 이 중정이 디자인의 출발점이자 공간구성의 핵(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이미 이해되었다. 주변의 공간들은 이 중정을 구심점으로 하여 팽창, 수렴하며 다양한 공간적 질서를 형성시켜 준다. 또한 이 중정은 중심성의 개념과 통합된 이미지를 관찰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도구이며, 전통적인 공간경험 의식을 상기시켜 주는 장소(場所)이기도 하다. 서양건축에서 발견되는 중심성의 개념이 구심성을 지닌 닫혀진 공간의 성격으로 나타나는 반면, 한국의 설계경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중정공간의 중심성은 구심적 공간으로 인식된 후 다시 원심적으로 확장되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건축가들에게 이 중정공간의 개념은 하나의 고정화된 구조적 개념처럼 나타난다. 서양의 건축가들이 중세광장이나 가로형태를 배치와 공간구성의 기본적 구조로 해석하여 적용하듯이, 한국의 건축가들은 사찰, 궁궐, 전통주거 등에서 쉽게 발견되는 중정형 공간경험을 의식하고 이것을 관찰자(사용자)의 공간경험 의식과 관련지어 작품에 부여하고자 시도한다. 그리고 이 중정형 공간의 모습은 형태상으로는 아트리움, 실내광장, 옥외마당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체계[주4]로서의 위계적 공간구성과 영역의 경계화 의식의 강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 설계경기 작품에 나타난 모든 건축적 사고유형의 특징이기도 하다. 여기서 건축의 내부공간의 위계와 더불어 외부공간에서의 위계적 공간진입에 의한 공간 체험과정이 중시된다. 이것은 과정적 공간의 체험을 중시해 온 한국 전통건축의 체험구조와도 관련되며, 궁극적으로는 영역의 경계화라는 인지 — 행태적 속성과 연관된다. 공간의 위계화와 영역의 경계화는 건축을 기능, 형태, 내부공간의 차원에서 벗어나 내·외부의 공간적인 연계성에서 얻어지는 장소성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태도는 건축의 창작을 내부에서 출발하여 외부로 접근해 가는 역사적 -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의 기능적 사고유형 및 구조 - 재료 지향적 사고유형과 건축을 외적 형식에서 내부로 접근하고자 하는 형식주의적 - 심미적 패러다임의 기하학적 사고유형과는 그 특성을 달리한다. 오히려 이것은 유형학적 사고유형과 인지 - 행태지향적 사고유형의 시각에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특히, 외부공간의 위계화와 영역의 경계화는 내부공간의 위계적 구성이 사실상 제약을 받는 도서관 건축과 시민·문화회관 건축에서 뿐만 아니라,

❶ 부산시청사의 유걸안과 윤승중안의 평면형식 (1968년)
❷ 중정공간의 이중성과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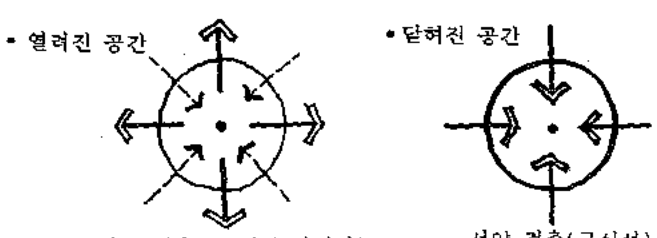

한국 건축 (구심적 원심성)　　서양 건축(구심성)

❷

주3) 디자인 개념 및 사고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플러스 : 1990년 5월, P. 149), 한국의 국내 건축가들이 추구하는 디자인 개념중의 하나로 "한국적 특성과 풍토성의 추구"가 나타났으며, 평면, 입면 형태의 디자인을 위한 일반원칙으로 "마당 개념의 반영", "중심적 개념과 이미지의 반영"이 인급되었다. 자주 활용되는 형태요소로는 "중정"이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중정은 단순한 형태적 요소가 아니라 디자인 개념에 영향을 주는 구조로서의 위계적 의미를 지니며, 배치, 평면, 입면의 전개는 이 중정을 핵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주4) 여기서 체계(體系, system)의 용어는 구조 — 체계 — 요소라는 레벨에 따르며, 윤리상의 특성과 관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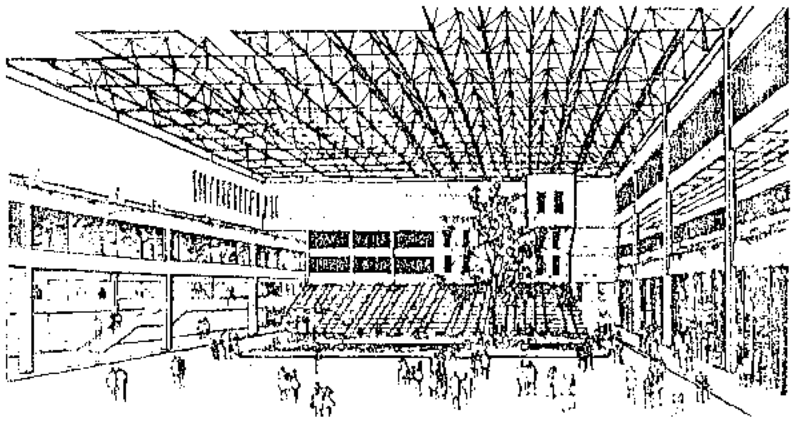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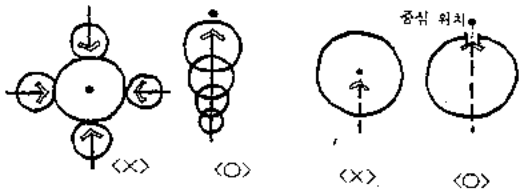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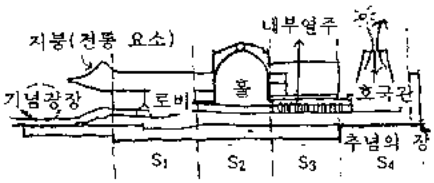

〈건원 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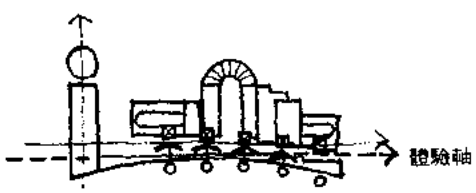

〈삼정 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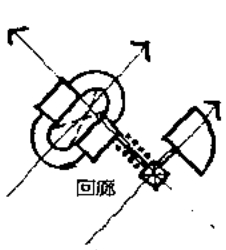

〈일건 案〉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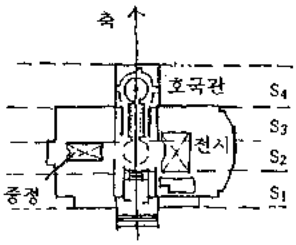

〈건원 案〉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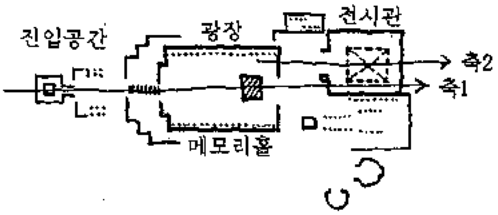

〈정길협 案〉

❼

내부와 공간적 질서가 강하게 요구되는 박물관, 기념관, 법원청사 건축 등에서도 발견된다. 공간의 위계적 구성과 영역의 경계화를 위한 방식은 전통적 배치기법에 의한 공간전개, 기단, 피로티, 일주문, 누각, 수경요소, 빛 등을 도입하여 관념적인 영역 경계의 표식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역의 경계화 설정이 동심원적(同心圓的)인 개념이 아니라 선형적(線型的)인 개념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하나의 흐름선 상에서 각 영역공간은 독자성을 지니면서 주종관계에 의한 선형적 연결고리의 축을 지니며 지향성(指向性)을 내포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은 축 상에서의 진행과정과 함께 중심적 공간이 축의 단부에 있음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된다. 따라서 기념관 건축의 호국관 공간과 법원청사 건축의 법정공간 등과 같이 상징적 및 신성한 공간으로 구분되는 영역의 위치가 중정이나 아트리움의 중심부가 아니라 그곳에서 일정거리 떨어져 접근되는 곳, 즉 인지 – 행태적 경험의 정착점에 설정되는 것은 이러한 공간의식이 한국인의 공간체험 의식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건축가들의 구체적인 디자인 행위의 결경과이기도 하다.

❸ 서울 시민회관의 고주석안의 전천후 실내형 중정공간 (1973년)
❹ 전쟁기념관 건원안의 공간적 위계의 전개방식 (1989년)
❺ 영역의 경계화와 중심적 공간의 위치
❻ 대구박물관의 삼정안, 일건안의 축에 의한 구성개념 (1989년)
❼ 독립기념관의 정길협안의 축과 공간배치의 개념 (1983년)

셋째, 체계로서의 축(軸)의 강조와 인지 – 행태적 체험과정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설계경기작품에 나타나는 축의 개념은 형태적, 공간적인 결속을 위한 골격으로서 뿐만 아니라, 심상적 체험을 위한 시퀀스의 전개와도 관련된다. 이것은 또한 강한 정면성의 강조로 상징성과 기념성을 의도하는 대칭적 축 구성 방식과도 관련된다. 시청사, 법원청사, 기념관, 도서관 건축 등에서 보여지는 강한 대칭성과 정면성은 대칭축의 질서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나, 박물관 건축의 경우 자연 – 인간 – 공간의 유기적 관계성과 자연에의 조화라는 기본적 의도에 의해 비대칭적 축 구성과 꺾인 축, 은폐된 축의 전개를 보여주기도 한다. 여기서 은폐된 축 구성방식은 영역의 경계화라는 공간적 특성에 의해 각 영역의 마디마다 심리적으로 강한 대칭성과 지향성을 느낄 수 있게 하며, 꺾인 축은 공간적 마디의 개념에 의해 영역의 경계화를 강화시켜 준다.

따라서 이 축들은 공간의 연결요소로서 공간적 시퀀스의 경험을 지속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축의 전개방식에 따라 동선의 선택성과 강제성의 의미가 부여되며 이에 따라 행태적 경험을 조절한다. 이 축상에 배열된 여러 요소들은 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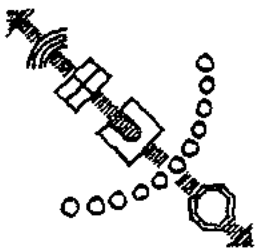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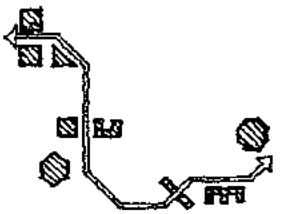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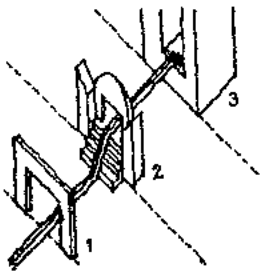

❽

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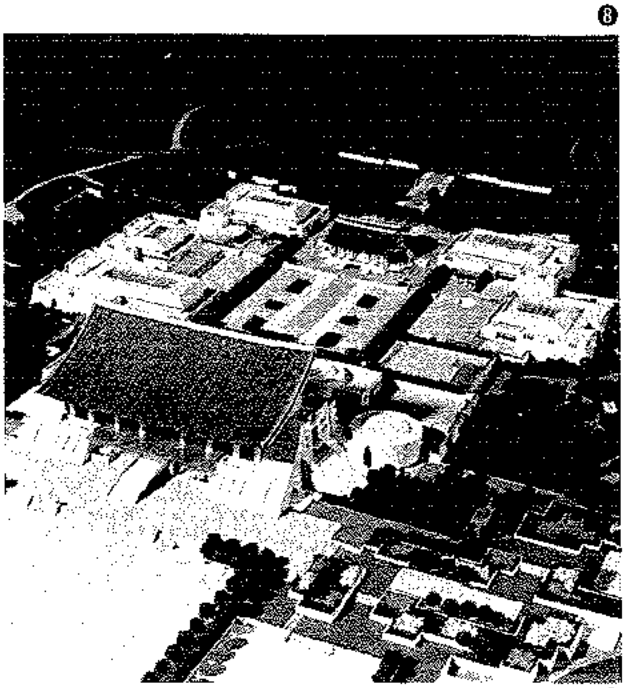

❿

분절시켜 주면서 선형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축의 형식은 방위축, 지세축, 도로축 등의 물리적인 축 뿐만 아니라 체험과 관련된 심리적 축도 고려되고 있다. 또한 이 축들은 평면과 입면의 형태 도출을 위한 착안사항으로 사용되어 공간구서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넷째, 요소로서의 자붕, 열주, 화랑, 기단, 피로티, 수경요소, 화계(花階) 등 전통적인 구성요소들이 모든 사고유형에서 채택되고 있으나, 특히 유형학적 사고와 인지 — 형태 지향적 사고유형의 작품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요소들은 전통의 수용방법과 연관되어 탐구되고 있으며, 전통성, 한국성, 상징성 등의 표현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에 기초한 작품에서 이러한 전통적 요소들은 축의 전개에서 시각적 연결을 위한 요소로, 또는 영역의 경계화와 공간의 위계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전통요소의 수용방식은 다음의 몇가지 유형으로 비교될 수 있다.

1) 역사적 요소의 모방과 변형에 의한 방법으로 자붕, 열주, 기단, 문양 등을 형태화 요소로 사용하여 물리적 형태가 주는 연상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 방법은 60년대와 70년 초기의 유형학적 사고유형의 작품에서 보여진다.

2) 역사적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추상화하고 그 속에 내재된 원리나 질서를 재현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고전적 3분 구성법, 기단의 형성, 위계적 공간구성, 누각 형식의 피로티, 음영에 의한 처마지붕과 벽체의 지각적 분리효과 등이 활용된다. 이 방법은 80년대의 유형학적 사고와 기하학적 사고유형의 작품에서 주로 나타난다.

3) 전통적 형태요소나 공간구성의 기법보다는 그 속에 내재된 이미지나 체험구조적 속성을 추출하여 이것을 전통수용과 해석의 틀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수경요소에 의한 관념적 경계인식, 중정에 의한 구심적 공간의 강조, 축에 의한 동선의 선택성과 강제성의 부여 및 공간의 진입감, 가벽, 피로티 등에 의한 영역의 경계화 등이 그 보편적 수법이다. 이 방법은 80년대의 기능적 사고유형과 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전통의 참조방식은 요소에 의한 형태적 측면에서 구성원리나 기법에 의한 공간적 측면으로 변화되고, 이것은 최근에는 심상(心像)에 의한 체험적

❽ 축의 형성과 인지—행태적 경험과정
❾ 국립중앙박물관 (1966년, 강봉진 당선), 전통형태의 모방
❿ 독립기념관 (1983년, 김기웅 당선), 전통형태의 변형

주5) 이러한 사실은 국내 건축가의 의식조사를 위한 설문에서 고전적 요소의 반영이 평면 및 입면형태 디자인을 위한 일반적 원칙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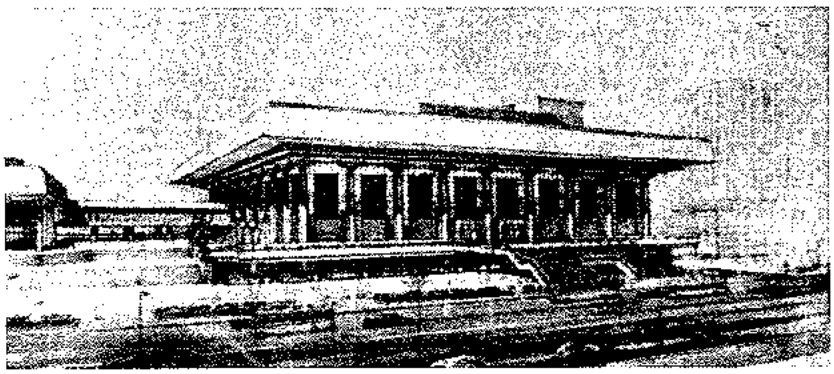

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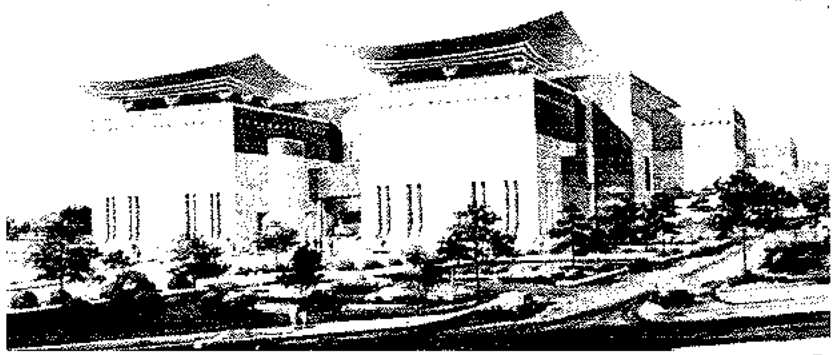

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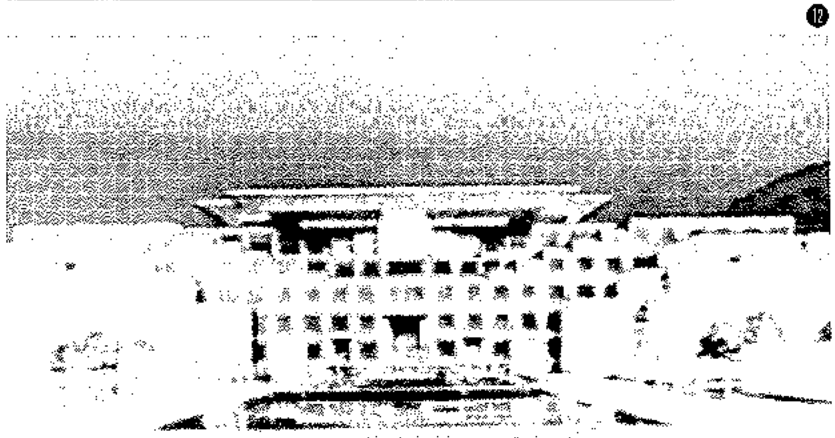

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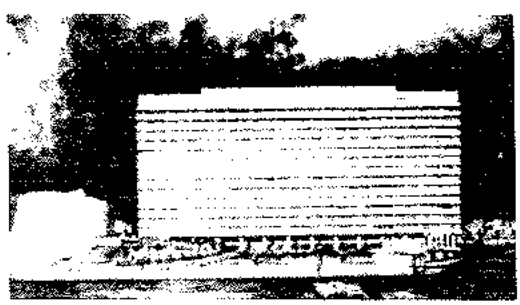

⓮

⓫ 시민 문화회관 (1973년, 엄덕문 당선), 전통형태의 현대화
⓬ 부여박물관의 삼정건축안 (1989년), 전통형태의 추상화
⓭ 전쟁기념관 창조 건축안 (1989년), 한국적 지각특성의 추상화
⓮ 정부종합청사의 나상기안, 인공기단의 형성 (1967년)

축면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적 사고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현상, 즉 고전적 — 인본주의적 패러다임(유형학적 사고유형)과 역사적 — 실증주의적 패러다임(기능적 사고유형)에서 수용미학적 패러다임(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으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다섯째, 인공과 자연의 분리개념이 뚜렷하며, 기단, 수공간, 열주, 화계, 피로티, 바닥 재료 등은 인공(건축)과 자연(대지)을 분리시켜 주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 기단은 영역을 경계화하고 공간을 위계화함으로써 위계성과 인공적 질서를 강조해 준다. 이 기단은 공공청사의 경우 평지위에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공적영역으로서의 독자적 장소를 확보하여 권위와 상징을 표현한다. 박물관과 도서관 건축의 경우에는 기단형의 데크 프라자는 영역의 경계화 외에도 하부에 기능적 공간들(미술관, 전시관, 부대시설 등)의 수용과 다양한 동선의 분리효과를 얻기위해 채택되고 있다.

열주와 회랑은 영역은 경계화를 위한 기본적 도구이지만, 또한 인공의 영역(건축)과 자연의 영역(대지)을 분리시키는 도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열주에 의한 회랑 공간을 단지 안과 밖의 전이적 공간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인공과 자연을 서로 교차하여 볼 수 있는 투시 창(透視窓)의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전쟁기념관의 건원안은 이러한 개념을 잘 보여준다. 투시창의 개념은 전통주택에서도 마당과 안채, 사랑채의 경계에 처마와 회랑이 쓰이지만, 이곳에 과정적 공간[주6]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보다 분명해 진다. 따라서 인공과 자연의 수평적 분리의식은 기단에 의해 이루어 지며, 수직적 분리의식은 열주와 회랑을 통해 이루어 진다.

수공간은 세속적 공간과 신성 공간,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관념적인 분리에 이용된다. 따라서 독립기념이나 전쟁기념관처럼 의식적(儀式的)인 공간의 경계가 강화되는 곳에 도입된다. 이 수공간은 서양의 광장의 분수나 호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한국 설계경기 작품에서 수공간을 단순한 기능적인 차원에서 도입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부분적으로는 건물의 전경으로 또는 동선흐름의 유도를 위한 시각적 요소로 사용되어 진다.

화계(花階)는 관찰자가 축을 따라 진행하는 동안 시선의 유인요소로 쓰이고 있으나, 이것은 시선의 영역을 그곳에 한정시킴으로써 관찰자의 영역과 그 너머의 영역을 경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관찰자는 영역의 경계내에 있는 인위적인 질서에 대한 공간감을 우선적으로 얻게된다. 바닥재료에 의한 시각적 구별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설계 경기 작품에서는 이러한 의도를 간과하고 단지 패턴상의 변화에 의해 동일한 효과를 얻고자 하는

주6) 과정적 공간이란 영역 위계화의 전 과정을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루이스 칸의 복도없는 공간 결합의 방식은 두 경계 영역간의 확연한 분리와 결합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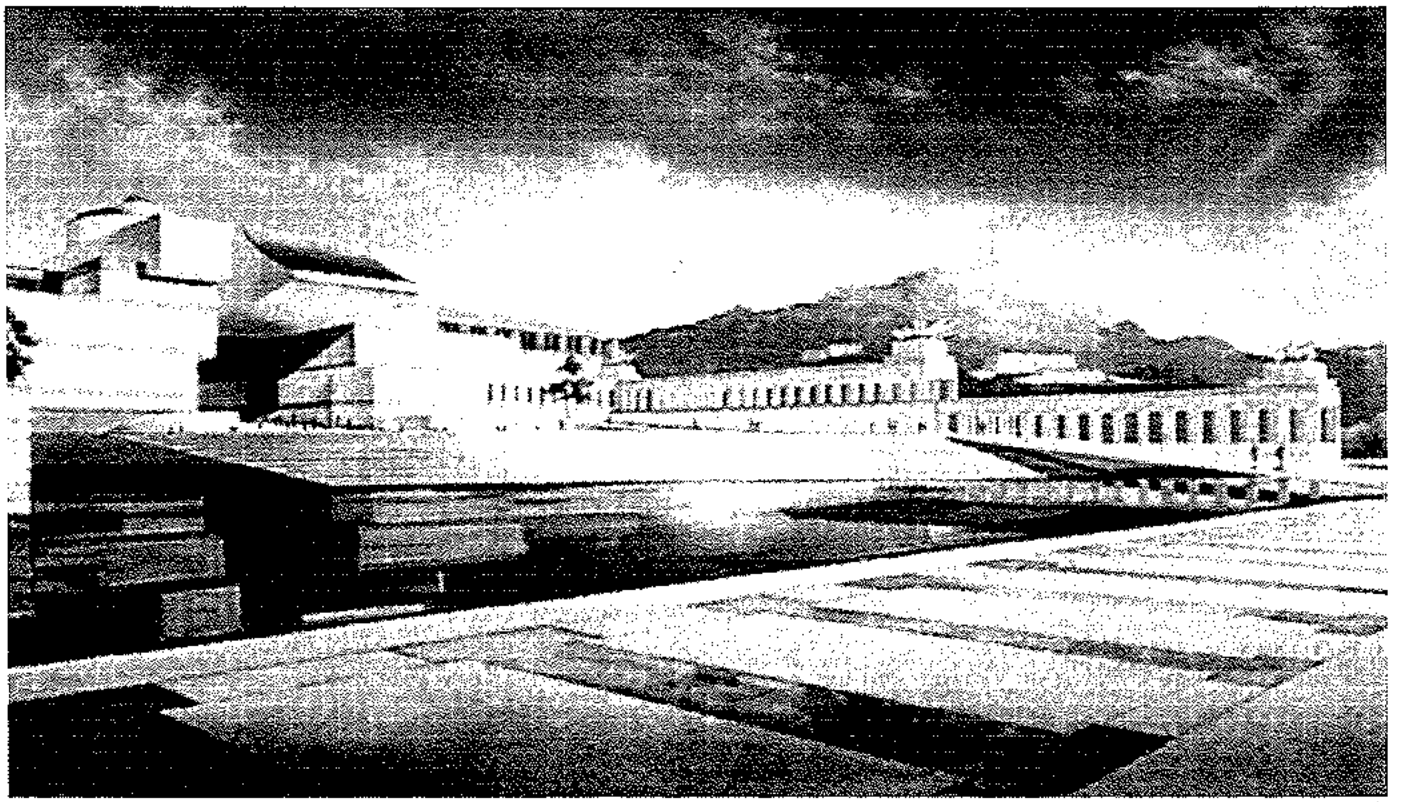

⑮

대도를 보여주고 있다.

피로티는 누각의 개념에서 인용된 것으로 공간전이의 요소이면서 또한 공간의 경계화 요소로 작용한다. 가벽과 일주문 형태는 벽처럼 단절된 경계영역이 아니라, 상호분리 되면서도 의식적으로는 중첩과 투과되는 경계영역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섯째, 한국적 표현방식이 지붕과 열주와 기단, 성벽의 경사형 매스 등으로 받아들여지던 기존의 인식은, 음영에 의한 처마지붕과 벽체의 분리, 열주, 회랑과 벽면의 중첩, 공간의 중층적 전개 등 지각적 속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붕의 형태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매시브한 형태요소를 강조하는 것과 또 결합부의 전면을 동일한 재료로 마감하는 것도 서로 다른 특성을 상이한 재료로 구별하여 인지시켜온 전통적인 표현 수법과는 조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체험적 속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중정형 공간에 담긴 공간적 속성, 공간의 위계화와 영역의 경계화, 축의 전개와 인지 — 행태적 시퀀스, 경계요소로서의 기단, 열주, 회랑, 수경요소, 화계, 피로티, 한국적 표현 효과로서의 음영에 의한 처마선과 벽체의 강한 분리, 공간 층의 중첩 등은 관찰자(사용자)의 체험적 속성을 의식한 건축가들이 작품에 부여하고자한 인지 — 행태적 속성과 관련된 디자인 구성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 구성원리에 담겨진 속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생명력 없는 물리적 형태의 겉모습만 보게되는 것이다.

2) 인지 — 행태적 속성의 분석

한국 설계경기의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디자인 특성들로부터 인지 — 행태적 속성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원리와 요소를 추출하여 그 건축적 적용의 가치를 검토하는 작업은, 건축적 사고의 폭을 확장하여 한국적인 체험구조의 본질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여기서 속성은 인간의 체험구조와 관련된 심리적 구조의 개념이며, 원리는 이 속성이 구체화되기 위하여 지녀야 할 모습이고, 요소는 이러한 원리를 현실화하기 위한 물리적 인자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소는 그것의 의미와 구성단위가 항상 가변적이며 종속적인 성격을 띤다. 한국 설계경기 작품에서 발견되는 인지 — 행태적 속성들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적 마디와 경계화의 개념

공간적 마디와 경계화의 개념은 한국 설계경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인지 — 행태적 속성 중의 하나이다. 이 속성은 공간에 대한 명료한 이해와 경험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전시공간의 결절점 인식, 성격이 다른 공간에서의 이동, 공간적 이미지와 위치적 감각의 확보, 공간 층(層)의 전개에 의한 깊이감의 체험 등은 이 마디와 경계화라는 속성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은 건축·디자인 영역에서 전이공간, 과정적 공간, 관념적·위계적인 공간구성, 공간의 결절점 부여라는 원리로 나타나며,

⑮ 전쟁 기념관의 건원안, 열주의 투시창 개념 (1989년)

⑯ 기단과 열주, 회랑에 의한 공간의 수평적, 수직적 분리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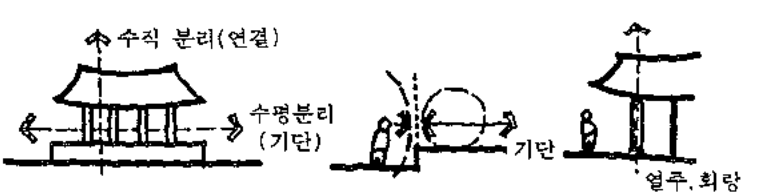

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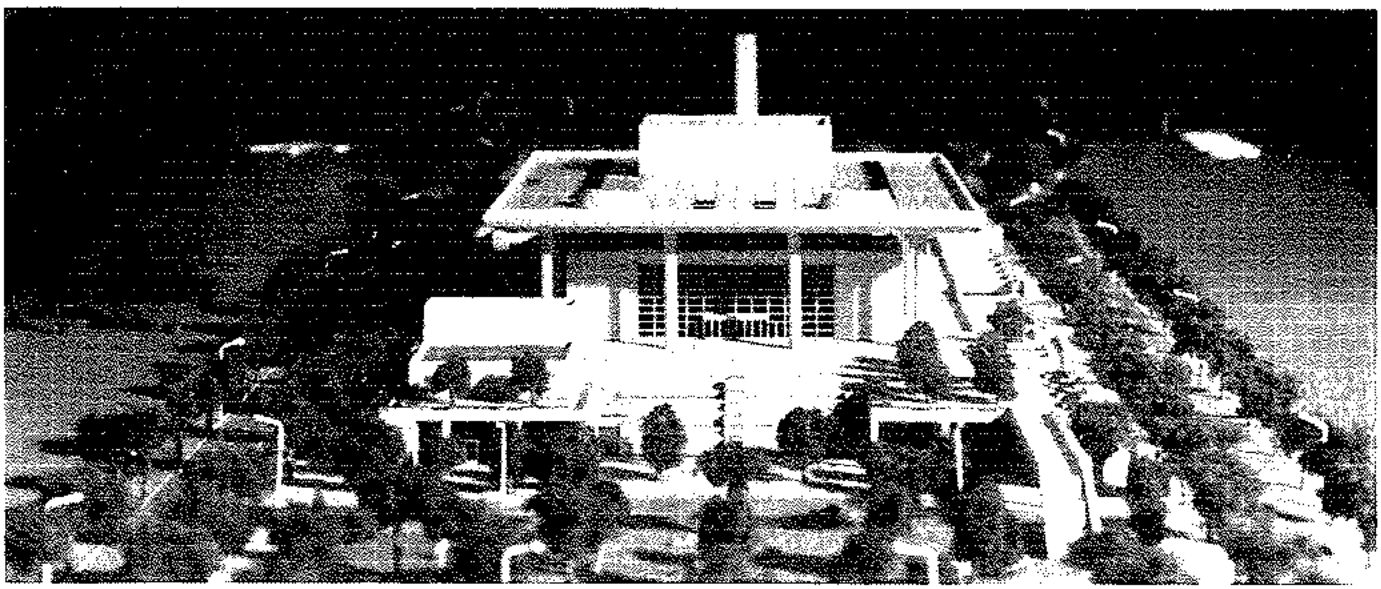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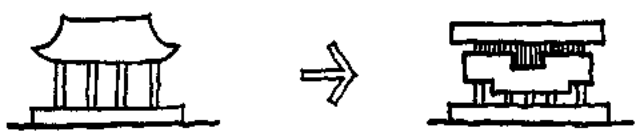

수로(水路), 벽천(壁泉), 피로티, 일주문, 회랑, 기단 등이 그 물리적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
마디(node)와 참조틀의 개념은 중요한 심리학적 구조개념으로 작용한다.

(2) 열려진 공간과 닫혀진 공간의 의식

열려진 공간의 속성은 중정형의 공간 구성에서 발견되며, 닫혀진 공간의 속성은 아트리움이나 사방이 막힌 口字型의 회랑공간(回廊空間)에서 발견된다. 중정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간구성의 핵이며 한국적인 체험을 조절해 주는 구조의 속성을 지닌다. 이 중정의 공간은 기능적인 분리보다 독자적인 공간으로 인식되는 "채"의 개념으로 분화되어 나타난다. 아울러 항상 자연과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 열려진 공간으로 의식되도록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홀(hall)과 아트리움(atrium)은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한정된 공간영역의 경계를 나타낸다. 가시성의 확보, 인지적 중심영역, 방향감각, 지속적인 상호연계성, 중정형 공간개념, 공간의 열려진 의식과 전이를 암시하는 형상 등이 원리로서 작용하며, 피로티, 개구부의 틀, 누각, 브릿지, 연결통로 등이 물리적 요소로 채택되어 진다. 전이(transition)와 공간의 형상성(configuration)은 중요한 심리학적 구조개념이다.

(3) 중심적 위치 속성으로서의 축(軸)의 단부(端部)

공간구성과 전개에 있어서 중심적 공간은 항상 축의 단부나 동심원상에서 이탈된 단부에 설정되는 것이 한국 설계경기 작품에 나타난 중심적 위치속성이다. 기념관의 호국관, 법원의 법정공간 등은 그 성격상 중심적 공간의 성격을 지니며, 이 공간의 위치가 전체 공간구성의 위치적 관계와 그에 대한 체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공간은 축상에서 공간의 분화와 전개에 의해 의식의 심층화 과정을 거쳐 중심적 공간으로 인식되어 진다. 따라서 공간의 크기나 규모보다 그 공간이 놓여지는 위치가 보다 중요하다. 위계적 진입공간, 공간의 주종관계, 공간적 고정점 등이 원리로 작용하며, 공간의 볼륨, 형상, 스케일, 계단, 회랑, 빛, 연결통로 등이 그 물리적인 구성요소로 사용되어 진다.

(4) 체험 축의 구성과 시퀀스

한국 설계경기 작품에서 나타나는 축의 구성은 정면성을 강조하는 대칭축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경직된 축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체험을 위한 축 구성으로 한국적 공간체험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러한 축은 은폐 축과 격인 축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축의 꺾임과 분절을 통해 마디 인식을 강화하여 인지적 거리감을 깊게 하고 있다. 축상에서의 행태는 항상 일탈의 가능성을 지니도록 배치 축 또한 유연하게 처리된다. 파정적 공간구성, 조망과 접근성의 확보, 축 구성의 성격부여 등이 구성원리로 작용하며, 계단, 열주, 회랑, 지세 축 등이 구성요소로 채용된다. 통로(path), 정위(定位, orientation), 공간적 참조틀(spatial reference of frame)의 개념은 이 축의 구성과 행태적 시퀀스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심리학적 구조개념이다.

(5) 전통성의 지각과 상징성의 인지

전통성의 지각은 공간적 경험의식보다 형태구성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통성의 지각은 한국성이라는 상징성의 의미로 연결되고 있으며, 기념성, 역사성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재현적 형태구조가 중시된다. 전통요소나 모티브에 의한 연상적 이미지의 상기보다는 대칭적 구성, 정면성의 강조, 고전적인 3分構成法, 음영에 의한 형태의 지각적 분리효과 등이 구성원리로

⑰ 인천문화회관의 아도무안(1988년)
⑱ 한국적 지각효과의 표현방식

작용하며, 기단, 열주, 처마지붕과 처마선, 성벽요소, 재료와 패턴 등이 형태구성의 요소로 채택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인지 — 행태적 속성과 관련된 디자인 원리, 요소들의 상호연관 관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가시성, 시각적 결절점과 처리방식, 공간적 전이, 공간의 상호 연계성, 적인 축과 은폐 축에 의한 분절효과, 비대칭적 구성, 주공간과 부공간의 위치적 관계, 위계적 진입공간, 중정형 공간구성, 기단식 구성, 자연과 인공질서의 구분, 전통요소에 의한 지각적 특징의 표현원리 등은 한국인의 인지 — 행태적 속성을 고려하여 디자인 하는데 유용한 디자인 개념과 어휘가 될 것이다.

〈표 1〉한국 설계경기 작품에 나타난 인지 — 형태적 속성, 원리, 요소

환경정보속성	인지 — 행태 속성	원리	요소
마디와 참조를 (nodes & referential point) 랜드마크 (landmarks)	공간적마디와 영역의 경계화 의식	• 시각적 결절점 • 결절점 처리방식 • 공간적 전이 • 공간의 중첩 • 위계적 공간구성 • 공간의 상호연계성	- 연결통로 - 브릿지 - 수로, 벽천 - 가벽 - 회랑, 기단
통로와 정위파악 (paths & orientation)	체험축과 시퀀스의 경험	• 과정적 공간구성 • 적인축, 은폐축에 의한 분절효과 • 비대칭적 구성 • 인지적 거리감 • 전이적 공간 • 가시성(visibility)	- 지세축 - 자연축 - 열주, 회랑 - 계단 - 레벨차 - 접근성 요소
전이(transition)	중심적 위치로서의 축의 단부 열려진 공간의식	• 종착점에 의한 (anchorpoint) 중심성 강조 • 실외 마당과 중정형 공간 • 가시성의 확보 • 공간의 주종관계 • 위계적 진입공간 • 인지적 중심영역 • 지속적 상호작용의 가능성	- 중정형 평면형태 - 연결통로 - 시각적 개구부 - 투시창 (회랑, 피로티) - 공간의 볼륨 및, 스케일, 형상
형상성 (configuration)	인공과 자연의 분리 의식	• 중정형 공간구성 • 기단식 구성 • 중심공간과 부속공간의 분리 • 이질요소의 공존 • 공간의 위배화	- 기단, 피로티 - 열주구성 - 시각적 중첩요소 - 수공간, 화단 - 바닥재료
형태와 의미구조 (form & meaning)	전통성의 지각 상징성의 인지	• 대칭적 구성지향 • 정면성의 강조 • 전통구조원리 • 고전적 3분 구성법 (기단, 몸체, 지붕) • 재현적 형태구성	- 고전의장요소의 도입 - 기단, 열주 - 처마지붕 강조 - 성벽요소 도입 - 음영에 의한 형태 분리효과

3. 맺음말 : 새로운 건축적 사고의 필요성

전반적으로 한국의 설계경기 작품은 다양한 건축적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능적 사고유형과 유형학적 사고유형이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난다. 최근에 와서야 확장된 기능적 사고유형의 개념과 유형학적 사고 및 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에 기초한 디자인 접근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건축적 사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에 기초한 접근태도는 기존의 많은 사고유형에서 간과된 중요한 디자인 개념과 원리 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 설계경기 작품에서 발견되는 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의 디자인 접근태도는 이미 60년대 초의 작품 속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의 작품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특성은 건축을 기능, 공간, 형태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인지 — 행태적 체험을 디자인의 중심개념으로 설정하여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외장적, 형태적, 공간론적인 관점의 원리와 요소에 의한 물리적인 구성방법을 지양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원리와 요소들은 관찰자(사용자)의 인지구조와 행태적 속성에 부합되는 공간과 형태표현을 위한 도구로 재해석되어 수용된다.

건축작품의 창작과 평가 과정에서 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에 기초한 접근은 인지 — 행태적 속성에 관련된 디자인 개념의 이해에서 출발된다. 한국의 현대 건축가들에게 이러한 개념과 속성은 최근의 건축적 사고의 변화흐름과 함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설계경기의 작품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다. 또한 설계경기 작품의 심사와 평가과정에 대한 관점과 입장도 기존의 작품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건축적 체험을 강화시켜 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건축 디자인에서 패러다임과 건축적 사고유형 및 디자인 특성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 상호간의 특성의 차이는 인간의 요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지 — 행태 지향적 사고유형은 인간의 요구와 관련된 기능의 개념을 단지 물리적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심리적, 상징적 측면으로까지 확상하여 수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간 요구의 관점에서 가장 기능적인 것은 인지 — 행태적 속성과 관련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경험구조와 작품의 효과구조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찰자(사용자)의 인지구조와 행태 속성에 부합되는 건축공간과 형태를 창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사고와 시야를 확장하여 기존의 건축적 사고유형에서는 간과되었던 인간체험 중심적인 디자인 개념과 어휘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끝〉

21C 건축을 향하여

아라타 이소자키

Arata Isozaki (1931~)

매너리즘에서 픽처레스크로

(1980년 이후의 아라타 이소자키)

— 하지메 야츠카 —

번역 / 이용재
Translation by Lee, Yong - Jae

I.

1979년에 설계되어 83년에 완공된 쯔꾸바센터 빌딩은 아라타 이소자키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다. 이 작품으로 이소자키는 매너리즘시대를 마감하고 포스트모더니즘시대로 들어서는 것이다. 사실 이 작품에서도 지난 70년대에 형성된 주제와 형식을 다루는데 있어 매너리즘적인 수법이 아직 보여진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서구고전이나 신고전적인 이디엄들의 직설적인 인용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성들이다.

어떻게 이런 "고전주의자로의 변신"이 갑자기 일어나게 됐을까? 사실은 지난 건축형성기에 이미 그같은 고전적 색채는 "숨겨져"있었다. 다시말해 이소자키가 존경했던 러시아 아방가르드나 르 꼬르뷔제, 미스 반 데어 로에, 아돌프 로스 같은 건축가들의 작품에 이미 팔라디오나 르두의 색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근대와 고전간의 맞바꿈은 1940년대 초반에 콜린 로우에 의해 예견된 바 있다. 루돌프 위트코워의 르네상스 연구에서 영향받은 로우의 연구는 80년대에 이소자키의 절친한 친구였던 피터 아이젠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아이젠만이 팔라디오와 테라니간의 작품상의 유사성을 신택스에서 찾은 반면 이소자키의 건축은 뚜렷한 이론적 배경이 없이 전개돼 나간 점이 다르다. 다시말해 이소자키의 근대적 고전주의의 패러다임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의 작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소자키의 스승인 켄조 단게의 작품에서 연관된 패러다임을 찾으려는 시도는 재미있는 착상일 것이다. 세계대전 시절의 현상설계 당선안 같은 단게의 초기 작품들은 근대언어와 민족언어간의 새로운 통합을 이루려는 웅대한 시도들을 보여준다. 예를들어 1929년의 먼다네움 프로젝트는 일본의 "신도"(일본신사의 제관)의 이미지에 꼬르뷔제의 원형적인 구성체계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르 꼬르뷔제의 고전적인 경향이 엘 리치스키같은 보다 엄격한 모더니스트들에 의해 공격받은 것처럼 단게의 성공도 리치스키의 구성주의 패러다임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전후 단게는 곧 히로시마 평화센터의 현상설계에 당선된다. 이 작품은 "신도"의 이디엄과 그리스의 유형학을 상호 접목시키면서 꼬르뷔제의 구성수법으로 풀어나갔다. 단게의 히로시마 평화센터와 이소자키의 쯔꾸바센터를 비교해보면 그들 두 건축가의 본질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상징적인 공공건축을 풀어나가는데 있어 이소자키는 스승인 단게의 모더니즘과 고전주의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 르 꼬르뷔제처럼 진정한 모더니스트였던 단게는 극적인 연출을 즐길줄 아는 매너리스트이기도 했다. 단게는 모더니스트의 규율을 넘어서서 주어진 프로그램보다 상징성을 더 부각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축적된 상상력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단게는 모더니스트이자 매너리스트였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소자키는 포스트모더니스트이자 매너리스트이다. 초기시절부터 주저없이 기념비성을 드러내보이고 싶어했던 이소자키에게 있어 쯔꾸바센터는 신나는 작업이었다. 기념비성은 그의 개인적이고 풍자적인 언어를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에 어울리는 가장 개성적인 작품인 키타큐슈시 미술관은 분명히 엘 리치스키의 작품으로부터 주요 모티브들을 빌어오고 있다. 다만 여기서 러시아의 "세계혁명을 위한 건축"이라는 사회적 이념은 가져오지 못한다.

쯔꾸바센터는 전후 지방사회의 재건이라는 정책에 따라 조성되는 신도시의 중심시설로 설계되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건축가 개인의 양식적인 열망보다는 "국가의 의지"를 권위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더구나 신도시의 유일한 공공공간에 들어서는 관계로 상징성도 요구되었다. 이소자키는 우선 근대건축과의 모순적인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부터 착수했다. 다시말해 강요된 균제와 권위적인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한 이소자키는 보다 직설적인 고전어휘를 채택하여 지나치게 위계화된 구성체계를 피하고 싶어했다. 그러기 위해 이소자키는 건물 중심에 빈공간(선큰 플라자)을 두어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념비적 요소로 삼았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기념비성에 대한 이같은 반어적인 해석은 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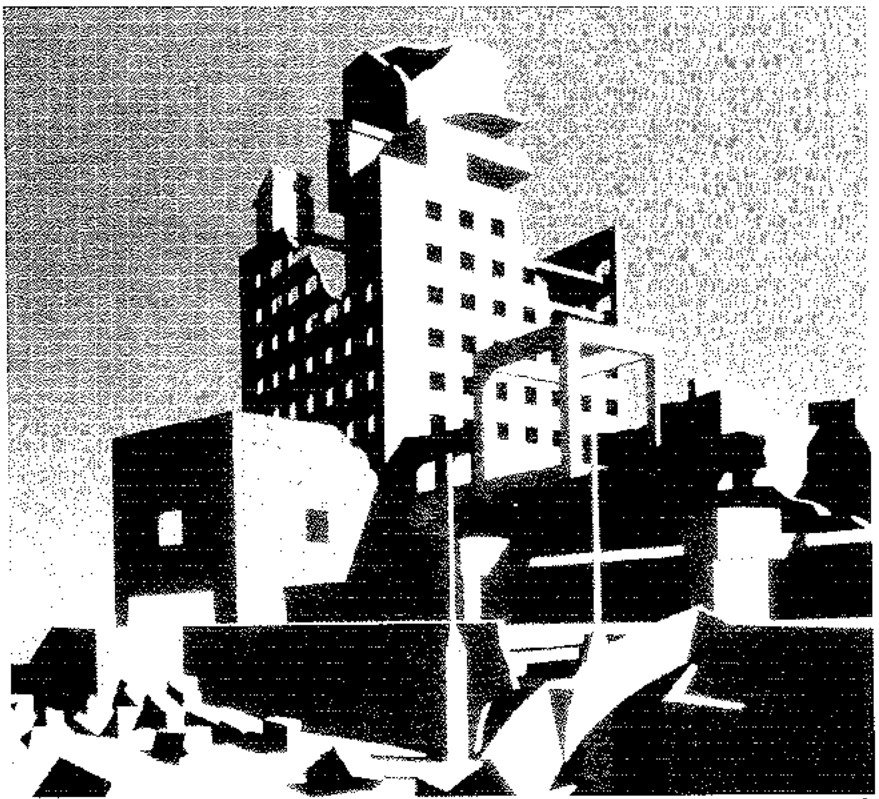

❶ Tsukuba Center Building (1983)

세들마이어의 모더니즘에 대한 계시적인 경구인 "중심의 상실(loss of the center)"에 잘 어울렸다. 이제 쯔꾸바센터는 현대건축에서 어떤 "중심(center)"도 가능하지 않음을 역설한다. 이같은 지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념비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고전적인 언어를 채택하는 것은 건축의 인식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이 작품은 보는 관점에 따라 상반된 두가지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 하나는 확신을 결여한 건축가의 소심한 대응이라는 해석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해독을 가능케한 성공적인 시도라는 해석이 그것이다.

쯔꾸바는 사회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오사무 이시야마나 토요 이토처럼 지난 70년대에 이소자키의 영향아래 성장해 왔던 젊은 건축가들이 보기에 쯔꾸바센터의 부정할 수 없는 기념비성은 공공영역의 사상에 대한 뻔뻔스런 범죄행위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물은 기득권 계층에 야합한 산물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급진적인 "적대"는 당시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고도로 발전된 소비사회에서 사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분은 거의 소멸됐다. 이제 국가는 더이상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로 무장된 통합된 아이덴티티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소자키도 힘을 상실한 국가 형태에 대한 풍자로 이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후 이소자키는 "풍자의 건축가"이기를 포기한다.

Ⅱ.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축계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규범들은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이같은 부재는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다른 사건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이제 질정의 경력에 이른 이소자키의 세대들은 그같은 부재상황을 상당히 초조하게 받아들인다. 이 시기는 건축계에서 새로운 국제건축의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건축가들이 국경을 초월한 각종 현상설계를 독점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제 오히려 비행기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그들은 각종 현상설계에 초청되어 자주 당선작을 내곤 한다. 이소자키의 말을 빌리면 그들은 건축 "마피아"를 형성하고 있다. 그 마피아에 속한 제임스 스털링, 마이클 그레입스, 피터 아이젠만, 리차드 마이어, 한스 홀라인, 프랭크 게리 등은 이소자키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CIAM 이나 팀텐처럼 공유하는 이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각기 독자적인 개념과 방법론을 사용할 뿐 결코 그들을 묶어줄 어떠한 이념적 고리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소비사회에 적합한 상품화된 이름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그 소비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풍자건축"을 추구하는 이소자키 역시 이같은 과정의 산물일지 모른다. "포스트모던"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사회상황의 직접적인 산물일 것이다.

1980년대 이전의 아방가르드 건축들은 역사의 부정을 궁극적인 전략으로 삼았었다. 피터 아이젠만이 그 대표적인 건축가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로상태로의 계시적인 접근은 어쩔 수 없이 영속적인 회귀를 비난하고야 만다. 왜냐하면 어떤 궁극적인 중심이 처음부터 폐기된 상태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건축은 소비사회에서 물려받은 영속적인 회귀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부정이나 풍자 역시 지루한 구식의 유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개념적인 입장보다는 상대적인 경향이 더 각광받는 시대이다. 예를들어 아르데코와 꼬르뷔제의 어휘를 조금 가다듬어 향락적이고 피상적인 제스처를 뽐내는 마이클 그레입스는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축가가 되었다. 이런 쾌락주의는 현 시대의 일시적인 풍조에 어울리는 양식이다. 이제 건축가들간의 독자성은 제거되고 국경이 무너진 세계도시에 어울리는 일반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한때는 양식적인 차이가 모던과 포스트모던, 합리주의와 역사주의를 구분하는 이념적인 실마리였지만 이제는 상대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건축가들은 자신의 지역적인 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80년대 스털링은 영국의 대명사였고 프랭크 게리는 미국 서부 해안의 특성을 유지하였으며 알도 로시 역시 의심할 바 없는 이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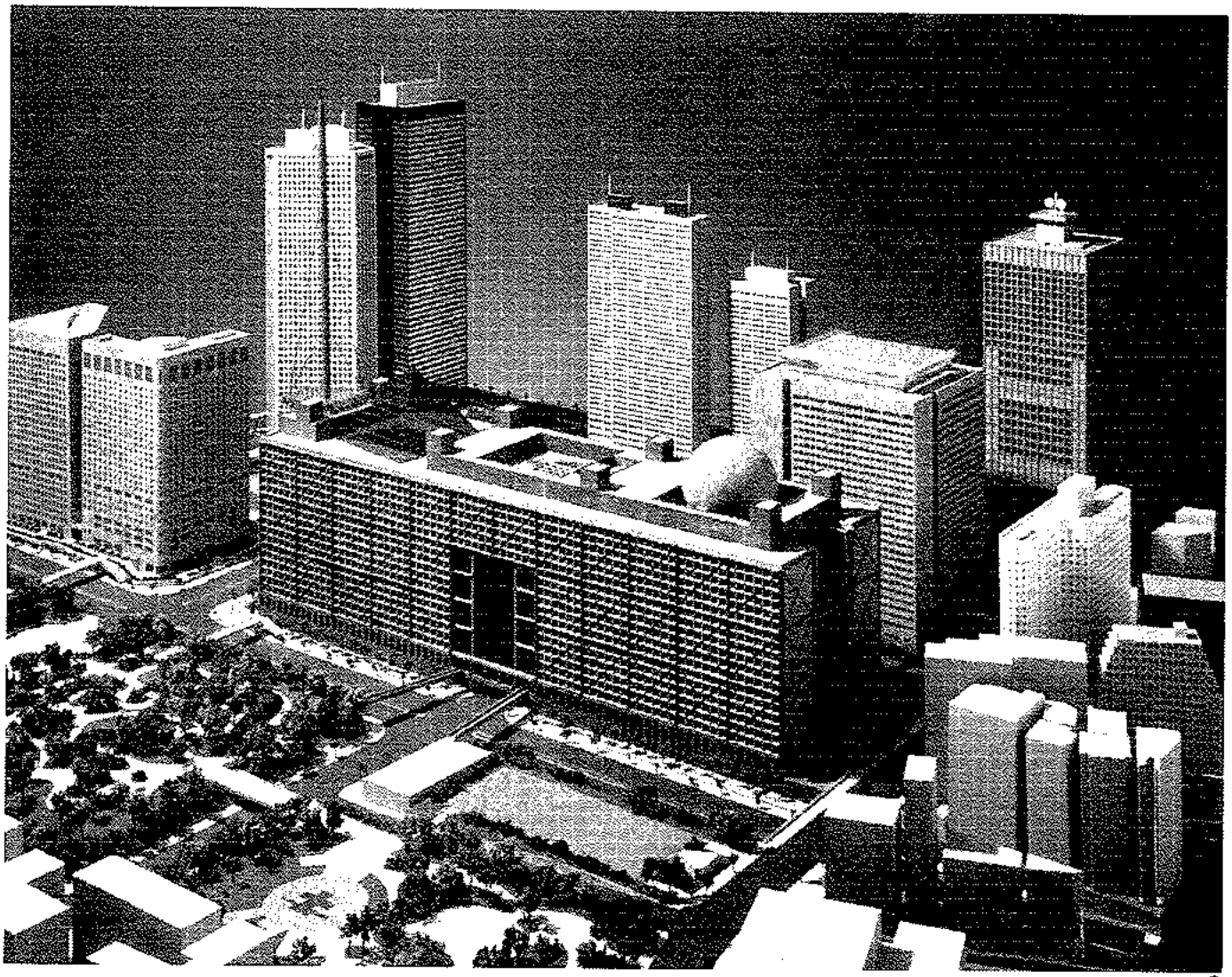

❷

건축가였다. 그럼에도 그들 각자의 컨텍스트는 끊임없이 변화되었다. 고향의 지역적인 토양에서 배태된 그들의 건축은 이제 다른 세계로 이식되기 시작했다. 베를린에 세워진 스털링의 건축은 미스의 내셔널 갤러리와 에밀 파렌캄프의 쉘 빌딩과 나란히 서서 개르만성을 강렬하게 암시하며 후쿠오카에 등장한 로시의 호텔은 무언가 상실된 장소성을 가이하게 암시한다. 이같은 비판적인 지역주의의 주창자들은 탈문맥주의(decontextualization)를 강하게 암시한다. 사실 탈문맥주의는 해체주의(deconstruction)보다 훨씬 진지하고 중요한 현상이다.

스털링이나 게리, 로시와 비교해 볼 때 이소자키는 그렇게 지역적인 성향이 강한 건축가는 아니다. 물론 그는 일본의 전통예술에 깊은 조예를 가졌지만 일본건축의 전통어휘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80년대에 이소자키는 세계적인 건축 "마피아"의 중심인물이었다. 그는 가끔 일본의 건축가라는 표현보다는 일본에서 온, 건축가 즉 굳이 국경을 가르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일본에서 자란 건축가인지 조차 착각할 때가 많다.

반면에 키시오 구로까와나 카즈히로 이시이같은 건축가들은 일본의 어휘를 즐겨 사용한다. 구로까와에게 있어 일본의 예술과 문화는 아직도 서구의 이원성보다 자유롭다. 그래서 일본의 감각으로는 흑과 백보다는 회색이 더 선호된다. 이들 실천가들은 지금 모더니즘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어쨌든 이소자키는 분명히 서구의 모더니즘과 고전주의를 신봉한다.

현대건축에서 고딕이라는 주제는 두개의 상반된 방식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그 하나는 단계의 신도쿄청사에서와 같은 노골적인 적용이다. 또다른 하나는 리차드 로저스의 로이드사옥에서와 같은 간접적인 적용이다. 그러나 이소자키의 고딕 차용은 그 두 가지 방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동경시청사 현상설계에 초빙된 이소자키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 대부분의 초청건축가들이 고층구조로 해결한데 반해 이소자키는 대규모 수평구조물위에 거대한 안테나와 반원형 천구 피라미드가 얹혀진 안을 제안한다. 이 안은 베스닌이나 레오니도프같은 러시아 구성주의자의 안과 닮아 있다. 현상설계에 떨어진후 이소자키는 전에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던 단계의 안을 신랄하게 공격한다. 단계가 고딕의 장식적인 모티브들을 피상적으로 빌려왔다는 점 때문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장식과 고딕을 혐오하는 이소자키의 일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로저스의 고딕은 괜찮고 단계의 고딕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물론 로저스는 고딕을 직설적으로 차용하지는 않았다. 로저스가 현대기술의 저돌적인 사용에 있어 역사적인 함축을 간과하고 있는 점이나 위계적인 질서에 대한 지적인 인식을 결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건축가가 역사적인 과정을 추상적으로 의식하기 위해서는 르네상스건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왜냐하면 르네상스 건축가들은 당시의 신플라톤 학파의 철학적 논증과 공존의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로저스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빌더이다. 물론 이소자키도 진보적인 구조기술의 사용에 주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더라도 그는 진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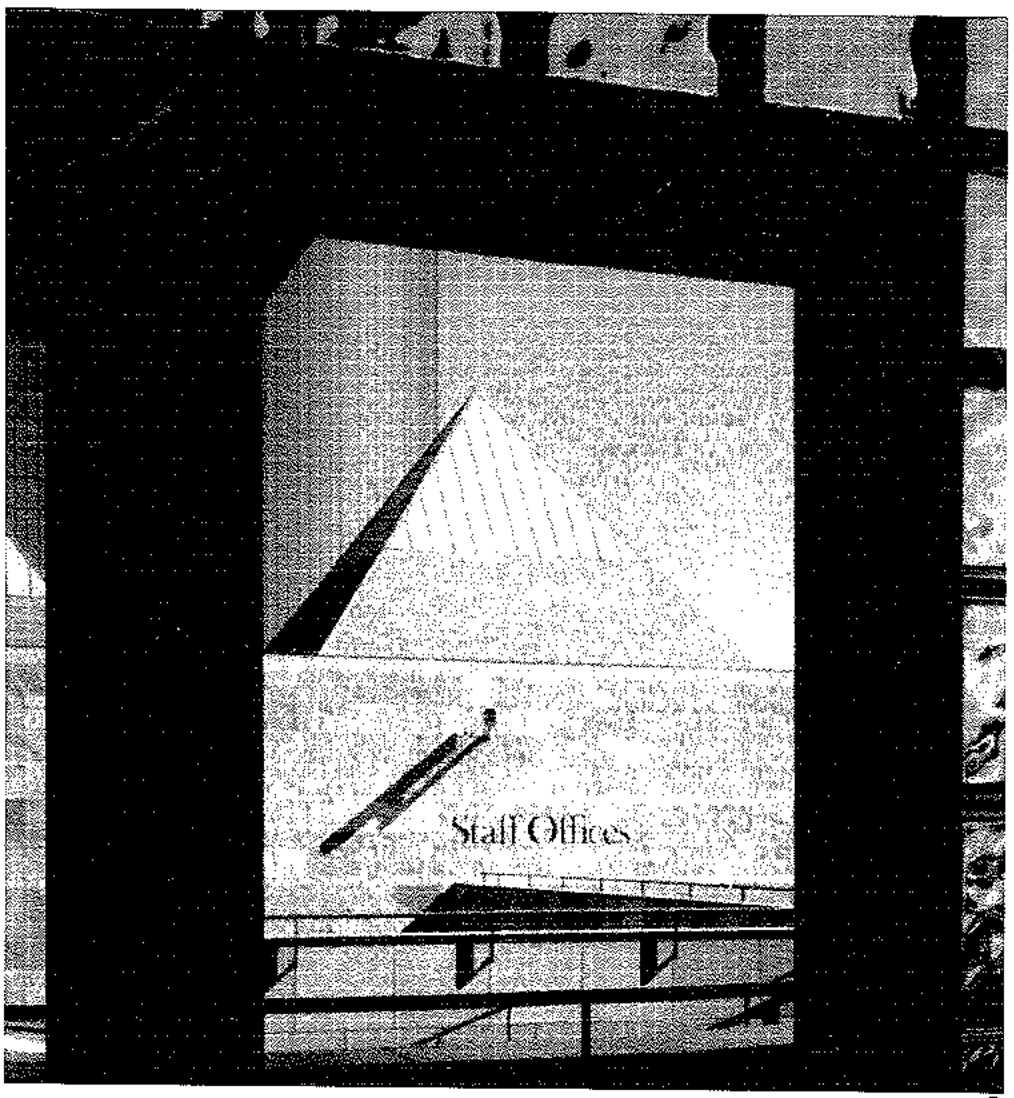

❸

❷ New Tokyo City Hall (1986)
❸ The Museum of Contemporary Atr, Los Angeles (1986)

의미의 빌더는 아니다. 그의 작품에서 기술적인 요소들은 대개 역사적, 은유적 연관관계에 버거워하는 양식적인 구성인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로저스가 "오브제"의 실현에 노력하는 반면 이소자키는 "이상"이나 "모델"에 심취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소자키는 근본적으로 근대전 — 고전주의 건축가일 수밖에 없다.

Ⅲ.

1980년대 들어서면서 "분열(disjunction)"이라는 단어는 이소자키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된다. 이 단어는 사실 베르나르 츄미가 즐겨 인용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분열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위계조직의 부정이나 포기를 의미한다. 이 부정의 개념은 쯔꾸바 센터에서 중심개념으로 도입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암시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도구로 그 역할이 한정되고 만다. 왜 이소자키는 쯔꾸바 이후 이 분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위계화된 세계로의 회귀가 불가능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실 분열적인 상황은 이미 사물의 질서내에 존재한다.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그같은 분열적인 상황은 불규칙한 상황 속에서만 성공적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후기 — 이데올로기 사회가 아닌 후기 — 이상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분열적인 상황은 현재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맨하탄을 분석하면서 얻어진 츄미의 "분열"은 도시현상과 인간의 행위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츄미보다 더 형식주의자인 이소자키에게 있어 "분열"은 물리적인 형태나 오브제와 연관된다. 70년대 이래 근대적 고전주의 정신에 깊이 뿌리내린 이소자키의 형태론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다. 그같은 고집은 반 — 고전주의자들인 들뢰즈와 구아타리의 접근방법과 비교함으로써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분열적 종합(disjunctive synthesis)"의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들뢰즈나 구아타리는 조직(organization)이라는 사상 자체를 폐기시키려 한다. 그들은 이 반 — 조직을 설명하기 위해 고딕을 끌어들여 전체내 부분들간의 고전적인 조작과 대비시킨다. 이소자키도 이같은 수법을 즐겨 사용했다. 반원통형 천장을 뒤집어 쓰고 있는 키타큐슈 중앙 도서관은 그같은 부분들의 고전주의적 조작을 여실히 보여준다. 팔라디오풍의 독특한 전면성을 강조하는 후지미 컨트리 클럽하우스 역시 그같은 고전주의 경향의 작품이다. 이 건물들의 연속되는 곡면 볼트들은 어떤 고전적인 결합체를 형성하여 입면의 충격을 완화시킨다. 이때부터 반원통형 천장이 그의 건축의 주요 구성요소로 정착한다.

로스엔젤레스 현대 미술관에서 이 볼트는 아직도 반원형으로 가장 높은 부분에 등장하지만 전체 조형을 지배할만한 힘을 갖진 않았다. 오카노야마 미술관의 얕으막한 볼트 역시 건물의 주요 부분에 왕관모양으로 얹혀지지만 아직 독립적인 날개들을 지배할 만한 충분한 힘을 갖지는 않는다. 여기서 개별 부재들은 "분열적"으로 결합된다. 이같은 암전한 꼴라지 수법은 80년대 이소자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다. 원통형 천장과 함께 그는 계몽주의 시대 건축가들인 불레나 르두가 즐겨 사용했던 원추형이나 피라미드, 입방체같은 기하학 요소들을 사용하기

❹

시작한다.

그러나 이 형태들은 전체 조형을 부드럽게 해주는 삽화의 의미만을 갖는다. 그리고 그 형태들은 의미가 박탈된 기하학 오브제가 아닌 풍부한 연관체계를 가진 요소로 취급된다. 그같은 전형적인 예가 가파른 계단형의 피라미드로 만들어진 무사시 — 큐료 컨트리 클럽하우스이다. 목재구조의 이 건축은 18세기 영국의 랜드스케입 가든에 등장하는 파고다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 피라미드도 키가 크고 돋보이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체를 지배하는 조형인자는 아니다.

이 클럽하우스로 부터 이소자키는 비로소 강요된 위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다양하고 자연적인 재료의 사용에 서슴치 않게 된다. 이처럼 매너리즘으로 부터 픽처레스크로의 전이가 용이했던 것은 당시 시골의 윤택한 자연경관에 자주 설계를 하게 됨으로써 픽처레스크 수법에 쉽게 눈뜰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도쿄청사의 지붕을 꾸미면서 두개의 노골적인 기하학 형태를 사용한 것은 그의 새로운 경향을 암시한다. 비교적 삭막한 도시의 픽처레스크 스킴임에도 쯔꾸바 이후 무언가 편안해진 것이다. 그것은 '일시적인 제국'의 탄생이라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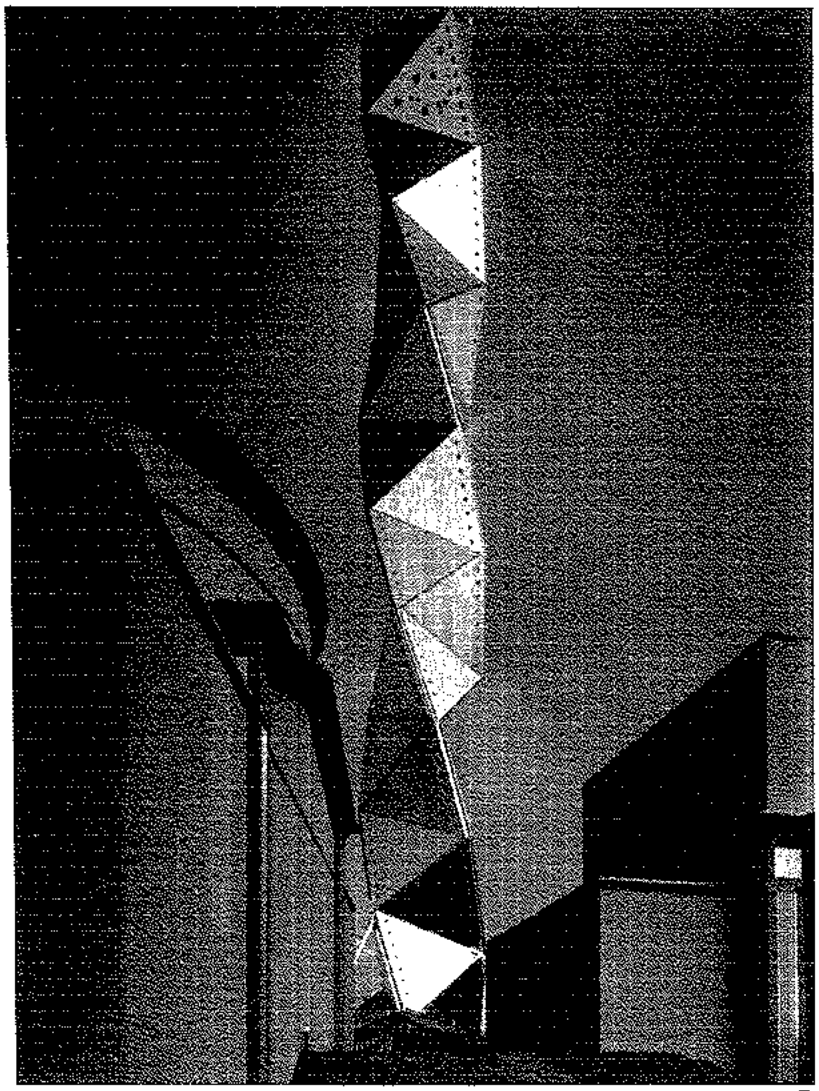

❹ Musashi-Kyuryo Country Clubhouse(1987)
❺ Art Tower Mito

❺

만연된 쾌락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그는 18세기의 픽처레스크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일시정지된 사회상황에서의 건축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이기 어렵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미국 남서부 도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현상설계에 붙여진 피닉스 주청사에서 이소자키는 냉전시대의 종말이라는 작금의 과제와 "민주주의 건축"이라는 구시대의 과제에 동시에 직면한다. 리카르도 레고레타나 마이클 그레입스같은 다른 참여 건축가들은 시청앞의 고전적인 도시광장이라는 전형적인 해법으로 풀어갔다. "민주주의"라는 주제도 이제 세계적으로 진부한 주제가 되어 그같은 평범한 시나리오가 후기 — 이상사회의 정형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하지만 이소자키는 쯔꾸바센터의 기본사상을 변형 적용하여 그 컴플렉스의 중앙에 빈공간을 끼워 넣었다. 그러나 피닉스의 빈 공간은 쯔꾸바에서와 같은 정치적인 입장의 산물이 아니고 그 지역 프에블로 인디안 원주민들이 원래 갖고 있던 원형적인 공간의 이미지를 환기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는 이 중심 보이드 주변에 건물을 늘어 놓음으로써 "사막의 랜드스케입"을 꾸미고 싶어했다. 또한 이 "사막" 주변의 건물들은 정교한 아티큐레이션을 통해 편안하게 연계된다. 고전주의가 자유로이 배열된 기본 어휘는 이소자키의 다른 작품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이 프에블로 원주민의 유형학과 하나로 통합처리된 점이 다르다. 픽처레스크의 환기를 통해 정통적인 전략이 수립된 것이다. 그것은 물론 관광산업을 위해 차용된 피상적인 지역언어의 적용이 아니다. 그곳에는 픽처레스크라는 대전제 아래서의 이미지와 아이콘의 흥겨운 연출이 존재한다.

이소자키의 아트 타워 미토는 99m 높이의 타워와 극장, 연주회장, 미술관 등으로 구성된 문화시설이다. 은색 티탄패널로 만들어진 거대한 3각형 타워가 전체 복합동을 지배하는데 이는 이소자키의 작품중 예외에 속한다. 더구나 그 타워는 위계적인 질서의 산물이기 보다 낮은 저층군의 매스들을 별다른 이유없이 박차고 올라 돌출될 뿐이다. 미토에서 이 타워와 낮은 덩어리 구조와의 대비가 놀랍게 생각되는 것은 개성적인 픽처레스크의 원리에 따라 편안하게 펼쳐지지 않고 규격화된 획일성만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변환경과의 어떠한 조화도 결여한 이 타워는 분명히 "장소의 상실"만을 선언한다. 이 타워는 다만 이소자키가 새로운 단계로 변화해간다는 사실만을 조급하게 알려줄 뿐이다. 이제 모든 자연 그대로의 문맥과 인습을 박탈당한 후기 — 이상 사회에서의 도시적 기념비는 장소의 상실을 애기할수 밖에 없음을 이 작품은 알려준다. 단순히 장소의 상실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이 작품은 너무 무책임하다. 장소의 상실은 비상함을 동반해야했다. 더구나 건축이 비상함을 뛰어 넘어 진정한 지성과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면 픽처레스크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었을 것이다. 18세기의 후기 — 픽처레스크 시대와 같은 숭고함의 시대로 나아가고 싶다면 미토의 이 거대한 "폴리"는 과도기의 것으로 참아줘야 할 것 같다.

(아라타 이소자키 작품집/리졸리)

지하공간 개발의 현황과 발전방향(2)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Underground Space

兪 浣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by Yu, Wann

3. 지하공간 개발의 문제점

지하공간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다양하며 개발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지하공간을 이용함으로써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지상공간에 보다 많은 녹지의 확보가 가능하다. 경제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지하공간의 개발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도시의 기능을 살리고 혼잡을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하공간이 효과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법, 제도, 기술, 환경분야에서 몇가지의 문제점이 과제로 남아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1. 법적인 문제점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소유권 범위 설정의 문제, 사용권 설정의 문제, 보상의 문제 등이 있다. 첫째, 소유권 범위 설정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212조의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의 공간이나 지하의 지각에까지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무제한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지하공간에 정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하공간내 최대한의 깊이(한계심도)를 정량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하 몇 미터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익의 범위는 단순히 수평면으로 구분하여 결정되어서는 안되고, 지표면으로부터의 연속공간으로 보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익은 지상 공간의 토지이용과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익은 토지 소유자의 개인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주관적 이익에 의거할 수 없으며, 토지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통상 경제적 이익에 의거해야한다.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익 발생의 시점이 문제가 된다. 개발의 시점 등에 따라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하에서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개별 토지마다 지하에 미치는 이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지하공간의 토지소유권은 시기별로 지역별로 차등화 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소유권이 지하 75피트(feet), 약 22.5미터까지 인정해 주며, 개발은 30피트, 약 10미터까지 허용된다. 스웨덴의 경우 지하 7미터까지 개발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 조례(안)에 따르면 1991년의 토지 지하부분 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한계심도를 고층시가지의 경우 40미터, 중층 시가지 35미터, 저층 시가지 30미터, 농지 임지 20미터로 설정하였다.

둘째, 지하공간의 사용권 설정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한 법적인 견해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한계심도 이하의 지하공간 사용권을 국가에 귀속시키자는 견해이다. 민법 제 212조의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의 이익 발생과는 무관한 한계심도 이하의 지하공간 사용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이익 발생의 범위로서 한계심도까지만 소유권에 미친다고 보는 견해이다. 덴마크의 지하법에서는 사유지의 경우 대략 6미터까지만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계를 법률로 정하여 공공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는 토지소유권 문제와 같이 한계심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와는 다른 견해로 토지소유자에게 현실적 이용 이익이 없더라도 관념적으로 소유권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은 인정하되, 공공이 이용할 때에는 행정부처 등에 의하여 지하 이용권을 재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헌법 제 23조 제 3항에 따라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하공간을 이용하기 원하는 자가 지하이용에 대한 출원을 하고, 행정청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하므로써 일정 깊이 이상에 위치하는 지하공간에 물권으로 간주되는 지하 이용권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공익 사업을 전제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무보상이 가능하다. 이 두가지 방식은 지하공간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하공간 역시 지표로부터 연속되어 있어 사적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게 쉽지 않으며, 지하공간에 비해 공기업적 특권이나 지하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까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독일의 경우 지하공간을 이용하려는 자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하공간 이용자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행정소송을 행할 수 있으나, 단지 사업을 연기하는 효과밖에 없다. 그러나 지하 50미터 이하에서 공공 사업이 행해질 때 보상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는 최근에 터널부설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 소유자가 현재 이용하지 않고 이용 가능성이 없는 지하공간에 대해 공공의 목적이 존재할 때, 범위를 정하여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권 설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한계심도이하 지하공간의 공적이용에 대하여 반대 52%, 찬성 48%로 나타났다.

셋째, 지하공간의 이용과 관련한 보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계심도 이하에 위치하는 지하공간을 이용할 때,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보상이 필요 없다는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일정 깊이 이상에 위치하는 지하공간에서도 소유권이 미친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나 장래에 이용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유권은 관념적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공의 필요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구체적으로 손실을 받을 우려가 없으므로 보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지하공간의 일정 범위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이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하에 건조물이 생기는 것은 지표시설까지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무보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유경제체제에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 깊이 이상에 위치하는 지하에서 공공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한다는 목적하에 일정범위의 지하공간에서 무보상의 원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목적에 비해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결국 보상의 문제는 토지 소유자의 이용 이익을 저해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지하공간에서 토지소유자의 이익이 미치는 범위와 이익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설령 공익 목적을 위해 지하공간의 이용권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무보상으로 행해질 수 있을까는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원칙적인 측면과 함께 보상 평가 방법 및 기준에 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공공사업의 신속한 실시와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 깊이의 지하공간에서 토지소유권을 배재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일정 깊이 이상에 위치하는 지하공간에도 지상으로부터의 소유권이 미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을 생각할 때, 민법상의 구분 지상권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나 도시철도시행령이 취하고 있는 태도이기도 하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에 의해 권리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공공사업의 실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다. 그리고 보상도 구분지상권의 설정 대가 또는 입체이용저해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토지이용에 대한 저해율이 높은, 지표면 가까이의 지하에서 부터 0에 달하는 지하공간까지 연속적으로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채용되기 위해서는 보상의 기준 설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행 도시철도법이 보상의 기준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상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하공간의 이용에 따른 보상시 토지소유자간 균형이 취해져야 하며,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지하이용권과 충돌될 때 조정되어야 한다. 지하공간의 이용에서도 공익을 위한 이용의 원활화 못지 않게 사권 보호가 도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모색이 요청된다.

2. 제도적인 문제점

지하공간은 지상공간과는 달리 한번 굴착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거나 변형하기 곤란하므로 이용에 앞서 치밀한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한 별도의 개발보다는 전반적인 지상의 도시계획이나 국토개발계획과 함께 종합적인 개발을 꾀하여 무모한 개발을 억제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치밀한 계획하에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하공간 계획의 집행 수단으로서 가칭 '지하공간 개발법' 등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지하공간 개발법은 지하공간의 개념과 범위, 지하공간 개발의 기본 계획, 지하공간 개발구역의 결정, 지하공간 계획기준, 지하공간 개발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하공간개발법을 설정할 때 현재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이 있는 국토종합개발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과 별개로 입안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법 중 일부에 포함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별개로 입안할 경우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된 법간의 위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하공간의 개발을 주관할 부서의 신설로 일관되고 효율적인 지하공간 개발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지하공간의 개발이 여러 부처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수성은 대심도(50 m 이상의 지하)를 이용하는 철도의 정비촉진 특별초지법안, 건설성이 대심도 지하의 공적이용에 관한 법률안, 우정성은 대심도 지하 통신법안, 후생성은 대심도 수도관 법률안, 통산성은 대심도 지하이용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모두 소관 사업에 대하여 대심도 지하를 무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각 성의 지하에 대한 법률안의 경쟁은 법률안의 모순뿐만 아니라, 지하공간 주도권의 부서간 경쟁, 그리고 지하공간의 무질서한 개발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도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를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다 빠른 단계에서 일원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주관할 부서의 설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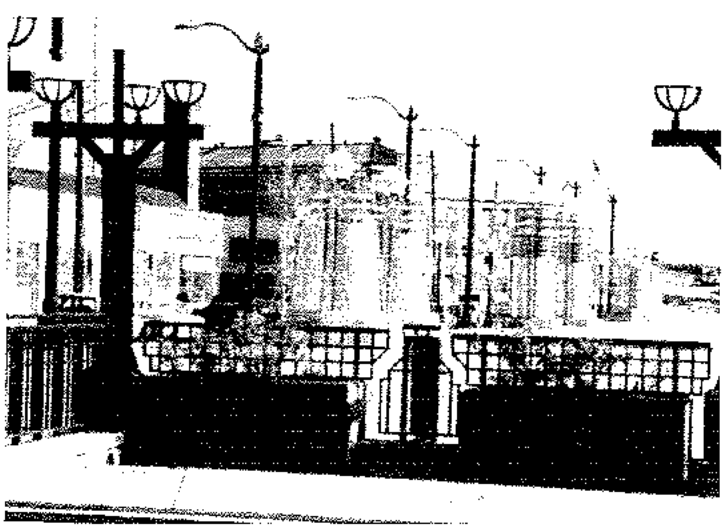

❶ 도심부 환기탑

3. 환경·심리적인 문제점

깊은 지하를 파내어 거기에 도시나 도로같은 건설할 경우 필연적으로 생태학적 환경의 문제가 야기된다. 지하수의 고갈, 지반의 침하, 지하이용에서 생기는 배기로 인한 지상 환경의 변화, 지하·지상·공중에 걸친 생태계의 변화, 지층에 미치는 변화 등 생태적인 환경 변화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생태적인 변화와 함께 지하 공간에서 사람들이 쾌적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환경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하공간에서의 실내공기 오염은 사람이 지하에서 생활하는데 부딪치는 일차적인 문제로, 지상 건축물과는 다른점이 많다. 지하공간은 지상에 비해 공기의 대류 및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실내 기후조건이 동일한 형태로 지속되고, 습도가 높은 편이다. 실내공기는 재실자의 발열이나 호흡 땀에 의한 수증기의 발생, 체취, 탄산가스의 발산으로 오염된다. 또한 빌딩증후군이라 하여 라돈, 포름알데히드, 석면, 각종가스, 담배연기, 미생물 균이 공기를 오염시켜, 호흡기, 폐, 기관지 및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밀폐된 고층 건물이나 지하공간을 장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 따라서 폐쇄된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지상 외기와의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환기탑 등의 환기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하도로의 경우 환기문제를 고려할 때 우선 통행량, 속도, 통과 차량의 종류, 도로의 폭원, 구배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하는 연료와 21세기에 사용될 연료 및 자동차 제조기술의 발달 등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통풍의 어려움과 함께 지하의 토양내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나 지하수로 인한 누수 및 습기 처리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시공상 완벽한 방수가 되어도 내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토양과 맞닿는 외벽부분의 결로 현상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구조물 계획이 필요하다.

지하공간의 창문이 없고 막힌 공간에서 인공조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망성의 결여와 방위 감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조망을 통하여 이와 관련된 자연적인 변화와 행동 패턴을 학습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폐쇄된 공간에서는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인 학습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자연채광의 경우 주광율이 10%일 때 실내의 경우 밝은 날이 3000 Lux 어두운 날이 500 Lux 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가 채광문제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조기화재 지각 시스템, 피난 유도시스템과 같은 보안 방재 환경기술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통신 사용의 증대와 함께 지하공간은 전파의 통과가 차단됨으로 생기는 무선이용의 중계적 시설이나 태양으로부터의 자연광선의 유도 등 지하공간의 환경설비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지하공간은 대기 24시간 상주하게 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른 범죄 유발동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지상 건물과 같이 개방적이지 못하고 지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두운 환경으로 범죄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하주차장의 경우 범죄 다발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계획상 시각의 사각 부분을 최대한 없애고 보다 개방적인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조도를 전반적으로 높여 그늘진 구석을 배제하고, CATV 등을 설치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계획상 특히 중요한 부분은 계단실, 엘리베이터 내부, 화장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근래 건물계획에서 엘리베이터실이나 계단실은 사방으로 개방된 유리로 구획하고 있다.

지하공간의 쾌적은 환경 조건과 관련하여 인간의 지하공간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인간이 지하공간에 대하여 느끼는 것은 어둡다거나, 축축하다거나, 폐쇄된 느낌이 들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기 쉽다. 이것은 잠재적이며, 어두움에 대한 공포나 감금되어 버린 것 같은 공포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포심은 지하공간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갖게 만든다. 이러한 지하공간은 지상생활에 익숙한 우리 신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빛이다. 따라서 우선 빛을 충분히 받아들인 공간을 창출하고, 폐쇄공간이 아닌 지표와 연계된 개방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태양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전구의 사용, 태양등과 아트리움 공간의 사용 등을 통한 심리적인 개방감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미에 비하여 소극적인 자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하공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지하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지하공간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은 없다. 또한 인간은 오래전부터 지하공간을 피난처나 주거지로 그리고 그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 왔다. 중국, 프랑스, 튜니지아, 터키 등지에서 지상공간 보다는 지하공간을 주거지로서 이용한 예가 많이 있다. 주생활공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지게 된 주요 원인도 지하공간이 우리에게 건강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지상공간이 생활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하공간의 환경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기는 힘들다. 지상공간에 익숙하더라도 인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다시 지하공간을 삶의 터전이나 생활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인식의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연구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환경 심리적인 문제의 해결과 진단은 지하공간의 개발 속도와 지하공간 개발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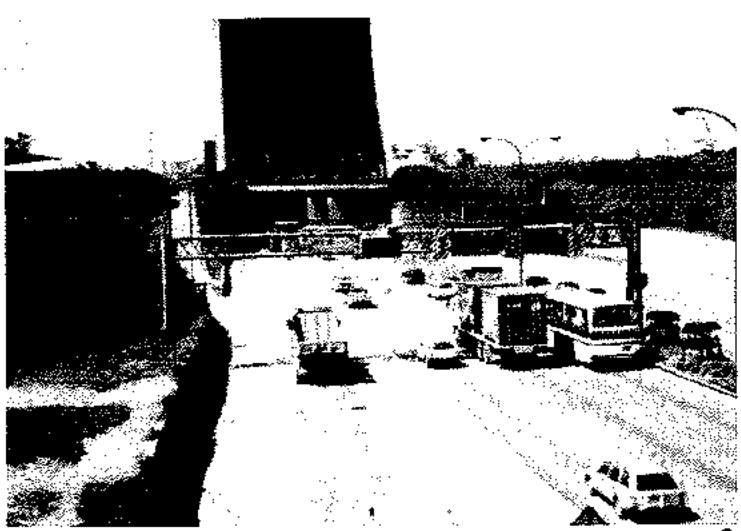

❷ 외곽부 환기탑
❸ 보호막 설치공법
❹ 나름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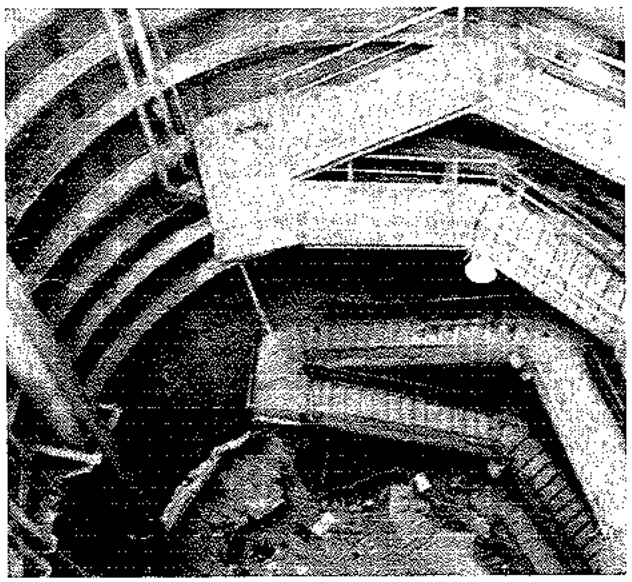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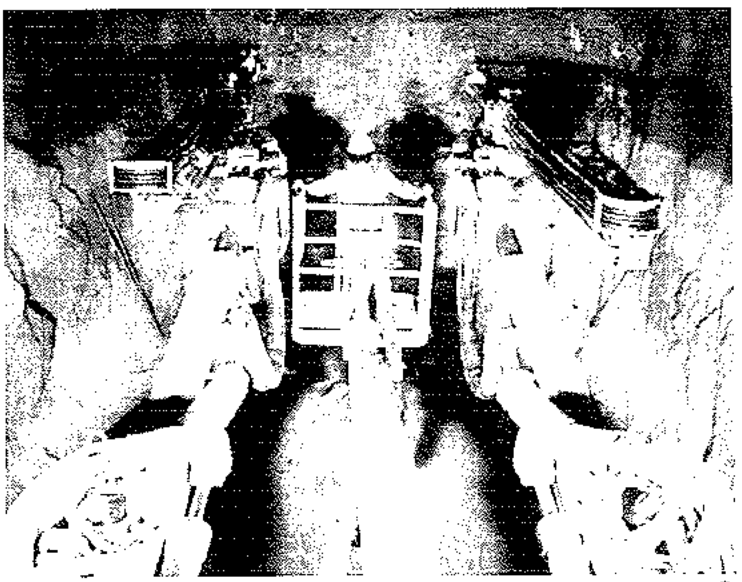

❹

4. 기술적인 문제점

지하공간을 개발하려면 기술적인 면에서 지질에 대한 지식, 지하구조물에 대한 자료축적, 지하개발 공법상의 기술, 지하공간 활용상의 안전관리기술 등 선결 과제가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직 지하개발 사업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기술 축적이 되어 있는지는 의문시 된다. 지하공간에 있어서 지질조건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하공간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그 지역에 대한 상세한 지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의 토지 밑에 있는 지반과 지층에 대한 지식은 철저한 지질조사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초기 계획 단계에서의 상세한 지질 조사만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하다. 지질조사는 직접 지질의 표본을 떠내어 조사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초음파에 의한 조사방법도 채택되고 있다. 어느 지역이 연석 또는 경석, 파쇄지역으로 되어 있는가와, 지하수위 등에 대한 지식의 축적은 지하개발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 서울 강북의 경우 지하 20미터 정도는 일반적으로 경암으로 되어 있으나, 심층있는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상세한 지질조사가 장차의 효과적인 지하공간의 이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

지질 조사 자료 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는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하 공작물 등의 이용실태가 조사 분석되어야 한다. 지하 매설물 및 공작물은 지하 궤도에 시설 선로 현황, 지하상가 및 지하도로, 지하 주차장, 지하 상하수도, 지하 공동구 및 통신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지하 매설물은 지상의 토지 이용과 밀접한 관련하에 이루어지는 것과 지상의 토지이용과 무관한 시설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시설물이 지하 몇 미터에서 이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지하공간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하려면, 지하를 파내어 공간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하개발의 공법으로는 크게 굴착공법과 터널공법으로 나눌 수 있다. 굴착공법은 지하 약 40미터 정도까지 위에서 파내려 갈 수 있는 개착(open cut) 공법을 비롯하여 지하 심층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지하 연계벽 공법, 잠함(Pneumatic Caission) 공법, 기초지지(underpinning) 공법 등이 있다. 터널공법으로는 보호막(shield) 등이 있다. 또한 크로스호토모그라피와 같은 지하구조를 고정밀도로 분석 평가하는 기술을 비롯하여, 연암용금곡굴진기, 수침자동굴착기, 수침자동라이닝 등 도움 모양의 공간을 개발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지하공간이 구축되면 운영면에서의 안전관리에도 중요한 기술을 요하게 된다. 환기, 온도, 습도, 오염방지, 화재, 방재, 배수, 소음 등은 안전관리와 쾌적한 지하공간 이용을 위해 해결하여야 할 기술적인 문제이다.

5. 공사시 문제점

지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작업은 굴착으로부터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굴착작업은 터널 및 지하 공동구를 조성하기 위한 것과 일반 건축물의 지하층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굴토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의 차수 문제이다. 서울의 경우 도심내 지하 수위가 지표면으로부터 6미터 내외에 분포하기 때문에 지하 2층 정도의 심도가 되더라도 지하수가 분출하게 된다. 지하수의 유출로 인한 굴토지역의 측벽 붕괴 방지와 인근 지반의 침하 등을 세심히 고려하여, 그에 대한 공법 선정 및 시공시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 지하구조물을 지하수위 이하에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기초 저면에서 수압에 의한 부력이 작용하므로 건물이 안정되지 못하고 물위에 뜨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정 깊이 이하의 저층 구조물일 경우 이러한 부력에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 진동은 지상 구조물의 침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지하공간 개발의 문제점은 지하공간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는 크게 기초연구와 특정연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연구는 사람이 지하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연구로서, 사람이 지하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연구이다. 경제적인 동기부여, 법정비 등의 사회학적 연구와, 사람들이 지하에 갖는 잠재적인 불안감, 공포감의 해소방안, 지구환경에의 영향 평가, 방화 안전기술의 개발, 생물학적 연구 등의 이공학적 연구가 이에 포함된다. 특정연구는 지하개발에 필요한 특유한 기술영역의 연구로, 지하의 이용에 따른 문제의 발생 소지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려는 연구이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구상하고 있는 튜브트레인과 같은 것이다. 문자 그대로 튜브 속을 달리는 열차인데 21세기를 향한 꿈의 열차라고 할 수 있다. 튜브 속은 진공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마하 88이라는 속도가 가능하다. 이것은 진동 소음이 없으며, 에너지 소비가 없어서 지하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다는 것이다.

4. 우리나라 지하공간 개발의 계획 구상 및 전망

우리나라의 지하공간은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도 등을 비롯하여 식료품 저장, 유류저장, 스포츠활동을 위한 각종 체육관, 수영장, 스케이트장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알게 모르게 많은 종류의 지하 시설들이 단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하공간 활용은 단편적이고 소규모적이었으나, 점차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증가되는 도시활동과 한정된 도시공간은 지하공간의 활용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으며, 지상공간에서의 여러가지 단점들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되어 왔다. 본절에서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하공간의 개발계획구상과 계획절차 그리고 앞으로 지하공간 개발방향을 전망하였다.

1. 지하공간 개발의 계획 구상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의 지하상가 개발은 비록 종합적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활발히 이루어져 1990년 현재 8,500여개의 지하상가가 지하도와 함께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하공간의 활용들은 개별적으로 상호연관이 되지 못한 채 이루어져, 지하철에서 주변 지하상가나 독립건물 지하층으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공간의 개발이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지하공간은 생활공간의 일부로서 자리잡고 있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지하상가와 시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터가 마련되고 있다. 또한 지하철역에 조각품과 예술적인 작품으로 지하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주차장의 부족에 따라 공원 등의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도심지의 주차 공급난을 해결하고 있다. 서울의 종묘 지하주차장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전주시의 지하주차장 계획 등이 이러한 지하공간 이용 계획 사례가 되고 있다. 서울시의 종묘 주차장은 현재 사용되어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지하공간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도로 계획 발표를 계기로 종합적인 지하공간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아직 뚜렷한 계획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미 지하공간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약속하고 있으며 개발촉진구역, 개발억제구역, 개발유보구역 등으로 도시계획구역을 설정, 지정해 지하권에 대한 개발 촉진과 함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하개발을 통제하기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하 종합개발계획은 수평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입체적이고 수직적인 공간활용과 함께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제시가 될 것이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지하 고속도로를 오늘의 문제만 가지고, 도로라는 단편적인 면에서 평가하여서는 타당성이 미흡하다. 그러나 21세기를 향한 도시 구조 개편은 평면적인 도시구조에서 입체적인 도시형태를 설계하며 미래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계획으로서만이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다. 지하도로의 건설은 서울시의 지하권 활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건설된 지하차도는 터널과 일부 교차로의 우회도로 뿐으로 교통난 해소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매년 20%씩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하여 도로를 건설하려면 년간 20조 원을 투자해야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60킬로미터의 지하도로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지하도로와 더불어 하수처리장, 주차장 등을 지하에 수용하고 지상공간은 공원이나 녹지 등 휴식공간이나 문화스포츠 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정된 도심의 도지면적으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서울의 교통과 공해 등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지하고속도로의 건설은 필연적으로 대두된 것이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계획에 착수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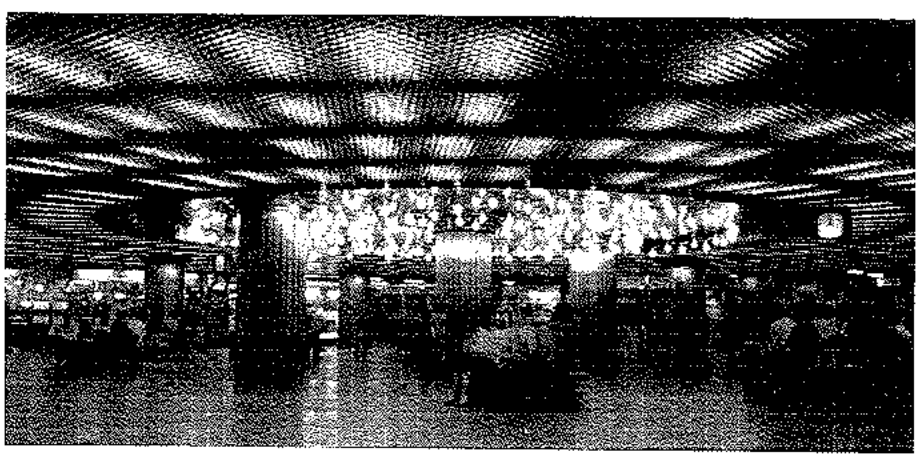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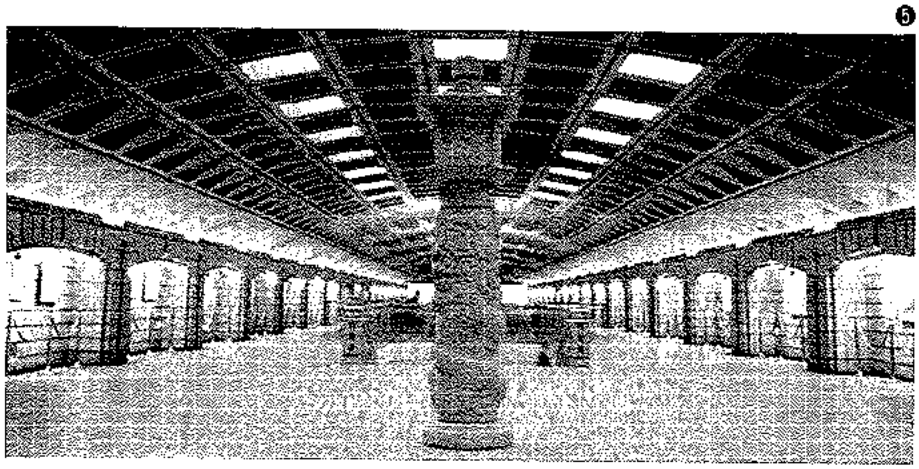

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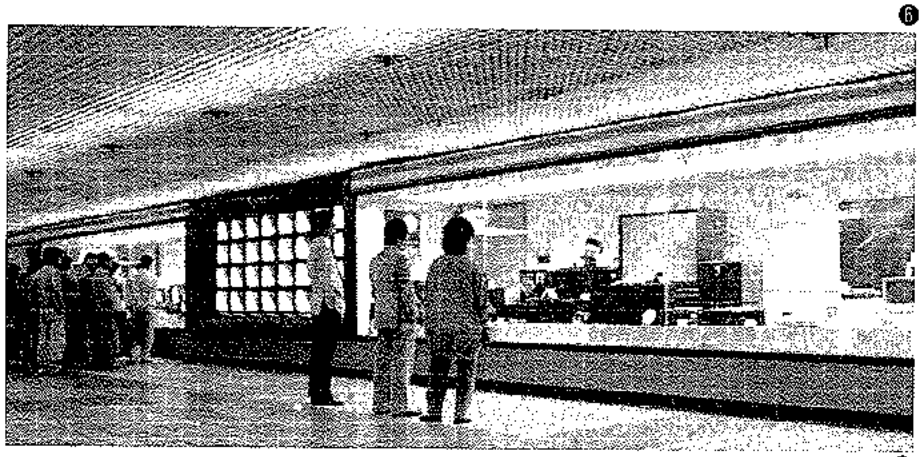

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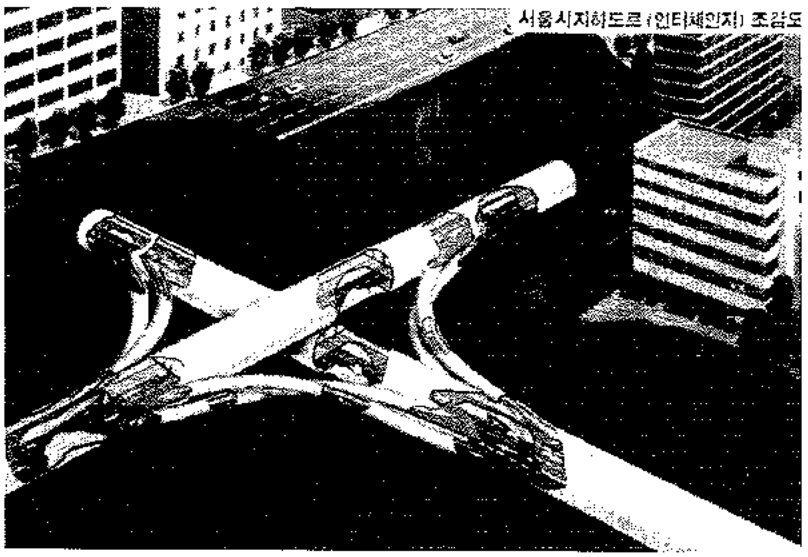

❺ 지하철역의 시민 휴식터
❻ 지하철역의 예술작품 전시
❼ 지하철역의 아케이드
❽ 서울시 지하도로 인터체인지 조감도
❾ 서울시 지하도로 환기구 조감도
❿ 지하공간 개발 과정의 흐름도

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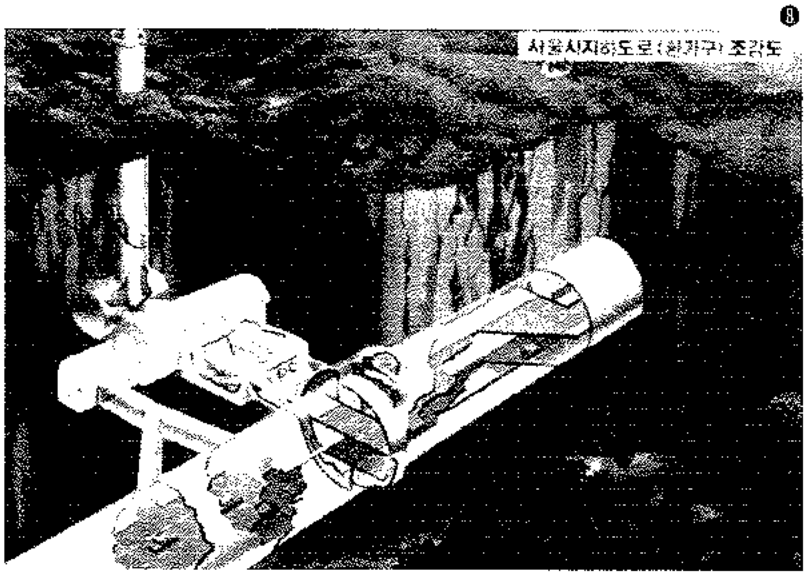

❾

지하공간 개발의 일환으로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도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하고속도로의 골격에 있어서 도심통과와 함께 중간 도심지역에서의 입·출구가 가능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심의 가로형태를 살펴볼 때 도심지역으로의 직접적인 입·출구의 개설은 오히려 도심내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심을 둘러싼 지역인 남산, 인왕산, 효창공원, 용두동, 용산공원 등의 지역에서 입·출구를 만들게 되면 직접 도심혼잡을 유도하는 길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지역의 입·출구 위치는 모두 산이나 또는 경사지, 구릉지로 둘러쌓여 지하도로라 하더라도 실제 남산의 기존터널과 비슷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들 지역을 연결한 도심내부의 환상도로와 도시외곽으로부터 진입하는 지하도로를 연결시켜 지하 주차장과도 함께 연결시켜 줄 수 있다. 도시 외곽으로부터 6개 노선으로 중간 연결지를 통과하여 도심 내부의 환상도로와 연결시킬 수 있다. 추후 중간 연결지를 다시 순환 연결시키는 외부 순환도로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하권 개발중 전기, 체신,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관로의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공동구 설치와 더불어 지하 보도망의 형성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의 6,894미터의 지하보도는 지하철 역사중심 또는 상가의 비율이 높아 보행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하다. 앞으로 주요 간선도로망을 중심으로 지하 보도망을 연결하고 인근건물과 연계개발을 시켜 시민들의 활동공간을 지하로 유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휴게실, 지하 소공원 등의 복합개발에 민자유치, 제3섹터 건설 등을 활성화 하는 등 관련법규 정비로 개발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2. 지하공간 개발의 계획 절차

지하공간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지하공간의 개발계획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하공간 개발 과정은 (그림 ⑩)과 같은 6개의 단계를 거칠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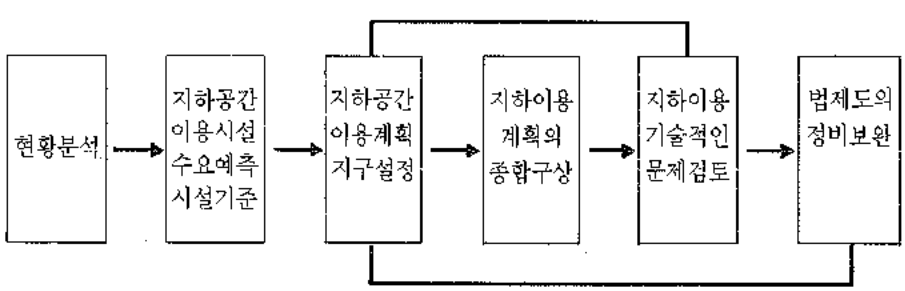

❿

있다. 현황분석, 지하공간 이용시설의 수요 예측 및 시설기준, 지하공간 이용계획 지구의 설정, 지하이용 계획의 종합적인 구상, 지하이용의 기술적인 문제의 검토, 법제도의 정비와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현황분석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지하공간 및 지상공간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현황 분석의 대상은 지하궤도계(지하철도) 시설 및 선로 현황, 지하상가 및 지하도로, 지하주차장, 지하 상하수도 시설물, 지하공동구 및 통신시설 등의 지하시설물과 지상에 입지한 시설물이다. 현황 조사항목은 이용 종류별 지상 토지이용 현황, 이용 형태 및 개발 밀도, 기능 집중도, 지반 지질 등이 조사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지상 및 지하 공간의 입체적 사용을 유형화하고, 지하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 가능성 및 기초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둘째, 지하공간 이용시설의 수요 예측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토지이용과 지하철 등 교통이용 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하 보행자 시설의 기본적인 수요와 지하 상가 시설 등의 이용 추세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의 증가와 이에 대응한 지하간선 도로망과 지하주차장의 연결, 그리고 통신시설의 수요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발 규모와 지하공간의 연결성을 검토하는데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예측한 시설이 어느정도의 공간을 차지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깊이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설별 설치기준이 필요하다. 설치기준은 지하 시설물의 성격, 기능,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하 공간의 깊이에 따른 배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 시설물의 신·증설 및 개량에 대비한 지침의 작성이 필요하다.

셋째, 지하공간 이용계획지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하공간 이용계획지구는 지하이용 촉진지구, 지하이용 유도지구, 지하이용 억제지구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하이용 촉진지구는 토지의 고도이용이 확실히 예상되는 지구와 지하이용의 계기가 되는 제사업이 확실한 지구이다. 지하이용 유도지구는 장래의 지하이용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지구 또는 공원 녹지 등의 지하로서 장래의 지하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구이다. 지하이용 억제지구는 지상 또는 지하시설의 보호 및 공공 목적상 지하이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지하공간 이용지구는 각각의 이용형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은 토지이용 계획의 지역 지구제의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넷째, 지하이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즉, 지구별로 지하이용 종합계획을 구상한다. 공동구, 지하보도, 지하차도, 네트워크 형성 및 지하철과의 연계, 지하 주차장의 확보 등 종합적인 구상안을 수립한다. 또한 지하공간 뿐만 아니라 지상공간의 토지이용, 지상녹지 공간의 확보, 미관, 지상 지하의 연결 등 토지이용의 입체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다. 분야별로는 지하용도 이용계획, 각종 동선계획 및 지하주차장 계획, 지구 환경계획, 휴식공간 및 부대시설계획, 공동구 및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계획, 방화계획, 투자계획 등이 지역별로 시기별로 구상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하공간의 이용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제 실행이 어려우면 계획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따라서 실행 계획으로서 기술적인 검토는 필수불가결 하다. 지하공간의 창출에 필요한 채굴문제, 환기문제, 채광문제, 배수문제, 방재문제,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 방범문제 등을 해결할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첨단 하이테크 산업시대에 부응하여 지하이용 개발에 있어서도 하이테크 장비를 이용한 다른 국가의 새로운 공법의 도입과 안정성 등 현실적 이용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법제도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예상되는 지하공간 개발에 대비하여 지하이용에 대한 공공규제나, 사용에 필요한 지하 소유권, 이용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법내에 신설 필요성이 있는 지하이용 촉진지구, 지하이용 유도지구, 지하이용 억제지구 등의 지구선정 기준과 집행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지하이용시설 및 공급처리시설은 물론 시설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 검토하는 법적, 제도적 조성안이 필요하다. 지하공간의 개발은 많은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므로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의 지하이용 활용을 유도하고 규제하는 법령의 보완 장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하공간 개발의 계획과정은 일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단계별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는 피드백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3. 지하공간 개발의 전망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과밀상태가 극에 달하고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 베드타운이 한없이 확장되어, 통근에만 하루 4~6시간을 소비하는 불합리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도로사정이 더욱 나빠져 사람의 이동과 물자의 수송이 지연되는 등 여러가지 폐해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인 면에서 볼때도 지하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착기술로는 서울시에서 지하도로 1킬로미터를 건설하는 데는 지반에 따라 달라지지만 약 300억원 내지 400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막대한 공사비 때문에 도시 대부분의 시설들이 지상에 건설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지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보상비가 공사비의 10배에 이르게 되어 최근에 건설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1킬로미터당 270억원의 총공사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도심을 통과하는 신설도로는 막대한 공사비로 인하여 불가능하게 되었다. 현재의 수준에서 지하도로의 건설은 지하철 건설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으나 기술축적과 과학의 발달로 더욱 경제적이 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상공사는 계속되는 지가상승으로 막대한 공사비의 상승이 예상된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하공사가 지상공사보다 더욱 유리해 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공간의 개발은 도시공간의 입체적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이미 해상도시, 인공섬, 수중도시 등은 기술적 구조와 개발비용까지 산정한 선례가 있지만, 지하도시의 건설은 토목학의 측면이나 건설기술 나아가 지상권과의 연계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학술적으로는 대심도 지하이용이라고 부르며 지하개발의 총칭인 지오프론트(geofront)라는 신조단어가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88년에 일본 건설성 주도하에 대심도 지하이용법이 성안된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통상성, 운송성에서도 각각의 지하이용을 계획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선례에서는 철도, 도로, 하천 등의 공공사업을 지하 50~60미터에서 건설 시행하는 경우는 전제로 대심도지하이용의 경우는 지상의 토지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번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지하도시 건설구상은 아직 세부요강이 더 발표되어야 자세한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공공시설 뿐 아니라 상업 등 업무를 비롯 생산시설, 주거, 오락까지를 지하에 건설하여 지상과

더불어 하나의 도시를 지하에 형성하려는 원대한 구상을 담고 있다.

지하공간 개발은 지상공간과의 종합개발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방향 제시가 가능하다. 우선은 앞으로의 종합개발을 전제로 하여 몇가지 지하공간개발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지하공간의 개발은 공공목적이 우선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도시개발은 공동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전제 아래서 개인의 권리를 최대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공동사회를 이룩한다는 전제는 개인의 권리도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미 개인 토지의 사용에서 사용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포함한 각종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다른 규제조치나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 의한 개발의 억제나 방향 제시는 개개의 필지별로 토지 소유자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도시설계에서는 지상에서의 층수제한, 공동개발, 보행통로 등 개인소유 토지의 공공목적 이용 등 많은 권리제한을 경험하여 왔다. 법적으로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지표를 기준으로 위로는 어디까지 미치며 지하로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는 것이 명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항공노선이 개인의 토지 상공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비록 법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소유자 개인의 권리사용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 왔다.

도시개발에서의 지하공간 개발은 개개의 건물의 지하층 건설 등 개인이용을 위한 시설에서부터 공공을 위한 교통, 시민복지, 생산시설 등 시민의 복지공간, 문화공간의 창출이라는 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건물의 지하층은 대피소, 상가, 주차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주변의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보도 등과 직접 연결할 필요가 더욱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토지가 소규모로 분할되었을 경우 주변건물의 지하층과의 상호연계는 상가의 집적효과나 주차장 진출입구의 어려움을 감소시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 제한이 때로는 토지소유자에게도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도 있다.

도심에서의 지하공간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도심지 지하공간 개발은 도심지 공간의 입체화로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다양한 도심지하 보도공간을 이룩할 수 있다. 지하상가 및 지하통로의 건설은 기후변화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대피장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교통문제의 해결에 도시의 지하공간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하철 문화에 따른 지하공간의 활용은 도심지 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지역에서도 지하공간 개발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서울의 지하철은 현재 4개 노선에 162.7킬로미터로 서울은 세계 7위의 지하철 보유도시가 되었으며, 지하철역과 상가시설의 연계 등 지하문화권 시대가 전개되었다. 현재 지하철 4개 노선이 앞으로 8개 노선으로 332킬로미터의 확충계획을 세워 놓았으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지하철의 경우 약 1킬로미터 간격으로 있는 지하철역과 주변상가 등을 고려할 때 주로 표층부에서 개발이 이루어 진다. 특히 서울의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공사는 개착공법(open cut)으로 이루어져 경제적인 이유로 표층부에 건설되었다. 영국의 경우 지하철이 지하 100미터의 심층부에 건설되었으나, 서울의 경우에는 지하철의 승환역을 위하여서도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 역시 표층부를 이용하게 된다. 서울역으로 진입하는 철도 역시 앞으로는 지하공간의 이용이 예상되며 지하철과는 달리 심층부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자동차 교통을 위하여도 지하공간이 활용될 수 있다. 흔히 알려진 터널도 지하공간의 활용이며, 최근 도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60킬로미터에 달하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지하고속도로 건설에서는 특히 환기, 진동, 지하수 및 배수처리, 교통사고 처리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해야 할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지하 고속도로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다른 도시시설과 연계되지 않는 일부 구간에서는 심층부 이용이 가능하다.

지하공간은 수송시설을 받아 주는 단말시설로써 활용이 증대될 것이다. 교통 결절점에서 주차수요에 대비한 주차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이다. 특히 대도시 도로교통 소통과 철도역,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과 부도심의 지하시설의 활성화와 지하도로로서의 연계성도 토지이용 효율성과 교통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단말시설들은 경우에 따라서 표층부 또는 심층부를 이용하게 된다.

도시의 공동구로도 지하공간의 활용은 당연한 것이다. 직접적인 도시활동은 아니라 해도 도시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여러가지 도시 서비스가 필요하다. 상수도, 하수도 등은 이미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타 도시하부 구조를 위한 공동구, 통신공동구 등 수송시설 내지는 각종 수송시설을 보낼 수 있는 공동구는 도시활동을 효율적이며 쾌적하게 할 수 있다. 하수도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면 지하공동구는 표층부 또는 심층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표층부에는 가능하다면 더 많은 도시활동을 수용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할 때 심층부가 바람직하다. 또한 지하공간은 직접 도시활동을 수용하는 여러가지 업개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안보적 목적을 위한 군사시설과 공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업개주택 사무실, 각종 스포츠 시설 등 개인이용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표층부에서 시작하여 심층부까지 연장하여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저장시설 및 다양한 생산시설 등도 지하공간에 이미 건설되었거나 또는 계획중이다. 저장시설이나 생산시설은 도심에서는 다소 떨어진 위치에서 필요에 따라 표층부 또는 심층부를 이용하게 된다. 이와같이 다양한 지하공간의 활용전망은 앞으로 도시생활의 구조를 지하문화권이라는 새로운 문화양상을 창출시킬 수 있으며, 주차난, 교통난, 소음 및 환경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의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89년 현재 78.9%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에는 91.3%로 증가될 전망이다. 앞으로 도시로 집중하는 인구는 계속하여 증가할 전망이지만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은 물리적으로도 많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도시들의 지역특성은 고도의 입체적 토지이용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단편적이고 지엽적으로 되어온 지하공간의 활용은 입체적 토지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시기가 되었으며, 지하공간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기술적 경제적인 활용 가능성도 높아졌다. 따라서 지하공간의 활용은 종합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입체적인 계획으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하공간은 지하도시 건설, 지하상가, 지하터널, 지하매설물, 지하처리장 등을 포함하여 수평적 토지이용과 수직적 복합이용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기를 맞추어 시행하여야 한다.

"P"빌딩 구조설계에 얽힌 이야기

Structural Designed Procedure of "P" Building

李昌男/센구조건축사사무소
by Lee, Chang - Nam

건축사지에는 매달 회원작품이 소개된다. 총천연색으로 찍은 사진이 아름답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의 설명문이 매끄럽다.

가끔 설계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일, 작품구상 경과나 목표로 했던 생각 등을 정리한 명문들로 인하여 감격했던 경험도 있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분명히 사진을 촬영하기 이전, 비록 볼품은 없었을지라도 그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뼈대가 있었고 이 뼈대를 위하여 애쓴 구조설계를 담당했던 자가 있었을 터인데도 간혹 몇몇 인심 좋은 건축사를 제외하고는 구조설계자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기야 서울역 앞을 지나가던 버스 안에서 약간은 남루한 차림의 사람이 "저 건물(대우센터) 내가 지은건데" 이쩌고 하길래 유심히 엿들어 본즉 시공 당시의 미장공 이었음이 확인된 적이 있다.

요즘에는 건물 하나에 들어가는 전문 분야가 수십 수백종이 되니 누구는 밝히고 누구는 빼기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건물의 근간이 되는 설계자의 이름 정도는 적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언젠가 대한교육보험 천안연수원 설계를 담당했던 재미건축가 김태수씨가 미국 CSA / AIA 에서 작품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구조설계자인 센구조에도 넝달아 상장을 보내주는 것을 보고 오히려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High - Tech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구조방식과 재료가 외부에 노출된 건물도 가끔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건물 구조는 마감재로 뒤집어 씌우고 나면 사람들의 시선과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게 된다. 오직 그 일에 참여했던 구조장이나 시공자들만 추억으로 간직하여 때때로 반추하는 것이다.

건축사지를 읽는 독자들 중에는 마감재로 포장된 천연색 사진 보다는 오히려 그 전의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구조에 관심있는 분들은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마감재를 벗겨서 알몸 뿐인 골조(뼈대) 사진이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이제 사진 촬영 기술도 없고 감언이설로 건축주의 주머니 끈을 풀게하는 실력도 없는 둔탁한 글로 여러분을 구조장이의 현장으로 안내해 볼까 한다.

오늘은 우선 최근에 마친 "P"빌딩 구조설계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마치 화장술과 웨딩드레스로 한껏 멋을 낸 신부의 원래 모습을 확인한다는 기분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란다.

1. 구조 계획의 주체(구조계획은 누가 하는 것인가?)

구조계획은 구조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부르짖어 왔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집이 된다는 구실을 삼았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런 주장을 해도 씨가 먹혀 들어가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거의 포기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듯 싶다.

기둥과 보 사이 적당한 부위에 구멍을 내고 유리창을 붙이는 것이 건물의 외형이고, 창 구멍을 뚫고 남은 벽에다 타일을 붙일 것인가 아니면 값비싼 돌을 다듬어 붙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건축사에게 기둥 간격은 이래야 건축비가 줄어들고, 보 높이는 저래야 층고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건축사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건물 총 공사비 중에서 골조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서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20%대로

내려간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골조 공사비를 줄이고 줄여서 30%를 남겼다손 치더라도 총 공사비로 따지면 0.2 × 0.3 = 0.06 즉 총 공사비의 6%밖에 안되니 그게 뭐 대수냐? 는 논법이다.

골조 공사비, 올라가 봐야 별거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건축 설계비는 총 공사비의 몇 %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사비 액수에 관계없이 총액 얼마로 계약이 되다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골조공사에 돈이 다소 많게 들어가건 적게 들어가건 관심이 있을 턱이 없다. 이 사정을 잘 아는 일부 몰지각한 구조 기술자들은 정성들여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이 방법 저 방법 고민할 생각을 버리고 쉽게, 간단하게 형식만 갖춘 구조 계산서 작성만으로 업무를 마치는 것이 횡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의 주장(목소리)만 크면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구조계획 현장의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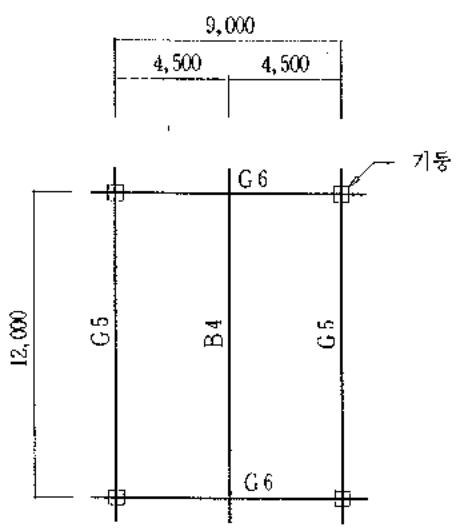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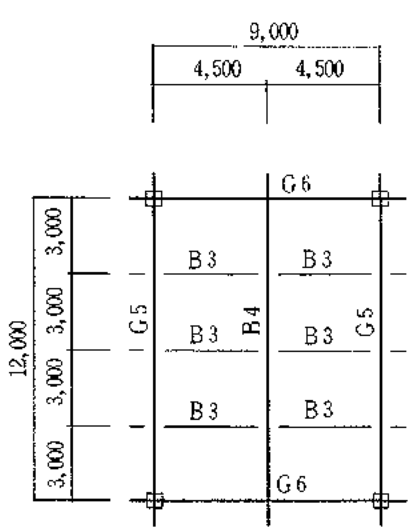

그림 2

이제 P 빌딩 지하실 바닥 골조계획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무슨 건물이건 간에 수직 지지부재(기둥)의 가로, 세로 간격 결정은 구조계획의 가장 큰 요소이다. 그러나 연건평 약 55,000평이나 되는 거대한 Project 구조설계에 참여하게 된 것이 유감스럽게도 그 같은 기본 계획이 전부 확정된 이후 마지막 단계에서 이를 수용한채 국부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즉 본 설계 차원에서만 손질을 할 수 있었음을 사전에 밝혀둔다.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크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작전(기본계획)을 세운 후 그 작전에 알맞는 전술(본설계)이 뒤따름을 알 것이다. 구조계획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될 것이다. 어떤 경로로든간에 전략 차원에서의 작전이 세워졌으면 말단 부대에서의 전술은 그 작전 계획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능한 하급 부대장인 것처럼 기본 구조 계획이 다소 불만스럽다 해도 그 전체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거기에 맞는 세부 구조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자기가 배우고 경험했던 익숙한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

그림 1은 이미 정해진 지하실 기둥 배열이고 센 구조가 참여하기 이전에 계획된 초기 단계 골조이다. 그러나 지하실에서도 거푸집을 Deck Plate 로 하겠다는 건축주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변경, 결정된 안이 그림 2 이었다고 한다.

지하실 바닥 슬래브의 Span 이 4.5 m 라면 별로 무리한 것이 아니고 Span 9 m 인 G6보 중앙에 Span 12 m 의 B4보를 얹는 것은 아무도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건축주측에서 Span 4.5 m 로는 Deck Plate 거푸집이 불합리하다고 했을 때, 이미 설계했던 내용을 그대로 둔 채 가장 쉽게 변경하는 것이 그림 2 였을 것이다. Span 4.5 m 짜리 작은 보를 G5와 B4에 얹어 놓는다 해도 B4나 G5는 원래 계산했던 부재응력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므로 B3보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일반 설계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구조계획의 현황이다. 건축주의 의견을 받아 들이면서 이제껏 진행해온 설계도서를 가장 적게 건드려서 변경을 적게하는 것, 그래서 설계상의 추가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여기서 그림 1과 그림 2의 골조공사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지면 관계로 게재하지 못하나 철골량만을 비교했을 때 대략 1 : 1.13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그림 3과 같이 9 m Span 을 3등분하여 3 m 폭마다 12 m Span 보를 배열하면 어떨까? 구조전문가가 아니라도 한번쯤은 시도해 보고 싶은 구조방식일 것이다.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곳에 보를 배치한 것으로 널리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그림 1과 비교해 본즉 대략 1 : 0.96으로 약간 경제적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그림 3을 그림 2와 비교하면

0.85배, 즉 15%의 철골량 절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 Air-Con, 또는 배기 Duct를 위한 천장속 공간의 활용도까지를 감안한, 그래서 어쩌면 층고까지를 조절하여 공비절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림 4의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 얼핏 보기에는 터무니 없는, 말도 안되는 구조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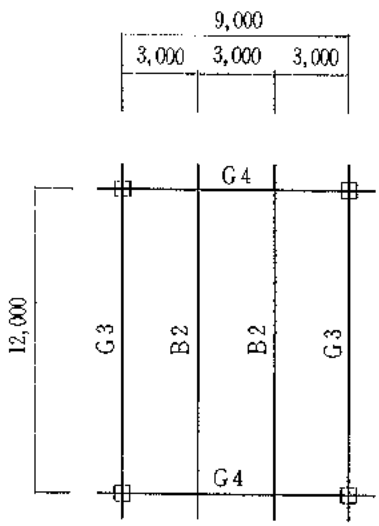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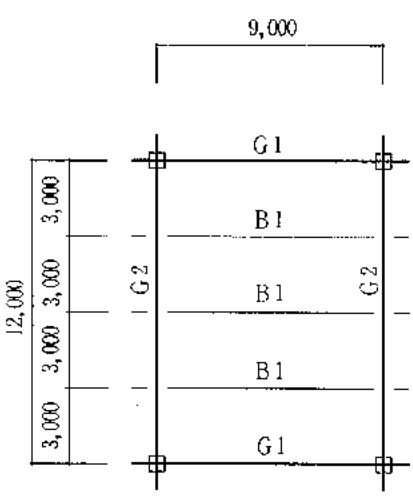

그림 4

결국 그림 1과 그림 4는 1 : 0.85라는 믿어지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게다가 G2보의 높이만을 의도적으로 크게 해서 Duct가 지나갈 구멍을 뚫어주고 B1과 G1의 높이를 응력대로 줄여주면 설비, 전기 배관에 큰 도움이 되고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층고가 낮아져도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바퀴 돌다보니 먼저 가려했던 그림 2와 새로운 안 그림 4와의 철골량 비교는 1 : 0.78로 22%의 절감을 보게 된 것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억원에 달했다면 놀랄 것이다. 물론 그 20억원 중에는 B1과 G1을 상부바닥 슬래브와 Shear Connector로 연결하여 합성설계한 효과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원히 아무도 회수할 수 없는 20억원의 돈이 고스란히 남는 즐거움은 실제 고민하며 이리저리 궁리하던 자만이 누리는 특권일 것이다.

이상이 전략 차원에서 정해진 큰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전술적 계획 효과라는 것을 알았다면 근본적인 구조계획까지를 감안한 변경이 허용될 때 얼마나 더 많은 이득이 있을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골조공사비 20~30%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항상 접하는 일이고 심하면 50%에 달하는 낭비를 무지 또는 무관심 때문에 자행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더 아쉬운 일은 구조안전진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일들인데 이같이 공사비를 필요 이상 낭비했는데도 안전성에는 큰 구멍이 나는 건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재료를 많이 쓰고 공사비를 많이 투입하면 집이 튼튼해지는 것이 당연해야 할텐데 그게 아니니 답답한 일이다.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다 힘세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닌것과 마찬가지다.

구조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크기의 부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연결 부착되어야 튼튼하다. 군살이 없어야 하고 균형잡힌 구조라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나의 친구 하나는 185 cm 키에 건장해 보이는 체격의 미남인데도 단지 무릎관절의 약함 때문에 제대로 뛰지도 걷지도 못하는 병신노릇을 하고 있다. 어떤 보는 필요이상 큰데 다른 것은 어림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보는 튼튼한데 기둥이 약하기도 하다. 다 잘 나가다가 마지막 단계인 Bracket, Base Plate나 기초, 때로는 접합 Detail의 하자로 말썽이 나기도 한다. 구조계획, 계산은 Fashion Designer나 무슨 Interior Designer처럼 어느 부분에 액센트를 주고, 기분나면 크게도, 작게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직스럽고 성실하게 힘의 흐름 경로를 파악 대처하는 지루한 싸움의 산물이어야 한다.

2. 없으면 만들어 내야 한다.

게으른 주부는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한다. 하기는 요즈음 수퍼마켓에 가면 물 붓고 끓이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생선매운탕까지 있으니 서투른 솜씨로 이것저것 만들다가 실패하는것 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P 빌딩의 경우는 기둥 하나의 축하중이 6천여톤이나 되므로 반죽할 기제품

철골부재가 없음은 말할것도 없고 용접제작으로도 국내에서는 그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철골구조로 계획하는 건물의 설계하중은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을 합해서 바닥면적 1 m² 당 1톤을 넘지 않도록 유도한다. 간벽도 경량으로 하고 외국에서는 바닥 콘크리트도 경량으로 설계한다. 이렇게 하중을 줄이고 줄여서 예컨대 0.8 t / m² 으로 해결된다면 기둥이 6 m × 12 m 로 배열된 평면에서 가운데 기둥의 축력은 한층당
0.8 × 6 × 12 = 57.6톤이며 이것이 100층이면 1층 기둥 축하중이 5,760톤이 된다. 여의도 63빌딩의 최대 기둥 축력이 3천톤이고 55층 한국종합무역센터의 최대 기둥 축력이 2,800톤이나 약 2배의 값이 된다.

63빌딩의 기둥은 최대 외곽 크기 600 × 700의 Box로서 강판 두께는 100 mm 의 수입 자재인데 한국종합무역센터는 국산 자재 사용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800 × 800 Box에 50 mm 두께로 설계했었다. 당시만 해도 POSCO 에서 50 mm 를 넘는 강판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이제 P 빌딩의 기둥을 두께 80 mm 까지 품질보장 한다는 POSCO 강판으로 외곽 Size 800 mm 가 넘지 않게 되도록 설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편 Box Column 의 단점은 Box 내부의 Diaphragm 부착을 위하여 CES 용접법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그 설비와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 2개소(63빌딩 공사 경험 현대와 무역센터 시공자 삼성) 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급적 Box 이외의 방법으로 설계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이다. 센구조가 처음 참여했을 당시 건축주측에서는 당연히 H 형강으로, 부족한 단면은 IH 또는 HH 으로 보강 계획한 것을 보았다. H 또는 HH형으로 제작하기 위하여는 접합 용접 개스가 많아지게 마련이다. 용접열로 뒤틀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위아래 기둥 이음에서도 어려움이 뒤 따른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한다. 이번 P 빌딩 구조설계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최초로 H형 기둥 단면을 고안해서 사용했다는 점이다. 알고보면 간단한 것이고 누구나 생각해 냄직한 형태의 단면이다. 만들어 놓고 보니 H 형강을 2개 나란히 붙여 놓은 것과 같은 형상이고(⌶⌶) 한글에서 ㅍ형이라고나 할까? Double Web 라 해도 좋고 Double H 라고 해도 좋을 단면이다.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P 빌딩 즉 한글로 ㅍ자를 따서 ㅍ형 기둥을 썼다고도 할만 하다. 이 새로운 단면 형태는 X 방향 단면 성상이 H 형강의 Web 를 절반 두께짜리 2개라고 생각하면 다를바 없으며 Y 방향 단면성상은 H 형강의 경우보다 분명히 유리하다. 즉 Web 가 도심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단면계수와 단면 2차 모멘트가 크다. 즉 H 형강의 Y 방향에 대한 무력함을 보완해 주는 장점이 있다. 단면적은 Box형과 다를바 없으며 H 형강과 비슷하여 재래식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어느 면에서는 H 형강보다 제작상 간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H 형 기둥 이음이 Bolt 로는 불가능한데, 두께 80 mm 정도의 강판을 사용한 대형 기둥의 이음은 그 단면형태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용접이음이라야 하므로 그것이 단점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기타 보와의 접합상세는 일반 H 형강과 다를바 없는 것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새로운 단면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발명, 고안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지경이며 앞으로 널리 사용될 것임을 확신한다.

3. T.M.C.P.(Thermo Mechanical Control Process) 강의 사용

강구조계산 규준에 의하면 강판 두께가 40 mm 를 초과하면 허용 내력이 10%로 줄어들게 되어있다. 응력이 커서 강판 두께를 늘였더니 자재의 허용 내력이 줄어들어서 두께를 더 많이 키워야 하는 약올리는 규준이다. 규준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를 골탕먹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나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한다. 같은 단면부재 중 어느 부위는 40 mm 이하이고 기타는 40 mm 를 초과할 때(예를 들면 그림 5와 같이 H 형강의 Flange 두께는 40 mm 를 초과하고 Web 두께는 얇을 때) 그 처리가 난감하다. 마치 고강도철근(Hi-Bar)과 보통 철근을 섞어서 배근할 때와 같은 골치아픈 현상이다. 그런데 포항종합제철에서는 최근에 T.M.C.P. 강이란 새로운 질의 강판을 제작 공급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아직은 우리나라 설계규준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Project 마다 심의를 받아야 가능한 단계이나 이 Project 에서는 이미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라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었다. 즉 두께가 40 mm 를 초과해도 40 mm 이하의 강판과 같은 허용 응력도를 인정하여 설계한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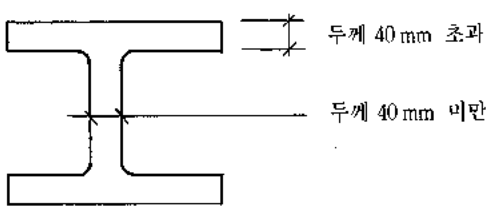

그림 5

T.M.C.P. 의 뜻을 문의했다.

전문용어라 무슨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어압연과 제어냉각 공정을 병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주로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용 소재로 사용하는 것인데 용접성이 좋고 강도, 인성이 크게 향상된 강판"이라는 설명이다. 본 Project 에 두께 40 mm 가 넘는 강판은 T.M.C.P. 로 설계한 바 편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다음호에 계속)

건축법 질의·회신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Building Law

건설부 건축계획과

▶ 질의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이라 함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지, 사용검사를 필한 상태를 말하는지 또는 기둥, 벽, 지붕이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 (건축 58560 - 313, 질의자 : '93. 2. 4 국세심판소장)

▶ 회신

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상의 각종 기준의 적용 및 절차등을 적용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나. 건축법령상 건축물로 보는 기준의 시점은 건축물의 완성도를 감안, 무허가 건축의 단속, 착공신고, 감리자의 선정등 개별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귀 질의와 같은 국세등 징수와 관련된 건축물의 인정시점에 대하여는 당해 관계법령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회신합니다.

▶ 질의

상업지역안에서 1991년 5월 4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받아 1991년 12월에 준공된 건축물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 제한과 관계없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 58070 - 299, 질의자 : '93. 2. 3 서울 마포 최현숙)

▶ 회신

질의와 같이 1992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되어 준공된 건축물을 현재 건축연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중인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

수도권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단독주택필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시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띄우는 방법은? (건축 58070 - 298, 질의자 : '93. 2. 3 서울 강남 최영기)

▶ 회신

질의와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단서규정에서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남방향으로 띄어 건축허용가능여부는 당해허가권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 질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건축주 및 건축사 (설계 및 감리담당)가 사망한 경우로서 동 건축물은 완공되었으나 이를 준공하기 위한 방안은? (건축 58070 - 325, 질의자 : '93. 2. 4 대구 북구 박문길)

▶ 회신

질의와 같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하고,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이 다른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변경하여 신고한 후 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질의

도시설계구역이며 미관지구안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물을 미관심의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지하 1층이 기계수평순환식인 주차장과 기계실이었으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지상층의 외관 및 규모는 변경없이 지하 2층을 추가로 설치 (증가되는 면적은 10분의 1 이내임)하고자 할 때 새로이 미관심의를 받은 후 설계변경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 58070 - 331, 질의자 : '93. 2. 4 서울 구로 최영태)

▶ 회신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와 같이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지상층은 외관이나 규모등의 변화가 없고 지하층의 규모만 증가하는 경우라면 동 지구의 지정 목적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미관심의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질의

약사법령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도매업이 건축법령상 어느 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 58070-324, 질의자 : '93. 2. 4 서울 성동 박용철)

▶ 회신

질의의 경우 의약품도매업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

건축물의 일부를 무허가로 증축하였을 경우 사후에 무허가건물의 양성화차원에서 증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절차는 (건축 58070-342, 질의자 : '93. 2. 5 건설부 도시정비과장)

▶ 회신

질의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증축부분은 무허가 증축행위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건축법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고발조치 후, 동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새로운 증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절차등은 일반 증축의 허가절차와 같습니다.

▶ 질의

도로와 접한 바다 (임항지구)에 말뚝을 박아 그 위에 콘크리트 바닥을 설치한 후 당조합의 충무위판장 건축을 위해 경량철골조의 차양시설 및 경량철골조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은 동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 58070-344, 질의자 : '93. 2. 6 부산 제1, 2지구 잠수기 수산업협동조합장)

▶ 회신

질의와 같은 임항지구안에서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건축물 및 대지는 건축법령의 제기준에 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증축허가받아 공사중인 건축물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등기이전을 완료하였는바, 구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야 건축주명의 변경가능한지 여부 및 설계자 및 공사시공자의 변경은 가능한지 여부 (건축 58070-345, 질의자 : '93. 2. 6 인천 남동 김익근)

▶ 회신

질의와 같이 공사중인 건축물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이 확실한 경우라면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로 구건축주의 동의없이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가 가능한 것이며, 동법 제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의 변경은 가능한 것이므로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지하층은 다방, 1 ~2층은 대중음식점, 3층은 사무실, 4층은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2층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동 주택의 건축법령상 용도분류는? (건축 58070-364, 질의자 : '93. 2. 8 서울 종로 김동호)

▶ 회신

질의와 같은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의 복합용도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과반미만이 고도지구에 저촉되는 경우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또는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건축 58070-365, 질의자 : '93. 2. 8 서울 강남 이순조)

▶ 회신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경내의 건축복원 및 신·개축하려고 할 경우 문화부장관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한지 여부 (건축 58070-354, 질의자 : '93. 2. 8 건설부 녹지공원과장)

▶ 회신

건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 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질의의 건축물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문화부장관이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전용주거지역안의 대지에 2단의 자주식으로서 높이 6미터 이하이며 외벽이 없는 주차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 58070-489, 질의자 : '93. 2. 19 서울 강남 이전배)

▶ 회신

질의의 높이 6미터 이하이며 외벽이 없는 2단의 자주식 주차장이 철골조립식인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작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작물은 동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전용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이나 동법 제47조의 규정은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동 주차장의 수평투영면적은 건폐율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질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대지의 경계선이 지적측량상 대지경계선과 기존 건축물의 담장선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 사선제한 및 인접대지경계로부터 띄우는 거리 산정 방법은? (건축 58070 - 385, 질의자 : '93. 2. 9 광주 서구 김우곤)

▶ 회신

질의와 같은 경우 대지경계선은 지적법령상의 지적경계선을 경계선으로 하여 건축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전용주거지역안에 도델하우스를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 58070 - 380, 질의자 : '93. 2. 9 대구 동구 박영규)

▶ 회신

질의와 같은 견본주택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견본주택의 건축은 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

하나의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복합된 경우 각 용도별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가 다른지 여부 (건축 58070 - 404, 질의자 : '93. 2. 10 건설부 도시정비과장)

▶ 회신

건축물의 건축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대지안의 공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인 바,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와 다세대주택의 용도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 질의

건축물 자체의 높이는 7.8미터이나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어 가중평균한 지표면에 따라 산정한 높이가 9.8미터일 때 종전건축법령에 의한 높이의 4분의 1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면 가능한지 여부 (건축 58070 - 386, 질의자 : '93. 2. 9 서울 관악 김영환)

▶ 회신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높이산정을 하는 것이므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위해방지시설의 정의 및 시설의 종류와 시공방법등은? (건축 58070 - 445, 질의자 : '93. 2. 15 서울 서초 박찬주)

▶ 회신

질의와 같은 위해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시설의 종류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지하층 건축시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은 건축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아파트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과 "준공필"의 차이점은? (건축 58070 - 459, 질의자 : '93. 2. 17 서울 노원 최린)

▶ 회신

질의의 "준공필"이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는 건축물의 공사를 허가받은대로 완료하여 허가권자의 사용검사에 합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임시사용승인"은 허가받은대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사용을 승인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질의

서울시내 상업지역에 숙박업소 (여관이나 여인숙)를 건축하고자 하는 바, 건축허가 제한과 관계있는지 여부 (건축 58070 - 462, 질의자 : '93. 2. 17 서울 영등포 송방엽)

▶ 회신

질의의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허가 제한과 관계없이 건축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

공동주택 2동 (1동은 15층, 1동은 9층)을 남동향으로 건축하고자 하는바, 일조권 적용을 위한 인동간 거리는? (건축 58070 - 351, 질의자 : '93. 2. 6 경남 마산 윤권봉)

▶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조권적용을 위한 공동주택의 인동간 거리는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 종전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인동간 거리는 각각의 공동주택의 높이 이상 (문의의 경우 높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가.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 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하는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나.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28조에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4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는 바,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도로의 너비를 6미터, 8미터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 58070-454, 질의자 : '93. 2. 17 서울 송파 박준규)

▶ 회신

가. 질의의 경우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을 접하거나,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4미터 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하는 것이며,

나. 건축조례에서 건축물의 규모 등에 따라 너비 4미터 이상 (예 : 6미터, 8미터등)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

1동의 건물안에 건축법령상의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구매시설 (면적 850㎡)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생활시설(면적 850㎡)이 있는 경우

가. 상기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용도분류는,

나. 상기 건축물의 3층과 4층의 생활시설이 각각 4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적용배제가능여부

다. 상기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시 적용하는 용도는? (건축 58070-475, 질의자 : '93. 2. 18 서울 강서 허계훈)

▶ 회신

가.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면적 1,700㎡)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층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다.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도분류 즉, 판매시설에 대한 부설주차 설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주상건축물의 신축시 하층부의 근린생활시설과 상층부의 공동주택의 중간층에 설치되는 피로티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및 산입되는 경우 공용면적에 포함여부 (건축 58070-485, 질의자 : '93. 2. 19 서울 성동 전창수)

▶ 회신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공급면적중 공용면적에 포함되며, 세대별 면적산정은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부분임을 감안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수원시내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인가를 복합민원처리하기 위하여 사전 결정을 신청한 바, 건축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처리가 불가능한지 여부 (건축 58070-487, 질의자 : '93. 2. 19 서울 강남 차동명)

▶ 회신

질의와 같이 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의 대상은 건축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층수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축조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운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질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철거신고를 한 후 기존의 공동주택을 철거한 경우 착공으로 보는지 또는 기존 공동주택을 동별로 철거하여 모두 철거한 후 굴토 및 단지 조성등 기타공사를 할 때를 착공으로 보는지 여부 (건축 58070-488, 질의자 : '93. 2. 19 서울 송파 김환성)

▶ 회신

건축물의 철거는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예정일 7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착공신고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 질의

종전의 건축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현행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해 '93. 5. 31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 58070-484, 질의자 : '93. 2. 19 대전 대덕 이은석)

▶ 회신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안의 건폐율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93.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내에서 계사 173평, 계분건조장 5평등 178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대상인지의 여부 (건축 58070-357, 질의자 : '93. 2. 8 충남 예산 전태근)

▶ 회신

귀 문의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질의서의 그림과 같은 대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바, 동 대지의 지하부분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되어 지하철 관통부위에 지상권(지하공작물설치)을 설정하는 경우, 대지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 58070-513, 질의자 : '93. 2. 20 서울 서초 천제홍)

▶ 회신

질의와 같이 대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지상권(지하공작물 설치)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은 전체면적을 기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대지안에 건축물의 건축시에 건축법령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도 모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방갈로의 건축법령상 용도분류는? (건축 58070-500, 질의자 : '93. 2. 20 서울 강남 안동수)

▶ 회신

질의의 방갈로에 숙박업을 하는 용도라면 공중위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용도를 일반숙박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할 것이나, 공중위생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당해 건축물의 이용형태에 따라 건축법령상 용도분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가. 주차전용빌딩(타워파킹)의 신축시 동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높이 4미터마다 1개층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표면의 심한 고저차로 인하여 3개층의 2면 이상이 실제 지표면아래에 있고 최하층은 1면이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지하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 58070-510, 질의자 : '93. 2. 20 서울 강남 이재정)

▶ 회신

가. 층의 구획이 없는 주차전용 건축물은 건축법령상 최하층 부분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것이며,

나. 질의와 같이 지표면의 1면이 완전하게 지상에 돌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하층의 외벽은 동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층수에 따라 벽체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노출된 부분에는 주차용 출입구 또는 당해 지하층에 이용하는 사용자의 출입문과 통풍을 위한 개구부(환기창 또는 전열창등 제외)의 설치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는 노출되지 않는 부분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설치한다하더라도 최소한이 되어야만 유사시 대피목적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한 지하층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

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는 전면도로와 수평이나 동 대지의 뒷편대지가 높은 경우 가상 지표면을 산정하여 높이제한 가능한지 여부

나. 단독주택과 200제곱미터 미만인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지하층설치 여부는? (건축 58070-525, 질의자 : '93. 2. 22 서울 서초 김익태)

▶ 회신

가.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시에는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인접대지와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높이산정하는 것이며,

나. 질의와 같은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표의 내용에 적합한 규모의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31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법령상의 인, 허가를 받아 활용중이며 이중 13필지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바, 공장증설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시 당해 건물이 위치하지 않은 대지의 지상권이 설정된 필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 58070-526, 질의자 : '93. 2. 22 인천 남구 권석명)

▶ 회신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즉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질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가 건축법령상의 대지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동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업무용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 58070-319, 질의자 : '93. 2. 4 충남 홍성 김태수)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

건축물을 건축중 대지가 법원의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로서 건축물의 건축주를 경락받은 자에게 변경의 가능여부 (건축 58070-308, 질의자 : '93. 2. 3 경남 마산 이해술)

▶ 회신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명의 변경시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지하 4층, 지상 12층의 바닥면적 1,925미터, 연면적 22,905㎡인 건축물중 1~6층은 판매시설, 7~11층은 근린생활시설, 12층은 위락시설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 58070 - 490, 질의자 : '93. 2. 19 건설부 건축행정과장)

▶ 회신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해 1층~11층은 판매시설, 12층은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

기계식 주차장의 바닥면적 산정방법은? (건축 58070 - 557, 질의자 : '93. 2. 24 부산 동구 정병화)

▶ 회신

층의 구획이 없는 기계식주차장 건축물 (타워파킹)의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산정은 최하층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나, 교통부 회신의 경우 주차장법령의 규정목적에 따라 산정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질의

개정되어 시행중인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에 대하여만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고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4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우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 58070 - 499, 질의자 : '93. 2. 20 서울 구로 윤창옥)

▶ 회신

질의의 창고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40제곱미터인 경우일지라도 건축법행령 제81조 제1호의 규정중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조례에서 1미터이상 띄우도록 규정할 수 있으므로 건축조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안에서 4,000제곱미터의 공해공장과 900제곱미터의 물품저장창고가 있을때 창고를 공장의 부속용도로도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부속건축물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예외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 58070 - 577, 질의자 : '93. 2. 24 대구 동구 곽기룡)

▶ 회신

질의의 창고가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허가권자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공해공장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바, 이때 부속용도인 경우라도 주용도의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질의

부산수영만 상업지역 도시설계 내용에는 "지역내 건축물의 최대 건폐율은 50%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건축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을 60%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 58070 - 575, 질의자 : '93. 2. 24 서울 영등포 엄웅)

▶ 회신

질의와 같은 경우 동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설계내용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08조는 도시설계를 수립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 질의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 (1)의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나. 당구장 (100㎡)과 청소년 전자유기장 (150㎡)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 58070 - 565, 질의자 : '93. 2. 24 대전 대덕 손석진)

▶ 회신

가. 질의의 당해용도란 슈퍼마켓과 식품, 잡화등 일용품 소매점의 용도에 사용되는 각각을 합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나. 질의와 같은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 (8)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은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별표 1 제1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개정 ('92. 5. 31)시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학원의 설립시 기존근린생활 시설의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여야 하는가? (건축 58070 - 360, 질의자 : '93. 2. 8 전북 전주 최성휘)

▶ 회신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건축물 대장을 정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학원의 설립가능 여부등 자세한 사항은 당해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주와 대지주가 다른 경우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축 58070 - 349, 질의자 : '93. 2. 6 경북 포항 이종호)

▶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축시 건축주와 대지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금지토록 당부, 건축 455-23489 ('84. 12. 15)호로 시·도에 행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 질의

기존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사용동의받은 대지가 일부 포함되었으나 동 건축물의 증축시 사용동의받은 대지에는 건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동의가 필요없는지 여부 (건축 58070-557, 질의자 : '93. 2. 24 부산 동구 정병화)

▶ 회신

질의의 기존건축물 건축시 사용동의받은 대지가 대지면적에 산입되어 이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령의 제기준이 적용된 경우라면 이의 증축시에도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즉 귀하의 경우 사용승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건축허가 대상지역이 아닌 국토이용 계획상 경지지역에서 축사 (건축면적 200제곱미터미만,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를 건축할 시 건축가능 여부와 이 경우 건축법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관계법령은? (건축 58070-293, 질의자 : '93. 2. 2 경남 김해 허영록)

▶ 회신

가. 건축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지역이 아닌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에서 축사 (건축면적 200제곱미터미만,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를 건축할 경우, 건축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절차 이행없이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착공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나. 상기 건축착공 신고의 경우, 건축법 제9조 제2항 및 건축법 제8조 제4항의 복합민원처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사전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신 후 건축착공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

다중주택 및 기타용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하인 경우 다중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건축 58070-305, 질의자 : '93. 2. 3 경북 경주 임일중)

▶ 회신

다중주택은 100평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인바, 질의의 건축물의 전체연면적이 100평 이하라면 주택의 부분은 다중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

해운항만청 소유의 대지에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을 건축하려고 하나, 항만시설 사용규칙에 따라 시설설치허가가 1년의 기한으로 승인 (매년 연차적으로 1년씩 연장 승인됨)되는 경우, 항만시설 (부지) 사용허가 기간에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 58070-279, 질의자 : '93. 2. 1 전북 군산 김용훈)

▶ 회신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대지의 범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는 건축할 대지의 권리확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바,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신청때에 동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권리가 확보된 경우라면 건축허가 신청은 가능한 것입니다.

▶ 질의

건축법시행령 제88조 2의 제1항에서 규정한 가장 넓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본다라함은 건축물이 후퇴한 부분과 도로의 너비를 합한 거리를 말하는지 여부 (건축 58070-278, 질의자 : '93. 2. 1 경기 의정부 양희춘)

▶ 회신

종전 ('92. 6. 1 이전) 건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전면 도로가 2이상이 있어, 도로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당해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폭은 가장 넓은 도로의 폭과 같은 것으로 보는바, 이경우 가장 넓은도로는 당해 대지에 접한 가장넓은도로 너비를 말하고 건축물이 후퇴한 부분까지 합한 거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질의

상가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후 건축주가 도피하여 소재불명인 때 사실상 동건축물을 분양받은자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허가권자의 직권으로 동건허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 58070-281, 질의자 : '93. 2. 1 경기 의정부 이순재)

▶ 회신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서에 구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질의의 경우에는 구건축주가 소재불명인 상태이고, 건축중인 관계로 공부상 등재가 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민법등 관련법에 의한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13,850호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 改正理由

住宅建設促進法이 改正(1992. 12. 8, 法律 第4,530號)됨에 따라 住宅事業者協會 및 住宅事業共濟組合의 設立·運營 및 監督에 관한 事項 등 同法에서 委任된 事項을 정하고, 組合員의 資格要件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住宅建設供給에 관한 現行制度의 運營上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개선·補完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가. 住宅建設登錄業者의 登錄基準 중 資本金의 基準을 현행 1억원(個人은 資産評價額 2억원) 이상에서 3억원(個人은 資産評價額 6억원) 이상으로 强化함으로써 住宅事業者의 信用度를 높임(令 第9條 第2項)

나. 事業主體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建設部長官이 國民住宅規模로 건설하도록 할 수 있는 最高比率을 현행 建築延面積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上向 調整함으로써 庶民층을 위한 小形住宅을 보다 많이 건설할 수 있도록 함(令 第31條 第1項)

다. 入住者募集公告後에는 入住豫定者의 同意없이는 當該 住宅建設 垈地나 建設된 住宅에 대하여 抵當權 등의 設定이 원칙적으로 禁止되나 事業主體가 當該 住宅의 入住者에게 住宅價格의 일부 控除를 目的으로 國民住宅基金이나 金融機關의 住宅建設資金 또는 住宅購入資金을 融資받는 경우에는 入住豫定者의 同意없이 抵當權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住宅建設을 촉진함(令 第31條의 2)

라. 事業主體가 登錄이 抹消되거나 破産되어 住宅建設事業의 施行이 不可能한 경우에는 施工保證會社가 使用檢査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施工保證會社도 破産 등으로 住宅을 建設할 수 없는 경우에는 入住豫定者들이 住宅建設工事를 施工한 후 使用檢査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入住豫定者를 보호하고 당해 주택이 不法建築物이 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34條의 2)

마. 현재 業務指針으로 정하고 있는 住宅組合員의 資格을 組合의 種類別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組合의 設立 및 解散節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42條)

바. 住宅事業者協會 및 住宅事業共濟組合의 設立節次·定款 記載事項 등 設立 및 運營에 관한 事項을 정함(令 第43條의 2 내지 第43條의 2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주택단지의 범위) 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 예정도로를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제4조의 2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를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의 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54조의 재해위험구역내의 주택으로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
5.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판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주택

제6조 제5항 중 "통리"를 "통할"로 한다.

제9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 3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이 경우 법 제47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출자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의 2 제4항 중 "1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제1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을 "시장등을"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시·군별로 종합하고"를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별로 종합하고"로, "시·군별"을 "시·군등별"로 한다.

제10조의 2 제1항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를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 단서 중 "500세대"를 "최근 3년간 500세대"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당해 주택건설의 공사비"를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의 건설공사비"로 하며,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자본금 5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이 경우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최근 3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제10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 3(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①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일한 등록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의 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합산하는 때에도 처분의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또한 같다.

제11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3(경영상태진단 등의 실시)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지정기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에 대하여 경영상태 진단이나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연금기금

제14조의 4를 제14조의 5로 하고, 제14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4(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법 제10조의 4 제1항 제11호에서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3. 공제조합에의 융자
4. 건축자재의 생산지원

제16조의 2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요하는 면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자 등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 제목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을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으

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
(제10조의 3 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등록말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 법 제6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등 건설업법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		영업정지 1년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정지기간 중 영업을 영위한 때		기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2배
다.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발행 등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때		
(1) 사채의 납입금을 제29조 제1항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		영업정지 6월
(2) 사채의 납입금을 제29조 제2항의 납입금 관리기간외의 기관에게 관리하게 한 때		영업정지 3월
라.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때		영업정지 6월
마. 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때		
(1) 입주자 모집승인 또는 입주자 모집공고 등 공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한 때		등록말소
(2) 입주자 모집승인시 당해 주택의 준공 또는 저당권말소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9월
(3) 입주자 모집승인시 승인된 주택 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때		영업정지 6월
(4) 입주자선정방법 및 순서를 위반하여 공급한 때		영업정지 6월
바. 법 제3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영업정지 1년
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1)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등록말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때		영업정지 9월
(3) 경미한 사항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영업정지 2월
아. 법 제33조의 3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 공사를 시행하거나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행하게 한 때		영업정지 1년
자.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관리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6월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차. 법 제38조의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입주자 등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를 한 때를 제외한다)		
(1)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한 날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한 때		영업정지 3월
(2)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지체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		등록말소
카. 법 제38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잔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하자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2회이상의 하자보수명령 또는 손실보상 명령에 불응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한 때		영업정지 1년
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생산한 주택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건설한 때		영업정지 3월
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중지 기타 명령을 위반할 때		영업정지 6월
하.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 등의 규정에 위반한 때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영업정지 6월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2월
3. 2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영업실적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또는 면적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7조 제1항 제3호	
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없을 때		등록말소
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기준에 50퍼센트 이상 미달한 때		영업정지 6월
다.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기준에 50퍼센트 미만 미달한 때		영업정지 3월
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요구에 대하여 계속 3회이상 불응한 때		등록말소
4.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등록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1월이내에 보완한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1월을 경과한 때까지 보완이 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6월
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		등록말소
다. 등록된 자본금·기술자 및 사무실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월을 경과한 때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	법 제7조 제1항 제5호	
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상의 하자		영업정지 1년

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 및 동항 제2호 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각각 "국민주택채권"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체가"로 한다.

4.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나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제23조 제1항 중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및 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한다.

제26조의 2 및 제26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2(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등) ①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지구내에서 행하는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의 건축행위 또는 용도변경은 법 제20조 제1항의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6조의 3(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대상주택)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제27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 2 내지 제27조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 2(등록업자의 사채발행) ①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법인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로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이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때		
나. 재시공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영업정지 9월
다. 재시공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때		영업정지 6월
라. 재시공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6. 등록업자가 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등록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제외한다.	법 제7조 제1항 제6호	
가. 개인인 등록업자가 등록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등록말소
나. 법인인 등록업자의 임원이 등록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개임하지 아니한 때		등록말소
다. 법인인 등록업자의 임원이 등록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부터 6월이 경과되는 때까지 개임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3월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때	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록말소
8. 처분의 통산 조치등		
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3년간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그 기간이 통산하여 18월을 초과한 때		등록말소
나.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2.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거나 제1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200호 또는 200세대 이상인 자

② 제1항의 등록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제27조의 3(사채의 발행요건등) ①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발행 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사채발행의 승인을 얻은 후 사채모집 공고전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채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의 소유권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행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의 보증에 관한 서류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발행계획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모집 공고안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사채발행을 승인한 때에는 사채발행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 4(사채의 상환등) ①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해약을 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등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본문단서와 동조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제1항 중 "50퍼센트"를 "75퍼센트(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로 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 2(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행위등) ①법 제32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제43조의 5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경우.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체의 파산등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기전까지 융자받은 주택건설자금을 상환하고, 법 제32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경우 변경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항 제5호 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동령 제26조 제2항 제4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제26조 제2항 제3호"로 하고, 동항 제6호의 2 중 "제10조의 2 제 1항 각호"를 "법 제45조 제1항 각호 또는 제10조의 2 제1항 각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이 경우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 2 제1항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등은"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등"으로 한다.

제32조의 4를 삭제한다.

제32조의 5의 제목중 "고시"를 "고시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법 제33조 제4항 또

는 제5항"을 "법 제33조 제11항"으로, "고시"를 "고시 또는 공고"로 하며, 동조 제1항 제5호 중 "고시"를 "고시 또는 공고"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법 제33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고시 또는 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준공검사등)"을 "(사용검사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 중 "준공검사"를 각각 "사용검사"로 한다.

제34조의 2 및 제34조의 3을 각각 제34조의 3 및 제34조의 4로 하고, 제3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 2(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 법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시공자를 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이 완료된 후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의 3(종전의 제34조의 2)제1호중 "건설업면허"를 "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장권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이 경우 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그 책임자 명의로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제1항중 "준공검사일"을 "사용검사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국민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가능일후 6월까지를 말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법 제38조의 3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매수인 또는 전차인이 3회이상 주택가격 또는 임대보증금의 수령을 기부한 때
2. 매수인 또는 전차인을 알 수 없거나 3월이상 장기 출타중인 때
3. 지급액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

⑦ 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급한 주택에 대한 입주현황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동조 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동의서
2.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3.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4.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7.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내지 3년의 범위내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 이전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에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후 부양가족의 사망·이혼등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건설부령이 정하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라.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조합 설립인가 지역과 동일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내에 1년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
2. 직장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
   나. 동일한 시·군내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3.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당해 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다만,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나. 복리시설(당해 복리시설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이 경우에는 재건축된 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다. 임대용 주택 또는 사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④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조합의 구성원 수가 20인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이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

3. 조합원이 확정판결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⑤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택조합은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 대지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8항(종전의 제5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등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의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무자격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및 그 선임방법
6.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7.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8. 조합원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9.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⑩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시장등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등) 법 제4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시장등이 발생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확인서

제43조의 2 내지 제43조의 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 2(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등) ① 법 제4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의 6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3. 당해연도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 회의록
5. 임원으로 임용될 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력서 및 본인의 승낙서

② 각 협회 또는 공제조합은 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자본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7.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이사장 및 이사장 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③ 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회·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

④ 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등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등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그 지점등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등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3. 주사무소 또는 지점등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등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⑤ 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⑥ 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점등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등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43조의 3(협회의 사업) 각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주택건설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회원에 대한 주택건설 기술의 지도
3. 주택건설 공사의 기술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4. 주택건설 산업에 관한 홍보활동 및 간행물의 발간
5. 건설부장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43조의 4(정관의 기재사항등) ① 각 협회 및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또는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각 협회의 경우에 한한다)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각 협회의 경우에 한한다)
7. 회원 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10. 총회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지점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출자 1좌의 금액, 최저출자좌수와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13. 공고방법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대리인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의 5(보증의 종류와 수수료) ① 법

제47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자보수보증은 주택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주택하자의 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의무하자보수보증과 장기하자보수보증으로 구분한다.
   가. 의무하자보수보증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무기간 중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을 말하며, 공제조합은 의무기간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나. 장기하자보수보증 :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주요 구조부분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10년·20년 또는 30년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을 말하며, 공제조합은 당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3. 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현금지급등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대출보증·리스지급 보증으로 구분한다.
   가. 대출보증 : 조합원이 금융기관·보험기관·다른 사업주체 기타 채권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당해 대출에 대한 현금지급의 책임을 진다.
   나. 리스지급보증 :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경우에 대여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4. 분양보증은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행하는 보증으로서 주택분양보증·주택임대보증 및 주택착공보증으로 구분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분양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행의 책임을 진다.
   나. 주택임대보증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임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임대계약에 따라 이미 납부된 임대보증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행의 책임을 진다.
   다. 주택착공보증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공정에 미달하는 때에 그 미달하는 공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이미 납부된 계약금의 환급 또는 미달하는 건축공정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기타보증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외에 조합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시공보증 등을 말한다.

② 공제조합은 당해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수수료·대출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신청인에 대하여 신용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43조의 6(출자증권의 발행등) ① 공제조합은 법 제47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제조합의 명칭
2. 공제조합의 설립연월일
3. 출자금 총액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실명)·상호 및 주소
6. 출자연월일
7. 출자증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제43조의 7(지분의 양도등) ① 공제조합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가 소유한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게 제시하고 그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인에 대한 공제조합의 질권은 소멸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

④ 지분의 양도 및 입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입질의 방법에 의한다.

⑤ 민사소송절차나 조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가압류는 지사채권의 압류·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제43조의 8(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이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취득을 요구한 때
4.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시 단좌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제43조의 9(보증 및 융자의 한도) ①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공제조합의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증을 받아 보증한 경우와 담보물을 제공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자본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개별보증한도 및 단위사업별 보증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3조의 10(공제조합의 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조합은 매사업 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이익금의 배당

②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3조의 11(공제조합의 준비금등) ① 공제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가액 이상으로 출자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그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과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3.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이 정부가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초과금액
4. 공제조합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기부금 및 기타 자본잉여금

제43조의 12(자본금 전입) ① 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전입의 효력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 자본금의 전입이 있은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3조 13(공제조합의 책임)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이 영이나 공동주택관리령 또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을 포함한다)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증의 이행 또는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그 보증을 이행하거나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43조의 14(공제조합총회의 구성) ① 공제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④ 대의원이 되는 요건 및 그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43조의 15(공제조합총회의 의결등)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사업계획·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장·감사 및 제43조의 16 제2항 제1호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영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 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공제조합이 제43조의 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총회의 의사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의결권없는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 16(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6인
2. 건설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2인
3. 각 협회의 회장
4. 공제조합의 이사장

③ 제2항 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제43조의 17(조합임원의 정원·선출방법 및 임기) ① 공제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이사 3인과 감사 2인을 두되, 감사중 1인을 비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임감사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3조의 18(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공제조합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자금의 차입 및 자본금의 증액이나 감소
4. 이사장의 추천 및 이사의 임면 인준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7. 보증이행을 대행할 자의 지정
8. 기타 이 영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이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의 19(공제조합의 운영규정) 공제조합의 회계등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3조의 20(각 협회 및 공제조합의 감독) 건설부장관은 법 제47조의 10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이나 조합원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각 협회나 공제조합의 운영계획등 업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4. 기타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의 21(공제조합의 시공지도등) ①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상황을 조사하거나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받은 조합원은 지체없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처리상황을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의 제목"(감독)"을 "(사업주체등에 대한 감독)"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등이"로 한다.

제45조 제6호 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권한

제46조 본문 중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에서 건설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를 "각 협회에 위탁한다"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 2 제1항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지정신청서의 접수
2.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가 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
3.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의 월별분양계획 및 분양현황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지정업자의 지정기준"을 "지정업자의 지정기준(제11조 제2항 관련)"으로 하고, 제1호 가목중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로 하며, 동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바목중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전기분야기술 자격취득자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2급 이상에 한한다)"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이 납입자본금 보다 적을 때에는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별표 3〕의 제목 "제1종 국민주택 채권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을 "제1종 국민주택 채권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제17조 제1항 관련)"으로 하고, 제1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 단서중 "지하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도시철도법시행령"으로; "지하철도채권"을 각각 "도시철도채권"으로 하며, 제3호 라목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라.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에 한한다)

〔별표 3〕의 〔부표〕중 제7호란을 삭제하고, 제8호란 중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경우"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 "증축(건축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신고에 의한 증축 또는 설계변경을 포함한다)"를 "증축"으로 하며, 동호 나목 (1) 중 "유기장법"을 "공중위생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호란중 "관광사업법"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1호란중 "주택관리인"을 "주택관리업"으로 한다.

20.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의 허가	
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50,000
나. 각 도청소재지	30,000
다. 기타지역	20,000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공제조합의 설립준비위원회) ① 건설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사업 공제조합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등록업자·관계 공무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한 7인 이상 20인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 설립시까지 법 제47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④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⑤ 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후 지체없이 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의 인계·인수가 종료된 때에는 설립준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6항 제15호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의 2"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 2"로 한다.

〔별표 6〕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5조 제4항 관련)

1. 도로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단지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 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 시설로부터 동 단지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전기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택지 또는 공동주택의 단지경계선까지로 한다.
4. 가스공급시설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 시설로부터 동 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단지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로 한다.
5. 통신시설(세대별 전화시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 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 시설은 동 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 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체신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지역난방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당해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을 말한다)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

1993년 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월분 5백94만5천9백2m² 보다 19.39%(1백15만3천1백24m²) 감소 한 4백79만2천7백78m²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월비

전월 12월분 1천5백71만2천8백26m² 보다 69.50%(1천92만48m²) 감소 한 4백79만2천7백78m²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 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 m²)

구 분		1992년도	1993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서 울	453,928	896,794	442,866	97.56
	광 주	52,798	351,518	298,720	565.78
	대 전	193,765	205,895	12,130	6.26
	충 북	141,328	251,689	110,361	78.09
	충 남	262,275	414,205	151,930	57.93
	전 북	115,015	141,716	26,701	23.22
감소지역	부 산	941,861	393,211	(548,650)	－58.25
	대 구	254,581	231,505	(23,076)	－9.06
	인 천	242,457	150,186	(92,271)	－38.06
	경 기	1,271,665	819,128	(452,537)	－35.59
	강 원	173,639	73,228	(100,411)	－57.83
	전 남	250,948	120,626	(130,322)	－51.93
	경 북	435,008	242,831	(192,177)	－44.18
	경 남	1,028,799	477,629	(551,170)	－53.57
	제 주	127,835	22,617	(105,218)	－82.31
합 계		5,945,902	4,792,778	(1,153,124)	－19.39

全國 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 m²)

용 도 별	12월분	1월분	증 · 감	비율(%)
단 독 주 택	1,987,489	534,386	(1,453,103)	－73.11
다세대주택	905,442	274,207	(631,235)	－69.72
연 립 주 택	198,942	38,848	(160,094)	－80.47
아 파 트	5,642,004	1,536,935	(4,105,069)	－72.76
근린생활시설	2,847,445	864,399	(1,983,046)	－69.64
종 교 시 설	157,455	52,807	(104,648)	－66.46
의 료 시 설	119,226	31,455	(87,771)	－73.62
교육연구시설	663,513	120,905	(542,608)	－81.78
업 무 시 설	733,261	271,799	(461,462)	－62.93
숙 박 시 설	181,850	90,006	(91,844)	－50.51
공 장	1,115,842	486,201	(629,641)	－56.43
기 타	1,160,357	490,830	(669,527)	－57.70
계	15,712,826	4,792,778	(10,920,048)	－69.50

市道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月分)

구분 / 건축사회	신축 · 개축 · 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울	1,833	1,868	843,984	43	47	52,810	0	0	0	1,876	1,915	896,794
부 산	477	651	341,790	53	68	25,311	29	30	26,110	559	749	393,211
대 구	388	415	202,616	194	207	17,239	16	18	11,650	598	640	231,505
인 천	227	240	113,651	20	20	29,029	15	15	7,506	262	275	150,186
광 주	115	168	330,483	37	46	18,131	4	4	2,904	156	218	351,518
대 전	150	169	192,986	20	20	5,044	38	38	7,865	208	227	205,895
경 기	1,027	1,136	715,077	103	128	64,724	34	34	39,327	1,164	1,298	819,128
강 원	184	198	62,624	23	26	4,946	8	8	5,658	215	232	73,228
충 북	297	363	205,158	54	78	37,955	27	31	8,576	378	472	251,689
충 남	269	274	378,234	45	45	30,168	9	9	5,803	323	328	414,205
전 북	61	79	85,839	21	38	19,262	3	3	36,615	85	120	141,716
전 남	175	216	93,638	60	70	22,146	12	13	4,842	247	299	120,626
경 북	234	324	174,458	69	94	57,594	14	14	10,779	317	432	242,831
경 남	408	532	382,276	97	122	38,591	32	32	56,762	537	686	477,629
제 주	28	29	22,188	14	14	429	0	0	0	42	43	22,617
합 계	5,873	6,662	4,145,002	853	1,023	423,379	241	249	224,397	6,967	7,934	4,792,778

用途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月分)

구분 /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 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2,606	2,647	517,982	198	215	15,260	12	12	1,144	2,816	2,874	534,386
다세대주택	550	598	271,779	25	27	2,325	4	4	103	579	629	274,207
연립주택	32	37	38,781	3	3	67	0	0	0	35	40	38,848
아파트	70	398	1,501,112	4	4	1,547	1	1	34,276	75	403	1,536,935
근린생활시설	1,783	1,825	760,426	236	238	46,376	117	118	57,597	2,136	2,181	864,399
종교시설	43	62	44,710	12	15	5,661	4	4	2,436	59	81	52,807
의료시설	4	4	2,075	6	6	26,013	2	2	3,367	12	12	31,455
교육연구시설	23	25	73,832	32	41	46,128	3	3	945	58	69	120,905
업무시설	52	63	254,579	11	11	3,946	13	13	13,274	76	87	271,799
숙박시설	51	52	77,121	10	11	3,296	10	10	9,589	71	73	90,006
공장	229	392	305,756	135	226	152,637	23	28	27,808	387	646	486,201
기타	430	559	296,849	181	226	120,123	52	54	73,858	663	839	490,830
합계	5,873	6,662	4,145,002	853	1,023	423,379	241	249	224,397	6,967	7,934	4,792,778

市道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 (1月分)

구분 / 건축사회	1992			1993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740	827	453,928	1,876	1,915	896,794	1,136	1,088	442,866	98	
부산	1,154	1,710	941,861	559	749	393,211	(595)	(961)	(548,650)	−58	
대구	333	377	254,581	598	640	231,505	265	263	(23,076)	−9	
인천	248	318	242,457	262	275	150,186	14	(43)	(92,271)	−38	
광주	176	199	52,798	156	218	351,518	(20)	19	298,720	566	
대전	167	176	193,765	208	227	205,895	41	51	12,130	6	
경기	1,084	1,447	1,271,665	1,164	1,298	819,128	80	(149)	(452,537)	−36	
강원	261	344	173,639	215	232	73,228	(46)	(112)	(100,411)	−58	
충북	478	548	141,328	378	472	251,689	(100)	(76)	110,361	78	
충남	343	374	262,275	323	328	414,205	(20)	(46)	151,930	58	
전북	163	190	115,015	85	120	141,716	(78)	(70)	26,701	23	
전남	474	580	250,948	247	299	120,626	(227)	(281)	(130,322)	−52	
경북	444	559	435,008	317	432	242,831	(127)	(127)	(192,177)	−44	
경남	723	1,091	1,028,799	537	686	477,629	(186)	(405)	(551,170)	−54	
제주	103	139	127,835	42	43	22,617	(61)	(96)	(105,218)	−82	
합계	6,891	8,879	5,945,902	6,967	7,934	4,792,778	76	(945)	(1,153,124)	−19	( )=마이너스

用途別 前年對比 全國 圖書申告 概況(1月分)

구분 / 용도별	1992년			1993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2,317	2,891	474,468	2,816	2,874	534,386	499	(17)	59,918	13	
다세대주택	285	344	127,350	579	629	274,207	294	285	146,857	115	
연립주택	41	87	169,811	35	40	38,848	(6)	(47)	(130,963)	−77	
아파트	144	649	2,528,793	75	403	1,536,935	(69)	(246)	(991,858)	−39	
근린생활시설	2,415	2,535	879,692	2,136	2,181	864,399	(279)	(354)	(15,293)	−2	
종교시설	76	93	37,559	59	81	52,807	(17)	(12)	15,248	41	
의료시설	14	18	48,719	12	12	31,455	(2)	(6)	(17,264)	−35	
교육연구시설	106	117	208,131	58	69	120,905	(48)	(48)	(87,226)	−42	
업무시설	89	101	228,959	76	87	271,799	(13)	(14)	42,840	19	
숙박시설	31	33	54,712	71	73	90,006	40	40	35,294	65	
공장	501	829	649,544	387	646	486,201	(114)	(183)	(163,343)	−25	
기타	872	1,182	538,164	663	839	490,830	(209)	(343)	(47,334)	−9	
합계	6,891	8,879	5,945,902	6,967	7,934	4,792,778	76	(945)	(1,153,124)	−19	( )=마이너스

93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93년도 제1회 임시총회

본 협회 93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지난 3월 17일(수)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성원보고에 이어 이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협회 내에 일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풍조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제하고, 회원 모두 굳게 화합하여 당면한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회의 일정 중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토론에 들어가 시·도건축사회장을 주축으로 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이에 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장시간 토론끝에 대책위원회를 통한 대정부 접촉을 통해 정부측의 입장이 정해지면 속개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휴회하였다.

제3회 이사회 개최

본 협회에서는 지난 3월 26일(금) 오전 11시 본 협회 회의실에서 이영희 회장의 주재로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된 주요 부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속개총회 개최일자 및 장소 결정의 건
  : 93년도 제1회 임시총회 속개회의는 93년 4월 9일(금) 오후 2시
  본 협회 강당에서 개최키로 결의
- 분회 설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충남건축사회 공주분회)
- '93회계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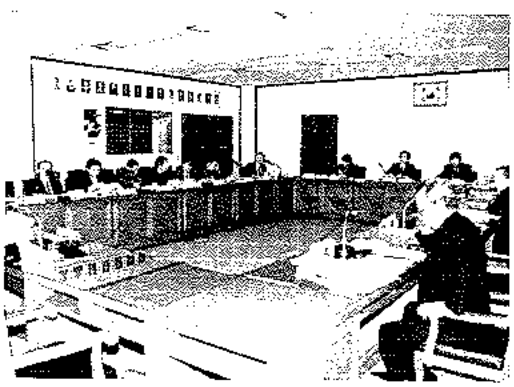
이사회 광경

건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 운영

본 협회는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특별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수 : 서울시건축사회장)와 건축사법 개정 연구위원회(위원장 정환호)를 구성, 지난 3월 24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건축사법 개악 반대에 따른 모든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 건축사법 개정·추진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건축사대회에서 토론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건의서를 작성, 건설부에 제출토록 하고 건축사법 개정안 전면 백지화 추진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른 제반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특별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사의 창작활동 보장, 지원
2. 설계, 감리 법인제도의 신설 철회
3. 건축사의 처벌규정을 합리적인 책임한계의 설정으로 시공자, 건축주와 함께 균형있게 재조정
4. 설계와 감리업무를 담보로 한 공제조합의 설립과 손해배상제 철회
5. 건설기술관리법 독소 조항 제27조(감리전문회사 신설 등) 폐지
6. 건설업자의 건축설계업 진출 불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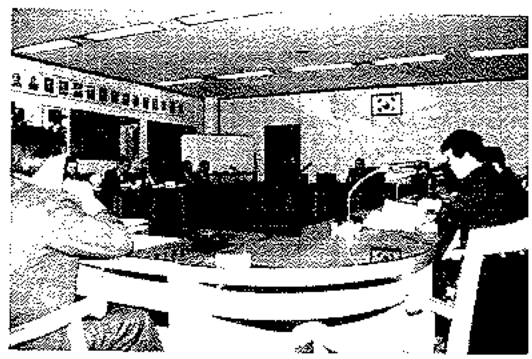
건축사법 개정 특별 위원회

건축사법 개정 건의서 제출

본협회는 지난 19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 전국건축사대회에서 건축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회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건축사법 개정 특별대책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서를 지난 3월 25일 건설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간담회 개최

본 협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목) 오후 3시부터 대회의실에서 건설부 관계관과 각 대학 교수 그리고 건축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건축물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계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에 대처한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고, 대형건축물 및 에너지 다량 소비형 건축물에 대한 열손실 방지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계기준 등을 수립하기 위한 각계의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93한국건축전 성료

본 협회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국건축전이 지난 3월 18일부터 개막되어 연인원 관람객 8만명의 성황속에 지난 22일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는 '93한국건축대제전의 주요행사로서 전국건축사대회와 한국국제건축자재전과 동시에 개최되어 건축인은 물론 일반인이 함께 참석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건축축제가 되어 언론을 비롯한 각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한편, 22일(월) 오후 2시 전시장내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건축사부문에 '예술의 전당 서울 오페라 극장'을 출품한 김석철 회원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는 등 건축사부문 우수작 8점을 비롯하여 신인·학생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93한국건축전 시상식

'93한국건축전 전시장 광경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건의서

1993년 전국건축사 대회에 즈음하여 전국 4,000여 회원들의 총의에 따라 건설부당국에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건축현장의 실무 종사자로써 진정한 이나라의 건축발전 방향과 국민들을 위한 건축이 되기 위한 충정에서 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창의성으로 국민들의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예술분야의 역군들입니다.

우리 건축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능력과 창의성을 확대하고 개발하는 풍토조성입니다.

건축사들을 불신하고 한계가 없는 책임추궁과 관용이 없는 처벌위주, UR에 대비한 대안없는 대형 사무소의 추구를 내용으로한 금번 건축사법 개정안은 우리 건축사들의 수용한계를 훨씬 벗어난 제안들입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에 의한 본협회안도 그 내용은 대형사무소 위주의 제안으로 우리가 수용하기가 벅찹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지배하고 지성과 문화가 존중되는 풍토를 기대합니다.

우리 건축사들에게 제안한 건설부의 건축사법 개정안은 새로운 시각과 안목에서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운 법제정의 의지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전국회원들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1. 건축사들을 전면 불신하는 바탕위에 만든 건축사법은 일부의 하자와 잘못을 전체로 비약시켜 건축사 전원을 죄인시하고 그러한 바탕위에 만든 법의 규제하에서는 우리 건축사들의 창작의욕 대신에 법외규제를 피해가도록 법이 유도함으로써 창의적인 건축의 싹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2. UR에 대비해서 설계사무소를 대형 사무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는 너무나 황당하고 논리적 비약이며, 건축의 질은 건축가의 개인적인 능력과 창의성에 있지 수의 다수에 있지 않으며,

3. 정부의 할일은 제도적으로 각부문의 균형 발전을 조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보며, 앞으로 건설부안대로 실시될 경우에는 우리 건축사들은 대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대형 사무소나 건설회사에 소속된 사무소만이 생존이 가능할 것이며, 절대다수의 개인사무소는 서서히 고사되어 가는 과롭고 가이한 현상이 발생될 것이며,

4. 우리 건축사들은 자존과 명예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의 업무를 수행코자 하며 건축주로부터 존경 받아야 할 건축사가 고의와 과실이라는 애매모호한 책임으로 민형사의 고발대상이 되고 우리 건축사 전원과 건축사보까지 범적 전과자를 만드는 사항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5. 우리 건축사도 인간이며 어떤면에서는 건축은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써, 단한번의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것이 본법의 강력한 주장으로써 고의와 과실로 인한 책임은 현재도 민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음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라는 전대미문의 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상응한 설계비와 감리비는 물가상승이라는 족쇄를 그대로 둔체 우리 건축사는 어떻게 하라는지 묻고 싶습니다.

6. 수많은 행정규제와 면허에 관련된 규제사항에 건축사의 참여없이 관주도로 이루어 짐으로써 인격체로써의 건축사가 아닌 범법자로써의 건축사가 되어 왔으며 건축사 처벌 규정도 건설업과 균형있게 재조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건의안에 대한 건설부의 의견을 조속한 시일안에 전국회원들은 알고 싶습니다.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1993. 3. 19

건설부장관 귀하

분당신도시 주택설계 전시회 개최

한국토지 개발공사에서는 3월 30일(화)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분당신도시 주택설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전식에는 이번 설계에 참가한 건축가 20인을 비롯하여 건축관계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주택 설계 전시회는 주택 전람회에 앞서 설계된 주택을 우선 전시회를 통하여 일반에 널리 알리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내에서 초빙된 건축가 20인이 제시하는 이 주택작품들은 앞으로 우리 주거문화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향후 실제로 지어지는 주택단지는 살아있는 건축교육의 현장으로서 그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 기간중 전시장내에서 참가작가의 작품 발표회(3월31일~4월8일)와 '사회학적 측면에서 본 가족제도와 주거문화' 그리고 '미래의 주거와 도시'라는 제목으로 강연회(4월 9일 오전 10시, 오후 1시, 서예관 강당)가 열리며, '한국의 주거문화'에 대한 심포지움이 4월 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예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4월 11일까지 계속된다.

참가작가는 다음과 같다.

姜錫元, 公日坤, 金 洹, 金仁喆, 金鍾星, 都昌煥, 柳春秀, 閔賢植, 朴研心, 承孝相, 嚴德紋, 尹承重, 李星觀, 張錫雄, 張世洋, 曺建永, 趙成龍, 池 淳, 黃一仁(이상 20인)

분당신도시 주택설계 전시회

'93 봄학기 건축강좌 개최

민족예술인총연합회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문예 아카데미 건축강좌가 3월 20일부터 '우리 건축과 세계 건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 아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12주 동안 문예아카데미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 : 목구조의 기초 Ⅰ(장순용)
2주 : 목구조의 기초 Ⅱ(한재수)
3주 : 해인사의 배치기법(이상해)
4주 : 금산사 미륵전의 구조(문영빈)
5주 : 낙안읍성의 공간계획(김홍식)
6주 : 답사여행
7주 : Tsumi & Koolhaas(정기용, 강 혁)
8주 : Holl & Eisenman(김준성, 신춘규)
9주 : Rossi & Moneo(최 욱, 김영섭)
10주 : Ando & Ito(최문규, 조성룡)
11주 : Gehrry & Morphosis(조희철, 손학식)
12주 : 종합토론/전통건축과 서양건축의 방법론 비교

재불 한국건축인 모임 결성

프랑스에 거주, 유학하고 있는 건축인들의 모임(회장 김홍일)이 1992년 10월에 결성되었다.

이 모임은 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건축가들과 유학생들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학술지 발간과 건축전시회 개최, 건축가 초청 세미나 등과 국내 건축인들과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유학 희망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며, 현재 프랑스 국가공인 건축사, 건축학교 및 박사과정 재학생과 건축관련인 등 9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 연락처 : 김홍일(전화 : 0343-45-7443)

현상 설계 공모

1. 의정부시 종합문예 회관 건립
- 위치 : 의정부시 의정부동 352-1외 9필지(직동근린공원내)
- 응모자격 : 건축사법에 의한 종합건축사 사무소 등록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자
- 응모기간 : 1993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사용 인감계 및 인장 1부
- 작품제출 : 1993년 6월 16일(수)까지
- 제출처 및 문의처 : 의정부시 문화공보담당관실(전화 : 0351-872-1726)

2. 담양군 죽세공예진흥단지 건립
- 위치 :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402-1번지 일대
- 용도 : 전시관, 판매시설, 생산공장
- 응모자격 : 종합건축사사무소 등록건축사
- 응모기간 : 1993년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2일간)
- 작품설명회 : 1993년 4월 14일 14 : 00 군청회의실
- 작품제출 : 1993년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 제출처 및 문의처 : 담양군 지역경제과 (전화 : 0684-82-5000)

3. 화천 군민 회관 건립
- 위치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92번지 일대(일반주거지역)
- 용도 : 관람집회시설 및 근린공공시설
- 응모자격 :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단독 및 종합)
- 응모기간 : 1993년 5월 20일까지
- 제출처 및 문의처 : 강원도 화천군청 재무과(전화 : 0363-440-2273)